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627-01

201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201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 12.

연 구 기 관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책 임 자 : **김 현 수** (한양대 교육대학원 교수)
공 동 연 구 자 : **김 성 철** (서울혜원여자중학교 교장)
김 은 경 (한양대학교 양성평등센터)
김 형 욱 (전경기도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박 선 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 동 현 (한양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이 정 숙 (한양대 교육대학원 교수)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
|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4 |
| 3. 선행 연구의 개관 | 7 |
| 4. 연구 절차 및 방법 | 21 |
| II.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 분석결과 | 33 |
| 1.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의 문항 구성 | 35 |
| 2.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 | 37 |
| III. 학생인권 인식조사 분석결과 | 113 |
| 1. 학생인권 인식조사의 문항 구성 | 115 |
| 2. 학생인권침해 인식조사의 분석 결과 | 115 |
| IV. 학교규칙의 기본권 침해 실태 | 133 |
| 1. 학교규칙과 학생의 법적 지위 | 135 |
| 2. 학교규칙 분석 항목의 설정 | 137 |
| 3. 학교규칙의 실태 조사 결과 | 142 |
| 4. 학교규칙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 151 |
| V. 결론 및 제언 | 163 |
| 1.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및 논의와 제언 | 165 |
| 2. 학생인권 인식조사 결과의 요약 및 논의와 제언 | 182 |
| 3. 학칙분석 결과에 기초한 결론 및 제언 | 199 |



| | |
|-------------------------|-----|
| ■ 부 록 | 205 |
| 1. 중·고등학생용 설문 조사지 | 207 |
| 2. 학부모용 설문 조사지 | 212 |
| 3. 교사용 설문 조사지 | 216 |
| 4.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 220 |
| 5. 학생인권 인식조사 결과 | 226 |

표 목 차

| | | |
|-----------|---|----|
| <표 1-1> | 학생인권 관련 선행연구 요약표 | 9 |
| <표 1-2> |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교육청과 시행시기, 포함된 인권조례조항의 요약표 | 15 |
| <표 1-3> | 학생인권조례 분석으로부터 추출된 주요 학생인권 영역과 내용 | 17 |
| <표 1-4> | 학교규칙(학칙) 내 학생인권 침해 조항 예시 | 19 |
| <표 1-5> | 2016 전국 중학생 수 | 25 |
| <표 1-6> | 2016 전국 고등학생 수 | 26 |
| <표 1-7> | 전체 학생 수 기준 지역별 표본 배당 | 27 |
| <표 1-8> | 성별과 조례시행 여부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수와 비율 | 30 |
| <표 1-9> | 응답자 별 해당 학교 유형에 속하는 연구 참가자의 수와 비율 | 30 |
| <표 1-10> | 지역별 연구 참가자의 수와 비율 | 31 |
| <표 2-0> | 학교생활에서의 학생권리 보장 및 학생인권 침해 조사지의 주요 영역 별 문항 구성 | 35 |
| <표 2-1-1> | 학교규칙 인지 여부 (학생유형별) | 38 |
| <표 2-1-2> | 학교규칙 인지 여부 (중/고등 학교유형별) | 38 |
| <표 2-1-3> | 학교규칙 인지 여부 (조례시행여부별) | 39 |
| <표 2-2-1> | 학생인권교육 경험 (학생유형별) | 40 |
| <표 2-2-2> | 학생인권교육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 41 |
| <표 2-2-3> | 학생인권교육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 42 |
| <표 2-3-1> | 학생 자치활동 전용공간 설치여부 (학생유형별) | 42 |
| <표 2-3-2> | 학생 자치활동 전용공간 설치여부 (중/고등 학교유형별) | 43 |
| <표 2-3-3> | 학생 자치활동 전용공간 설치여부 (조례시행여부별) | 44 |
| <표 2-4-1> |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 보장 (학생유형별) | 45 |
| <표 2-4-2> |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 보장 (중/고등 학교유형별) | 46 |
| <표 2-4-3> |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 보장 (조례시행여부별) | 47 |
| <표 2-5-1> | 정기적 대의원회의 개최 (학생유형별) | 47 |

| | | |
|------------|--|----|
| <표 2-5-2> | 정기적 대의원회의 개최 (중/고등 학교유형별) | 48 |
| <표 2-5-3> | 정기적 대의원회의 개최 (조례시행여부별) | 49 |
| <표 2-6-1> |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학생유형별) | 50 |
| <표 2-6-2> |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중/고등 학교유형별) | 51 |
| <표 2-6-3> |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조례시행여부별) | 52 |
| <표 2-7-1> |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학생의견 수렴 (학생유형별) | 52 |
| <표 2-7-2> |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학생의견 수렴 (중/고등 학교유형별) | 53 |
| <표 2-7-3> |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학생의견 수렴 (조례시행여부별) | 54 |
| <표 2-8-1> | 성적에 따른 학급/학생회 활동 제한 (학생유형별) | 55 |
| <표 2-8-2> | 성적에 따른 학급/학생회 활동 제한 (중/고등 학교유형별) | 56 |
| <표 2-8-3> | 성적에 따른 학급/학생회 활동 제한 (조례시행여부별) | 57 |
| <표 2-9-1> | 차별경험 (학생유형별) | 59 |
| <표 2-9-2a> | 차별경험 (중학교 학교유형별) | 61 |
| <표 2-9-2b> | 차별경험 (고등학교 학교유형별) | 63 |
| <표 2-9-3> | 차별경험 (조례시행여부별) | 65 |
| <표 2-10-1> |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 (학생유형별) | 66 |
| <표 2-10-2> |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 (중/고등 학교유형별) | 67 |
| <표 2-10-3> |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 (조례시행여부별) | 68 |
| <표 2-11-1> | 직접체벌 경험 (학생유형별) | 68 |
| <표 2-11-2> | 직접체벌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 69 |
| <표 2-11-3> | 직접체벌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 70 |
| <표 2-12-1> | 간접체벌 경험 (학생유형별) | 71 |
| <표 2-12-2> | 간접체벌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 72 |
| <표 2-12-3> | 간접체벌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 73 |
| <표 2-13-1> |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 (학생유형별) | 73 |
| <표 2-13-2> |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 74 |
| <표 2-13-3> |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 75 |
| <표 2-14-1> |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 (학생유형별) | 76 |
| <표 2-14-2> |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 77 |
| <표 2-14-3> |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 78 |

| | | |
|-------------|--|-----|
| <표 2-15-1> | 상·별점제 운영 여부 및 공정한 상·별점제 운영 (학생유형별) | 79 |
| <표 2-15-2> | 상·별점제 운영 여부 및 공정한 상·별점제 운영 (중/고등 학교유형별) | 80 |
| <표 2-15-3> | 상·별점제 운영 여부 및 공정한 상·별점제 운영 (조례시행여부별) .. | 81 |
| <표 2-16-1> | 학생 개인정보 공개 (학생유형별) | 82 |
| <표 2-16-2> | 학생 개인정보 공개 (중/고등 학교유형별) | 82 |
| <표 2-16-3> | 학생 개인정보 공개 (조례시행여부별) | 83 |
| <표 2-17-1> |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학생유형별) | 84 |
| <표 2-17-2> |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 85 |
| <표 2-17-3> |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 86 |
| <표 2-18-1> | 성적 공개 (학생유형별) | 86 |
| <표 2-18-2> | 성적 공개 (중/고등 학교유형별) | 87 |
| <표 2-18-3> | 성적 공개 (조례시행여부별) | 88 |
| <표 2-19-1> | 특정 학교 입학 공개 (학생유형별) | 89 |
| <표 2-19-2> | 특정 학교 입학 공개 (중/고등 학교유형별) | 90 |
| <표 2-19-3> | 특정 학교 입학 공개 (조례시행여부) | 91 |
| <표 2-20-1> |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학생유형별) | 92 |
| <표 2-20-2> |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 94 |
| <표 2-20-3> |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 96 |
| <표 2-21-1> |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도 (학생유형별) | 97 |
| <표 2-21-2> |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도 (중/고등 학교유형별) | 97 |
| <표 2-21-3> |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도 (조례시행여부별) | 98 |
| <표 2-22-1> | 서약서 및 동의서 강제 (학생유형별) | 99 |
| <표 2-22-2> | 서약서 및 동의서 강제 (중/고등 학교유형) | 100 |
| <표 2-22-3> | 서약서 및 동의서 강제 (조례시행여부별) | 101 |
| <표 2-23-1> | 탈의실의 설치 여부와 자유로운 이용(학생유형별) | 102 |
| <표 2-23-2a> | 탈의실의 설치 여부와 자유로운 이용 (중학생) | 103 |
| <표 2-23-2b> | 탈의실의 설치 여부와 자유로운 이용 (고등학생) | 104 |
| <표 2-23-3> | 탈의실의 설치 여부와 자유로운 이용 (조례시행여부별) | 105 |
| <표 2-24-1> | 자유로운 학교상당실 이용 (학생유형별) | 105 |

| | | |
|------------|---|-----|
| <표 2-24-2> | 자유로운 학교상당실 이용 (중/고등 학교유형별) | 106 |
| <표 2-24-3> | 자유로운 학교상당실 이용 (조례시행여부별) | 107 |
| <표 2-25-1> | 휴식시간 이용 제한 (학생유형별) | 108 |
| <표 2-25-2> | 휴식시간 이용 제한 (중/고등 학교유형별) | 109 |
| <표 2-25-3> | 휴식시간 이용 제한 (조례시행여부별) | 110 |
| <표 2-26-1> | 교사에 의한 학습권 침해 경험 (학생유형별) | 110 |
| <표 2-26-2> | 교사에 의한 학습권 침해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 111 |
| <표 2-26-3> | 교사에 의한 학습권 침해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 112 |
| <표 3-0> | 학생인권 인식 조사의 문항 요약수준 (학생, 학부모, 교사) | 115 |
| <표 3-1> | 학생인권 인식 수준(학생, 학부모, 교사) | 116 |
| <표 3-2> | 인권 보장에 대한 중요도(학생, 학부모, 교사) | 117 |
| <표 3-3> | 인권 침해 시 반응(학생, 학부모, 교사) | 119 |
| <표 3-4> |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 120 |
| <표 3-5> | 학생 두발 규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 121 |
| <표 3-6> | 학생 복장 규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 122 |
| <표 3-7> |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 124 |
| <표 3-8> |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 125 |
| <표 3-9> | 학생 개인정보 공개 및 제공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 126 |
| <표 3-10> | 교내 학생 집회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 127 |
| <표 3-11> |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 128 |
| <표 3-12> | 교내 종교행사참여 및 종교과목수강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 | 129 |
| <표 3-13> |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 130 |
| <표 3-14> | 성적에 따른 제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 132 |
| <표 4-1> | 조례 분석을 통한 학생인권 영역 및 내용 | 137 |
| <표 4-2> | 학칙 분석 영역 및 항목 | 141 |
| <표 4-3> | 기본권 보장 영역에 대한 조사 | 142 |
| <표 4-4> | 개별 기본권 침해 여부 영역에 대한 조사 | 143 |
| <표 4-5> | 절차적 권리의 보장 영역에 대한 조사 | 143 |
| <표 4-6> |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영역에 대한 조사 | 143 |
| <표 4-7> | 규범의 형식(용어와 개념) 영역에 대한 조사 | 144 |

| | | |
|------------|---|-----|
| <표 4-8> | 침해 학칙 조항의 분석기준 및 예시 | 144 |
| <표 6-1-1> | 학교생활에서의 학생권리 보장 관련 문항들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학생유형별) | 220 |
| <표 6-1-2> | 차별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학생유형별) | 221 |
| <표 6-1-3> | 체벌, 언어폭력, 성희롱 및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학생유형별) | 222 |
| <표 6-1-4> | 적법한 상·벌집제 운영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학생유형별) | 223 |
| <표 6-1-5> | 강제소지품 검사, 개인신상정보 보호 관련 학생 응답 분석 (학생유형별) | 223 |
| <표 6-1-6> | 개성실현 및 사생활의 자유 제한 관련 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응답자별) | 224 |
| <표 6-1-7> | 서약서/동의서 강제(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응답자별) | 224 |
| <표 6-1-8> | 휴식권 침해, 학생의 학습권 관련 학생 응답 분석 (응답자별) | 225 |
| <표 6-2-1> | 학생인권에 대한 전반적 인식 (응답자별 분석) | 226 |
| <표 6-2-2> |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성 인식 (응답자별 분석) | 226 |
| <표 6-2-3> | 학생인권 침해 시 대응 방법에 대한 전반적 인식 (응답자별 분석) | 227 |
| <표 6-2-4> |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 227 |
| <표 6-2-5> | 학생 두발 규제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 228 |
| <표 6-2-6> | 학생 복장 규제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 228 |
| <표 6-2-7> |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 229 |
| <표 6-2-8> |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 229 |
| <표 6-2-9> | 학생 개인정보 공개 및 제공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 230 |
| <표 6-2-10> | 교내 학생집회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 230 |
| <표 6-2-11> | 애간학습 및 보충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 231 |
| <표 6-2-12> | 교내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 수강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 231 |
| <표 6-2-13> |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 232 |
| <표 6-2-14> | 성적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 및 학교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 232 |

그림 목 차

| | | |
|-------------|---|----|
| <그림 1> | 중·고등학생의 학생인권보장 실태,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학교 학생 규제 허용 정도에 대한 인식, 및 학교 규칙의 현황 조사를 위한 과정 요약 | 21 |
| <그림 2-1-1> | 학교규칙 인지 여부 (학생유형별) | 38 |
| <그림 2-1-2a> | 학교규칙 인지 여부 (중학교유형) | 39 |
| <그림 2-1-2b> | 학교규칙 인지 여부 (고등학교유형) | 39 |
| <그림 2-2-1> | 학생인권교육 경험 (학생유형별) | 40 |
| <그림 2-2-2a> | 학생인권교육 경험 (중학교유형) | 41 |
| <그림 2-2-2b> | 학생인권교육 경험 (고등학교유형) | 41 |
| <그림 2-3-1> | 학생 자치활동 전용공간 설치여부 (학생유형별) | 43 |
| <그림 2-3-2a> | 학생 자치활동 전용공간 설치여부 (중학교유형) | 44 |
| <그림 2-3-2b> | 학생 자치활동 전용공간 설치여부 (고등학교유형) | 44 |
| <그림 2-4-1> |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 보장 (학생유형별) | 45 |
| <그림 2-4-2a> |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 보장 (중학교유형) | 46 |
| <그림 2-4-2b> |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 보장 (고등학교유형) | 46 |
| <그림 2-5-1> | 정기적 대의원회의 개최 (학생유형별) | 48 |
| <그림 2-5-2a> | 정기적 대의원회의 개최 (중학교유형) | 49 |
| <그림 2-5-2b> | 정기적 대의원회의 개최 (고등학교유형) | 49 |
| <그림 2-6-1> |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학생유형별) | 50 |
| <그림 2-6-2a> |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중학교유형) | 51 |
| <그림 2-6-2b> |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고등학교유형) | 51 |
| <그림 2-7-1> |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학생의견 수렴 (학생유형별) | 53 |
| <그림 2-7-2a> |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학생의견 수렴 (중학교유형) | 54 |
| <그림 2-7-2b> |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학생의견 수렴 (고등학교유형) | 54 |
| <그림 2-8-1> | 성적에 따른 학급/학생회 활동 제한 (학생유형별) | 55 |
| <그림 2-8-2a> | 성적에 따른 학급/학생회 활동 제한 (중학교유형) | 56 |

| | |
|--|----|
| <그림 2-8-2b> 성적에 따른 학급/학생회 활동 제한 (고등학교유형) | 57 |
| <그림 2-9-1a> 차별경험 (중학생 응답) | 60 |
| <그림 2-9-1b> 차별경험 (고등학생 응답) | 60 |
| <그림 2-9-2a> 차별경험 (중학교 학교유형별) | 62 |
| <그림 2-9-2b> 차별경험 (고등학교 학교유형별) | 64 |
| <그림 2-10-1>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 (학생유형별) | 66 |
| <그림 2-10-2a>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 (중학교유형) | 67 |
| <그림 2-10-2b>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 (고등학교유형) | 67 |
| <그림 2-11-1> 직접체벌 경험 (학생유형별) | 69 |
| <그림 2-11-2a> 직접체벌 경험 (중학교유형) | 70 |
| <그림 2-11-2b> 직접체벌 경험 (고등학교유형) | 70 |
| <그림 2-12-1> 간접체벌 경험 (학생유형별) | 71 |
| <그림 2-12-2a> 간접체벌 경험 (중학교유형) | 72 |
| <그림 2-12-2b> 간접체벌 경험 (고등학교유형) | 72 |
| <그림 2-13-1>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 (학생유형별) | 74 |
| <그림 2-13-2a>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 (중학교유형) | 75 |
| <그림 2-13-2b>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 (고등학교유형) | 75 |
| <그림 2-14-1>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 (학생유형별) | 76 |
| <그림 2-14-2a>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 (중학교유형) | 77 |
| <그림 2-14-2b>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 (고등학교유형) | 77 |
| <그림 2-15-1> 상·벌점제 운영 여부 및 공정한 상·벌점제 운영 (학생유형별) | 79 |
| <그림 2-15-2a> 상·벌점제 운영 여부 및 공정한 상·벌점제 운영 (중학교유형) | 80 |
| <그림 2-15-2b> 상·벌점제 운영 여부 및 공정한 상·벌점제 운영 (고등학교유형) | 81 |
| <그림 2-16-1> 학생 개인정보 공개 (학생유형별) | 82 |
| <그림 2-16-2a> 학생 개인정보 공개 (중학교유형) | 83 |
| <그림 2-16-2b> 학생 개인정보 공개 (고등학교유형) | 83 |
| <그림 2-17-1>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학생유형별) | 84 |
| <그림 2-17-2a>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중학교유형) | 85 |
| <그림 2-17-2b>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고등학교유형) | 85 |
| <그림 2-18-1> 성적 공개 (학생유형별) | 87 |

| | |
|--|-----|
| <그림 2-18-2a> 성적 공개 (중학교유형) | 88 |
| <그림 2-18-2b> 성적 공개 (고등학교유형) | 88 |
| <그림 2-19-1> 특정 학교 입학 공개 (학생유형별) | 89 |
| <그림 2-19-2a> 특정 학교 입학 공개 (중학교유형) | 90 |
| <그림 2-19-2b> 특정 학교 입학 공개 (고등학교유형) | 90 |
| <그림 2-20-1a>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중학생 응답) | 93 |
| <그림 2-20-1b>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고등학생 응답) | 93 |
| <그림 2-20-2a>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중학교유형) | 95 |
| <그림 2-20-2b>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고등학교유형) | 95 |
| <그림 2-21-1>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도 (학생유형별) | 97 |
| <그림 2-21-2a>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도 (중학교유형) | 98 |
| <그림 2-21-2b>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도 (고등학교유형) | 98 |
| <그림 2-22-1> 서약서 및 동의서 강제 (학생유형별) | 99 |
| <그림 2-22-2a> 서약서 및 동의서 강제 (중학교유형) | 100 |
| <그림 2-22-2b> 서약서 및 동의서 강제 (고등학교유형) | 100 |
| <그림 2-23-1> 탈의실 설치 여부와 자유로운 탈의실 이용 (학생유형별) | 102 |
| <그림 2-23-2a> 탈의실 설치 여부와 자유로운 탈의실 이용 (중학교유형) | 103 |
| <그림 2-23-2b> 탈의실 설치 여부와 자유로운 탈의실 이용 (고등학교유형) | 104 |
| <그림 2-24-1> 자유로운 학교상담실 이용 (학생유형별) | 106 |
| <그림 2-24-2a> 자유로운 학교상담실 이용 (중학교유형) | 107 |
| <그림 2-24-2b> 자유로운 학교상담실 이용 (고등학교유형) | 107 |
| <그림 2-25-1> 휴식시간 이용 제한 (학생유형별) | 108 |
| <그림 2-25-2a> 휴식시간 이용 제한 (중학교유형) | 109 |
| <그림 2-25-2b> 휴식시간 이용 제한 (고등학교유형) | 109 |
| <그림 2-26-1> 교사에 의한 학습권 침해 경험 (학생유형별) | 111 |
| <그림 2-26-2a> 교사에 의한 학습권 침해 경험 (중학교유형) | 112 |
| <그림 2-26-2b> 교사에 의한 학습권 침해 경험 (고등학교유형) | 112 |
| <그림 3-1> 학생인권 인식수준(학생, 학부모, 교사) | 117 |
| <그림 3-2> 인권 보장에 대한 중요도(학생, 학부모, 교사) | 118 |
| <그림 3-3> 인권 침해 시 반응(학생, 학부모, 교사) | 119 |

| | | |
|-------------|--|-----|
| <그림 3-4> |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 121 |
| <그림 3-5> | 학생 두발 규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 122 |
| <그림 3-6> | 학생 복장 규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 123 |
| <그림 3-7> | 응답자별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 124 |
| <그림 3-8> |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 125 |
| <그림 3-9> | 학생 개인정보 공개 및 제공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 126 |
| <그림 3-10> | 교내 학생집회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 127 |
| <그림 3-11> |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 128 |
| <그림 3-12> | 교내 종교행사참여 및 종교과목수강에 대한 인식 (학생, 학부모, 교사) | 129 |
| <그림 3-13-1> |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 131 |
| <그림 3-14-1> | 성적에 따른 제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 132 |

I

서론

| | |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
|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4 |
| 3. 선행 연구의 개관 | 7 |
| 4. 연구 절차 및 방법 | 2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 내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높아져 왔으며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에 대한 인정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높아진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대한 인정 분위기도 불구하고, 하지만 학생의 표현의 자유, 두발·복장의 자유,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선택의 자유, 학생 소지품 검사의 최소화, 학생 자치 및 참여권 보장 문제는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논쟁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생 관련 사안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절차는 인권보장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기제가 학교에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운영 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권리 보장과 관련한 문제는 학교규칙(학칙)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 상당 수 학교들이 인권 침해적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규정 등의 학교규칙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학교규칙 내 학생 권리 보장 관련 항목들도 그 내용이나 형식에서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상태이다. 인권 관점에서 학칙이 구성되도록 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한편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은 학교의 학생 인권 제한을 인정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고 많은 일선 학교들이 학칙을 통해 학생인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관련 주체들(학생, 교사, 학부모)이 이러한 학교의 학생 규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태도를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 규제의 허용 수준에 대한 각 학교 주체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는 노력은 현재 이들이 도달한 학생인권 의식 수준을 가늠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중·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 실태와 학생의 자치 및 참여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통해 학생인권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생, 교사, 학부모라는 세 학교 관련 주체들이 학생인권 및 학교 규제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태도를 조사·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이들이 학생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어려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학교규칙들을 분석함으로써 인권 관점에서의 학칙 구성을 위한 기준 마련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중·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에 대한 종합적 조사의 필요성

청소년의 권리 보장에 대한 인정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학생의 두발·복장의 자유,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선택의 자유, 학생 소지품 검사의 최소화, 학생 자치 및 참여권 등 보장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논쟁적이며,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 학교들이 인권침해적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규정 등의 학교규칙을 유지하고 있고, 학교마다 그 내용이 다르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인권 관점에서 학칙이 구성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학생 관련 사안들에 대한 학생 의견수렴 절차는 인권보장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중·고등학교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 인권 관련한 학교규칙(학칙)을 분석하며, 학칙 제·개정 등의 절차에서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는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 변화하는 학교 및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학생인권보장 항목의 추가 필요성

최근의 학교 및 사회 내 문화적 가치와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학생인권 영역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의 증가,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하위 집단의 출현, 스마트폰 사용의 일상화, SNS를 통한 사회적 소통의 일반화 등은 학생인권보장 영역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중등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입시 위주 학교 운영이나 실적 관리는 해외 다른 국가들의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학생인권 쟁점들과 차별되는 쟁점들을 창출하고 있다. 미디어에서 보도된 최근의 몇몇 학생 인권 관련 사건들은 이러한 실태를 대변하고 있다.

예) 흡연 단속을 위해 교사 앞에서 소변 검사를 실시토록 요구(조선.com, 2016)
 예) 교실서 남녀 둘만 이야기 하다 발각될 경우 관련 학생 진술서 작성(중앙일보, 2015)
 예) 학교 두발 규제에 항의하는 유인물 제작·배포한 학생에게 선동죄 징계(TV조선, 2015)
 예) 내신 1등급 학생들에게만 경시대회나 경력 관련 대회 참가의 특혜 제공(한겨레신문, 2016)
 예) 친구들에 왕따 당한 성소수자들 “선생님, 왜 우릴 더럽다 했나요?” 라 외치며 호소(한겨레신문, 2013)
 예) 이벤트성 행사에 참여하길 강요당하는 다문화 청소년과 이들에 대한 불필요한 신분 노출(장혜림, 김성천, 2009)

이러한 학교 내 사회·문화적 기후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학생인권침해 실태 조사연구들은 현대 문화에 특수한 상황들을 조사항목으로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특히 교육 행사 혹은 문화 행사 참가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인정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 혹은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과 관련한 사안들은 기존 학생인권보장 실태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사안들이었다. 앞서도 논의하였듯 상당수 중·고등학교들이 확실적인 규제나 인권 침해적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규정을 유지하고 있고 학교마다 그 내용 및 기준도 달라 인권 관점에서 학칙이 구성되도록 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학칙의 구성은 현 사회나 문화의 특수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는데, 학교 문화를 보다 잘 반영하는 인권 침해 문항들을 이용한 침해실태조사나 인식조사 결과는 이러한 학칙 구성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여러 학교 주제(학생, 교사, 부모)의 학생인권 관련 인식/태도를 검토한 연구의 부족**

학생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까지 학생 인권을 보장할 것이고 어느 선까지 학교의 학생 규제 권한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학교행정이, 정책수립자, 법조계, 입법가에게 중요한 숙제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 인권의 보장은 학교의 학생 관리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 있고 한편 학교의 학생 규제에 대한 옹호는 학생 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군의 사람들은 학생의 개인적 권리를 일부 규제할 경우 학생들이 더 잘 배우고 보다 올바르게 발달해 나갈 것이라 주장한다. 특히 학교 내 폭력 사건이나 안전 사건 발생 후의 학생 인권의 제한은 ‘학생의 안전’ 과 ‘학생의 더 나은 발달’ 이라는 명목 하에 그 명분을 부여받고 있다. 한 예로 1999년 미국 콜로라도 콜럼

바인 고등학교의 교내 총격 사건 이후 학생들의 공격적 혹은 위협적 표현에 대한 “zero tolerance” 가 적용되었으며, 학생 소지품 수색, 감시 카메라 설치, 출입문 통제 등의 학생 자유 제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처럼 학생 인권에 대한 학교의 규제 권한 인정 정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시대와 상황적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다.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권보장 실태에 관한 국내 연구는 2000년도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2010년도 이후 4개의 시도교육청(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 교육청(예, 경기도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은 연구용역을 활용하여 학생 인권 보장 실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사나 연구의 대부분은 학생 인권이 어느 정도 침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학생 및/혹은 교사의 지각을 탐색하거나 이들 보고자 간 지각 차이를 조명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예, 김옥기, 2015; 이명순, 2008). 또한 앞서 기술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들에서도 교육청 조례는 개별 학교의 학칙을 우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학생 인권 대 학교의 학생 규제 권한 간 갈등이 치열한 학생 인권 영역에 있어 학생, 교사, 부모가 인정하는 학교 규제 권한 정도에 대한 파악은 이들 주체들의 학생인권과 관련한 인식에서의 성장 정도를 알려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학교 주체들(학생, 교사, 학부모) 간 학교 규제 권한 허용에 있어서의 인식 차이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는 이런 영역을 다루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에서 간과되었던 현 학교 및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는 학생인권보장 문항들을 새롭게 추가하여 학생인권의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학칙 제·개정 절차 및 학생 관련 사안의 결정 절차에서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학생의 자유 대 학교의 학생 관리 간 논쟁이 자주 제기되는 인권 항목들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교의 규제 권한 인정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간과되었던 학생의 학교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규칙(학칙)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학교가 학생 인권과 관련하여 어떤 규정적 틀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등학교 현

장에서의 학생인권보장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향후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 결정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3. 선행 연구의 개관

1) 청소년 인권보장에 대한 국내의 관심 및 정책 및 연구 동향

1989년 국제연합에 의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채택된 이래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 점차 증가하여 왔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이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교육보장 등을 아동·청소년의 권리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쳐 점차 증가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에 대한 인정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국내 4개 시도교육청(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뒤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학생인권조례는 다양한 학생 인권 영역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체계(예, 학생인권의 교육과 홍보,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제도, 학생인권옹호관의 구비, 학생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 수립의 권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함께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생권리 관련 사안(예, 학생의 표현의 자유, 두발·복장의 자유,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선택의 자유, 학생 소지품 검사의 최소화, 학생 자치 및 참여권 보장 등)은 관련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적이며,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은 학교의 학생 인권 제한을 인정하는 문구(예,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중 한 조항)를 포함하고 있어 일선 학교들의 학칙을 통한 학생 규제의 근거로서 오용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많은 일선 학교들이 학칙을 통해 학생인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연구에 있어서는, 2000년대 이후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권보장 실태 연구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이나 서울 교육청과 같은 일부 시도 교육청은 연구용역을 활용하여 학생 인권 보장 실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학생인권보장 실태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요약한 것이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학생 인권이 어느 정도 침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학생 및/혹은 교사의 지각을 탐색하거나 이들 보고자 간 지각 차이를 조명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물론 보다 최근에 진행된 연구들(예,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은 학생, 교사 이외에도 부모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설문 방법 이외에도 여러 학교 주체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보다 실제적인 학생인권 관련한 실태 및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학생 생활을 규정하는 학칙 분석을 통해 학생인권의 침해 정도를 파악하려는 노력 혹은 학칙 분석을 통해 학생의 의견 존중 및 참여권 보장 정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문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학생 인권 침해 관련한 연구도 전국 단위로 진행된 경우가 드문 형편이다.

이에 기존의 학생인권보장 실태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에 대한 연구를 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진행할 필요가 제기된다. 덧붙여 선행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학교규칙(학칙) 분석을 통한 학생인권침해 및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의 학생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실태 파악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제기된다. 이 같은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보장 현황의 종합적 분석은 학생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유용할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학생인권 대 학교 학생 관리 간 갈등이 첨예한 학생 인권 조항에 있어 각 학교 주체들의 인식하는 학교 규제권 인정선에 대한 탐색은 현 우리 사회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학생 인권 기준에 접근한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1〉 학생인권 관련 선행연구 요약표

| 년도 | 조사기관 | 제목 | 연구목표 | 연구대상 | 연구도구 | 분석단위/ 주요발견 |
|------|---------------|---|--|--|--|---|
| 2004 | 학위논문 (한승덕) | 고등학교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인권보장 정도, 인권 의식, 인권침해 실태,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권의식과 구체적인 인권침해 실태 조사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모색 | 서울, 경기도 6개 고등학교 1,2학년생 380명 (남184명, 여177명/ 인문계211명, 실업계149명) | -선다형 설문지 - UN이동권리조약, '세계인권선언', '우리나라헌법'을 중심으로 10개의 인권항목으로 나눈 후 고등학교에서 침해당하기 쉬운 학생 인권의 구체적 항목 37개 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학교종류(인문계/실업계), 학년(고등학교 1,2학년), 성적(상,중,하), 학생임원여부, 학부모 임원 여부, 지역(서울, 경기도), 경제수준(상,중,하), 형제 자매 수(혼자, 둘이상), 부모직업(사업, 회사원, 공무원, 일용직, 자영업, 서비스업, 전문직, 자유업, 기타) ■ 학생들은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고 느끼며, 많은 학생들이 인권침해 주체가 교사라고 응답 ■ 50% 이상의 학생들이 차별받은 경험이 있음 ■ 차별: 남<여, 인문계>실업계 ■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필요하다고 응답 |
| 2005 | 학위논문 (이용화) | 청소년 인권의식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인식 정도, 보장 수준 분석 -인권교육의 실태 및 그에 대한 인식 수준 조사 | 전라북도 중학생 300명 (남91명, 여168명), 전라북도 중학교 교사 150명(남39명, 여68명) | -리커트 척도 사용 -선다형 질문지 사용 -교사-학생 집단 간 청소년 인권 인식 비교 -인권교육의 실태와 방향에 대해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학생 집단간 청소년 인권인식 비교 ■ 교사와 학생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인식 정도는 비슷하게 높음 ■ 교사가 학생보다 학교에서의 인권 보장 수준에 있어서 보장 정도가 높다고 생각함 ■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교사들은 학생 선후배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한 반면 ■ 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 |
| 2006 | 학회지 (이지수) |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실태 및 인권 의식 | 청소년들의 인권 의식 수준 평가 | 9개 지역, 총 2,805명의 중·고등학생 (남 1,228명, 여 1,546명/ 인문계 1,210명, 실업계 788명, 중학생 770명) | -리커트 척도 사용 -인권실태와 인권의식 수준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체계를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각 환경체계에서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의 보장 실태 조사 ■ 청소년들은 학교나 지역사회의 인권 실태 보다는 가정의 인권실태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 ■ 그러나 가정에서조차도 중요한 사안에 대한 참여권이나 결정권은 없음 ■ 여학생의 인권의식이 남학생보다 낮음 |

| 년도 | 조사기관 | 제목 | 연구목표 | 연구대상 | 연구도구 | 분석단위/ 주요발견 |
|------|--------------------------|--------------------------------|--|--|--|--|
| 2006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 | 2006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 사 |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 시도별, 지역규모별, 실 립별, 단계별, 공학별, 계열별을 고려하여 선 정한 총 40개의 학교들 의 학생, 학부모, 교사 (학생 1,160명, 학부모 533명, 교사 262명) |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 조사 -학교 방문 면접 조사 -외국의 중·고등학교 규칙 내용 분석(미국, 캐나다, 호 주, 중국, 대만,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교 인권침해 내용 분석(학교생활규칙 인지도, 학교 생활규칙의 비민주적 제·개정 절차와 개정 규칙에 대한 만족도, 복장, 두발, 학생회 입후보자 성적 제한 규정을 인권 침해로 인식하는지 여부) ■ 학교 생활규칙 특징 파악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 <p><발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 관련 학생/ 교사/ 학부모의 문제 의식이 다름 ■ 외국의 경우 학생들의 인권을 둘러싼 교사와 학생간의 대립이 적은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학교생활규칙들이 상세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규제와 허용의 선이 명료하지 않아서 학생-교사 간 문제 소지로 등장) ■ 외국의 학교 규칙이 사소한 내용까지 담고 있는데, 이것이 상벌의 근거가 되어 교사-학생 간 마찰을 줄일 수 있음 |
| 2008 | 학위 (이명순) | 학생인권 실태분 석 및 신장 방안 연구 | 학생과 교사가 인 식하는 인권의 보 장정도의 차이 조 사 | 인천광역시 중학교 15 개교 627명(남318명,여 309명), 교사 270명(남 68명, 여202명) | -리커트척도 사용 -학생인권 보장 정도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성별, 학교구성, 직급, 교육 경력) ■ 학생(성별, 학교구성, 학년) ■ 교사가 학생을 체벌했다고 응답한 것보다 학생이 교사에게 체벌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교사에 비해 학생의 학생인권 보장정도가 낮다고 인식 ■ 교사와 학생 모두 학생인권 침해 주체를 교사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 년도 | 조사기관 | 제목 | 연구목표 | 연구대상 | 연구도구 | 분석단위/ 주요발견 |
|------|---|--------------------------------------|--|---|---|---|
| 2008 |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모임, 전국청소년학생연합,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 다함께 | 2008년 이후(이명박 정부 이후) 중·고등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 2008년 이후(이명박 정부 이후)의 중·고등학생 인권 보장의 실태조사 | 중학생 656명, 고등학생 1366명 | 교내 설문지 배포, 온라인을 통한 자발적 설문 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이후 학생인권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내용 |
| 2010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포럼 | 학교에서의 문화 소수자 인권 | 학생 인권 조례와 소수자 참여의 실태 | 김형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 -인터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도 학생회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물적 사회적 지원의 필요 ■ 학교인권조례에서의 가장 큰 이슈인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항목에서 많은 소수자의 감수성 반영 필요 |
| 2012 |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 성소수자 학생인권 실태조사 | 서울시 청소년 성 소수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 겪는 차별의 정도, 양상, 경로 파악 및 실제 사례 수집 | 서울시 255명 (남성동성애자 25명, 남성양성애자 18명, 여성동성애자 83명, 여성양성애자 9명, 트랜스 남성 6명, 트랜스 여성 4명/ 고등학생 188명, 중학생 28명, 대학생 21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학생인권조례' 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 인지 여부 -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 내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침해 교칙/지침 개정 여부 - 학교 내 성소수자 - 차별 경험 정도 (Likert 척도) - 괴롭힘의 종류 - 구체적 성소수자 차별, 폭행, 괴롭힘 사례 (주관식 응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학생인권조례 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모르거나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고 응답 (69%) ■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 내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개정 또는 제정 없음 (91%) ■ 학교 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심하다고 느낌 (54%) ■ 괴롭힘의 종류: 학생 또는 교사가 성소수자에 관하여 비하적이거나 편견에 치우쳐 이야기 함 |

| 년도 | 조사기관 | 제목 | 연구목표 | 연구대상 | 연구도구 | 분석단위/ 주요발견 |
|------|------------------------------|---------------------------------|--|--|---|--|
| 2012 | 서울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한 청소년 네트워크 | 서울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서울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 | 서울지역 중, 고등학교 재학생 | 서울학생인권조례 실태조사 설문지 서울학생인권조례 안내, 인권침해항목(10개), 교칙/학교규칙에 서울학생인권조례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학생인권조례 안내가 없고, 인권침해가 많으며, 교칙/학교규칙에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관련한 사례 제시 |
| 2013 | 국가인권위원회 |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 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들의 현황 및 법적 지위 파악, 인권문제 측면 이해 | 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 | - '유엔아동권리협약' 에서 명시한 아동 권리의 보장 여부 (조선일보, 2010) (Likert 척도) - 사례 인터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제도 혜택 및 권리측면에서 매우 낮은 점수 ■ 개인정보 유출, 이벤트성 행사에 참여를 강요 당함. |
| 2013 | 학위논문 | 경기도 중등 교사들의 학생인권조례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한 교사들의 경험 이해 | 경기도 중고등학교 교사7명 | 질적연구 -문헌 고찰 -심층 면접 (1.전시작업 2.메모작업 3.개방코딩 4.심층코딩 5.주제발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의견 수렴과 급하게 시행된 학생인권 시행 ■ 학교의 현실에 맞지 않음 ■ 조례의 학생 인권 보장 여부에 대한 의문 ■ 학생이 잘못을 인권으로 합리화 |
| 2013 | 인권친화적학교 + 너머운동본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 | -학교급별, 학교설립주체,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인권침해 경험차이유무 -조례 시행 유무에 따른 지역별 격차 분석 | 전국 2921명(여1364명, 남1507명 / 초290명, 중 985명, 고1604명) | -리커트척도 사용 -학생조례 중 대표적 항목에 초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분석에 초점 ■ 조례시행 유무에 따른 지역별 유의미한 차이 ■ 지역별 인권침해 순위 ■ 지역별 핵심 인권 과제 제시 ■ 별점제는 처벌의 효과가 미비하고 비교육적 효과를 낳음 |
| 2014 | 인권친화적학교 + 너머운동본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 | 조례 시행 유무에 따른 지역별 격차 분석 및 지역별 핵심 인권 과제 제시 | 전국 5845명(중학생 2615명, 고등학생 3229명) | -리커트척도 사용 -학생조례 중 대표적 항목에 초점 -기숙사 학교 고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분석에 초점 ■ 조례 시행 유무에 따른 지역별 격차 미비 ■ 지역별 인권침해 순위 ■ 지역별 핵심 인권 과제 제시 ■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 조사 |

| 년도 | 조사기관 | 제목 | 연구목표 | 연구대상 | 연구도구 | 분석단위/ 주요발견 |
|------|-------------|---------------------------------|---|--|---|---|
| 2014 | 경기도 교육청 | 2014년도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 -상벌점제의 대체 방안 제시 -교육공동체 상생 적 인권향상 -인권교육의 실시 현황 및 인권교육 의 효과 분석 | 경기도 학생 41897명, 보호자 11210명, 교사 16076명, 관리자(학교 장) 1669명 | -리커트척도사용 -서술형문항 사용 -처음으로 성소수자 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 대상별(학생, 보호자, 교사, 관리자) 분석 ■ 학교유형별(사립/국공립, 특목고, 특성화고) ■ 연도별 분석(2011-2014) ■ 환경적 요소 고려(가정형편, 가족 구성, 등교 소요시간, 수면시간) |
| 2015 | 경기도 교육청 | 2015년도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 -경기도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적 향 상 방안 모색 -사회적 약자 그룹 에 대한 분석 및 대안 제시 -교육공동체형 학 생인권증진 모델 제시 | 경기도 학생 43231명, 보호자 13442명, 교사 14462명, 관리자(학교 장) 1645명 | -리커트척도사용 -서술형문항 사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 대상별(학생, 보호자, 교사, 관리자) 분석 ■ 학교유형별(사립/국공립, 특목고, 특성화고) ■ 연도별 분석(2011-2015) ■ 환경적 요소 고려(가정형편, 가족 구성, 등교 소요시간, 수면시간) |
| 2015 | 부산 교육청 | 2015년도 부산 학 생인권 실태조사 |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인권 교육 정책 개발 | 부산 초중고학생 총 28529명 (남13450명, 여 15079명) | -리커트척도사용 -초·중등 공통설문 문항 20 개(인권일반, 평등권, 건강 및 환경복지권, 참여권) -중등학생 5문항(연소근로 자 노동인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이상이 학생 인권조례제정의 필요하다고 응답 ■ 일반고 52.6%의 학생이 인권 교육을 받은 적 없다고 응답 |
| 2015 | 학위 (김옥기) | 학교 청소년의 인 권에 대한 사회복 지적 고찰 | 학교 청소년의 인 권보장을 위한 학 교사회복지의 방 향을 제시 | 서울의 고등학생 160명 (남56명, 여104명) 교사 160명(남68명, 여92명) | -리커트척도 사용 -청소년인권에 대한 교 사와 청소년의 인식정도와 보장수준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성별, 경력, 학교직급) ■ 학생(성별, 학년) ■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들이 인식하는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의식은 비교적 높은 수준 |

| 년도 | 조사기관 | 제목 | 연구목표 | 연구대상 | 연구도구 | 분석단위/ 주요발견 |
|------|-----------|-----------------------------------|---|--|--|---|
| 2015 | 서울 교육청 |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실태조사 | 학생인권 실태 조 사, 국내외 학생인 권실태조사 비교 분석, 서울시교육 청 정책에 대한 인 권친화도 분석, 학 교인권교육 경험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 다음의 목표 를 성취하고자 함. -조례와 연계된 학 생인권 실태의 기 준 제시 -학생인권정책의 근거 제시 -학생인권실태 조 사 표준 방안 제시 | 서울시 초·중·고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학생> 총 1,022,447명 -초등학생: 450,675명 -중학생: 263,466명 -고등학생: 308,306명 <학부모> 총 482,286명 -초등학생: 212,583명 -중학생: 124,276명 -고등학생: 145,427명 <교사> 총 70,573명 -초등학생: 29,627명 -중학생: 18,076명 -고등학생: 22,870명 | On-line 조사 <학생> -인권보장제도 관련 인식: 4문항 -학교생활에서의 인권침해: 13+6문항 -인권교육관련: 3문항 -PISA행복도: 7문항 <학부모> -인권보장제도 관련 인식: 4문항 -학교생활에서의 인권침해: 13+6문항 -인권교육관련: 3문항 -보호자의 학교참여: 2문항 <교사> -인권보장제도 관련 인식: 4 문항 -학교생활에서의 인권침해: 13+3문항 -인권교육관련: 5문항 -교사직무 관련: 8문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급학교일수록 그 인식이 더 낮았음 →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 ■ 공정하게 학생을 대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 중> 초등 순이었음. ■ 학습선택권, 반성문 강요, 소지품 검사, 개인정보 공개 관련 문항에서 학생들의 긍정적 답변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았음. 하지만 상급학교에서의 학생 자유권 보장은 미진한 부분이 관찰되었음. ■ 상벌점제가 있다고 응답한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90%에 육박하였음.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행사에서의 학생의견이 반영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이 발견되었음. ■ 20~30%의 중·고등학생들이 지난해 학교에서 체벌을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음.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 비율도 비슷하게 나타났음. ■ 학기마다 인권교육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약 40%에 달함.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답변이 많아지고, 사립이 국공립보다 부정적 답변이 더 많았음. |

2)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교육청과 시행 시기, 포함된 인권조례조항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실시하고 있는 지역 교육청에는 제정 시기 순으로 경기도, 광주, 서울, 전북 교육청이 있다. 이들 교육청의 학생인권 조항 및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조항은 4개 지역청 간 유사하나 일부 지역청은 조항 내용의 범위에서 좀 더 세분화된 특성이 있거나 현대 교육 및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시도가 있었다.

<표 1-2>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교육청과 시행시기, 포함된 인권조례조항의 요약표

| 인권 조항 | 경기도 (2010.10) | 광주 (2011.10) | 서울 (2012.01) | 전북 (2013.07) |
|--------------|--|--|---|--|
| 차별 |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지역, 국적, 민족, 언어, 장애, 용모, 임신, 출산, 가족형태/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 성별, 종교, 나이, 민족, 언어, 성적 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지역, 국적, 민족, 언어, 장애, 용모, 임신, 출산, 가족형태,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성별정체성 |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폭력/위협 | 체벌, 따돌림, 성폭력, 집단 괴롭힘, 물리·언어 폭력, 안전관리체계 정비 |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물리·언어 폭력, 안전관리체계 정비, 강제노동 금지 |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물리·언어 폭력, 안전관리체계 정비,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체벌, 따돌림, 성폭력, 집단 괴롭힘, 물리·언어 폭력, 안전관리체계 정비, 학교 내 폭력,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 |
| 교육 | 학습권 보장(+장애, 다문화가정, 예체능, 학습곤란),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선택권, 휴식취할 권리 | 학습권 보장,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교내외 행사 선택권, 휴식 취할 권리, 놀이 권리 | 학습권 보장(+장애, 다문화가정, 예체능, 학습곤란, 이주민가정 및 외국인),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교내외 행사 선택권, 휴식 취할 권리, 문화활동 권리, 정당하게 평가 받을 권리, 과도한 선행학습 실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됨 | 학습권 보장(+장애, 다문화가정, 예체능, 학습곤란, 북한이탈),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선택권, 휴식 취할 권리, 문화활동 권리, 인권교육 받을 권리 |

| 인권 조항 | 경기도 (2010.10) | 광주 (2011.10) | 서울 (2012.01) | 전북 (2013.07) |
|----------|---|---|--|---|
| 사생활/정보 | 복장·두발 자유, 소지품 검사 제한, 일기장 열람 제한, 개인정보 보호, 학생 본인 기록 열람·정정·삭제 권리 | 복장·두발 결정 권리, 소지품·사적 기록물·사적 공간·사적 관계 등이 침해되거나 감시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 보호, 학생 본인 기록 열람 권리 | 복장·두발 자유, 소지품·사적 기록물·사적 공간·사적 관계 등이 침해되거나 감시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 보호, 학생 본인 기록 열람·정정·삭제 권리 | 복장·두발 자유, 여학생은 치마/바지 선택권, 소지품 검사 제한, 일기장 열람 제한, 개인정보 보호, 학생 본인 기록 열람·정정·삭제 권리 |
| 양심/종교/표현 | 세계관·인생관·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 받지 않을 권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 학생의 언론활동 보장 | 세계관·인생관·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 받지 않을 권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 학생의 언론활동, 집회의 자유 |
| 자치/참여 | 동아리·학생자치기구 등 자치 활동 보장,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등 참여할 권리, 학교 운영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 학생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권리 | 동아리, 학생회 등 자치 조직의 구성·소집·운영 보장,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 운영 등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 동아리·학생회 등 학생 자치조직의 구성·운영 보장,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 운영 등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
| 복지 | 학습부진·폭력피해·가정위기·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과 적성발견·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한 적절한 지원, 쾌적한 교육환경, 문화 활동 권리,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 보건시설 이용 권리 | 학습부진·폭력피해·학교부적응·빈곤·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적절한 지원, 문화활동(공연, 전시, 축제 등)권리, 안전한 급식을 제공 받을 권리, 보건시설 이용 권리 | 학습부진·폭력피해·가정위기·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과 적성발견·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한 적절한 지원, 쾌적한 교육환경, 안전한 급식 제공받을 권리, 보건시설 이용 권리 | 학습부진·폭력피해·가정위기·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과 적성발견·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한 적절한 지원, 쾌적한 교육환경,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 보건시설 이용 권리 |
| 징계 등 절차 |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 보장 |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 보장 |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 보장 |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 보장 |
| 권리 보호 |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음 |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인권을 옹호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음 |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
| 소수 학생 | 빈곤·장애·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운동선수 | 빈곤·장애·다문화가정 | 빈곤·장애·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운동선수·성소수자·근로학생·외국인 | 빈곤·장애·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운동선수·성소수자·학교부적응·조손가정 학생 |

위 표에서도 볼 수 있듯, 현대 사회/문화의 변화는 학교 장면에서의 학생인권 보장 영역의 변화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예,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외국인 가정),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하위 집단의 출현, 스마트폰 사용의 일상화, SNS를 통한 사회적 소통의 일반화, 사회일반의 인권 의식 증가 등은 학생인권보장 영역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외에도 중등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입시 위주 학교 운영이나 실적 관리는 해외 다른 국가들의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학생인권 쟁점들과 차별되는 쟁점들을 창출하고 있다(예, 우수학생에게만 경시대회 참가 특혜 제공, 우수학생에만 자기소개서 작성 시 교사 지도 제공). 이러한 실상은 국내의 그리고 현재의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학생인권조례 및 학칙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3)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 영역과 주요 내용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실시하고 있는 지역 교육청에는 그 시행 시기 순으로 경기도(2010년 10월 시행), 광주(2011년 10월 시행), 서울(2012년 1월 시행), 전북 교육청(2013년 7월 시행)이 있다. 이들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내 명시된 학생인권 영역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3>과 같다.

<표 1-3> 학생인권조례 분석으로부터 추출된 주요 학생인권 영역과 내용

| 영역 | 주요 내용 |
|---------------|---|
| 차별금지 | -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
|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 - 체벌 및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언어폭력 금지 - 아동학대, 성폭력 등 폭력피해 학생보호 등 |
| 교육에 관한 권리 | - 학습권 보장,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관한 학생선택권 보장, 휴식권 보장 등 |
| 사생활의 자유 | - 두발, 용모 및 복장의 자유 - 고정형 명찰 부착강요 금지 -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치마와 바지 중 선택권 - CCTV 설치여부 및 장소 결정 시 학생 의견 수렴 - 개인동의 없는 소지품검사 금지,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검사금지, 합리적 이유 없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금지, 성적·징계 사실, 교육비·급식비 등 개인신상 정보 보호, 학교 밖 명찰착용 강제 금지 등 |

| 영역 | 주요 내용 |
|-----------------|--|
|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사표현 제한 금지 - 서명이나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 - 교내·외 정치활동 및 집회참여 등 |
|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성문, 서약서 작성 강요 금지 -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금지 -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
| 자치 및 참여권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활동, 학급회, 학생회 활동 적극 보장 -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의견 존중 -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 학생대표와의 정기적 면담 실시 -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
| 적법한 징계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 소명의 기회(진술권 보장), 대리인 선임권, 재심 요청 등. - 징계내용 공고 금지 - 부당한 상·벌점제 제도 개선 |
|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 침해사안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상담·구제 신청 제한 금지 및 이를 이유로 한 징계 금지 |

4) 학교규칙 내 인권침해 조항 사례

학교규칙(학칙) 내 학생인권을 침해한 조항들의 예를 몇 가지 제시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학칙 내 학생인권 침해 사례는 주로 차별금지, 사생활의 자유,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상벌점제 관련한 세부 사항과 관련한 것들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칙의 분석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학생인권 침해 코드(code)를 마련하여 표집된 학칙들이 이들 학생인권 침해 코드에 해당하는 세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표 1-4〉 학교규칙(학칙) 내 학생인권 침해 조항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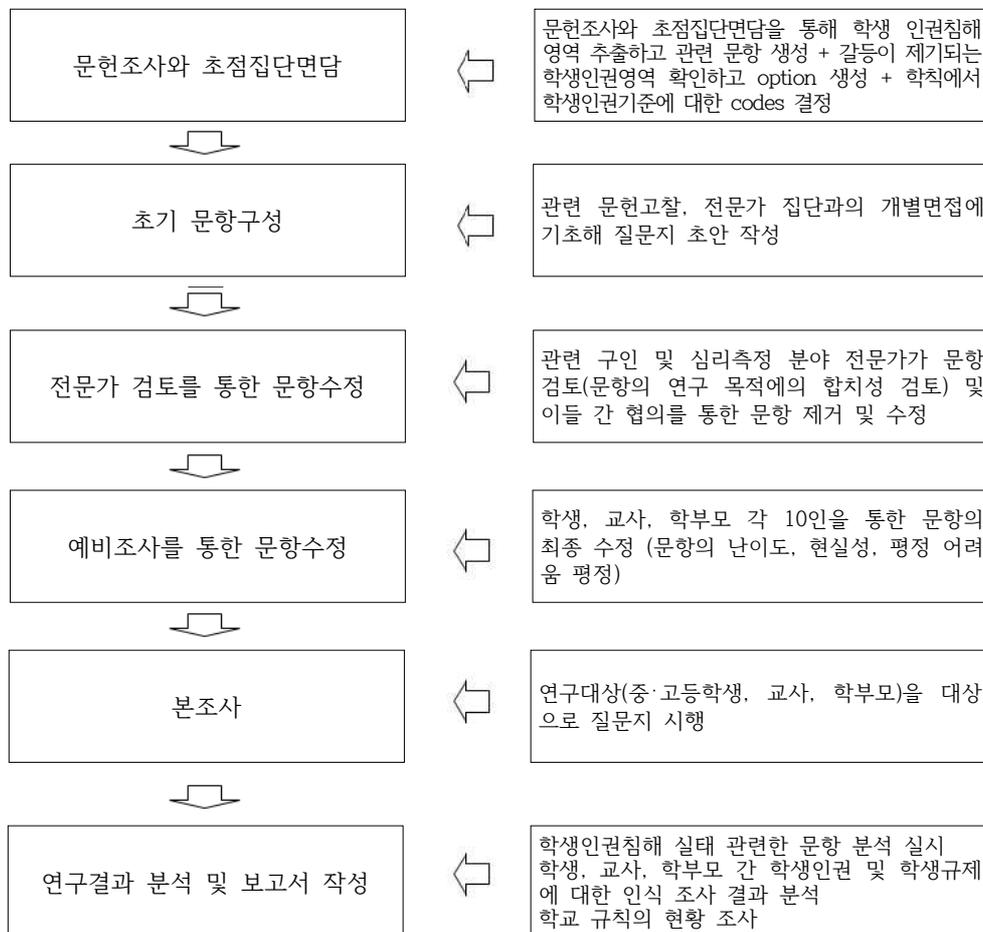
| 영역 | 사례 예시 |
|---------|--|
| 차별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은 이후 장학금 제외, 각종 경시대회 학교대표 참여 불가, 학생회 및 학급임원 제한 - 정독실 등 이용은 성적우수자 순으로 함. - 신입생 배치고사 결과 석차 백분율 하위 30% 해당 학생 입학 불허 - 학생회장, 부회장 입후보자 성적은 전 학기 성적 4등급 이상인 자로 제한 - 학생회 임원은 무단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혀 없을 것 -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은 포상에서 제외함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차별’은 차이에 제도적 가치를 부여하는 인위적인 조치다. 차이란 문자 그대로 서로 다를 을 의미하는 말로서 사람마다 다른 취향과 선호, 기질과 특색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사이에 문화와 생활양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이 차이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차별이 생겨난다. 차별은 불합 리하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인간의 차이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기본적으로 평등한 인간 집단에 대해 불평등한 대우나 사회적 통제·격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07),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p. 89)</p> </div> |
| 사생활의 자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찰은 셔츠와 교복 위 박음질로 함. - 수업시간 핸드폰 사용 적발 시 1개월 간 압수 - 남학생은 앞머리를 당겼을 때 눈에 닿지 않아야 하고,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아야 하고, 뒷머 리는 목을 덮지 않아야 함. - 여학생은 단발머리를 원칙으로 함. - 머리를 묶을 때는 장식이 없는 고무줄 사용 - 가르마와 삭발은 해서는 안 됨. - 원색 운동화 착용 금지 - 물티슈 또는 클리닝 티슈 등으로 닦았을 때 색이 묻어나오는 색조화장 금지 외 귀걸이, 목걸 이, 반지, 팔찌, 렌즈 등 세부 금지 규정 - 등에 매는 가방 외 사용 금지 - 원색 가방 사용 금지 - 양말과 면티는 흰색과 검정색 착용 - 원색 외투 착용 금지 - 규정 위반 물품은 압수하여 폐기함. - 필요한 경우 소지품 및 용의검사 가능 - 기숙사 불시 점검 - 흡연 측정을 위한 주기적인 소변검사 실시 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 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형성과 전개를 방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07),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p. 43)</p> </div> |

| 영역 | 사례 예시 |
|------------------|--|
|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시물은 반드시 교사나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교내집회 선동 학생 징계 - 교외 정치적 활동 시 사전 교사나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학생신분으로 정치 관여 금지 - 사회단체, 정치관여 행위 금지 - 동아리 또는 서클활동은 반드시 학교장 허가 - 집단행동 모의 주동한 자 징계 - 학교장 허락없이 외부 행사 출품, 출연 또는 참가 금지 - 교내에서 학생들이 집회를 하고자 할 때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표현의 자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p> <p>1)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교내에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술서를 요구하고 선도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07진인 1146 결정)</p> <p>2) 해직교사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현하는 학생들의 피켓 시위 후 피켓 등 시위 물품을 강제로 수거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08진인4868 결정)</p> <p>3) 학교 밖 합법집회(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결정</p> </div> |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종교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을 원칙으로 함. - 고사 중 부정행위 방조한 자, 친구의 잘못을 보고도 방관 또는 묵인하거나 동조한 학생, 가출 학생의 소재를 고의로 숨긴 학생 징계 - 서약서 강제; 저는 앞으로 학교생활에 더욱 충실하여.....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보호자의 확인으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특이 사례;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행위를 한 학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반성문, 서약서 등 제출 강요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p> <p>1) 학생에게 통상의 반성문 내용을 넘어서 ‘피해자가 교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9조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2009. 10. 12. 결정)</p> <p>2) 학생이 거짓말 한 것에 대해 시인 및 기록을 요구하고, 방송실 문을 닫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거짓말 시인 사항을 촬영하려고 한 행위는 교육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며, 교실에서 학생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반성문 제출토록 하는 등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9조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2005. 12. 26. 결정)</p> </div> |
| 상벌집제 세부기준 부적절 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 가방을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은 신발, 머리모양 등 -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소지품 소지 - 언행이 불손하거나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행위 - 남녀 간 풍기문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 - 남녀 학생 간 손을 잡는 경우 - 불건전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인사를 하지 않거나 불손하게 하는 경우 등 |

4. 연구 절차 및 방법

1) 전체 연구의 절차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의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보장 및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세 학교 주체들의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및 학교의 규제권 허용에 대한 태도를 검토하며, 및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학교 규칙(학칙)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체 연구 과정을 흐름 차트로 정리한 것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중·고등학생의 학생인권보장 실태,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학교 학생 규제 허용 정도에 대한 인식, 및 학교 규칙의 현황 조사를 위한 과정 요약

구체적인 세부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관련 선행연구, 국내의 관련법 및 정책, 국제인권기준 및 학생인권 침해 사례들의 개관
- 조사 설문지 개발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실태; 학생 인권 및 학교의 학생 규제 권한 허용 범위에 대한 인식 조사)
 - 학생의 인권침해 및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실태 조사지는 학생용으로만 구성.
 - 학생 인권 및 학교의 학생 규제 권한 허용 범위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학생인권보장 영역들로 구성하였다. 인식조사 질문지는 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용으로 구성.
 - 학생의 인권침해 실태,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학교규칙 현황,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의 실태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 이를 토대로 학생인권침해 실태, 학칙 제·개정 등의 절차에서 학생의 의견존중 및 학교 내 참여권 보장 실태 정도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질문지의 이론적 틀과 초기 항목 선정. 또한 관련 선행 연구들로부터 학생 인권 대 학교의 학생 규제 권한 간 분쟁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학생 인권 영역 및 기준들을 확인하고 이들 항목에 대한 학교 학생 규제 권한 인정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학생, 교사, 학부모 질문지의 초기 문항들을 선정.
 - 선행연구 결과들로부터 유추된 내용들과 학생, 교사, 학부모, 관리자 집단 및 학생인권 관련한 전문가 집단과의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설문 문항 보강.
 - 설문의 적합성 및 내용타당도 확보: 도구개발 전문가 및 학생인권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내용타당도 확보.
 - 예비연구(pilot study)를 통한 설문문항 어휘의 이해가능성, 설문 문항의 target 집단에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조사 설문지의 최종 문항 확정(부록 1-3 참조)
-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학교규칙 현황조사를 위한 codes 마련

(중학교는 국공립중 대 사립중; 고등학교는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목고)을 층으로 하여 연구 참가 학생들을 표집하였다.

지역에 따른 연구 참가 학생 수를 할당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2016년도 교육통계 자료를 활용하여(<표 1-5>와 <표 1-6> 참고),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에 요구되는 최소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구간 95%와 표본 오차 $\pm 2\%$ 범위에서 각 집단에 요구되는 최소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중학생은 2397명(총 1,457,490명에 대한 95% 신뢰구간, 표본오차 $\pm 2\%$ 에서의 최소 필요 학생 수), 고등학생은 2398명(총 1,763,564명에 대한 95% 신뢰구간, 표본오차 $\pm 2\%$ 에서의 최소 필요 학생 수)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표집될 전체 학생 수를 5500명으로 선정하고, 중학생에게는 해당 구성비 45%에 해당하는 2500명($1,457,490\text{명}/3,221,054\text{명} \times 100 = 45\%$), 고등학생에게는 해당 구성비 55%에 해당하는 3000명($1,763,564\text{명}/3,221,054\text{명} \times 100 = 55\%$)을 할당하였다.

개개 학생을 무선표집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유층표집법과 함께 군집표집법을 사용하였다. 즉 학교를 군집 단위로 하여 각 학교당 20~30명의 학생이 연구에 참가하도록 구성하였다. 우리나라 전국 각 지역에 따른 학생(중학생+고등학생)의 구성비가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 유형에 따른 구성비는 <표 1-5>과 <표 1-6>에 제시된 정보에 기초해 결정하였다. 표집의 편의를 위해 국공립중학교와 사립중학교의 할당비율은 3:1, 일반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목고등학교의 할당비율은 3:1:1:1로 단순화시켜 할당하였다. 지역에 따른 표집될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가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전국 중·고등학교(2016년도 기준 중학교는 3232개, 고등학교는 2308개)를 대상으로 지역과 학교유형을 단위로 하여 할당된 수만큼의 학교를 무선 표집하였다. 각 지역별 그리고 각 학교유형별 목록에 기초하여 해당 목록에서 배당된 수의 학교를 무선 표집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선정하였다. 각 지역 당 중학교는 최소 4개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고등학교는 최소 6개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각 학교 군집으로부터 20~30명의 학생을 추출하여 설문을 완성토록 하는 것이 초기 설문 자료 수집의 목적이었다.

〈표 1-5〉 2016 전국 중학생 수

| 지역 | 국공립학교 중학생수 | 사립학교 중학생수 | 중학생수 | % |
|-------|----------------|--------------|-----------------|------|
| 강원 | 39,156 | 4,843 | 43,999 | 3% |
| 경기 | 344,724 | 36,358 | 381,082 | 26% |
| 경남 | 76,393 | 23,008 | 99,401 | 7% |
| 경북 | 48,396 | 22,072 | 70,468 | 5% |
| 광주 | 36,729 | 14,782 | 51,511 | 4% |
| 대구 | 53,777 | 20,148 | 73,925 | 5% |
| 대전 | 42,391 | 5,255 | 47,646 | 3% |
| 부산 | 71,438 | 15,212 | 86,650 | 6% |
| 서울 | 180,634 | 59,278 | 239,912 | 16% |
| 세종 | 7,444 | 0 | 7,444 | 1% |
| 울산 | 33,444 | 1,899 | 35,343 | 2% |
| 인천 | 78,638 | 4,255 | 82,893 | 6% |
| 전남 | 43,533 | 9,648 | 53,181 | 4% |
| 전북 | 39,972 | 16,951 | 56,923 | 4% |
| 제주 | 17,050 | 3,579 | 20,629 | 1% |
| 충북 | 40,608 | 5,679 | 46,287 | 3% |
| 충남 | 48,657 | 11,539 | 60,196 | 4% |
| 총합(%) | 1,202,984(83%) | 254,506(17%) | 1,457,490(100%) | 100% |

(출처: <http://kess.kedi.re.kr/index> 교육통계서비스)

〈표 1-6〉 2016 전국 고등학생 수

| 지역 | 일반고 학생수 | 자율고 학생수 | 특성화고 학생수 | 특목고 학생수 | 고등학교 학생수 | % |
|----|------------|------------|-------------|------------|-------------|------|
| 강원 | 42,218 | 461 | 9,190 | 1,647 | 53,516 | 3% |
| 경기 | 360,835 | 11,736 | 55,415 | 12,333 | 440,319 | 25% |
| 경남 | 91,325 | 8,240 | 15,201 | 878 | 115,644 | 7% |
| 경북 | 59,972 | 8,149 | 16,416 | 3,919 | 88,456 | 5% |
| 광주 | 48,373 | 3,359 | 9,354 | 1,271 | 62,357 | 4% |
| 대구 | 54,753 | 16,927 | 16,216 | 3,963 | 91,859 | 5% |
| 대전 | 36,968 | 7,969 | 9,098 | 3,052 | 57,087 | 3% |
| 부산 | 65,353 | 10,729 | 21,993 | 7,718 | 105,793 | 6% |
| 서울 | 198,374 | 40,101 | 47,915 | 13,166 | 299,556 | 17% |
| 세종 | 4,924 | 600 | 453 | 486 | 6,463 | 0% |
| 울산 | 31,535 | 3,020 | 7,504 | 2,499 | 44,558 | 3% |
| 인천 | 66,037 | 5,801 | 2,0841 | 3,860 | 96,539 | 5% |
| 전남 | 40,758 | 6,665 | 16,966 | 2,584 | 66,973 | 4% |
| 전북 | 51,279 | 2,945 | 26,166 | 3,142 | 83,532 | 5% |
| 제주 | 17,929 | 688 | 3,922 | 397 | 22,936 | 1% |
| 충남 | 51,901 | 5,999 | 12,516 | 2,623 | 73,039 | 4% |
| 충북 | 33,574 | 4,721 | 1,4504 | 2,138 | 54,937 | 3% |
| 총합 | 1,236,108 | 138,110 | 303,670 | 65,676 | 1,763,564 | 100% |
| 비율 | 71% | 8% | 17% | 4% | 100% | |

(출처: <http://kess.kedi.re.kr/index> 교육통계서비스)

〈표 1-7〉 전체 학생 수 기준 지역별 표본 배당

| 지역 | 학생(중·고) 구성비 | 중학생표본 배당 학생수 | 표집된 중학교수 | 고등학생표본 배당 학생수 | 표집된 고등학교수 |
|----|-------------|--------------|----------|---------------|-----------|
| 강원 | 3% | 75 | 4 | 90 | 6 |
| 경기 | 26% | 650 | 33 | 780 | 39 |
| 경남 | 7% | 175 | 9 | 210 | 11 |
| 경북 | 5% | 125 | 7 | 150 | 8 |
| 광주 | 4% | 100 | 5 | 120 | 6 |
| 대구 | 5% | 125 | 7 | 150 | 8 |
| 대전 | 3% | 75 | 4 | 90 | 6 |
| 부산 | 6% | 150 | 8 | 180 | 9 |
| 서울 | 17% | 400 | 20 | 480 | 24 |
| 세종 | 0% | 25 | 4 | 30 | 6 |
| 울산 | 2% | 50 | 4 | 60 | 6 |
| 인천 | 6% | 150 | 8 | 240 | 12 |
| 전남 | 4% | 100 | 5 | 120 | 6 |
| 전북 | 4% | 100 | 5 | 120 | 6 |
| 제주 | 1% | 25 | 4 | 30 | 6 |
| 충남 | 4% | 75 | 4 | 90 | 6 |
| 충북 | 4% | 100 | 5 | 120 | 6 |
| 총합 | 100% | 2500명 | 136개교 | 3000명 | 170개교 |

주. 지역별 배당된 학교 수에서 중학교의 경우 국공립·사립의 비율이 3:1이 되도록,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자율고·특성화고·특목고의 비율이 3:1:1:1이 되도록 학교를 우선표집하였음; 비율이 남는 경우 남는 수는 중학교의 경우 국공립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일반고에 배당되도록 배정하였음.

-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학생인권 에 대한 인식 조사:
 - ▷ 학생 표본: 학생인권 침해실태 조사에 참가한 중·고등학생 (학교당 20~30 명씩)
 - ▷ 학부모 표본: 표집된 학교 학생들의 부모에게 설문 을 완성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 ▷ 교사 표본: 참가 중·고등학생이 소속한 학교의 교사 (학교당 5명씩)에게 설 문을 완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학교규칙 현황조사:

전국 중·고등학교(2016년도 기준 중학교는 3232개, 고등학교는 2308개)를 대 상으로 지역(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 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의 총 17개 지역), 학교유형(중학교는 국공립중 대 사립중; 고등학교의 경우는 앞서의 실태나 인식조사에서의 학교 유형보다 더 세분화시켜 공립일반고, 사립일반고,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특성화고/전 문계고, 특목고의 6개로 구분)을 단위로 각 단위에 해당하는 학교를 하나씩 표집 하였다. 따라서 중학교의 경우는 34개의 cell(17개 지역×2개 학교유형)이, 고등 학교의 경우는 102개의 cell(17개 지역×6개 학교 유형)이 만들어졌다. 각 cell에 해당하는 학교는 해당 지역, 해당 학교 유형 pool로부터 각각 무선표집되었다. 선정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이들 학교의 학칙을 분석하였다. 학칙은 학교알리미 (<http://schoolinfo.go.kr>)와 필요한 경우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수집하였다.

나. 연구절차 및 연구 참가자 특징:

- 큰 표집 대상 수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표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학생인권침해실태와 학생인권 에 대한 인식조사는 주로 on-line 설문으 로 진행하였으며 on-line 설문 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off-line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먼저 한양대학교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연구서를 제출하고 연구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

-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이름으로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인식조사의 설문 완성을 요구하는 공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중·고등학교들에 발송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교사는 각각 서로 다른 URL 주소를 부여받았다. 해당 URL 주소에 접속하면 연구에 대한 소개와 연구 참가동의를 구하는 화면이 뜨고 여기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설문 문항들이 제시되는 구조를 갖추도록 설계하였다. 설문은 개별적으로 자신의 속도에 맞춰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문항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 문항으로 진행될 수 없도록 구성하였다. 교내 컴퓨터를 이용한 설문 완성에 있어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한 예외적 학교들에 한해(총 3개 학교) paper-and-pencil 설문지를 활용한 off-line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완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학생용의 경우 10분~15분, 학부모용과 교사용의 경우 5분~7분이었다.
- 설문은 2016년 8월 29일~10월 28일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 참가는 중학생의 경우 총 2616명, 고등학생의 경우 총 3484명이 참가하였고 이들은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연구와 인식 조사 연구 모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인식 조사의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6100명(중학생 2616명+고등학생 3484명)의 학생과 더불어 학부모 총 1839명, 교사 총 842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On-line 설문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남지 않기 때문에(접속시간으로 개인을 구분) 연구에 참가한 학교의 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제공하지 않았다.
- 전국 지역에 따른 연구 참가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정보가 아래의 <표 1-8>, <표 1-9>, <표 1-10>에 제시되어 있다. 학부모 참가자의 경우 부모(혹은 주양육자)의 평균 연령은 45.61($SD=4.20$)이었고 교사 참가자의 경우 교사의 평균 연령은 38.70($SD=9.48$; 22세~63세 범위)이었다. 또한 교사 응답자 중 평교사는 835명(99.2%), 학교관리자는 7명(0.8%)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1-8〉 성별과 조례시행 여부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수와 비율

단위: 명(%)

| | | 학생 응답자 | | Total (세로구획내 %) |
|------------|-------|--------------|--------------|--------------------|
| | | 중학생 | 고등학생 | |
| 성별 | 남자 | 1332 (50.9%) | 1882 (54.0%) | 3214 (52.7%) |
| | 여자 | 1284 (49.1%) | 1602 (46.0%) | 2886 (47.3%) |
| Total | | 2616 (42.9%) | 3484 (57.1%) | 6100 (100.0%) |
| 조례시행 여부 | 시행지역 | 1320 (50.5%) | 1593 (45.7%) | 2913 (47.8%) |
| | 비시행지역 | 1296 (49.5%) | 1891 (54.3%) | 3187 (52.2%) |
| Total | | 2616 (42.9%) | 3484 (57.1%) | 6100 (100.0%) |

〈표 1-9〉 응답자별 해당 학교 유형에 속하는 연구 참가자의 수와 비율

단위: 명(%)

| | | 응답자 | | | |
|----------|-------|---------------|---------------|---------------|--------------|
| | | 중학생 (%) | 고등학생 (%) | 학부모 (%) | 교사 (%) |
| 학교 유형 | 공립중학교 | 1635 (62.5%) | — | 524 (28.5%) | 193 (22.9%) |
| | 사립중학교 | 981 (37.5%) | — | 425 (23.1%) | 165 (19.6%) |
| | 일반고 | — | 2059 (59.1%) | 468 (25.5%) | 222 (26.4%) |
| | 자율고 | — | 638 (18.3%) | 251 (13.7%) | 122 (14.5%) |
| | 특성화고 | — | 490 (14.1%) | 71 (3.9%) | 87 (10.3%) |
| | 특목고 | — | 297 (8.5%) | 100 (5.4%) | 53 (6.3%) |
| Total | | 2616 (100.0%) | 3484 (100.0%) | 1839 (100.0%) | 842 (100.0%) |

〈표 1-10〉 지역별 연구 참가자의 수와 비율

단위: 명(%)

| | 중학생(%) | 고등학생(%) | 총학생(%) | 학부모(%) | 교사(%) |
|-------|--------------|--------------|---------------|-------------|-------------|
| 강원 | 64 (2.4%) | 123 (3.5%) | 187 (3.1%) | 24 (1.3%) | 36 (4.3%) |
| 경기 | 606 (23.2%) | 665 (19.1%) | 1271 (20.8%) | 395 (21.5%) | 179 (21.3%) |
| 경남 | 109 (4.2%) | 282 (8.1%) | 391 (6.4%) | 34 (1.8%) | 35 (4.2%) |
| 경북 | 68 (2.6%) | 105 (3.0%) | 173 (2.8%) | 37 (2.0%) | 13 (1.5%) |
| 광주 | 84 (3.2%) | 162 (4.6%) | 246 (4.0%) | 36 (2.0%) | 33 (3.9%) |
| 대구 | 187 (7.1%) | 129 (3.7%) | 316 (5.2%) | 167 (9.1%) | 40 (4.8%) |
| 대전 | 70 (2.7%) | 139 (4.0%) | 209 (3.4%) | 49 (2.7%) | 37 (4.4%) |
| 부산 | 96 (3.7%) | 200 (5.7%) | 296 (4.9%) | 63 (3.4%) | 40 (4.8%) |
| 서울 | 545 (20.8%) | 588 (16.9%) | 1133 (18.6%) | 421 (22.9%) | 160 (19.0%) |
| 세종 | 42 (1.6%) | 62 (1.8%) | 104 (1.7%) | 84 (4.6%) | 34 (4.0%) |
| 울산 | 102 (3.9%) | 94 (2.7%) | 196 (3.2%) | 150 (8.2%) | 27 (3.2%) |
| 인천 | 143 (5.5%) | 180 (5.2%) | 323 (5.3%) | 92 (5.0%) | 20 (2.4%) |
| 전남 | 84 (3.2%) | 179 (5.1%) | 263 (4.3%) | 44 (2.4%) | 27 (3.2%) |
| 전북 | 85 (3.2%) | 178 (5.1%) | 263 (4.3%) | 58 (3.2%) | 27 (3.2%) |
| 제주 | 118 (4.5%) | 94 (2.7%) | 212 (3.5%) | 20 (1.1%) | 39 (4.5%) |
| 충남 | 98 (3.7%) | 156 (4.5%) | 254 (4.2%) | 96 (5.2%) | 58 (6.9%) |
| 충북 | 115 (4.4%) | 148 (4.2%) | 263 (4.3%) | 69 (3.8%) | 37 (4.4%) |
| Total | 2616(100.0%) | 3484(100.0%) | 6100 (100.0%) | 1839(100%) | 842 (100%) |

지역

다. 결과분석:

- 학생인권 침해실태의 분석은 학교급(중, 고), 학교유형(중학교: 국공립중 대 사립중; 고등학교: 일반고 대 자율고 대 특성화고 대 특목고), 조례시행여부(조례 대 비조례)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분석은 응답자(중학생, 고등학생, 전체학생, 학부모, 교사)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빈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 수와 %에 대한 통계를 얻고 비교 대상 간 응답 비율의 유사성 검증을 위해 χ^2 통계분석(집단 간 동질성 χ^2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한 통계 결과는 비교 대상 간 응답 비율이 유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학교규칙 현황조사의 경우, 코드(code) 유무에 대한 빈도 분석과 내용 분석이 함께 진행되었다. 먼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전체학교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코드에 해당하는 학칙 조항의 예를 제시하였다.

II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 분석결과

- | | |
|-----------------------|----|
| 1.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의 문항 구성 | 35 |
| 2.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 | 37 |

1.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의 문항 구성

학교생활에서의 학생권리 보장 및 학생인권 침해 실태 조사는 중학생 2616명, 고등학생 3484명, 총 6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총 41개 문항(문항 번호는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침해 설문지(부록 1 참고)를 주요 내용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0〉 학교생활에서의 학생권리 보장 및 학생인권 침해 조사지의 주요 영역 별 문항 구성

| 주요 영역 | 번호 | 항목 |
|--|-----|--|
| 학생권리교육, 학생 자치 및 학생 참여권리 보장 관련 | 1 |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을 정하고 있는 학교규칙(예, 학교생활규정, 징계규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
| | 2 | 학교에서 학생에게 보장된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 3 | 학생 자치활동을 기획하고 회의할 수 있는 전용공간(예, 학생자치회의실)이 교내에 있습니까? |
| | 4 |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
| | 5 | 학교는 정기적으로 학생회 주관 대의원 회의를 개최합니까? |
| | 6 | 학교는 여러분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전체 학생들로부터 의견(예, 설문)을 묻습니까? |
| | 7 |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및 교사들은 학생관련 안건(예, 현장학습, 체험활동)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예, 설문)을 묻습니까? |
| | 8 |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급/학생회 임원 출마를 못하거나 학급/학생회 활동에 제한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이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차별 경험 관련 | 9-1 | 학교성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 | 9-2 | 외모/생김새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 | 9-3 | 가정환경(예, 저소득층가정, 이혼가정, 한부모가정)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 | 9-4 | 학년/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예, 고학년에 식사나 독서실 이용에 대한 우선권을 제공하는 경우) |
| | 9-5 |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 | 9-6 | 다른 나라에서 왔거나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 | 9-7 |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 | 9-8 |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 | 9-9 | 성적 지향(동성애, 양성애 성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 주요 영역 | 번호 | 항목 |
|--------------------------------------|------|---|
| 체벌 등의 경험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관련 | 10 | 학교는 학생 간의 따돌림/괴롭힘, SNS 상의 따돌림/괴롭힘,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을 잘 보호하고 있습니까? |
| | 11 | 교사로부터 직접체벌을 받았거나 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직접체벌을 시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 12 | 교사로부터 간접체벌을 받았거나 교사가 간접체벌을 시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 13 | 교사로부터 욕설이나 비하의 말을 들었거나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 14 | 교사로부터 성희롱(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성희롱)을 당하였거나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적법한 상·벌점제 운영 관련 | 15-1 | 학교에서 상벌점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Y/ N |
| | 15-2 | ‘예’ 라 답한 경우, 상벌점제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 강제소지품 검사, 개인신상정보 보호 관련 | 16 | 학교가 학생의 개인 정보(예, 가정환경조사서, 종교, 급식수혜자, 질병이나 감염 여부, 생활보호대상자)를 공개합니까? |
| | 17 |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을 검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 18 | 학교가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학급, 학교계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까? |
| | 19 | 학교가 학생들의 특정 고등학교 혹은 특정 대학교 입학할 현수막, 대자보,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까? |
| 개성실현 및 사생활의 자유 관련 | 20-1 | 두발의 길이나 모양을 제한합니까? |
| | 20-2 | 교복 외의 점퍼 착용을 제한합니까? |
| | 20-3 | 면티나 양말 색깔을 제한합니까? |
| | 20-4 | 치마나 바지의 길이나 폭을 제한합니까? |
| | 20-5 | 화장을 제한하거나 미용제품 및 미용기기의 반입을 제한합니까? |
| | 20-6 | 수업 외 시간 동안(혹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 기숙사 생활 동안) 핸드폰 사용을 제한합니까? |
| 사상, 양심의 자유 관련 | 21 | 학교는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
| | 22 | 학교가 강제성이 있는 서약서, 동의서 등을 쓰게 합니까? |
| 학생의 학습권, 교육에 대한 선택권, 휴식권 관련 | 23-1 | 교내에 학생용 탈의실이 있습니까? Y/ N |
| | 23-2 | ‘예’ 라 답한 경우, 탈의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 | 24 | 고민이 있을 때 학교상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 | 25 |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보내는데 제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예, 점심시간에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놀거나 운동하는 것을 금지당한 적이 있습니까)? |
| | 26 | 교사의 수업 중 학생선도나 일괄 용의복장 지도로 인해 수업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

2.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

학생인권 보장 및 학생인권 침해 실태 조사의 분석은 빈도분석을 기본으로 하였다. 빈도분석은 각 문항에 대해 진행하였고, 응답자별(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유형별(중학교의 경우 공립중, 사립중;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 자율형고, 특목고, 특성화고), 그리고 조례시행여부별(조례시행지역, 조례비시행지역)로 세분화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비교 대상 간 응답 비율에서 유사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χ^2 통계분석(집단 간 동질성 χ^2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한 통계 결과는 비교 대상 간 응답 비율이 유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예, * $p < .05$; ** $p < .01$; *** $p < .001$).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중학생 2616명, 고등학생 3484명, 총 6010명의 학생 자료를 근거로 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일부 문항에 있어 참가 학생들 중 일부가 응답을 하지 않아 빈도분석표에 제시된 총원이 지금 제시한 참가 학생수와 다를 수 있다. 빈도분석 결과 검토 시 이를 고려하기 바란다.

실태조사 문항의 분석에서 학생 성별에 따른 응답 차이는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는 실태조사 문항들이 대부분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로 질문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그렇다 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실제 경험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남학생-여학생 간 유의한 차이를 실제 두 집단 간 경험의 차이로 오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학생 성별에 따른 응답 차이는 분석하지 않았다.

본문에서는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의 응답 그리고 거의 그렇지 않다 와 전혀 그렇지 않다 의 응답을 한데 묶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네 개의 선택항목(매우 그렇다,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부록 4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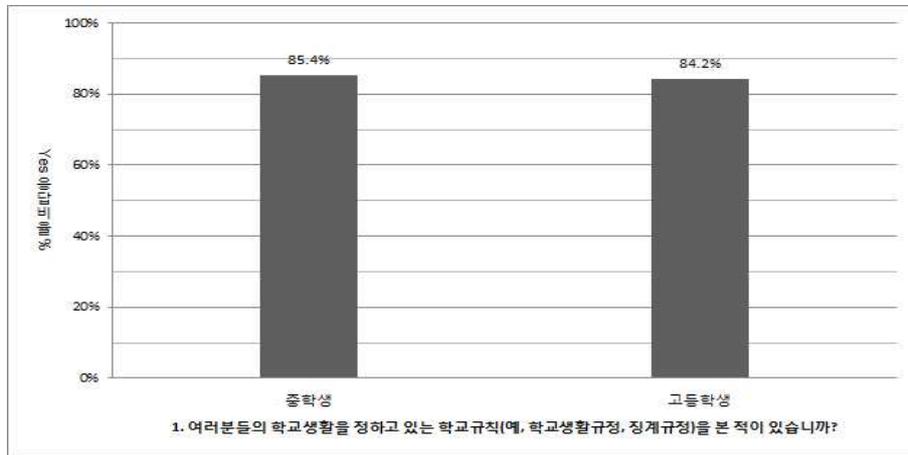
1) 학교규칙 인지 여부

학교규칙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85.4%, 고등학생은 84.2%였다. 이것을 중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85.0%, 사립중학교는 86.1%가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고/전문계고가 88.0%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일반고가 8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규칙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87.7%, 조례지역은 81.4%가 본 적이 있다고 답하여 조례지역이 비조례지역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2-1-1〉 학교규칙 인지 여부 (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 = 1.74$ | | 1.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을 정하고 있는 학교규칙 (예, 학교생활규정, 징계규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No | Yes | |
| 응답자 | 중학생 | 381 (14.6%) | 2231 (85.4%) | 2612 (100.0%) |
| | 고등학생 | 551 (15.8%) | 2933 (84.2%) | 3484 (100.0%) |
| Total | | 932 (15.3%) | 5164 (84.7%) | 6096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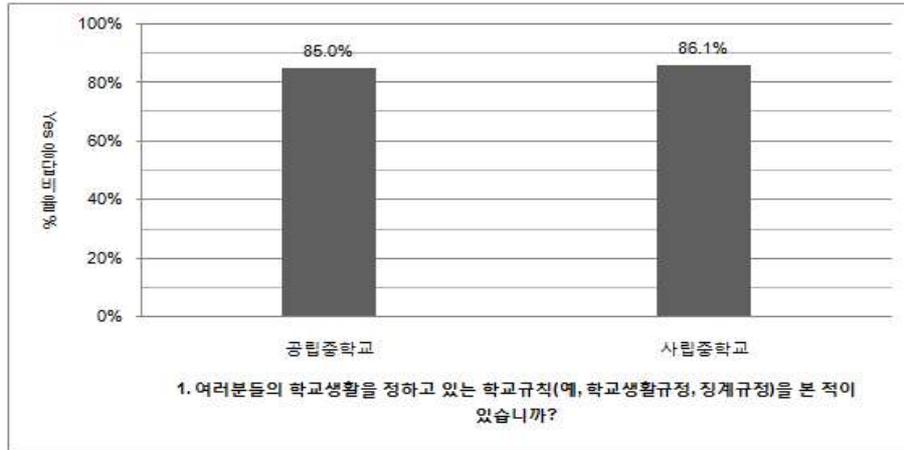


〈그림 2-1-1〉 학교규칙 인지 여부 (학생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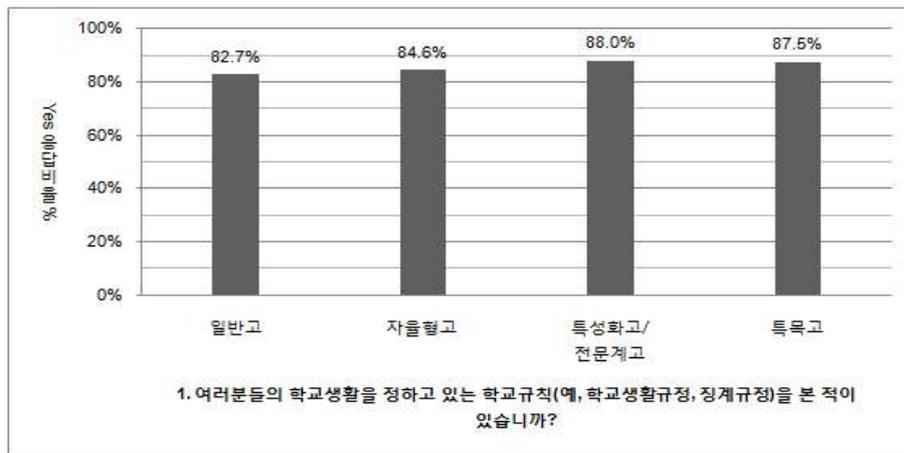
〈표 2-1-2〉 학교규칙 인지 여부 (중/고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 | 1.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을 정하고 있는 학교규칙 (예, 학교생활규정, 징계규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No | Yes | |
| $\chi^2 = 0.56$ | 공립중 | 245 (15.0%) | 1390 (85.0%) | 1635 (100.0%) |
| | 사립중 | 136 (13.9%) | 841 (86.1%) | 977 (100.0%) |
| | Total | 381 (14.6%) | 2231 (85.4%) | 2612 (100.0%) |
| $\chi^2 = 11.45^*$ | 일반고 | 357 (17.3%) | 1702 (82.7%) | 2059 (100.0%) |
| | 자율형고 | 98 (15.4%) | 540 (84.6%) | 638 (100.0%) |
| | 특성화고 | 59 (12.0%) | 431 (88.0%) | 490 (100.0%) |
| | 특목고 | 37 (12.5%) | 260 (87.5%) | 297 (100.0%) |
| Total | | 551 (15.8%) | 2933 (84.2%) | 3484 (100.0%) |



〈그림 2-1-2a〉 학교규칙 인지 여부 (중학교유형)



〈그림 2-1-2b〉 학교규칙 인지 여부 (고등학교유형)

〈표 2-1-3〉 학교규칙 인지 여부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 $\chi^2=47.41^{***}$ | 1. 여러분의 학교생활을 정하고 있는 학교규칙(예, 학교생활규정, 징계규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No | Yes | |
| 조례여부 | 비조례지역 | 390 (12.3%) | 2793 (87.7%) | 3183 (100.0%) |
| | 조례지역 | 542 (18.6%) | 2371 (81.4%) | 2913 (100.0%) |
| Total | | 932 (15.3%) | 5164 (84.7%) | 6096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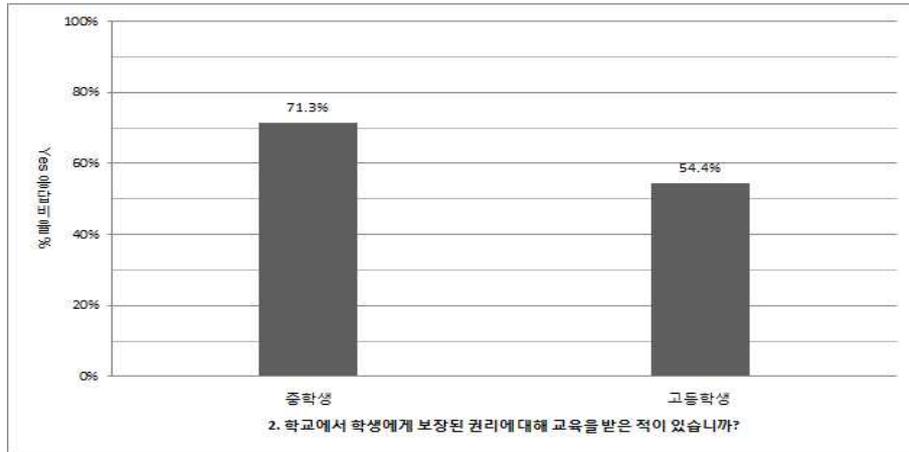
2) 학생인권교육 경험

학생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중학생은 71.3%, 고등학생은 54.4%가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교육경험률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45.6%가 학생인권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중학교 유형별로는 공립중학교는 72.6%, 사립중학교는 69.2%로 공립중학교의 비율이 조금 높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성화고/전문계고가 60.4%로 가장 높았으며, 특목고가 48.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이 60.6%, 조례지역이 62.8%로 나타났다.

〈표 2-2-1〉 학생인권교육 경험 (학생유형별)

단위: 명(%)

| x ² =181.04*** | 2. 학교에서 학생에게 보장된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No | Yes | | |
| 응답자 | 중학생 | 749 (28.7%) | 1863 (71.3%) | 2612 (100.0%) |
| | 고등학생 | 1589 (45.6%) | 1895 (54.4%) | 3484 (100.0%) |
| Total | | 2338 (38.4%) | 3758 (61.6%) | 6096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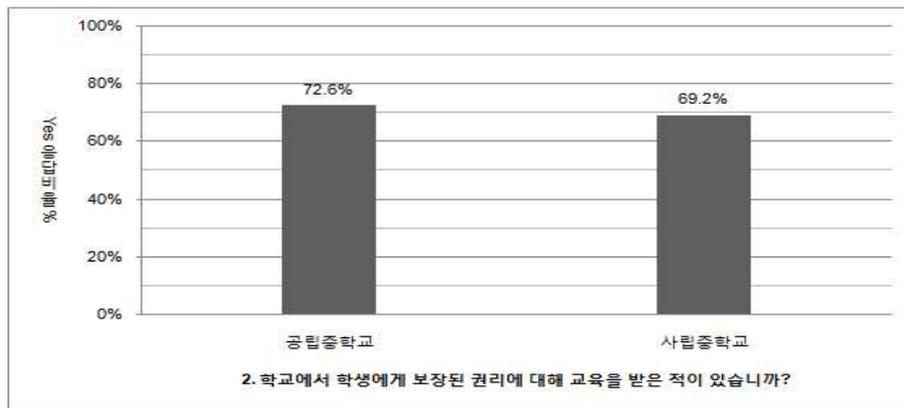


〈그림 2-2-1〉 학생인권교육 경험 (학생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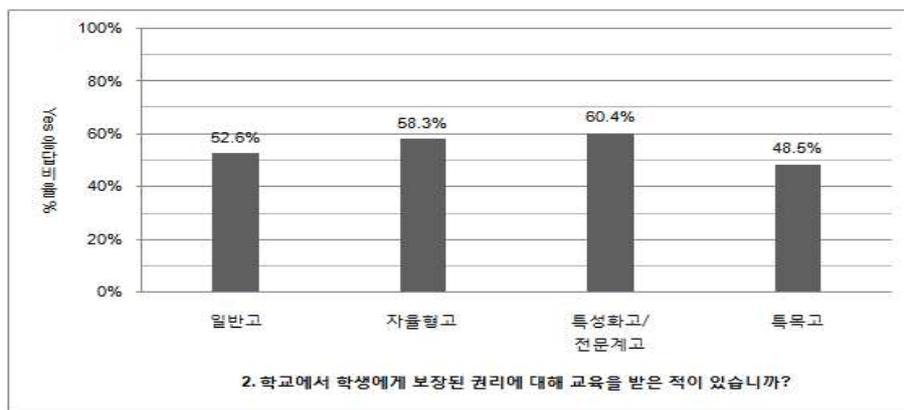
〈표 2-2-2〉 학생인권교육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 | 2. 학교에서 학생에게 보장된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No | Yes | |
| 학교유형 | 공립중 | 448 (27.4%) | 1187 (72.6%) | 1635 (100.0%) |
| | 사립중 | 301 (30.8%) | 676 (69.2%) | 977 (100.0%) |
| Total | | 749 (28.7%) | 1863 (71.3%) | 2612 (100.0%) |
| 학교유형 | 일반고 | 976 (47.4%) | 1083 (52.6%) | 2059 (100.0%) |
| | 자율형고 | 266 (41.7%) | 372 (58.3%) | 638 (100.0%) |
| | 특성화고 | 194 (39.6%) | 296 (60.4%) | 490 (100.0%) |
| | 특목고 | 153 (51.5%) | 144 (48.5%) | 297 (100.0%) |
| Total | | 1589 (45.6%) | 1895 (54.4%) | 3484 (100.0%) |



〈그림 2-2-2a〉 학생인권교육 경험 (중학교유형)



〈그림 2-2-2b〉 학생인권교육 경험 (고등학교유형)

〈표 2-2-3〉 학생인권교육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chi^2=3.26$ | 2. 학교에서 학생에게 보장된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No | Yes | | |
| 조례여부 | 비조례지역 | 1255 (39.4%) | 1928 (60.6%) | 3183 (100.0%) |
| | 조례지역 | 1083 (37.2%) | 1830 (62.8%) | 2913 (100.0%) |
| Total | | 2338 (38.4%) | 3758 (61.6%) | 6096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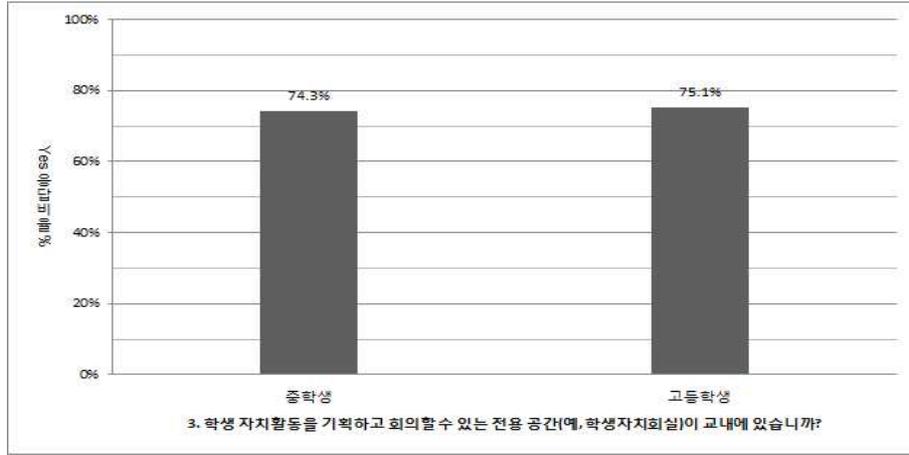
3) 학생 자치활동 전용공간 설치여부

학생자치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중학생은 74.3%, 고등학생은 75.1%가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전용공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 25.2%를 차지하고 있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75.0%, 사립중학교는 73.1%가 마련되어 있다고 답하였다.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자율형고가 8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전문계고는 72.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조례지역은 78.7%, 비조례지역은 71.2%가 마련되어 있다고 답하였다.

〈표 2-3-1〉 학생 자치활동 전용공간 설치여부 (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48$ | 3. 학생 자치활동을 기획하고 회의할 수 있는 전용공간(예, 학생자치회실)이 교내에 있습니까? | | Total | |
|--------------|--|--------------|--------------|---------------|
| | No | Yes | | |
| 응답자 | 중학생 | 671 (25.7%) | 1941 (74.3%) | 2612 (100.0%) |
| | 고등학생 | 868 (24.9%) | 2616 (75.1%) | 3484 (100.0%) |
| Total | | 1539 (25.2%) | 4557 (74.8%) | 6096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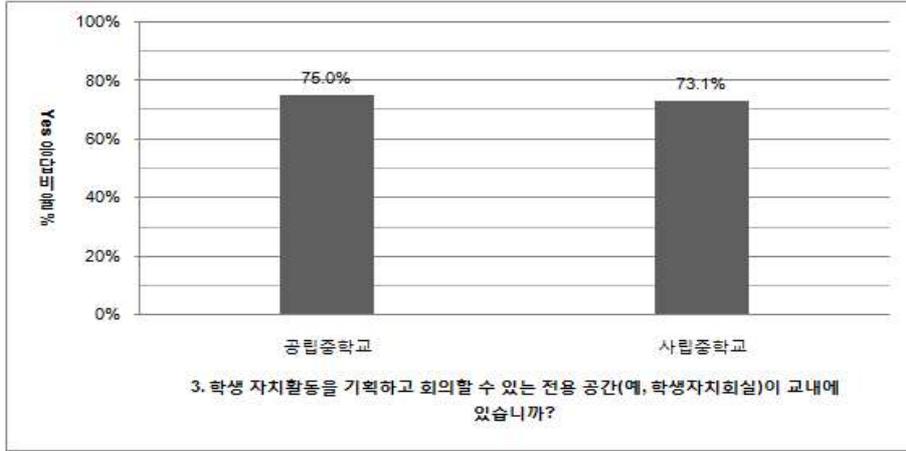


〈그림 2-3-1〉 학생 자치활동 전용공간 설치여부 (학생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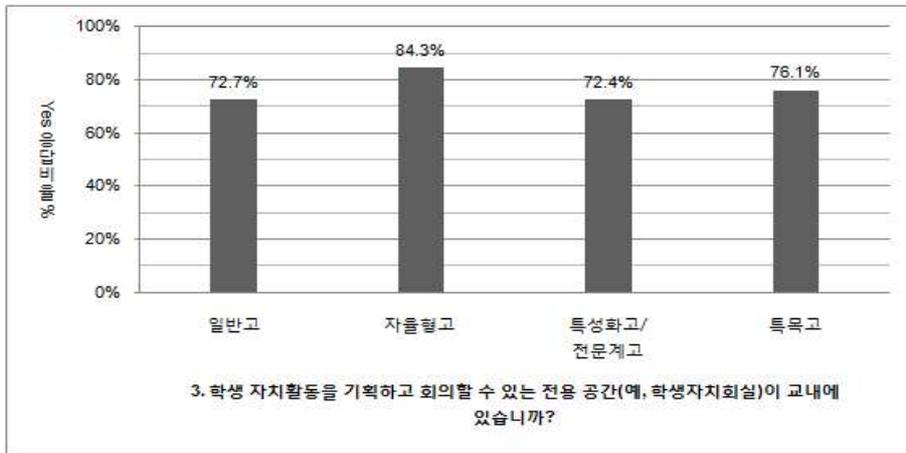
〈표 2-3-2〉 학생 자치활동 전용공간 설치여부 (중/고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 | 3. 학생 자치활동을 기획하고 회의할 수 있는 전용공간(예, 학생자치회실)이 교내에 있습니까? | | Total |
|-------|------|--|--------------|---------------|
| | | No | Yes | |
| 학교유형 | 공립중 | 408 (25.0%) | 1227 (75.0%) | 1635 (100.0%) |
| | 사립중 | 263 (26.9%) | 714 (73.1%) | 977 (100.0%) |
| Total | | 671 (25.7%) | 1941 (74.3%) | 2612 (100.0%) |
| 학교유형 | 일반고 | 562 (27.3%) | 1497 (72.7%) | 2059 (100.0%) |
| | 자율형고 | 100 (15.7%) | 538 (84.3%) | 638 (100.0%) |
| | 특성화고 | 135 (27.6%) | 355 (72.4%) | 490 (100.0%) |
| | 특목고 | 71 (23.9%) | 226 (76.1%) | 297 (100.0%) |
| Total | | 868 (24.9%) | 2616 (75.1%) | 3484 (100.0%) |



〈그림 2-3-2a〉 학생 자치활동 전용공간 설치여부 (중학교유형)



〈그림 2-3-2b〉 학생 자치활동 전용공간 설치여부 (고등학교유형)

〈표 2-3-3〉 학생 자치활동 전용공간 설치여부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chi^2=45.61^{***}$ | 3. 학생 자치활동을 기획하고 회의할 수 있는 전용공간(예, 학생자치회실)이 교내에 있습니까? | | | |
|----------------------|--|--------------|--------------|---------------|
| | | No | Yes | Total |
| 조례여부 | 비조례지역 | 918 (28.8%) | 2265 (71.2%) | 3183 (100.0%) |
| | 조례지역 | 621 (21.3%) | 2292 (78.7%) | 2913 (100.0%) |
| Total | | 1539 (25.2%) | 4557 (74.8%) | 6096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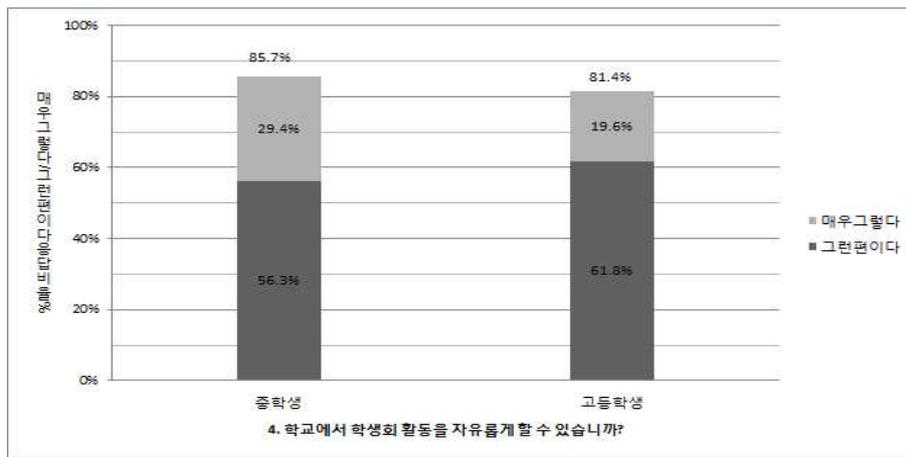
4)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 보장

학생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4.3%, 고등학생은 18.7%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14.4%, 사립중학교는 14.2%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서는 특성화고/전문계고가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16.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16.9%, 조례지역은 16.6%가 그렇다 라고 답해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2-4-1〉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 보장 (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20.28^{***}$ | 4.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응답자 | 중학생 | 374 (14.3%) | 2241 (85.7%) | 2615 (100.0%) |
| | 고등학생 | 650 (18.7%) | 2834 (81.3%) | 3484 (100.0%) |
| Total | 1024 (16.8%) | 5075 (83.2%) | 6099 (1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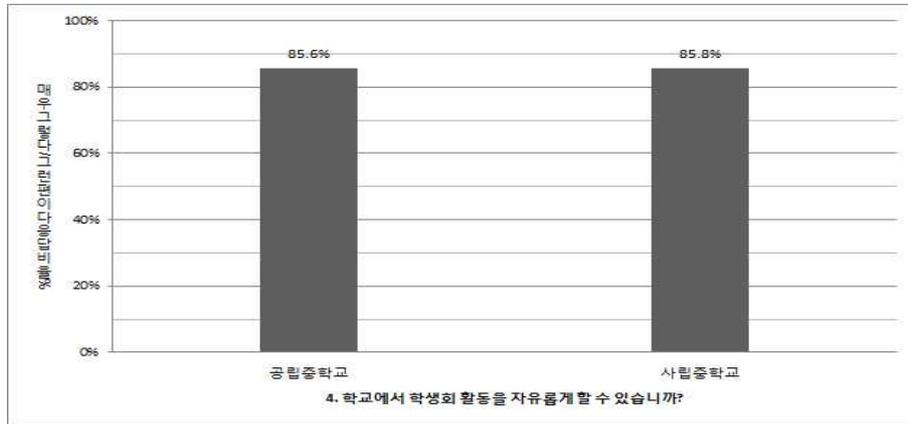


〈그림 2-4-1〉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 보장 (학생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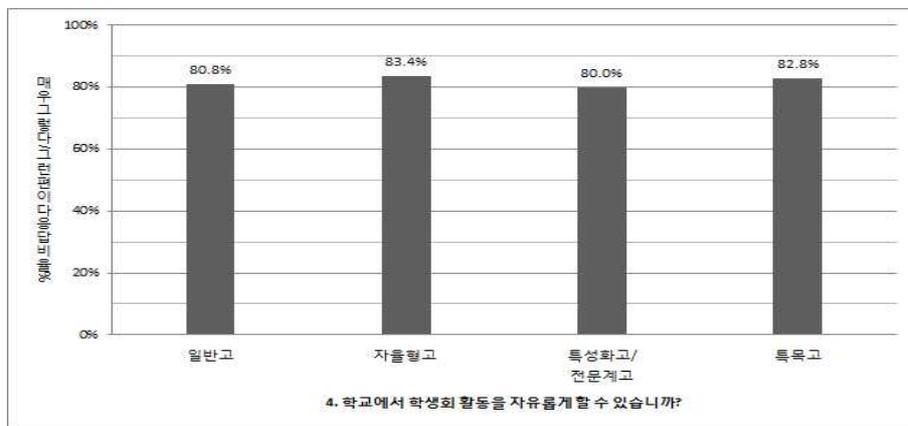
〈표 2-4-2〉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 보장 (중/고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 | 4.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학교유형 | 공립중 | 235 (14.4%) | 1400 (85.6%) | 1635 (100.0%) |
| | 사립중 | 139 (14.2%) | 841 (85.8%) | 980 (100.0%) |
| Total | | 374 (14.3%) | 2241 (85.7%) | 2615 (100.0%) |
| 학교유형 | 일반고 | 395 (19.2%) | 1664 (80.8%) | 2059 (100.0%) |
| | 자율형고 | 106 (16.6%) | 532 (83.4%) | 638 (100.0%) |
| | 특성화고 | 98 (20.0%) | 392 (80.0%) | 490 (100.0%) |
| | 특목고 | 51 (17.2%) | 246 (82.8%) | 297 (100.0%) |
| Total | | 650 (18.7%) | 2834 (81.3%) | 3484 (100.0%) |



〈그림 2-4-2a〉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 보장 (중학교유형)



〈그림 2-4-2b〉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 보장 (고등학교유형)

〈표 2-4-3〉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 보장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chi^2=0.08$ | 4.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 | Total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 539 (16.9%) | 2647 (83.1%) | 3186 (100.0%) |
| | 485 (16.6%) | 2428 (83.4%) | 2913 (100.0%) |
| Total | 1024 (16.8%) | 5075 (83.2%) | 6099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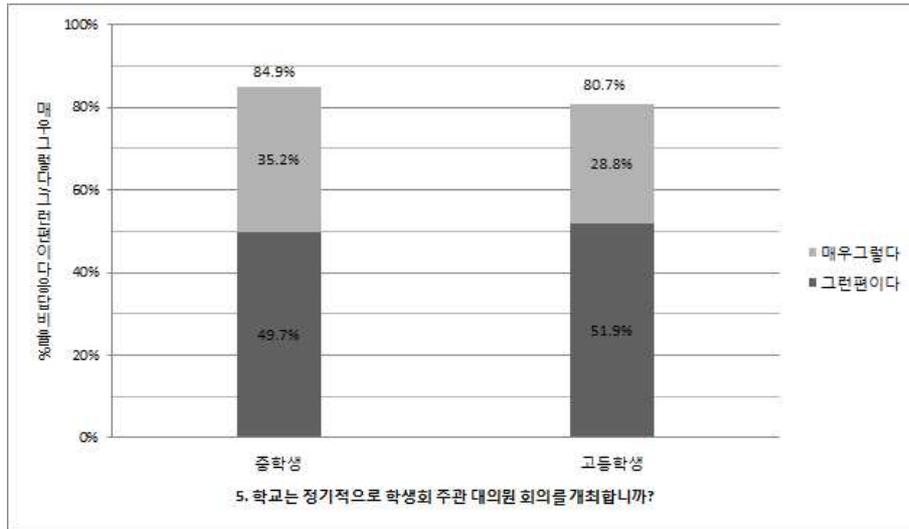
5) 정기적 대의원회의 개최

정기적으로 학생회가 주관하는 대의원회의 개최여부와 관련하여 중학생은 84.9%, 고등학생은 80.7%가 개최되고 있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전체 중·고등학생 17.5%는 대의원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다. 중학교 유형별로는 공립중학교는 85.4%, 사립중학교는 84.0%가 개최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학교유형 중에는 자율형고는 8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전문계고는 7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83.4%, 조례지역은 81.6%로 나타났다.

〈표 2-5-1〉 정기적 대의원회의 개최 (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18.17^{***}$ | 5. 학교는 정기적으로 학생회 주관 대의원 회의를 개최합니까? | | Total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응답자 중학생 | 395 (15.1%) | 2221 (84.9%) | 2616 (100.0%) |
| | 672 (19.3%) | 2812 (80.7%) | 3484 (100.0%) |
| Total | 1067 (17.5%) | 5033 (82.5%) | 610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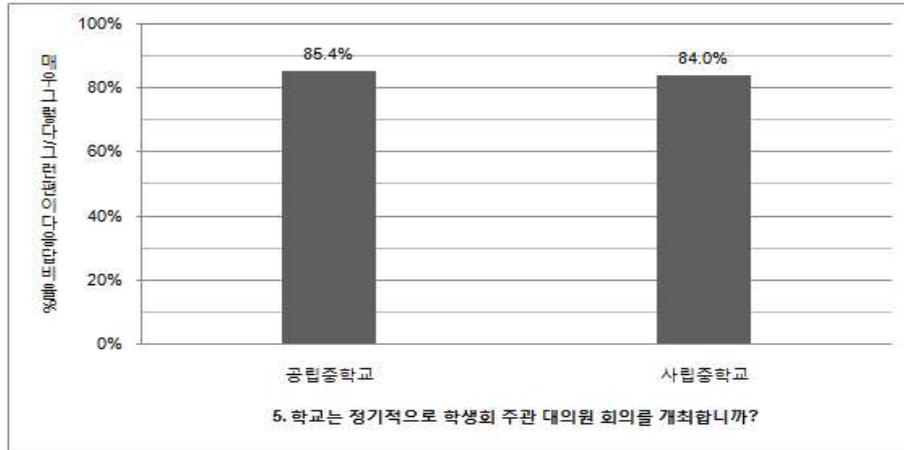


〈그림 2-5-1〉 정기적 대의원회의 개최 (학생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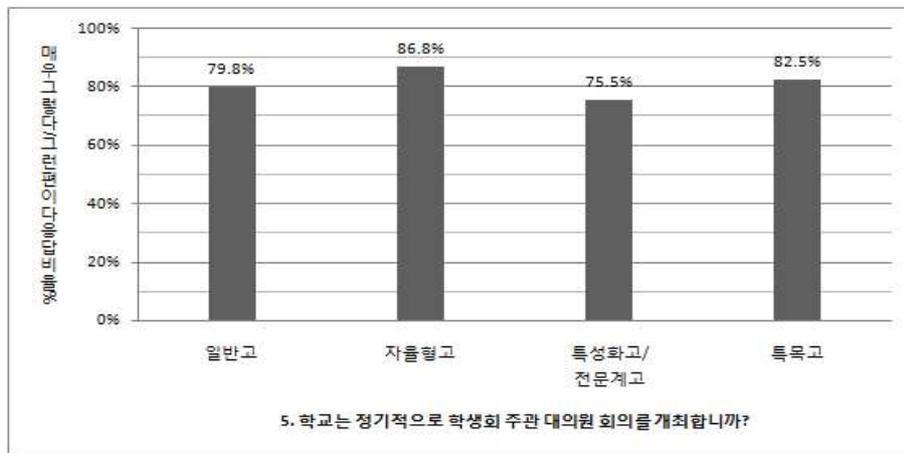
〈표 2-5-2〉 정기적 대의원회의 개최 (중/고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 | 5. 학교는 정기적으로 학생회 주관 대의원 회의를 개최합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학교유형 | 공립중 | 238 (14.6%) | 1397 (85.4%) | 1635 (100.0%) |
| | 사립중 | 157 (16.0%) | 824 (84.0%) | 981 (100.0%) |
| $\chi^2=1.00$ | | | | |
| Total | | 395 (15.1%) | 2221 (84.9%) | 2616 (100.0%) |
| 학교유형 | 일반고 | 416 (20.2%) | 1643 (79.8%) | 2059 (100.0%) |
| | 자율형고 | 84 (13.2%) | 554 (86.8%) | 638 (100.0%) |
| | 특성화고 | 120 (24.5%) | 370 (75.5%) | 490 (100.0%) |
| | 특목고 | 52 (17.5%) | 245 (82.5%) | 297 (100.0%) |
| $\chi^2=25.59***$ | | | | |
| Total | | 672 (19.3%) | 2812 (80.7%) | 3484 (100.0%) |



〈그림 2-5-2a〉 정기적 대의원회의 개최 (중학교유형)



〈그림 2-5-2b〉 정기적 대의원회의 개최 (고등학교유형)

〈표 2-5-3〉 정기적 대의원회의 개최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chi^2=3.43$ | 5. 학교는 정기적으로 학생회 주관 대의원 회의를 개최합니까? | |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Total | |
| 조례여부 | 비조례지역 | 530 (16.6%) | 2657 (83.4%) | 3187 (100.0%) |
| | 조례지역 | 537 (18.4%) | 2376 (81.6%) | 2913 (100.0%) |
| Total | 1067 (17.5%) | 5033 (82.5%) | 6100 (1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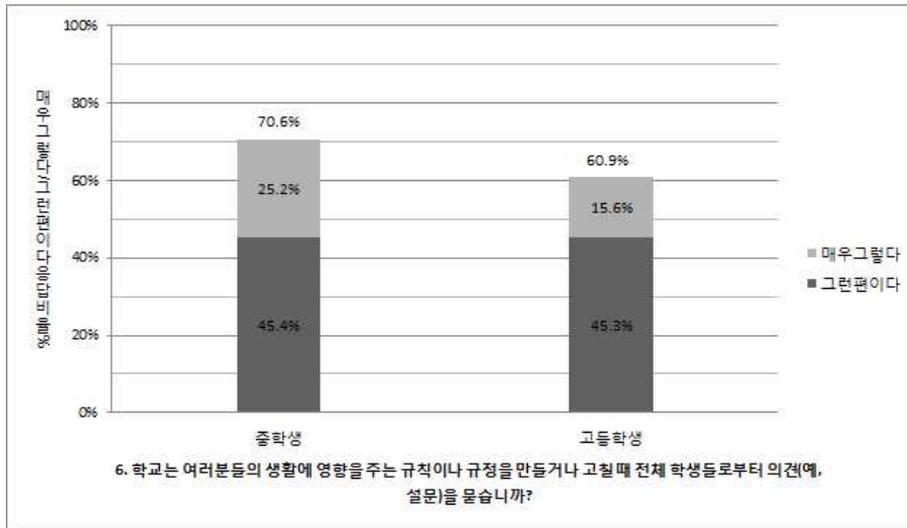
6)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9.4%, 고등학생은 39.1%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28.7%, 사립중학교는 30.4%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목고가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3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34.3%, 조례지역은 35.6%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의견을 묻지 않는다는 비율도 전체 34.5%로 나타났다.

〈표 2-6-1〉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62.31^{***}$ | 6. 학교는 여러분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전체 학생들로부터 의견(예, 설문)을 묻습니까? |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응답자 | 중학생 | 768 (29.4%) | 1848 (70.6%) | 2616 (100.0%) |
| | 고등학생 | 1362 (39.1%) | 2122 (60.9%) | 3484 (100.0%) |
| Total | | 2130 (34.9%) | 3970 (65.1%) | 610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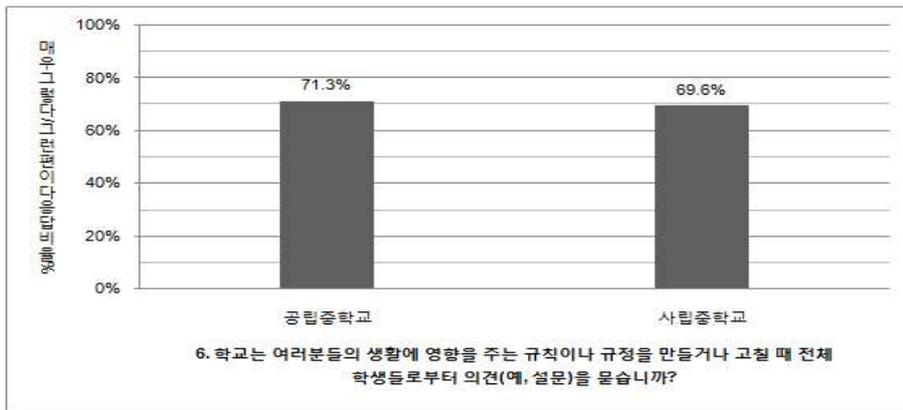


〈그림 2-6-1〉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학생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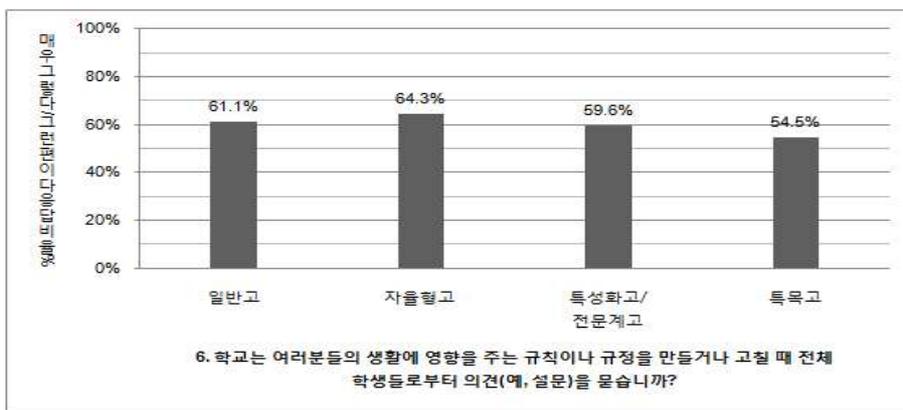
〈표 2-6-2〉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중/고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 | 6. 학교는 여러분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전체 학생들로부터 의견(예, 설문)을 묻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학교유형 | 공립중 | 470 (28.7%) | 1165 (71.3%) | 1635 (100.0%) |
| | 사립중 | 298 (30.4%) | 683 (69.6%) | 981 (100.0%) |
| Total | | 768 (29.4%) | 1848 (70.6%) | 2616 (100.0%) |
| 학교유형 | 일반고 | 801 (38.9%) | 1258 (61.1%) | 2059 (100.0%) |
| | 자율형고 | 228 (35.7%) | 410 (64.3%) | 638 (100.0%) |
| | 특성화고 | 198 (40.4%) | 292 (59.6%) | 490 (100.0%) |
| | 특목고 | 135 (45.5%) | 162 (54.5%) | 297 (100.0%) |
| Total | | 1362 (39.1%) | 2122 (60.9%) | 3484 (100.0%) |



〈그림 2-6-2a〉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중학교유형)



〈그림 2-6-2b〉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고등학교유형)

〈표 2-6-3〉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수렴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chi^2=1.03$ | 6. 학교는 여러분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전체 학생들로부터 의견(예, 설문)을 묻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조례여부 | 비조례지역 | 1094 (34.3%) | 2093 (65.7%) | 3187 (100.0%) |
| | 조례지역 | 1036 (35.6%) | 1877 (64.4%) | 2913 (100.0%) |
| Total | | 2130 (34.9%) | 3970 (65.1%) | 610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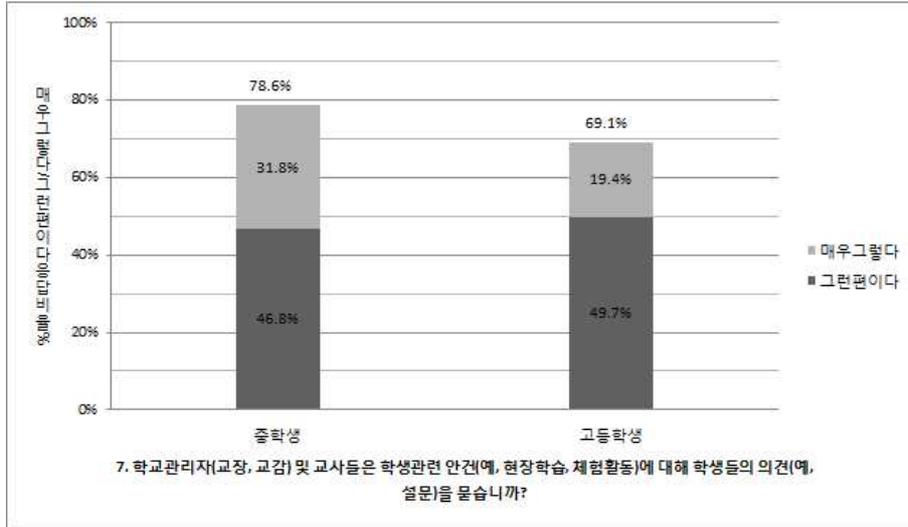
7)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학생의견 수렴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학생 의견수렴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21.5%, 고등학생은 30.9%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22.1%, 사립중학교는 20.4%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일반고가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64.4%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26.1%, 조례지역은 27.6%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지역 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2-7-1〉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학생의견 수렴 (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67.67^{***}$ | 7.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및 교사들은 학생관련 안건(예, 현장학습, 체험활동)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예, 설문)을 묻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응답자 | 중학생 | 561 (21.5%) | 2054 (78.5%) | 2615 (100.0%) |
| | 고등학생 | 1076 (30.9%) | 2408 (69.1%) | 3484 (100.0%) |
| Total | | 1637 (26.8%) | 4462 (73.2%) | 6099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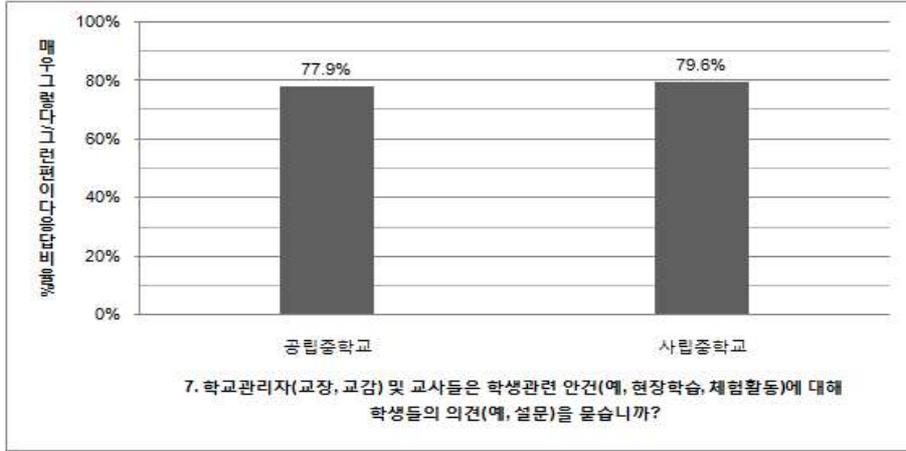


〈그림 2-7-1〉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학생의견 수렴 (학생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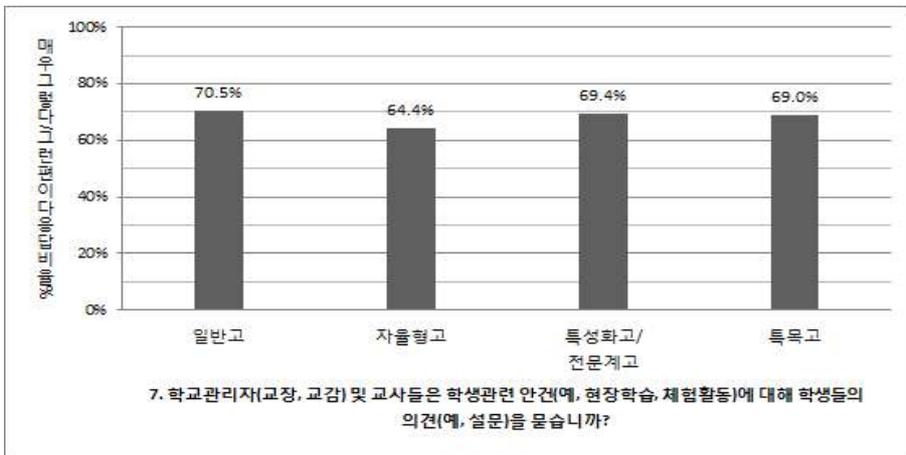
〈표 2-7-2〉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학생의견 수렴 (중/고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 | 7.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및 교사들은 학생관련 안전예, 현장학습, 체험활동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예, 설문)을 묻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학교유형 | 공립중 | 361 (22.1%) | 1273 (77.9%) | 1634 (100.0%) |
| | 사립중 | 200 (20.4%) | 781 (79.6%) | 981 (100.0%) |
| Total | | 561 (21.5%) | 2054 (78.5%) | 2615 (100.0%) |
| 학교유형 | 일반고 | 607 (29.5%) | 1452 (70.5%) | 2059 (100.0%) |
| | 자율형고 | 227 (35.6%) | 411 (64.4%) | 638 (100.0%) |
| | 특성화고 | 150 (30.6%) | 340 (69.4%) | 490 (100.0%) |
| | 특목고 | 92 (31.0%) | 205 (69.0%) | 297 (100.0%) |
| Total | | 1076 (30.9%) | 2408 (69.1%) | 3484 (100.0%) |



〈그림 2-7-2a〉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학생의견 수렴 (중학교유형)



〈그림 2-7-2b〉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학생의견 수렴 (고등학교유형)

〈표 2-7-3〉 학교관리자 및 교사의 학생의견 수렴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chi^2=1.79$ | 7.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및 교사들은 학생관련 안전(예, 현장학습, 체험활동)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예, 설문)을 묻습니까? | | | Total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조례여부 | 비조례지역 | 832 (26.1%) | 2354 (73.9%) | 3186 (100.0%) |
| | 조례지역 | 805 (27.6%) | 2108 (72.4%) | 2913 (100.0%) |
| Total | | 1637 (26.8%) | 4462 (73.2%) | 6099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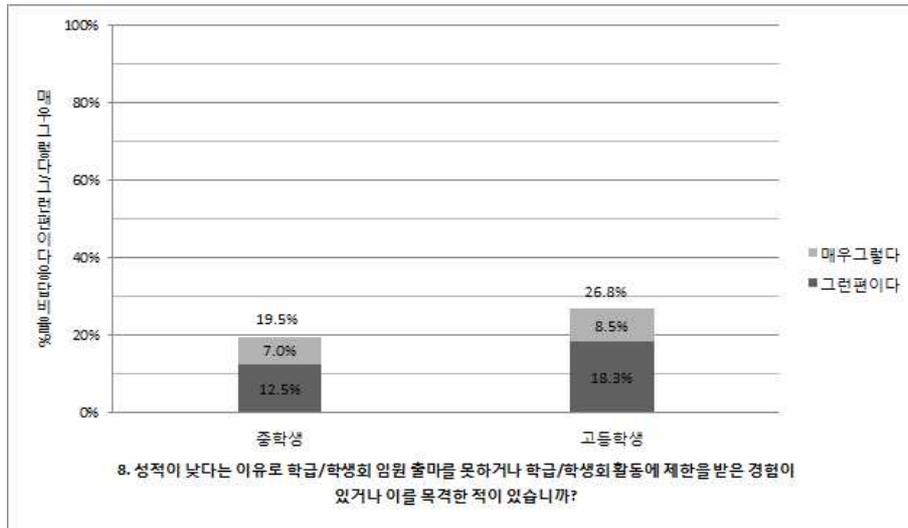
8) 성적에 따른 학급/학생회 활동 제한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급/학생회 임원출마 또는 활동제한 경험이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중학생은 19.5%, 고등학생은 26.8%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18.4%, 사립중학교는 21.2%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일반고가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1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26.4%, 조례지역은 20.7%로 비조례지역의 제한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8-1〉 성적에 따른 학급/학생회 활동 제한 (학생유형별)

단위: 명(%)

| 응답자 | 성적 | 8.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급/학생회 임원 출마를 못하거나 학급/학생회 활동에 제한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이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응답자 | 중학생 | 2107 (80.5%) | 509 (19.5%) | 2616 (100.0%) |
| | 고등학생 | 2550 (73.2%) | 934 (26.8%) | 3484 (100.0%) |
| Total | | 4657 (76.3%) | 1443 (23.7%) | 610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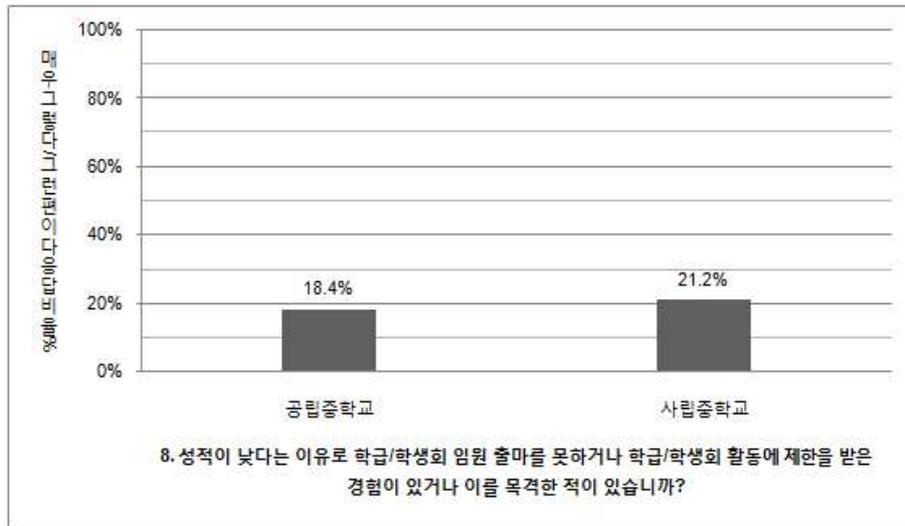


〈그림 2-8-1〉 성적에 따른 학급/학생회 활동 제한 (학생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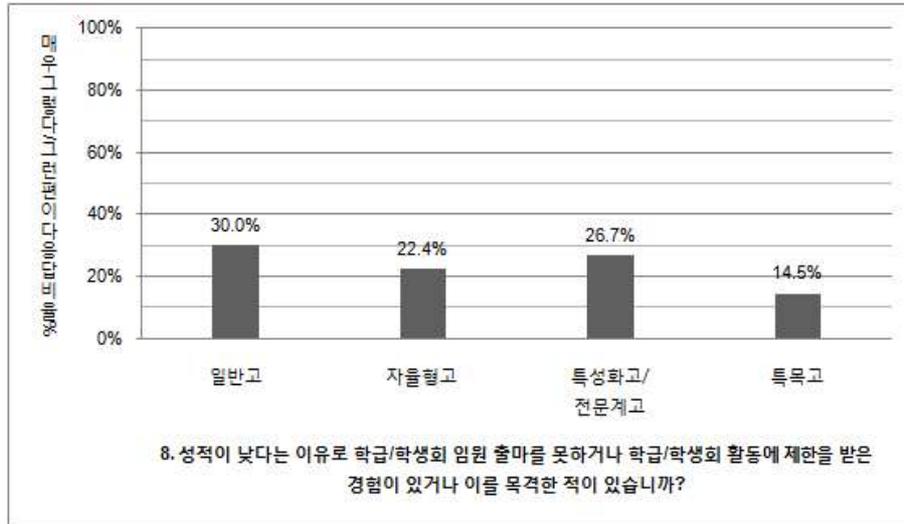
〈표 2-8-2〉 성적에 따른 학급/학생회 활동 제한 (중/고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 | 8.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급/학생회 임원 출마를 못하거나 학급/학생회 활동에 제한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이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학교유형 | 공립중 | 1334 (81.6%) | 301 (18.4%) | 1635 (100.0%) |
| | 사립중 | 773 (78.8%) | 208 (21.2%) | 981 (100.0%) |
| $\chi^2=3.05$ | | | | |
| Total | | 2107 (80.5%) | 509 (19.5%) | 2616 (100.0%) |
| 학교유형 | 일반고 | 1442 (70.0%) | 617 (30.0%) | 2059 (100.0%) |
| | 자율형고 | 495 (77.6%) | 143 (22.4%) | 638 (100.0%) |
| | 특성화고 | 359 (73.3%) | 131 (26.7%) | 490 (100.0%) |
| | 특목고 | 254 (85.5%) | 43 (14.5%) | 297 (100.0%) |
| $\chi^2=39.76***$ | | | | |
| Total | | 2550 (73.2%) | 934 (26.8%) | 3484 (100.0%) |



〈그림 2-8-2a〉 성적에 따른 학급/학생회 활동 제한 (중학교유형)



〈그림 2-8-2b〉 성적에 따른 학급/학생회 활동 제한 (고등학교유형)

〈표 2-8-3〉 성적에 따른 학급/학생회 활동 제한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chi^2=27.60^{***}$ | 8.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급/학생회 임원 출마를 못하거나 학급/학생회 활동에 제한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이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 2346 (73.6%) | 841 (26.4%) | 3187 (100.0%) |
| | 2311 (79.3%) | 602 (20.7%) | 2913 (100.0%) |
| Total | 4657 (76.3%) | 1443 (23.7%) | 6100 (100.0%) |

9) 차별 경험 관련

차별을 받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차별유형별로 그렇다 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중, 고등학생 모두에서 학년/나이에 의한 차별, 학교성적으로 인한 차별, 성별로 인한 차별, 외모/생김새로 인한 차별 순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이들 차별 영역에 대해 중학생의 각각 23.9%, 19.9%, 10.5%, 9.4%가, 고등학생의 각각 45.1%, 36.7%, 14.7%, 10.9%가 그렇다라는 응답을 나타내었다. 수치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학년/나이, 학교성적,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의 유무에

서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더 높은 그렇다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외모/생김새로 인한 차별 경험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응답 간 유의한 차이 없이 약 10% 수준이 그렇다라는 응답을 나타내었다.

이외에도 중학생은 장애 4.3%, 성적지향 4.2%, 가정환경 3.5%, 종교 2.7%, 타국적/다문화 2.4%로 순으로, 고등학생은 성적지향 6.3%, 종교 5.7%, 장애 4.9%, 가정환경 4.7%, 타국적/다문화 3.1%로 순으로 해당 영역에 대한 차별 경험을 보고하였다. 두 학생 집단 모두에서 타국적/다문화로 인한 차별 경험이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낮게 보고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고등학생에서는 성적지향이나 종교로 인한 차별 경험이 중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보고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의 경우에는 학년/나이에 의한 차별이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성적이 17.2%, 성별이 13.3%로 나타났다. 이 외에 외모/생김새는 9.7%, 장애는 4.6%, 성적지향은 4.0%, 가정환경은 3.5%, 타국적/다문화는 2.4%, 종교는 2.3%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성적으로 인한 차별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년/나이가 22.0%로 높게 나왔다. 이 외에 외모/생김새는 9.0%, 성별은 5.8%, 성적지향은 4.6%, 장애는 3.7%, 가정환경은 3.4%, 종교는 3.3%, 타국적/다문화는 2.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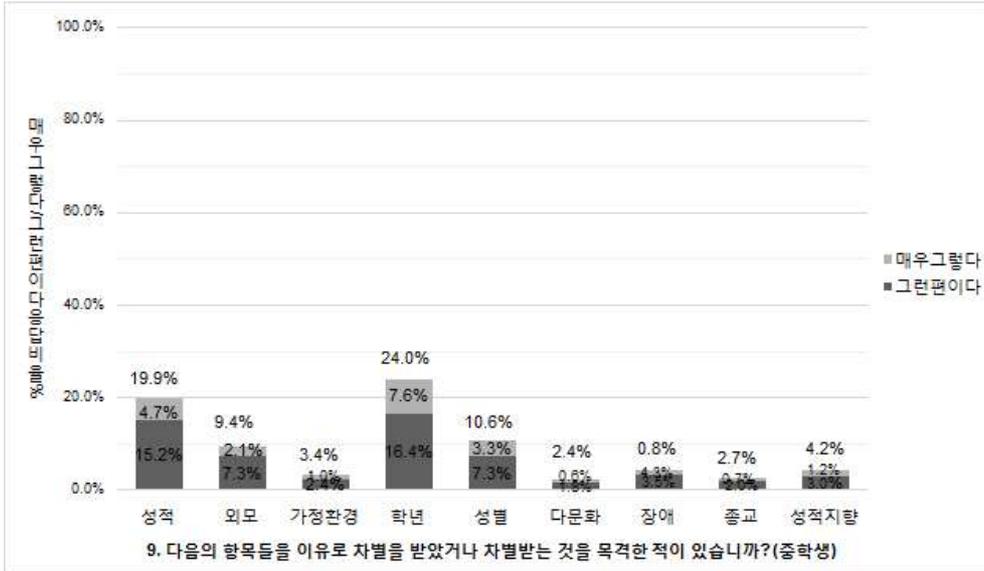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교성적에 의한 차별은 일반고가 40.1%, 외모/생김새에 의한 차별은 특성화고/전문계고가 12.0%, 가정환경에 의한 차별은 일반고가 5.1%, 학년/나이에 의한 차별은 특목고가 59.9%, 성별에 의한 차별은 특목고가 17.5%, 타국적/다문화에 의한 차별은 일반고와 특성화고/전문계고가 3.3%, 장애에 의한 차별은 일반고가 5.5%, 종교에 의한 차별은 자율형고가 7.2%,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은 자율형고가 8.3%로 가장 높았다. 특히 학년/나이에 의한 차별은 모든 학교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일반고 44.1%, 자율형고 45.8%, 특성화고/전문계고 39.6%, 특목고 59.9%)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학년/나이에 의한 차별이 비조례지역(34.7%)이나 조례지역(37.5%)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성적에 의한 차별도 비조례지역(31.3%)이나 조례지역(27.6%) 모두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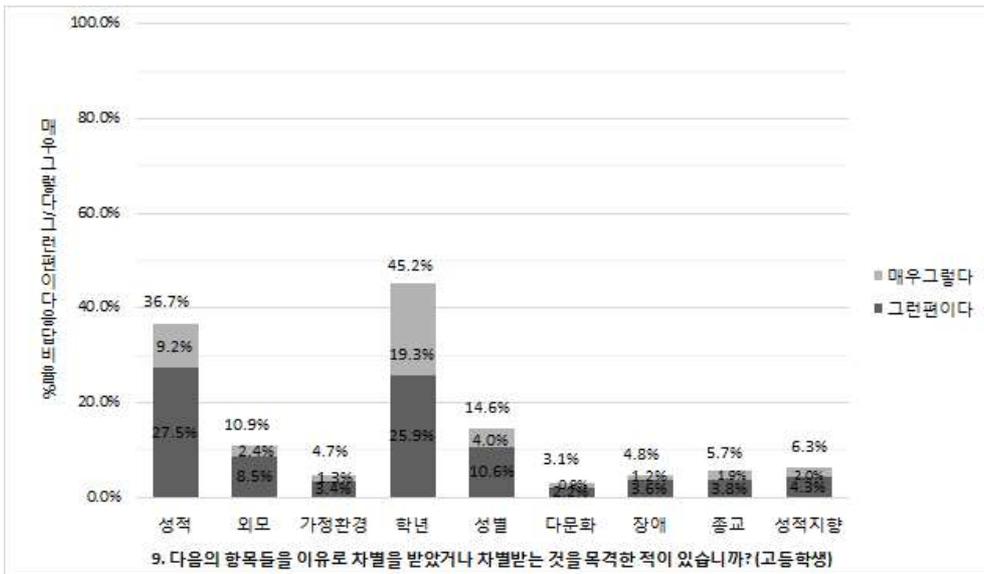
〈표 2-9-1〉 차별경험 (학생유형별)

단위: 명(%)

| | | 9. 아래의 이유로 차별을 받았거나 차별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① 학교성적 $\chi^2=204.72^{***}$ | 중학생 | 2095 (80.1%) | 519 (19.9%) | 2614 (100.0%) |
| | 고등학생 | 2204 (63.3%) | 1280 (36.7%) | 3484 (100.0%) |
| | Total | 4299 (70.5%) | 1799 (29.5%) | 6098 (100.0%) |
| ② 외모/ 생김새 $\chi^2=3.78$ | 중학생 | 2369 (90.6%) | 246 (9.4%) | 2615 (100.0%) |
| | 고등학생 | 3103 (89.1%) | 381 (10.9%) | 3484 (100.0%) |
| | Total | 5472 (89.7%) | 627 (10.3%) | 6099 (100.0%) |
| ③ 가정환경 (저소득, 이혼 한부모가정) $\chi^2=6.62^*$ | 중학생 | 2524 (96.5%) | 91 (3.5%) | 2615 (100.0%) |
| | 고등학생 | 3320 (95.3%) | 164 (4.7%) | 3484 (100.0%) |
| | Total | 5844 (95.8%) | 255 (4.2%) | 6099 (100.0%) |
| ④ 학년/나이 $\chi^2=290.76^{***}$ | 중학생 | 1989 (76.1%) | 626 (23.9%) | 2615 (100.0%) |
| | 고등학생 | 1912 (54.9%) | 1572 (45.1%) | 3484 (100.0%) |
| | Total | 3901 (64.0%) | 2198 (36.0%) | 6099 (100.0%) |
| ⑤ 성별 $\chi^2=22.93^{***}$ | 중학생 | 2340 (89.5%) | 275 (10.5%) | 2615 (100.0%) |
| | 고등학생 | 2973 (85.3%) | 511 (14.7%) | 3484 (100.0%) |
| | Total | 5313 (87.1%) | 786 (12.9%) | 6099 (100.0%) |
| ⑥ 다른나라/ 다문화가정 $\chi^2=3.15$ | 중학생 | 2553 (97.6%) | 62 (2.4%) | 2615 (100.0%) |
| | 고등학생 | 3375 (96.9%) | 109 (3.1%) | 3484 (100.0%) |
| | Total | 5928 (97.2%) | 171 (2.8%) | 6099 (100.0%) |
| ⑦ 장애 $\chi^2=1.21$ | 중학생 | 2503 (95.7%) | 112 (4.3%) | 2615 (100.0%) |
| | 고등학생 | 3314 (95.1%) | 170 (4.9%) | 3484 (100.0%) |
| | Total | 5817 (95.4%) | 282 (4.6%) | 6099 (100.0%) |
| ⑧ 종교 $\chi^2=33.14^{***}$ | 중학생 | 2545 (97.3%) | 70 (2.7%) | 2615 (100.0%) |
| | 고등학생 | 3284 (94.3%) | 200 (5.7%) | 3484 (100.0%) |
| | Total | 5829 (95.6%) | 270 (4.4%) | 6099 (100.0%) |
| ⑨ 성적 지향 (동성애, 양성애성향) $\chi^2=12.16^{***}$ | 중학생 | 2504 (95.8%) | 111 (4.2%) | 2615 (100.0%) |
| | 고등학생 | 3265 (93.7%) | 219 (6.3%) | 3484 (100.0%) |
| | Total | 5769 (94.6%) | 330 (5.4%) | 6099 (100.0%) |



〈그림 2-9-1a〉 차별경험 (중학생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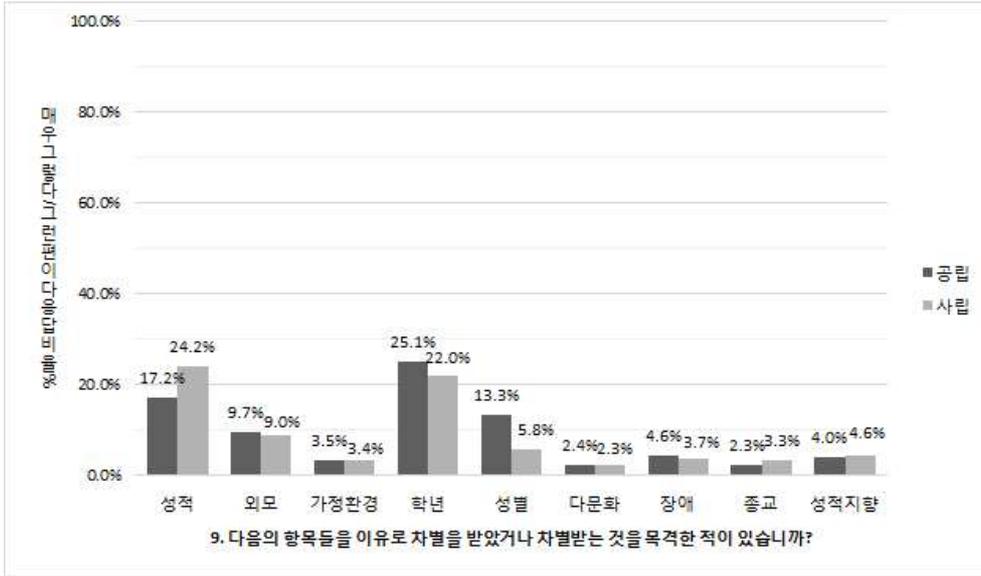


〈그림 2-9-1b〉 차별경험 (고등학생 응답)

〈표 2-9-2a〉 차별경험 (중학교 학교유형별)

단위: 명(%)

| | | 9. 아래의 이유로 차별을 받았거나 차별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① 학교성적 $\chi^2=18.65^{***}$ | 공립중 | 1353 (82.8%) | 282 (17.2%) | 1635 (100.0%) |
| | 사립중 | 742 (75.8%) | 237 (24.2%) | 979 (100.0%) |
| | Total | 2095 (80.1%) | 519 (19.9%) | 2614 (100.0%) |
| ② 외모/ 생김새 $\chi^2=0.34$ | 공립중 | 1477 (90.3%) | 158 (9.7%) | 1635 (100.0%) |
| | 사립중 | 892 (91.0%) | 88 (9.0%) | 980 (100.0%) |
| | Total | 2369 (90.6%) | 246 (9.4%) | 2615 (100.0%) |
| ③ 가정 환경 (저소득, 이혼, 한부모가정) $\chi^2=0.06$ | 공립중 | 1577 (96.5%) | 58 (3.5%) | 1635 (100.0%) |
| | 사립중 | 947 (96.6%) | 33 (3.4%) | 980 (100.0%) |
| | Total | 2524 (96.5%) | 91 (3.5%) | 2615 (100.0%) |
| ④ 학년/나이 $\chi^2=3.10$ | 공립중 | 1225 (74.9%) | 410 (25.1%) | 1635 (100.0%) |
| | 사립중 | 764 (78.0%) | 216 (22.0%) | 980 (100.0%) |
| | Total | 1989 (76.1%) | 626 (23.9%) | 2615 (100.0%) |
| ⑤ 성별 $\chi^2=36.79^{***}$ | 공립중 | 1417 (86.7%) | 218 (13.3%) | 1635 (100.0%) |
| | 사립중 | 923 (94.2%) | 57 (5.8%) | 980 (100.0%) |
| | Total | 2340 (89.5%) | 275 (10.5%) | 2615 (100.0%) |
| ⑥ 다른 나라/ 다문화 가정 $\chi^2=0.00$ | 공립중 | 1596 (97.6%) | 39 (2.4%) | 1635 (100.0%) |
| | 사립중 | 957 (97.7%) | 26 (2.3%) | 980 (100.0%) |
| | Total | 2553 (97.6%) | 62 (2.4%) | 2615 (100.0%) |
| ⑦ 장애 $\chi^2=1.42$ | 공립중 | 1559 (95.4%) | 76 (4.6%) | 1635 (100.0%) |
| | 사립중 | 944 (96.3%) | 36 (3.7%) | 980 (100.0%) |
| | Total | 2503 (95.7%) | 112 (4.3%) | 2615 (100.0%) |
| ⑧ 종교 $\chi^2=2.08$ | 공립중 | 1597 (97.7%) | 38 (2.3%) | 1635 (100.0%) |
| | 사립중 | 948 (96.7%) | 32 (3.3%) | 980 (100.0%) |
| | Total | 2545 (97.3%) | 70 (2.7%) | 2615 (100.0%) |
| ⑨ 성적 지향 (동성애, 양성애성향) $\chi^2=0.47$ | 공립중 | 1569 (96.0%) | 66 (4.0%) | 1635 (100.0%) |
| | 사립중 | 935 (95.4%) | 45 (4.6%) | 980 (100.0%) |
| | Total | 2504 (95.8%) | 111 (4.2%) | 2615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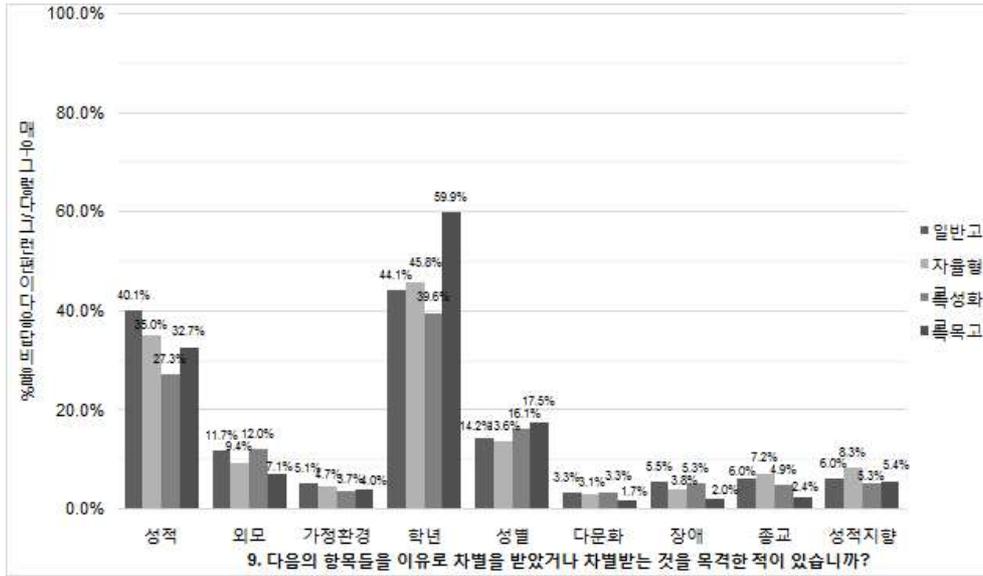


〈그림 2-9-2a〉 차별경험 (중학교 학교유형별)

〈표 2-9-2b〉 차별경험 (고등학교 학교유형별)

단위: 명(%)

| | 9. 아래의 이유로 차별을 받았거나 차별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Total | |
| ① 학교성적 $\chi^2=31.71***$ | 일반고 | 1233 (59.9%) | 826 (40.1%) | 2059 (100.0%) |
| | 자율형고 | 415 (65.0%) | 223 (35.0%) | 638 (100.0%) |
| | 특성화고 | 356 (72.7%) | 134 (27.3%) | 490 (100.0%) |
| | 특목고 | 200 (67.3%) | 97 (32.7%) | 297 (100.0%) |
| | Total | 2204 (63.3%) | 1280 (36.7%) | 3484 (100.0%) |
| ② 외모/생김새 $\chi^2=7.96*$ | 일반고 | 1818 (88.3%) | 241 (11.7%) | 2059 (100.0%) |
| | 자율형고 | 578 (90.6%) | 60 (9.4%) | 638 (100.0%) |
| | 특성화고 | 431 (88.0%) | 59 (12.0%) | 490 (100.0%) |
| | 특목고 | 276 (92.9%) | 21 (7.1%) | 297 (100.0%) |
| | Total | 3103 (89.1%) | 381 (10.9%) | 3484 (100.0%) |
| ③ 가정환경 (저소득, 이혼, 한부모가정) $\chi^2=2.00$ | 일반고 | 1955 (94.9%) | 104 (5.1%) | 2059 (100.0%) |
| | 자율형고 | 608 (95.3%) | 30 (4.7%) | 638 (100.0%) |
| | 특성화고 | 472 (96.3%) | 18 (3.7%) | 490 (100.0%) |
| | 특목고 | 285 (96.0%) | 12 (4.0%) | 297 (100.0%) |
| | Total | 3320 (95.3%) | 164 (4.7%) | 3484 (100.0%) |
| ④ 학년/나이 $\chi^2=33.34***$ | 일반고 | 1151 (55.9%) | 908 (44.1%) | 2059 (100.0%) |
| | 자율형고 | 346 (54.2%) | 292 (45.8%) | 638 (100.0%) |
| | 특성화고 | 296 (60.4%) | 194 (39.6%) | 490 (100.0%) |
| | 특목고 | 119 (40.1%) | 178 (59.9%) | 297 (100.0%) |
| | Total | 1912 (54.9%) | 1572 (45.1%) | 3484 (100.0%) |
| ⑤ 성별 $\chi^2=3.60$ | 일반고 | 1766 (85.8%) | 293 (14.2%) | 2059 (100.0%) |
| | 자율형고 | 551 (86.4%) | 87 (13.6%) | 638 (100.0%) |
| | 특성화고 | 411 (83.9%) | 79 (16.1%) | 490 (100.0%) |
| | 특목고 | 245 (82.5%) | 52 (17.5%) | 297 (100.0%) |
| | Total | 2973 (85.3%) | 511 (14.7%) | 3484 (100.0%) |
| ⑥ 다른나라/ 다문화가정 $\chi^2=2.28$ | 일반고 | 1991 (96.7%) | 68 (3.3%) | 2059 (100.0%) |
| | 자율형고 | 618 (96.9%) | 20 (3.1%) | 638 (100.0%) |
| | 특성화고 | 474 (96.7%) | 16 (3.3%) | 490 (100.0%) |
| | 특목고 | 292 (98.3%) | 5 (1.7%) | 297 (100.0%) |
| | Total | 3375 (96.9%) | 109 (3.1%) | 3484 (100.0%) |
| ⑦ 장애 $\chi^2=9.06*$ | 일반고 | 1945 (94.5%) | 114 (5.5%) | 2059 (100.0%) |
| | 자율형고 | 614 (96.2%) | 24 (3.8%) | 638 (100.0%) |
| | 특성화고 | 464 (94.7%) | 26 (5.3%) | 490 (100.0%) |
| | 특목고 | 291 (98.0%) | 6 (2.0%) | 297 (100.0%) |
| | Total | 3314 (95.1%) | 170 (4.9%) | 3484 (100.0%) |
| ⑧ 종교 $\chi^2=9.68*$ | 일반고 | 1936 (94.0%) | 123 (6.0%) | 2059 (100.0%) |
| | 자율형고 | 592 (92.8%) | 46 (7.2%) | 638 (100.0%) |
| | 특성화고 | 466 (95.1%) | 24 (4.9%) | 490 (100.0%) |
| | 특목고 | 290 (97.6%) | 7 (2.4%) | 297 (100.0%) |
| | Total | 3284 (94.3%) | 200 (5.7%) | 3484 (100.0%) |
| ⑨ 성적 지향 (동성애, 양성애성향) $\chi^2=5.87$ | 일반고 | 1935 (94.0%) | 124 (6.0%) | 2059 (100.0%) |
| | 자율형고 | 585 (91.7%) | 53 (8.3%) | 638 (100.0%) |
| | 특성화고 | 464 (94.7%) | 26 (5.3%) | 490 (100.0%) |
| | 특목고 | 281 (94.6%) | 16 (5.4%) | 297 (100.0%) |
| | Total | 3265 (93.7%) | 219 (6.3%) | 3484 (100.0%) |



〈그림 2-9-2b〉 차별경험 (고등학교 학교유형별)

〈표 2-9-3〉 차별경험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 | 9. 아래의 이유로 차별을 받았거나 차별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① 학교성적 $\chi^2=10.05^{**}$ | 비조례지역 | 2189 (68.7%) | 996 (31.3%) | 3185 (100.0%) |
| | 조례지역 | 2110 (72.4%) | 803 (27.6%) | 2913 (100.0%) |
| | Total | 4299 (70.5%) | 1799 (29.5%) | 6098 (100.0%) |
| ② 외모/생김새 $\chi^2=0.02$ | 비조례지역 | 2857 (89.7%) | 329 (10.3%) | 3186 (100.0%) |
| | 조례지역 | 2615 (89.8%) | 298 (10.2%) | 2913 (100.0%) |
| | Total | 5472 (89.7%) | 627 (10.3%) | 6099 (100.0%) |
| ③ 가정 환경 (저소득, 이혼, 한부모가정) $\chi^2=2.69$ | 비조례지역 | 3040 (95.4%) | 146 (4.6%) | 3186 (100.0%) |
| | 조례지역 | 2804 (96.3%) | 109 (3.7%) | 2913 (100.0%) |
| | Total | 5844 (95.8%) | 255 (4.2%) | 6099 (100.0%) |
| ④ 학년/나이 $\chi^2=5.32^*$ | 비조례지역 | 2081 (65.3%) | 1105 (34.7%) | 3186 (100.0%) |
| | 조례지역 | 1820 (62.5%) | 1093 (37.5%) | 2913 (100.0%) |
| | Total | 3901 (64.0%) | 2198 (36.0%) | 6099 (100.0%) |
| ⑤ 성별 $\chi^2=0.32$ | 비조례지역 | 2768 (86.9%) | 418 (13.1%) | 3186 (100.0%) |
| | 조례지역 | 2545 (87.4%) | 368 (12.6%) | 2913 (100.0%) |
| | Total | 5313 (87.1%) | 786 (12.9%) | 6099 (100.0%) |
| ⑥ 다른 나라/ 다문화 가정 $\chi^2=0.78$ | 비조례지역 | 3091 (97.0%) | 95 (3.0%) | 3186 (100.0%) |
| | 조례지역 | 2837 (97.4%) | 76 (2.6%) | 2913 (100.0%) |
| | Total | 5928 (97.2%) | 171 (2.8%) | 6099 (100.0%) |
| ⑦ 장애 $\chi^2=0.04$ | 비조례지역 | 3037 (95.3%) | 149 (4.7%) | 3186 (100.0%) |
| | 조례지역 | 2780 (95.4%) | 133 (4.6%) | 2913 (100.0%) |
| | Total | 5817 (95.4%) | 282 (4.6%) | 6099 (100.0%) |
| ⑧ 종교 $\chi^2=0.01$ | 비조례지역 | 3044 (95.5%) | 142 (4.5%) | 3186 (100.0%) |
| | 조례지역 | 2785 (95.6%) | 128 (4.4%) | 2913 (100.0%) |
| | Total | 5829 (95.6%) | 270 (4.4%) | 6099 (100.0%) |
| ⑨ 성적 지향 (동성·양성애) $\chi^2=4.83^*$ | 비조례지역 | 3033 (95.2%) | 153 (4.8%) | 3186 (100.0%) |
| | 조례지역 | 2736 (93.9%) | 177 (6.1%) | 2913 (100.0%) |
| | Total | 5769 (94.6%) | 330 (5.4%) | 6099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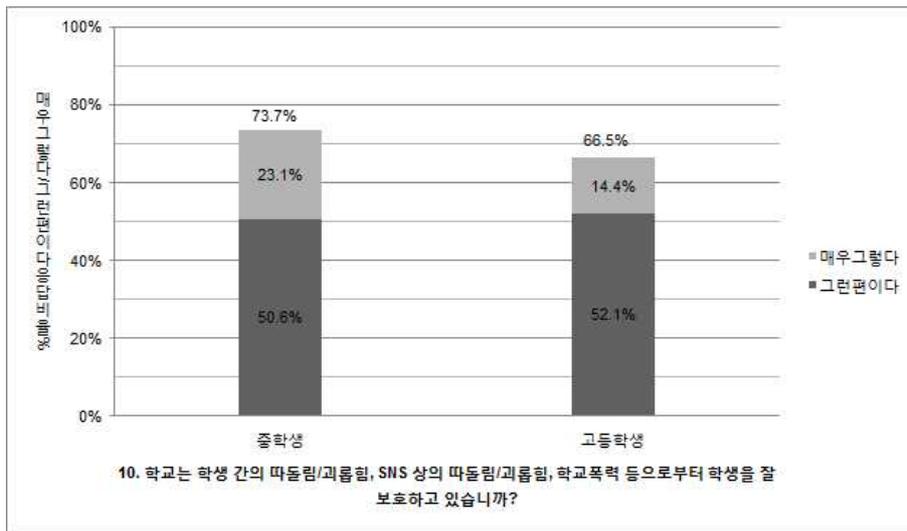
10)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6.3%, 고등학생은 33.5%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26.2%, 사립중학교는 26.5%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목고가 7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고가 63.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29.3%, 조례지역은 31.6%로 나타났다.

〈표 2-10-1〉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 (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36.56^{***}$ | 10. 학교는 학생 간의 따돌림/괴롭힘, SNS 상의 따돌림/괴롭힘,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을 잘 보호하고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응답자 | 중학생 | 688 (26.3%) | 1928 (73.7%) | 2616 (100.0%) |
| | 고등학생 | 1167 (33.5%) | 2317 (66.5%) | 3484 (100.0%) |
| Total | 1855 (30.4%) | 4245 (69.6%) | 6100 (1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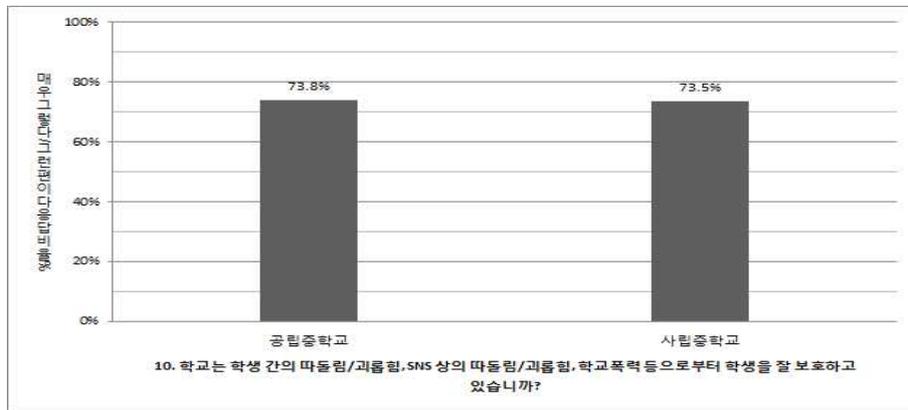


〈그림 2-10-1〉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 (학생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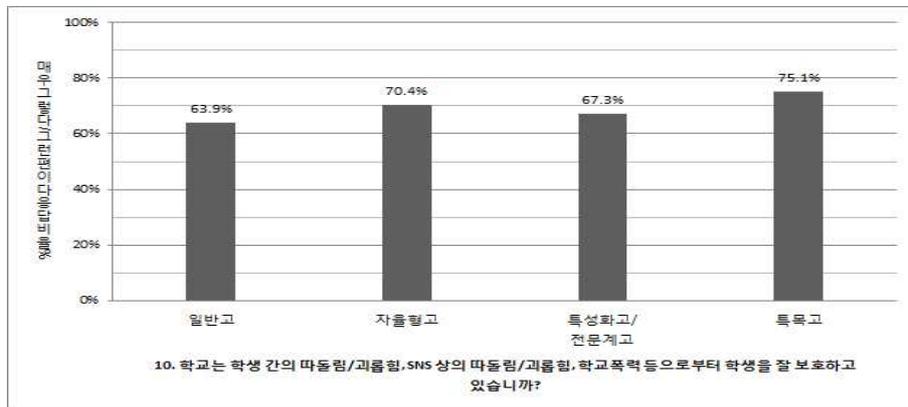
〈표 2-10-2〉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 (중/고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학교유형 | 10. 학교는 학생 간의 따돌림/괴롭힘, SNS 상의 따돌림/괴롭힘,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을 잘 보호하고 있습니까? | 10. 학교는 학생 간의 따돌림/괴롭힘, SNS 상의 따돌림/괴롭힘,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을 잘 보호하고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학교유형 $\chi^2=0.03$ | 공립중 | 428 (26.2%) | 1207 (73.8%) | 1635 (100.0%) |
| | 사립중 | 260 (26.5%) | 721 (73.5%) | 981 (100.0%) |
| Total | | 688 (26.3%) | 1928 (73.7%) | 2616 (100.0%) |
| 학교유형 $\chi^2=20.70***$ | 일반고 | 744 (36.1%) | 1315 (63.9%) | 2059 (100.0%) |
| | 자율형고 | 189 (29.6%) | 449 (70.4%) | 638 (100.0%) |
| | 특성화고 | 160 (32.7%) | 330 (67.3%) | 490 (100.0%) |
| | 특목고 | 74 (24.9%) | 223 (75.1%) | 297 (100.0%) |
| Total | | 1167 (33.5%) | 2317 (66.5%) | 3484 (100.0%) |



〈그림 2-10-2a〉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 (중학교유형)



〈그림 2-10-2b〉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 (고등학교유형)

〈표 2-10-3〉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chi^2=3.84^*$ | 10. 학교는 학생 간의 따돌림/괴롭힘, SNS 상의 따돌림/괴롭힘,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을 잘 보호하고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조례여부 | 비조례지역 | 934 (29.3%) | 2253 (70.7%) | 3187 (100.0%) |
| | 조례지역 | 921 (31.6%) | 1992 (68.4%) | 2913 (100.0%) |
| Total | | 1855 (30.4%) | 4245 (69.6%) | 610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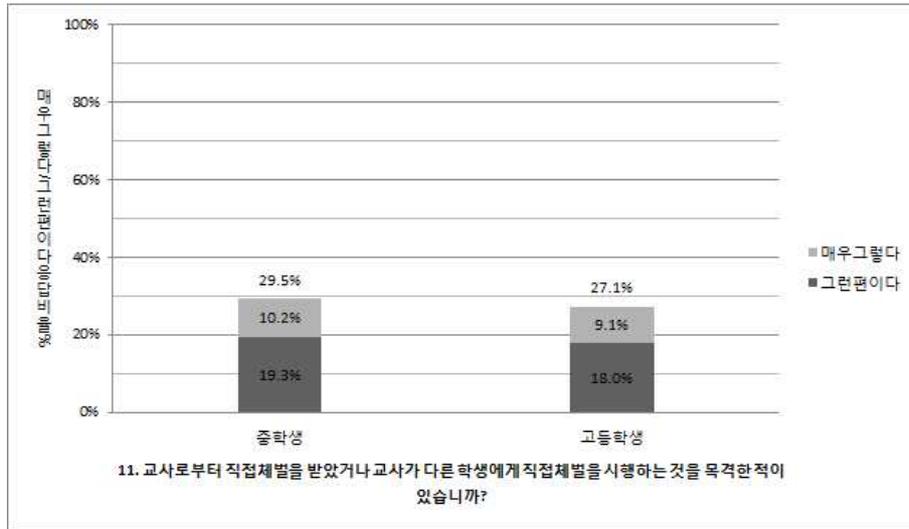
11) 직접체벌 경험

직접체벌을 받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9.5%, 고등학생은 27.1%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26.5%, 사립중학교는 34.5%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자율형고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1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32.4%, 조례지역은 23.5%가 그렇다 라고 답하여 비조례지역 보다 조례지역에서 직접체벌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2-11-1〉 직접체벌 경험 (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4.25^*$ | 11. 교사로부터 직접체벌을 받았거나 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직접체벌을 시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응답자 | 중학생 | 1843 (70.5%) | 772 (29.5%) | 2615 (100.0%) |
| | 고등학생 | 2539 (72.9%) | 945 (27.1%) | 3484 (100.0%) |
| Total | | 4382 (71.8%) | 1717 (28.2%) | 6099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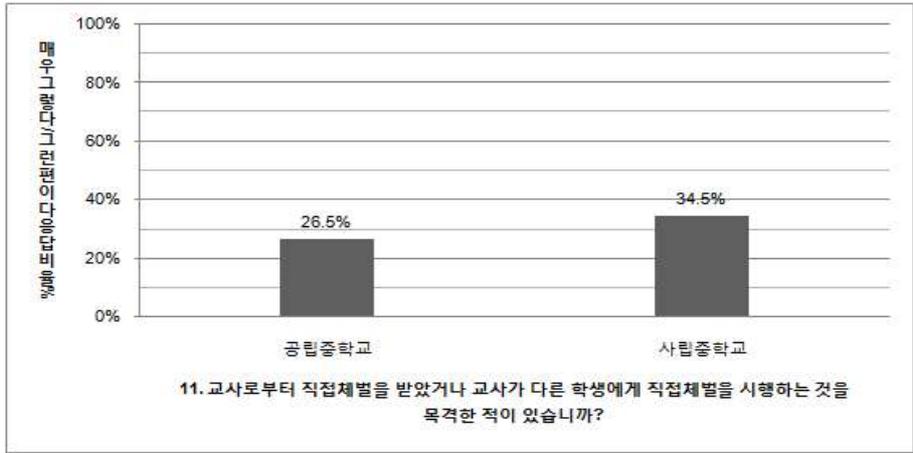


〈그림 2-11-1〉 직접체벌 경험 (학생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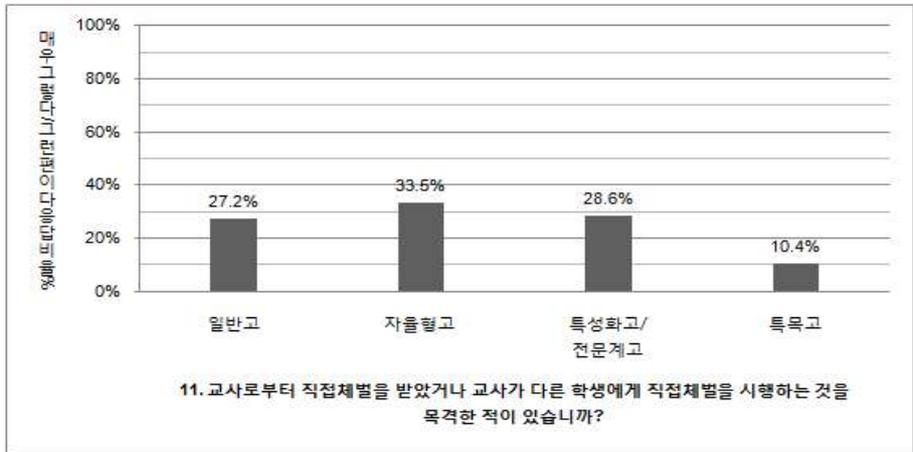
〈표 2-11-2〉 직접체벌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학교유형 | 공립중 | 11. 교사로부터 직접체벌을 받았거나 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직접체벌을 시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chi^2=18.59^{***}$ | 공립중 | 1201 (73.5%) | 434 (26.5%) | 1635 (100.0%) |
| | 사립중 | 642 (65.5%) | 338 (34.5%) | 980 (100.0%) |
| Total | | 1843 (70.5%) | 772 (29.5%) | 2615 (100.0%) |
| $\chi^2=55.66^{***}$ | 일반고 | 1499 (72.8%) | 560 (27.2%) | 2059 (100.0%) |
| | 자율형고 | 424 (66.5%) | 214 (33.5%) | 638 (100.0%) |
| | 특성화고 | 350 (71.4%) | 140 (28.6%) | 490 (100.0%) |
| | 특목고 | 266 (89.6%) | 31 (10.4%) | 297 (100.0%) |
| Total | | 2539 (72.9%) | 945 (27.1%) | 3484 (100.0%) |



〈그림 2-11-2a〉 직접체벌 경험 (중학교유형)



〈그림 2-11-2b〉 직접체벌 경험 (고등학교유형)

〈표 2-11-3〉 직접체벌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chi^2=60.16^{***}$ | 11. 교사로부터 직접체벌을 받았거나 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직접체벌을 시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조례여부 | 비조례지역 | 2153 (67.6%) | 1033 (32.4%) | 3186 (100.0%) |
| | 조례지역 | 2229 (76.5%) | 684 (23.5%) | 2913 (100.0%) |
| Total | 4382 (71.8%) | 1717 (28.2%) | 6099 (1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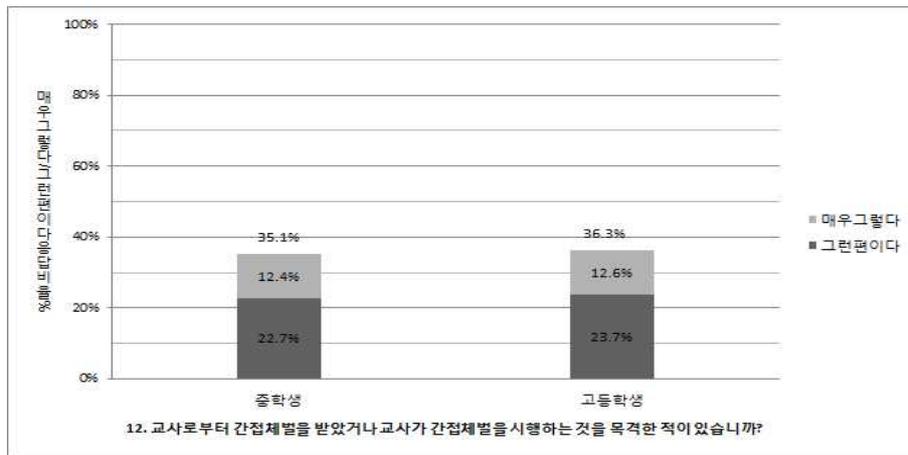
12) 간접체벌 경험

간접체벌을 받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35.1%, 고등학생은 36.3%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33.1%, 사립중학교는 38.5%로 나타났다. 직접체벌과 같이 사립중학교에서 간접체벌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자율형고가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1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40.6%, 조례지역은 30.5%로 직접체벌과 마찬가지로 조례지역에서의 간접체벌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2-12-1〉 간접체벌 경험 (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88$ | 12. 교사로부터 간접체벌을 받았거나 교사가 간접체벌을 시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Total | |
| 응답자 | 중학생 | 1696 (64.9%) | 918 (35.1%) | 2614 (100.0%) |
| | 고등학생 | 2220 (63.7%) | 1264 (36.3%) | 3484 (100.0%) |
| Total | 3916 (64.2%) | 2182 (35.8%) | 6098 (1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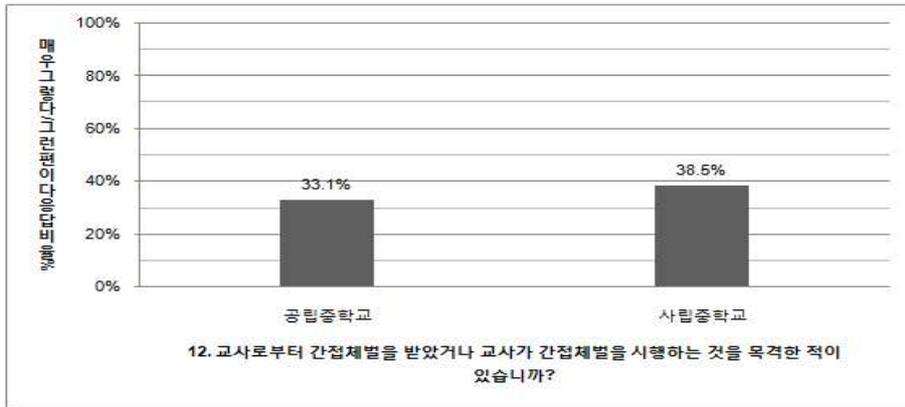


〈그림 2-12-1〉 간접체벌 경험 (학생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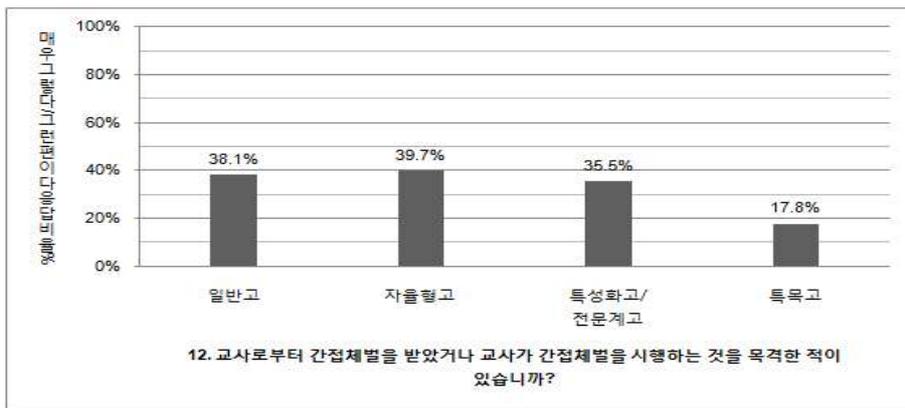
〈표 2-12-2〉 간접체벌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 | 12. 교사로부터 간접체벌을 받았거나 교사가 간접체벌을 시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학교유형 | 공립중 | 1094 (66.9%) | 541 (33.1%) | 1635 (100.0%) |
| | 사립중 | 602 (61.5%) | 377 (38.5%) | 979 (100.0%) |
| Total | | 1696 (64.9%) | 918 (35.1%) | 2614 (100.0%) |
| 학교유형 | 일반고 | 1275 (61.9%) | 784 (38.1%) | 2059 (100.0%) |
| | 자율형고 | 385 (60.3%) | 253 (39.7%) | 638 (100.0%) |
| | 특성화고 | 316 (64.5%) | 174 (35.5%) | 490 (100.0%) |
| | 특목고 | 244 (82.2%) | 53 (17.8%) | 297 (100.0%) |
| Total | | 2220 (63.7%) | 1264 (36.3%) | 3484 (100.0%) |



〈그림 2-12-2a〉 간접체벌 경험 (중학교유형)



〈그림 2-12-2b〉 간접체벌 경험 (고등학교유형)

〈표 2-12-3〉 간접체벌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chi^2=67.25^{***}$ | 12. 교사로부터 간접체벌을 받았거나 교사가 간접체벌을 시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조례여부 | 비조례지역 | 1892 (59.4%) | 1293 (40.6%) | 3185 (100.0%) |
| | 조례지역 | 2024 (69.5%) | 889 (30.5%) | 2913 (100.0%) |
| Total | | 3916 (64.2%) | 2182 (35.8%) | 6098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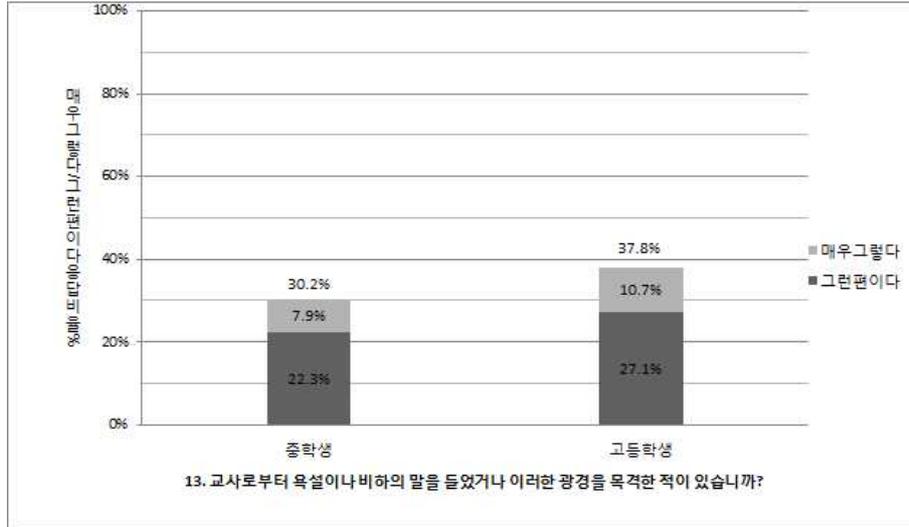
13)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교사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30.2%, 고등학생은 37.8%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체벌(직접 28.2%/간접 35.8%) 또는 언어폭력(34.5%)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학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29.4%, 사립중학교는 31.5%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일반고가 38.8%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모든 유형 전체 37.8%로 언어폭력 경험이나 목격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35.1%, 조례지역은 33.9%가 그렇다 라고 답하여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13-1〉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 (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38.58^{***}$ | 13. 교사로부터 욕설이나 비하의 말을 들었거나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응답자 | 중학생 | 1827 (69.8%) | 789 (30.2%) | 2616 (100.0%) |
| | 고등학생 | 2167 (62.2%) | 1317 (37.8%) | 3484 (100.0%) |
| Total | | 3994 (65.5%) | 2106 (34.5%) | 610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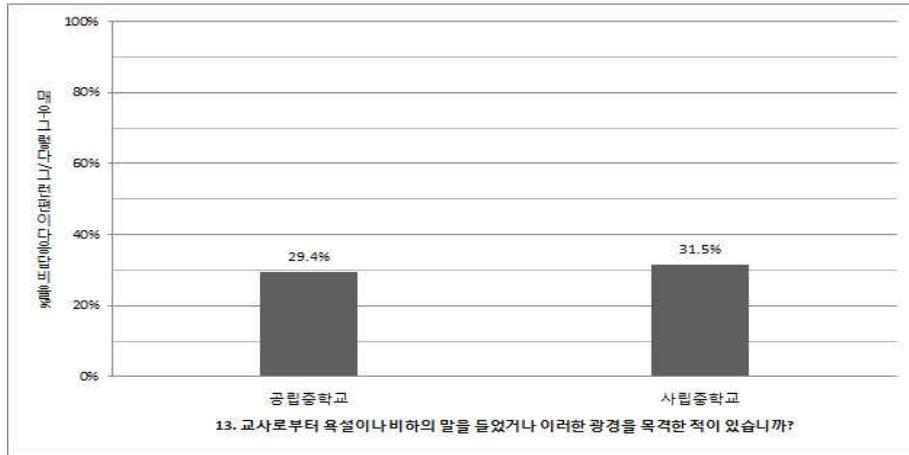


〈그림 2-13-1〉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 (학생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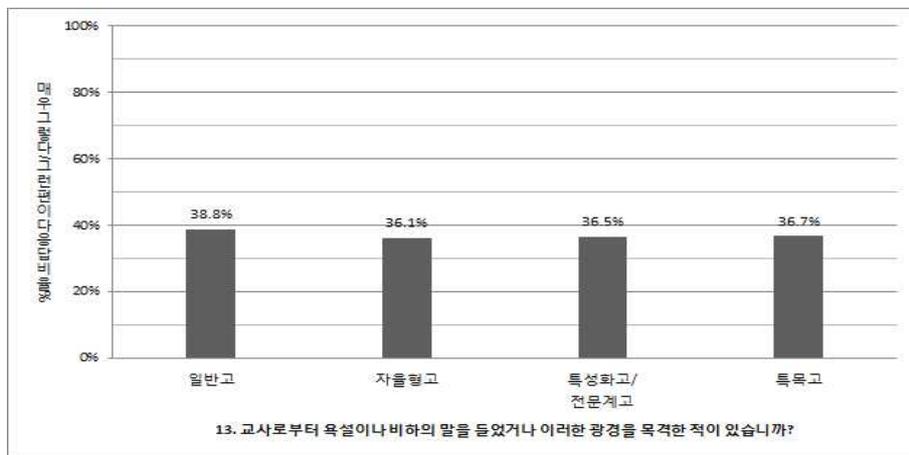
〈표 2-13-2〉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 | 13. 교사로부터 욕설이나 비하의 말을 들었거나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학교유형 | 공립중 | 1155 (70.6%) | 480 (29.4%) | 1635 (100.0%) |
| | 사립중 | 672 (68.5%) | 309 (31.5%) | 981 (100.0%) |
| $\chi^2=1.33$ | | | | |
| Total | | 1827 (69.8%) | 789 (30.2%) | 2616 (100.0%) |
| 학교유형 | 일반고 | 1260 (61.2%) | 799 (38.8%) | 2059 (100.0%) |
| | 자율형고 | 408 (63.9%) | 230 (36.1%) | 638 (100.0%) |
| | 특성화고 | 311 (63.5%) | 179 (36.5%) | 490 (100.0%) |
| | 특목고 | 188 (63.3%) | 109 (36.7%) | 297 (100.0%) |
| $\chi^2=2.20$ | | | | |
| Total | | 2167 (62.2%) | 1317 (37.8%) | 3484 (100.0%) |



〈그림 2-13-2a〉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 (중학교유형)



〈그림 2-13-2b〉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 (고등학교유형)

〈표 2-13-3〉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chi^2=0.91$ | | 13. 교사로부터 욕설이나 비하의 말을 들었거나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조례여부 | 비조례지역 | 2069 (64.9%) | 1118 (35.1%) | 3187 (100.0%) |
| | 조례지역 | 1925 (66.1%) | 988 (33.9%) | 2913 (100.0%) |
| Total | | 3994 (65.5%) | 2106 (34.5%) | 610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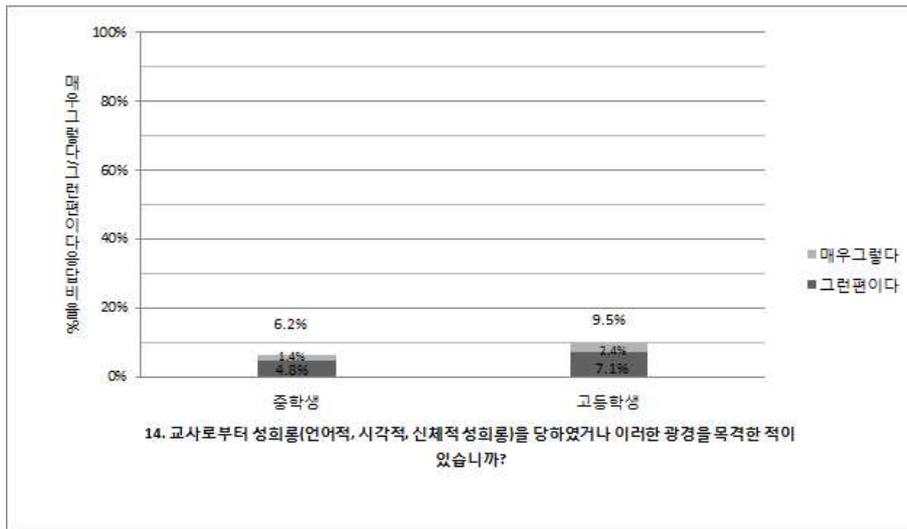
14) 교사에 의한 성희롱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6.2%, 고등학생은 9.5%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는 공립중학교는 5.1%, 사립중학교는 8.2%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일반고가 1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8.1%, 조례지역은 8.0%로 나타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2-14-1〉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 (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21.13^{***}$ | 14. 교사로부터 성희롱(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성희롱)을 당하였거나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응답자 | 중학생 | 2453 (93.8%) | 163 (6.2%) | 2616 (100.0%) |
| | 고등학생 | 3154 (90.5%) | 330 (9.5%) | 3484 (100.0%) |
| Total | 5607 (91.9%) | 493 (8.1%) | 6100 (1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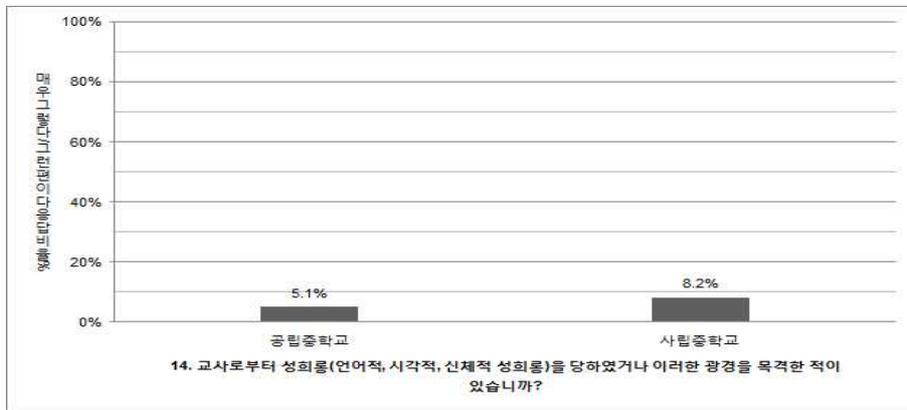


〈그림 2-14-1〉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 (학생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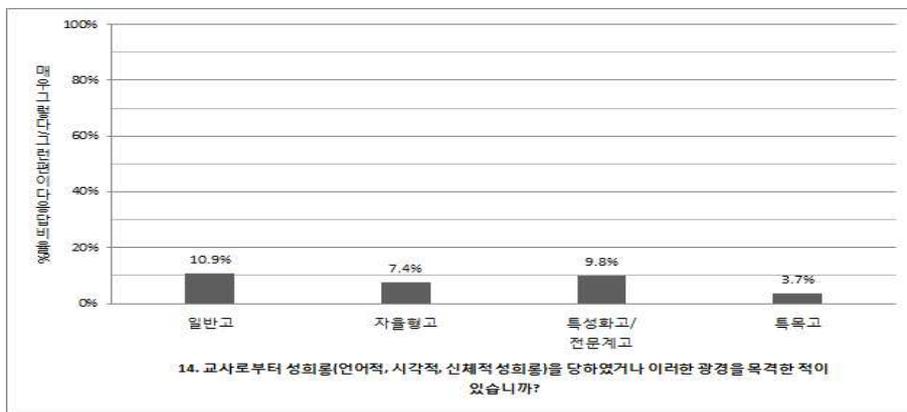
〈표 2-14-2〉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 | 14. 교사로부터 성희롱(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성희롱)을 당하였거나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학교유형 | 공립중 | 1552 (94.9%) | 83 (5.1%) | 1635 (100.0%) |
| | 사립중 | 901 (91.8%) | 80 (8.2%) | 981 (100.0%) |
| Total | | 2453 (93.8%) | 163 (6.2%) | 2616 (100.0%) |
| 학교유형 | 일반고 | 1835 (89.1%) | 224 (10.9%) | 2059 (100.0%) |
| | 자율형고 | 591 (92.6%) | 47 (7.4%) | 638 (100.0%) |
| | 특성화고 | 442 (90.2%) | 48 (9.8%) | 490 (100.0%) |
| | 특목고 | 286 (96.3%) | 11 (3.7%) | 297 (100.0%) |
| Total | | 3154 (90.5%) | 330 (9.5%) | 3484 (100.0%) |



〈그림 2-14-2a〉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 (중학교유형)



〈그림 2-14-2b〉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 (고등학교유형)

〈표 2-14-3〉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chi^2=0.02$ | 14. 교사로부터 성희롱(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성희롱)을 당하였거나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Total |
| 조례여부 비조례지역 | 2928 (91.9%) | 259 (8.1%) | 3187 (100.0%) |
| | 2679 (92.0%) | 234 (8.0%) | 2913 (100.0%) |
| Total | 5607 (91.9%) | 493 (8.1%) | 6100 (100.0%) |

15) 상·벌점제 운영 여부 및 공정한 상·벌점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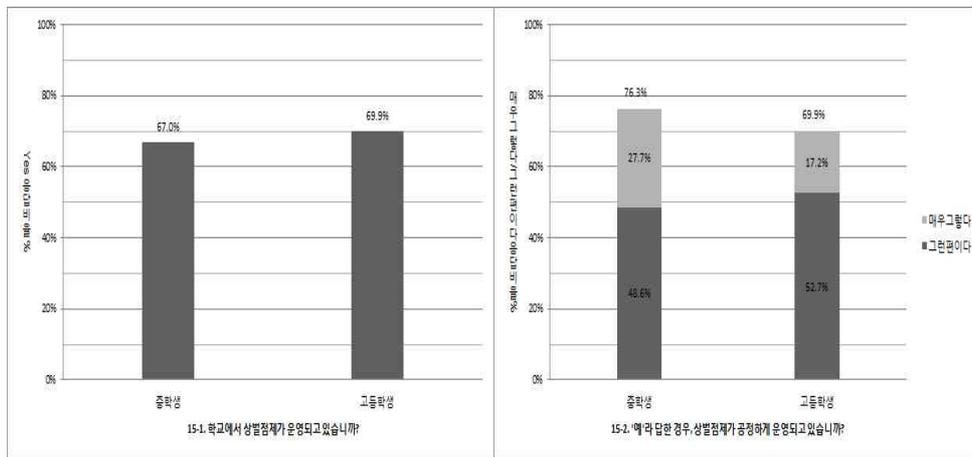
학교에서 상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학생은 67.0%, 고등학생은 69.9%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운영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중학생은 33.0%, 고등학생은 30.1%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69.2%, 사립중학교는 63.3%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공립중학교는 30.8%, 사립중학교는 36.7%로 나타났다. 상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목고가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고가 68.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84.7%, 조례지역은 51.1%가 운영하고 있다. 제도 운영에 있어 비조례지역과 조례지역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상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제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3.6%, 고등학생은 30.2%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25.1%, 사립중학교는 21.1%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일반고가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24.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74.4%, 조례지역은 69.6%가 그렇다 라고 답하여 비조례지역이 조례지역 보다 조금 높게 상벌점 제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5-1〉 상·벌점제 운영 여부 및 공정한 상·벌점제 운영 (학생유형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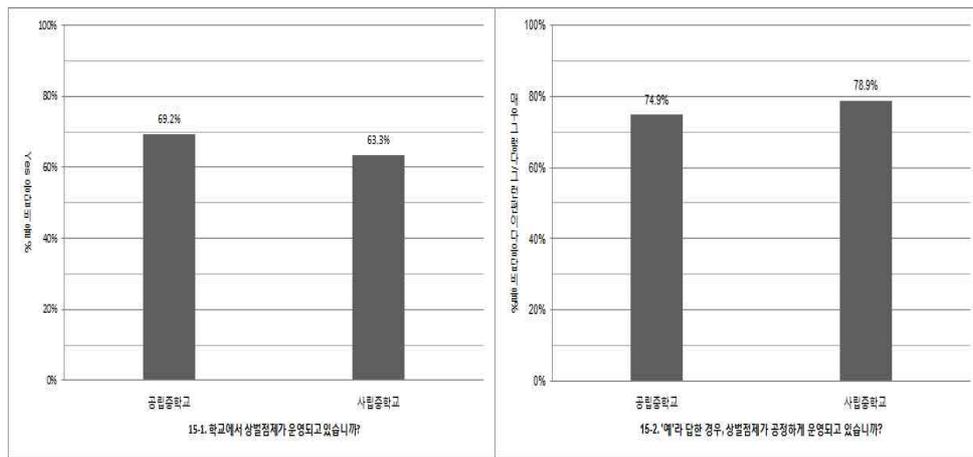
| $\chi^2=6.03^*$ | 15-1. 학교에서 상벌점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 Total | |
|----------------------|--|--------------|---------------|---------------|
| | No | Yes | | |
| 응답자 | 중학생 | 864 (33.0%) | 1752 (67.0%) | 2616 (100.0%) |
| | 고등학생 | 1048 (30.1%) | 2436 (69.9%) | 3484 (100.0%) |
| Total | 1912 (31.3%) | 4188 (68.7%) | 6100 (100.0%) | |
| $\chi^2=22.85^{***}$ | 15-2. '예' 라 답한 경우, 상벌점제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 Total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응답자 | 중학생 | 437 (23.6%) | 1411 (76.4%) | 1848 (100.0%) |
| | 고등학생 | 770 (30.2%) | 1783 (69.8%) | 2553 (100.0%) |
| Total | 1207 (27.4%) | 3194 (72.6%) | 4401 (1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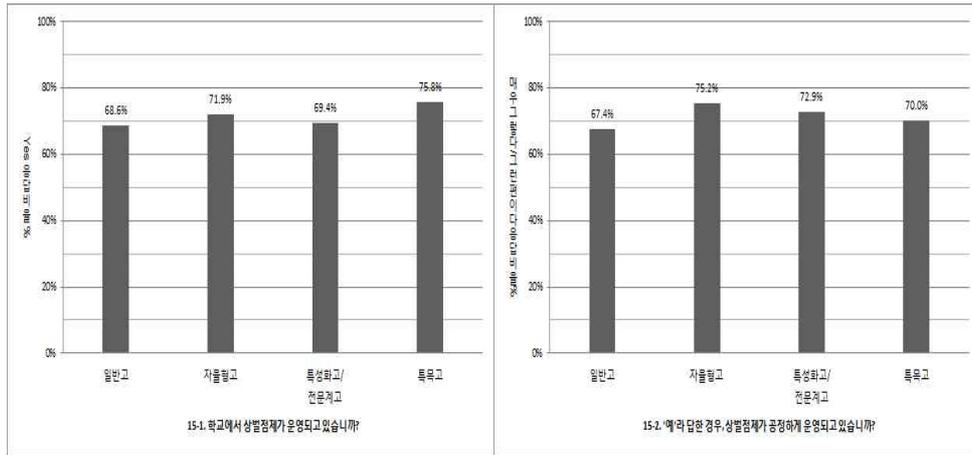
〈그림 2-15-1〉 상·벌점제 운영 여부 및 공정한 상·벌점제 운영 (학생유형별)

〈표 2-15-2〉 상·벌점제 운영 여부 및 공정한 상·벌점제 운영 (중/고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 | 15-1. 학교에서 상벌점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 Total |
|-------|------|--|--------------|---------------|
| | | No | Yes | |
| 학교유형 | 공립중 | 504 (30.8%) | 1131 (69.2%) | 1635 (100.0%) |
| | 사립중 | 360 (36.7%) | 621 (63.3%) | 981 (100.0%) |
| Total | | 864 (33.0%) | 1752 (67.0%) | 2616 (100.0%) |
| 학교유형 | 일반고 | 647 (31.4%) | 1412 (68.6%) | 2059 (100.0%) |
| | 자율형고 | 179 (28.1%) | 459 (71.9%) | 638 (100.0%) |
| | 특성화고 | 150 (30.6%) | 340 (69.4%) | 490 (100.0%) |
| | 특목고 | 72 (24.2%) | 225 (75.8%) | 297 (100.0%) |
| Total | | 1048 (30.1%) | 2436 (69.9%) | 3484 (100.0%) |
| | | 15-2. '예' 라 답한 경우, 상벌점제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 Total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학교유형 | 공립중 | 297 (25.1%) | 888 (74.9%) | 1185 (100.0%) |
| | 사립중 | 140 (21.1%) | 523 (78.9%) | 663 (100.0%) |
| Total | | 437 (23.6%) | 1411 (76.4%) | 1848 (100.0%) |
| 학교유형 | 일반고 | 486 (32.6%) | 1003 (67.4%) | 1489 (100.0%) |
| | 자율형고 | 118 (24.8%) | 358 (75.2%) | 476 (100.0%) |
| | 특성화고 | 97 (27.1%) | 261 (72.9%) | 358 (100.0%) |
| | 특목고 | 69 (30.0%) | 161 (70.0%) | 230 (100.0%) |
| Total | | 770 (30.2%) | 1783 (69.8%) | 2553 (100.0%) |



〈그림 2-15-2a〉 상·벌점제 운영 여부 및 공정한 상·벌점제 운영 (중학교유형)



〈그림 2-15-2b〉 상·벌점제 운영 여부 및 공정한 상·벌점제 운영 (고등학교유형)

〈표 2-15-3〉 상·벌점제 운영 여부 및 공정한 상·벌점제 운영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chi^2=800.23^{***}$ | 15-1. 학교에서 상벌점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 Total | |
|-----------------------|-----------------------------|--------------|--------------|---------------|
| | No | Yes | | |
| 조례여부 | 비조례지역 | 487 (15.3%) | 2700 (84.7%) | 3187 (100.0%) |
| | 조례지역 | 1425 (48.9%) | 1488 (51.1%) | 2913 (100.0%) |
| Total | | 1912 (31.3%) | 4188 (68.7%) | 6100 (100.0%) |

| $\chi^2=11.83^{***}$ | 15-2. '예'라 답한 경우, 상벌점제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조례여부 | 비조례지역 | 708 (25.6%) | 2053 (74.4%) | 2761 (100.0%) |
| | 조례지역 | 499 (30.4%) | 1141 (69.6%) | 1640 (100.0%) |
| Total | | 1207 (27.4%) | 3194 (72.6%) | 4401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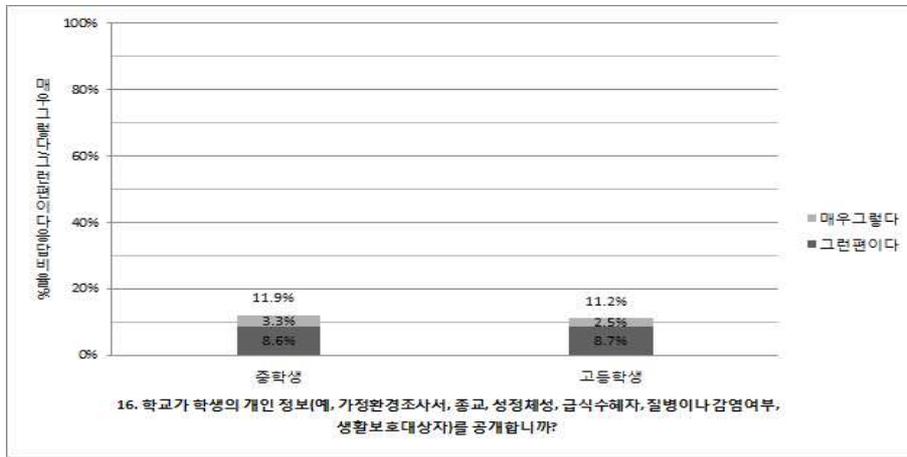
16) 학생 개인정보 공개

학생의 신상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1.9%, 고등학생은 11.2%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12.7%, 사립중학교는 10.5%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성화고/전문계고가 1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8.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12.7%, 조례지역은 10.2%가 그렇지 라고 답하여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16-1〉 학생 개인정보 공개 (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6.63$ | 16. 학교가 학생의 개인 정보(예, 가정환경조사서, 종교, 급식수혜자, 질병이나 감염여부, 생활보호대상자)를 공개합니까? |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응답자 | 중학생 | 2306 (88.1%) | 310 (11.9%) | 2616 (100.0%) |
| | 고등학생 | 3094 (88.8%) | 390 (11.2%) | 3484 (100.0%) |
| Total | | 5400 (88.5%) | 700 (11.5%) | 610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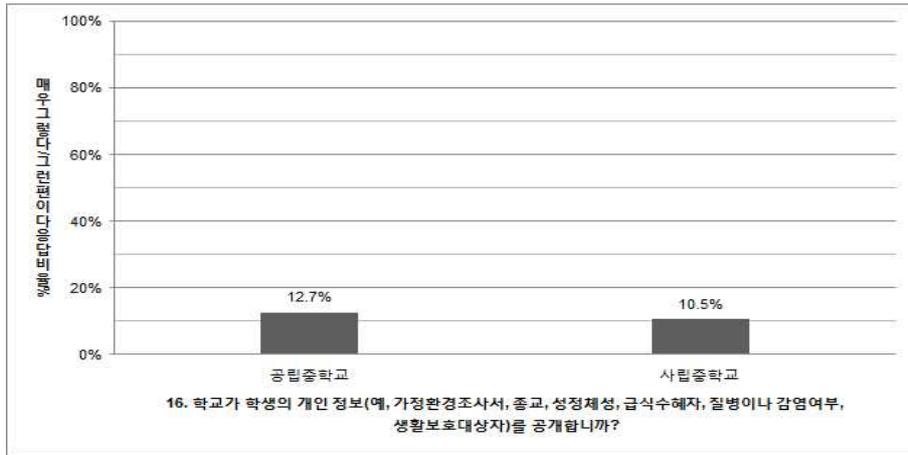


〈그림 2-16-1〉 학생 개인정보 공개 (학생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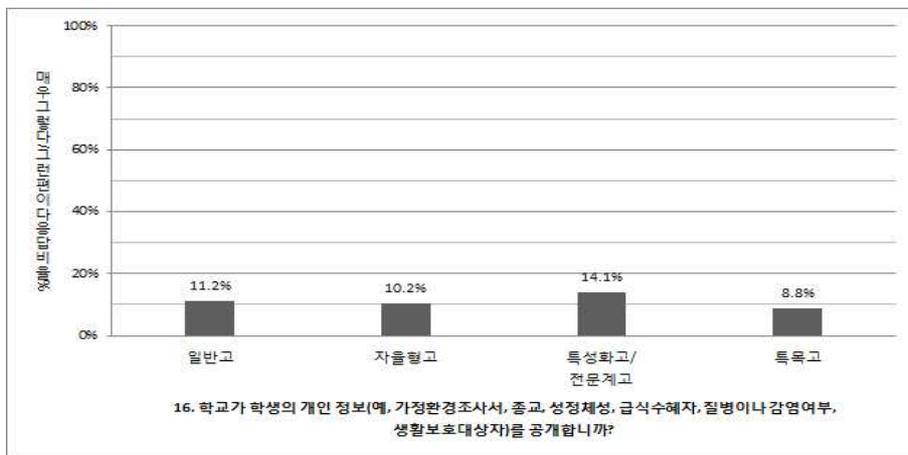
〈표 2-16-2〉 학생 개인정보 공개 (중/고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chi^2=2.74$ | 16. 학교가 학생의 개인 정보(예, 가정환경조사서, 종교, 급식수혜자, 질병이나 감염여부, 생활보호대상자)를 공개합니까? | | | Total |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학교유형 | 공립중 | 1428 (87.3%) | 207 (12.7%) | 1635 (100.0%) | |
| | 사립중 | 878 (89.5%) | 103 (10.5%) | 981 (100.0%) | |
| Total | | 2306 (88.1%) | 310 (11.9%) | 2616 (100.0%) | |
| $\chi^2=6.54$ | 학교유형 | 일반고 | 1829 (88.8%) | 230 (11.2%) | 2059 (100.0%) |
| | | 자율형고 | 573 (89.8%) | 65 (10.2%) | 638 (100.0%) |
| | | 특성화고 | 421 (85.9%) | 69 (14.1%) | 490 (100.0%) |
| | | 특목고 | 271 (91.2%) | 26 (8.8%) | 297 (100.0%) |
| Total | | 3094 (88.8%) | 390 (11.2%) | 3484 (100.0%) | |



〈그림 2-16-2a〉 학생 개인정보 공개 (중학교유형)



〈그림 2-16-2b〉 학생 개인정보 공개 (고등학교유형)

〈표 2-16-3〉 학생 개인정보 공개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chi^2=9.48^{**}$ | 16. 학교가 학생의 개인 정보(예, 가정환경조사서, 종교, 급식수혜자, 질병이나 감염여부, 생활보호대상자)를 공개합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조례여부 | 비조례지역 | 2783 (87.3%) | 404 (12.7%) | 3187 (100.0%) |
| | 조례지역 | 2617 (89.8%) | 296 (10.2%) | 2913 (100.0%) |
| Total | 5400 (88.5%) | 700 (11.5%) | 6100 (1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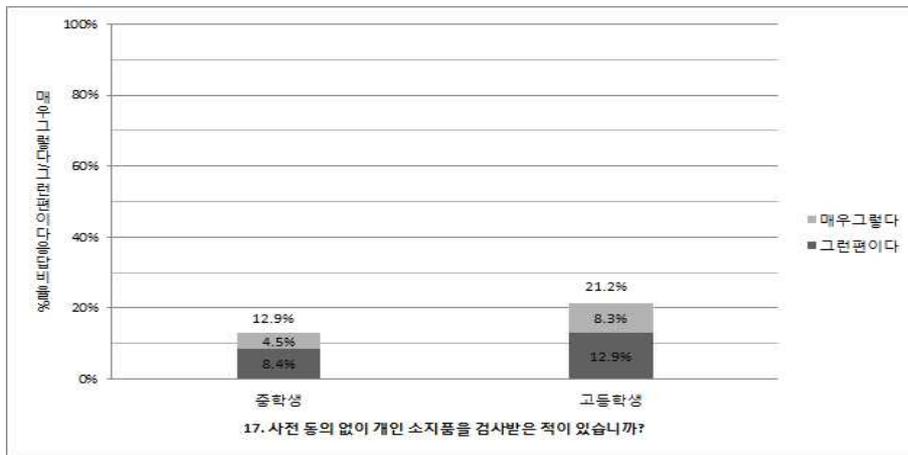
17)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2.9%, 고등학생은 21.2%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고등학생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11.5%, 사립중학교는 15.2%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성화고/전문계고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13.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23.2%, 조례지역은 11.5%로 나타나 조례지역이 비조례지역보다 검사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17-1〉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71.35^{***}$ | 17.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을 검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응답자 | 중학생 | 2279 (87.1%) | 337 (12.9%) | 2616 (100.0%) |
| | 고등학생 | 2745 (78.8%) | 739 (21.2%) | 3484 (100.0%) |
| Total | | 5024 (82.4%) | 1076 (17.6%) | 610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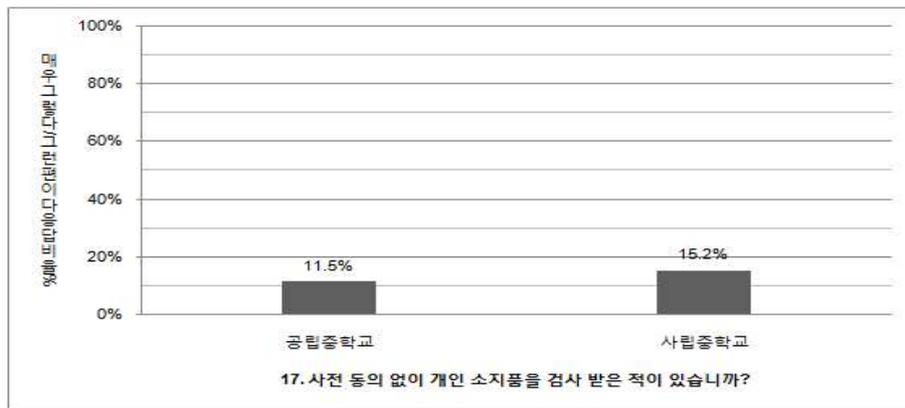


〈그림 2-17-1〉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학생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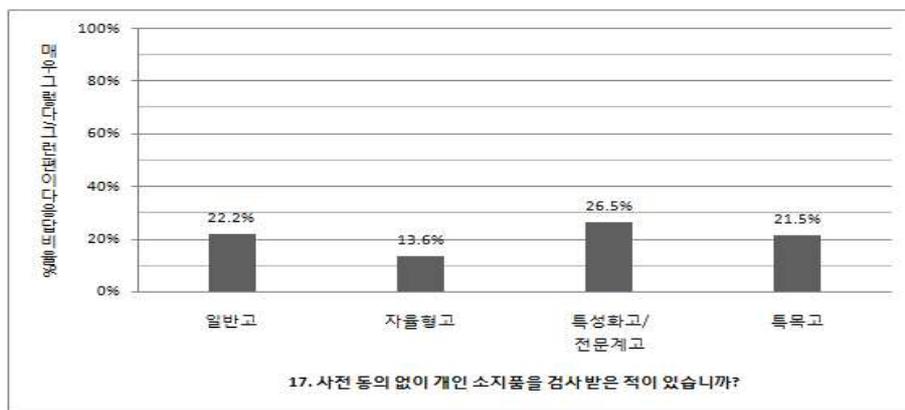
〈표 2-17-2〉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 | 17.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을 검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학교유형 | 공립중 | 1447 (88.5%) | 188 (11.5%) | 1635 (100.0%) |
| | 사립중 | 832 (84.8%) | 149 (15.2%) | 981 (100.0%) |
| Total | | 2279 (87.1%) | 337 (12.9%) | 2616 (100.0%) |
| 학교유형 | 일반고 | 1601 (77.8%) | 458 (22.2%) | 2059 (100.0%) |
| | 자율형고 | 551 (86.4%) | 87 (13.6%) | 638 (100.0%) |
| | 특성화고 | 360 (73.5%) | 130 (26.5%) | 490 (100.0%) |
| | 특목고 | 233 (78.5%) | 64 (21.5%) | 297 (100.0%) |
| Total | | 2745 (78.8%) | 739 (21.2%) | 3484 (100.0%) |



〈그림 2-17-2a〉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중학교유형)



〈그림 2-17-2b〉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고등학교유형)

〈표 2-17-3〉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chi^2=143.03^{***}$ | 17.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을 검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조례여부 | 비조례지역 | 2447 (76.8%) | 740 (23.2%) | 3187 (100.0%) |
| | 조례지역 | 2577 (88.5%) | 336 (11.5%) | 2913 (100.0%) |
| Total | | 5024 (82.4%) | 1076 (17.6%) | 610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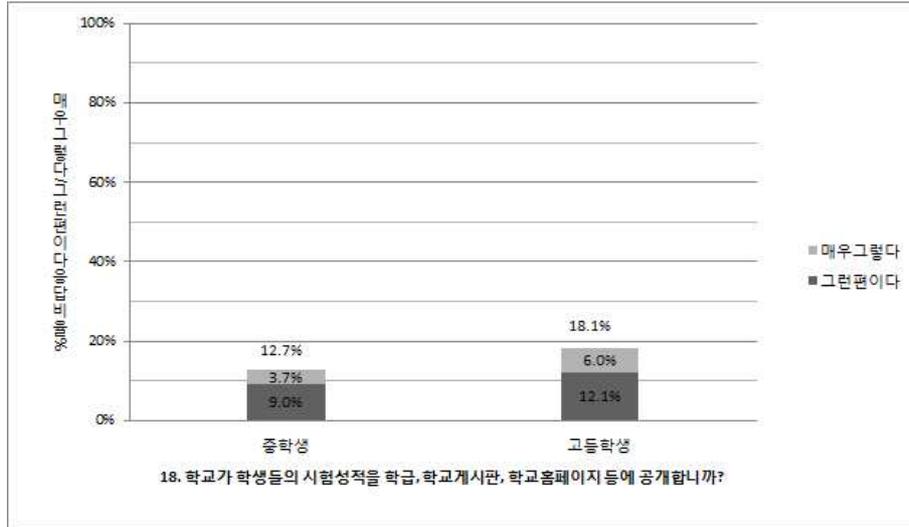
18) 성적 공개

시험 성적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2.7%, 고등학생은 18.1%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 중학교는 11.6%, 사립중학교는 14.7%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일반고가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14.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17.8%, 조례지역은 13.6%가 그렇다 라고 답하여 조례지역이 비조례지역 보다 공개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18-1〉 성적 공개 (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32.52^{***}$ | 18. 학교가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학급,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응답자 | 중학생 | 2283 (87.3%) | 333 (12.7%) | 2616 (100.0%) |
| | 고등학생 | 2853 (81.9%) | 631 (18.1%) | 3484 (100.0%) |
| Total | | 5136 (84.2%) | 964 (15.8%) | 6100 (100.0%) |



〈그림 2-18-1〉 성적 공개 (학생유형별)

〈표 2-18-2〉 성적 공개 (중/고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 | 18. 학교가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학급,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학교유형 | 공립중 | 1446 (88.4%) | 189 (11.6%) | 1635 (100.0%) |
| | 사립중 | 837 (85.3%) | 144 (14.7%) | 981 (100.0%) |
| Total | | 2283 (87.3%) | 333 (12.7%) | 2616 (100.0%) |
| 학교유형 | 일반고 | 1648 (80.0%) | 411 (20.0%) | 2059 (100.0%) |
| | 자율형고 | 543 (85.1%) | 95 (14.9%) | 638 (100.0%) |
| | 특성화고 | 415 (84.7%) | 75 (15.3%) | 490 (100.0%) |
| | 특목고 | 247 (83.2%) | 50 (16.8%) | 297 (100.0%) |
| Total | | 2853 (81.9%) | 631 (18.1%) | 3484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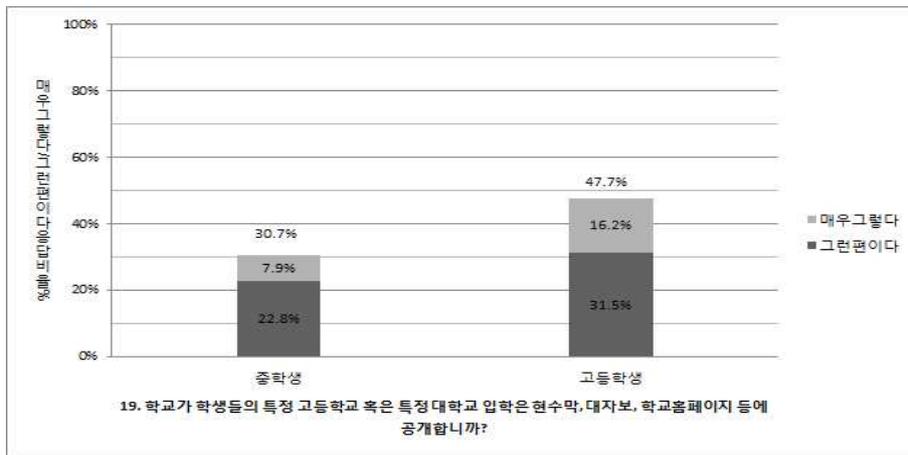
19) 특정 학교 입학 공개

특정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학 사실을 공개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30.7%, 고등학생은 47.7%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 중학교는 26.7%, 사립중학교는 37.3%로 나타나 사립중학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성화고/전문계고가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3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43.2%, 조례지역은 37.3%로 나타나 조례지역이 비조례지역 보다 공개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19-1〉 특정 학교 입학 공개 (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179.44^{***}$ | 19. 학교가 학생들의 특정 고등학교 혹은 특정 대학교 입학은 현수막, 대자보,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까? | | |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Total |
| 응답자 | 중학생 | 1813 (69.3%) | 802 (30.7%) | 2615 (100.0%) |
| | 고등학생 | 1823 (52.3%) | 1661 (47.7%) | 3484 (100.0%) |
| Total | | 3636 (59.6%) | 2463 (40.4%) | 6099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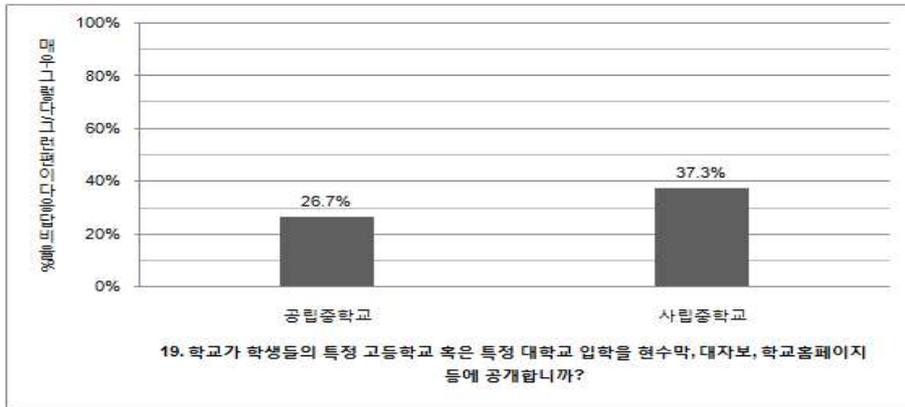


〈그림 2-19-1〉 특정 학교 입학 공개 (학생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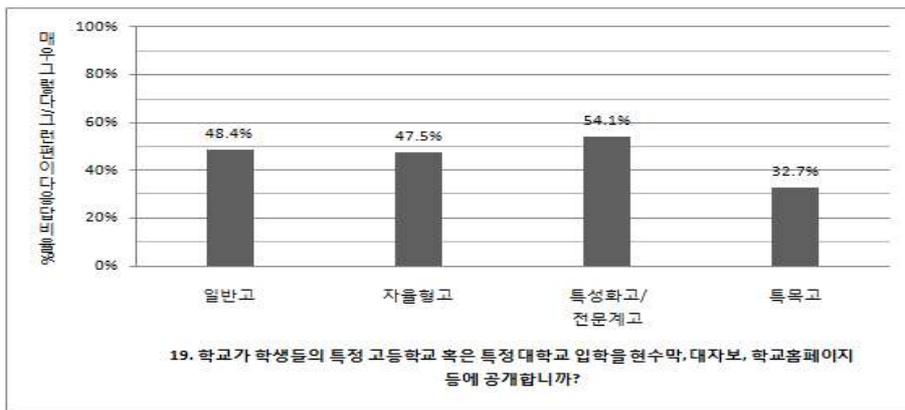
〈표 2-19-2〉 특정 학교 입학 공개 (중/고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학교유형 | 19. 학교가 학생들의 특정 고등학교 혹은 특정 대학교 입학을 현수막, 대자보,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까? | 19. 학교가 학생들의 특정 고등학교 혹은 특정 대학교 입학을 현수막, 대자보,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chi^2=32.87^{***}$ 공립중 사립중 | 공립중 | 1199 (73.3%) | 436 (26.7%) | 1635 (100.0%) |
| | 사립중 | 614 (62.7%) | 366 (37.3%) | 980 (100.0%) |
| Total | | 1813 (69.3%) | 802 (30.7%) | 2615 (100.0%) |
| $\chi^2=35.32^{***}$ 일반고 자율형고 특성화고 특목고 | 일반고 | 1063 (51.6%) | 996 (48.4%) | 2059 (100.0%) |
| | 자율형고 | 335 (52.5%) | 303 (47.5%) | 638 (100.0%) |
| | 특성화고 | 225 (45.9%) | 265 (54.1%) | 490 (100.0%) |
| | 특목고 | 200 (67.3%) | 97 (32.7%) | 297 (100.0%) |
| Total | | 1823 (52.3%) | 1661 (47.7%) | 3484 (100.0%) |



〈그림 2-19-2a〉 특정 학교 입학 공개 (중학교유형)



〈그림 2-19-2b〉 특정 학교 입학 공개 (고등학교유형)

〈표 2-19-3〉 특정 학교 입학 공개 (조례시행여부)

단위: 명(%)

| $\chi^2=21.32^{***}$ | 19. 학교가 학생들의 특정 고등학교 혹은 특정 대학교 입학을 현수막, 대자보,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조례여부 | 비조례지역 | 1811 (56.8%) | 1375 (43.2%) | 3186 (100.0%) |
| | 조례지역 | 1825 (62.7%) | 1088 (37.3%) | 2913 (100.0%) |
| Total | | 3636 (59.6%) | 2463 (40.4%) | 6099 (100.0%) |

20)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두발길이나 모양 제한에 대해 중학생은 54.6%, 고등학생은 52.6%, 교복 외의 점퍼 착용 제한에 대해 중학생은 59.9%, 고등학생은 64.0%, 면티/양말 색깔 제한에 대해 중학생은 25.9%, 고등학생은 24.6%, 치마/바지의 길이나 폭 제한에 대해 중학생은 70.3%, 고등학생은 56.4%, 화장/미용제품 및 미용기기의 반입 제한은 중학생은 70.3%, 61.0%, 수업 외 시간(혹은 기숙사 생활시간 동안의) 핸드폰 사용 제한에 대해 중학생은 83.35, 고등학생은 76.5%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이 중에서 핸드폰 사용 제한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두발길이나 모양 제한에 대해 공립중학교는 55.6%, 사립중학교는 52.9%, 교복 외의 점퍼 착용 제한에 대해 공립중학교는 59.8%, 사립중학교는 60.2%, 면티/양말 색깔 제한에 대해 공립중학교는 28.2%, 사립중학교는 22.1%, 치마/바지의 길이나 폭 제한에 대해 공립중학교는 72.5%, 사립중학교는 66.5%, 화장/미용제품 및 미용기기의 반입 제한은 공립중학교는 80.5%, 사립중학교는 67.0%, 수업 외 시간(혹은 기숙사 생활시간 동안의) 핸드폰 사용 제한에 대해 공립중학교는 87.7%, 사립중학교는 84.2%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두발길이나 모양을 제한하는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자율형고가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3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복 외 점퍼 착용을 제한하는 학교 중에는 자율형고가 7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전문계고가 60.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면티/양말 색깔을 제한하는 학교 중에는 자율형고가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17.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치마/바지 길이나 폭을 제한하는 학교 중에는 자율형과가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5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화장/미용제품 및 미용기기

의 반입을 제한하는 학교 중에는 특성화고/전문계고가 6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고가 58.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업 외 시간(혹은 기숙사 생활 시간 동안의)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학교 중에는 자율형고가 8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전문계고가 69.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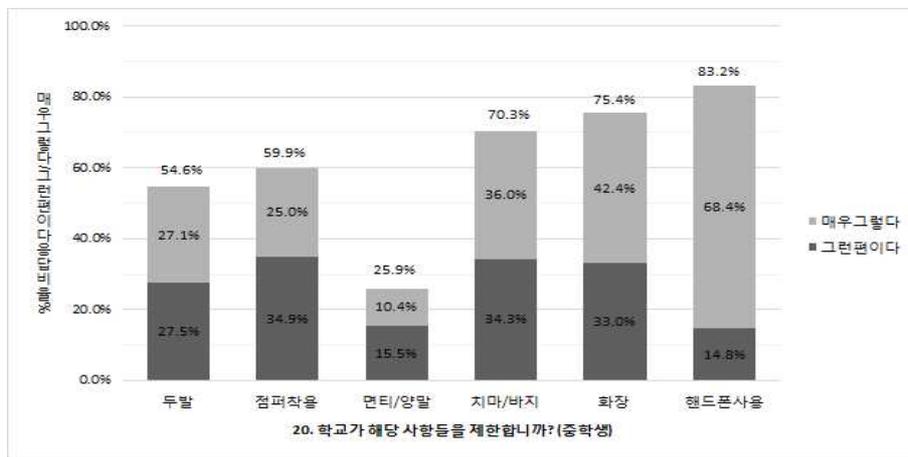
학생들의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조례지역이 비조례지역 보다 제한율이 낮게 나타났다. 두발길이나 모양을 제한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66.1%, 조례지역은 39.6%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교복 외의 점퍼 착용 제한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65.7%, 조례지역은 58.5%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면티/양말 색깔 제한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32.2%, 조례지역은 17.5%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치마/바지의 길이나 폭 제한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68.7%, 조례지역은 55.4%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화장/미용제품 및 미용기기의 반입 제한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71.8%, 조례지역은 62.1%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수업 외 시간(혹은 기숙사 생활 동안의) 핸드폰 사용 제한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84.0%, 조례지역은 74.4%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이 중에서 지역 간 제한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 항목은 두발의 길이나 모양 제한이다.

〈표 2-20-1〉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학생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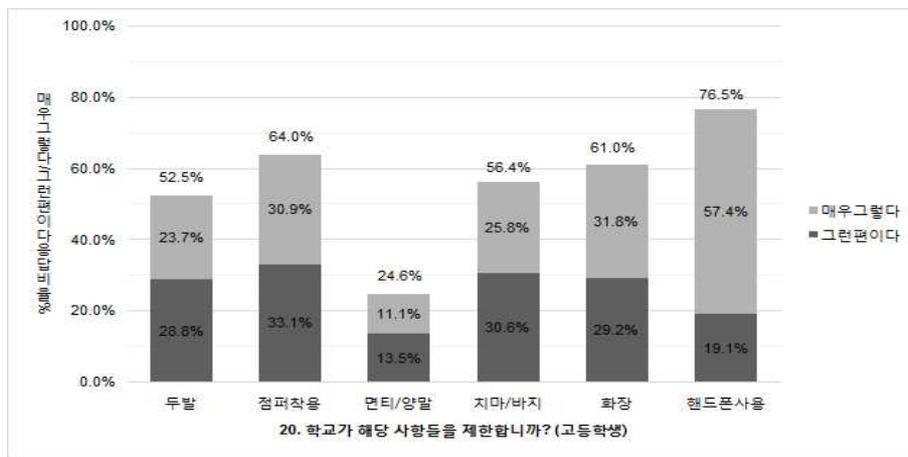
단위: 명(%)

| | | 20. 학교가 다음의 사항들을 제한합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① 두발의 길이나 모양 제한 $\chi^2=2.49$ | 중학생 | 1187 (45.4%) | 1427 (54.6%) | 2614 (100.0%) |
| | 고등학생 | 1653 (47.4%) | 1831 (52.6%) | 3484 (100.0%) |
| | Total | 2840 (46.6%) | 3258 (53.4%) | 6098 (100.0%) |
| ② 교복 외의 점퍼 착용 제한 $\chi^2=10.52^{**}$ | 중학생 | 1048 (40.1%) | 1568 (59.9%) | 2616 (100.0%) |
| | 고등학생 | 1254 (36.0%) | 2230 (64.0%) | 3484 (100.0%) |
| | Total | 2302 (37.7%) | 3798 (62.3%) | 6100 (100.0%) |
| ③ 면티/양말 색깔 제한 $\chi^2=1.38$ | 중학생 | 1938 (74.1%) | 678 (25.9%) | 2616 (100.0%) |
| | 고등학생 | 2627 (75.4%) | 857 (24.6%) | 3484 (100.0%) |
| | Total | 4565 (74.8%) | 1535 (25.2%) | 6100 (100.0%) |
| ④ 치마/바지의 길이나 폭 제한 $\chi^2=122.25^{***}$ | 중학생 | 778 (29.7%) | 1838 (70.3%) | 2616 (100.0%) |
| | 고등학생 | 1519 (43.6%) | 1965 (56.4%) | 3484 (100.0%) |
| | Total | 2297 (37.7%) | 3803 (62.3%) | 6100 (100.0%) |

| | | 20. 학교가 다음의 사항들을 제한합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⑤화장/미용제품/ 미용기기 반입 제한 $\chi^2=141.58***$ | 중학생 | 643 (24.6%) | 1973 (75.4%) | 2616 (100.0%) |
| | 고등학생 | 1360 (39.0%) | 2124 (61.0%) | 3484 (100.0%) |
| | Total | 2003 (32.8%) | 4097 (67.2%) | 6100 (100.0%) |
| ⑥수업외 시간/ 기숙사생활 동안 핸드폰사용제한 $\chi^2=42.12***$ | 중학생 | 438 (16.7%) | 2178 (83.3%) | 2616 (100.0%) |
| | 고등학생 | 820 (23.5%) | 2664 (76.5%) | 3484 (100.0%) |
| | Total | 1258 (20.6%) | 4842 (79.4%) | 6100 (100.0%) |



〈그림 2-20-1a〉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중학생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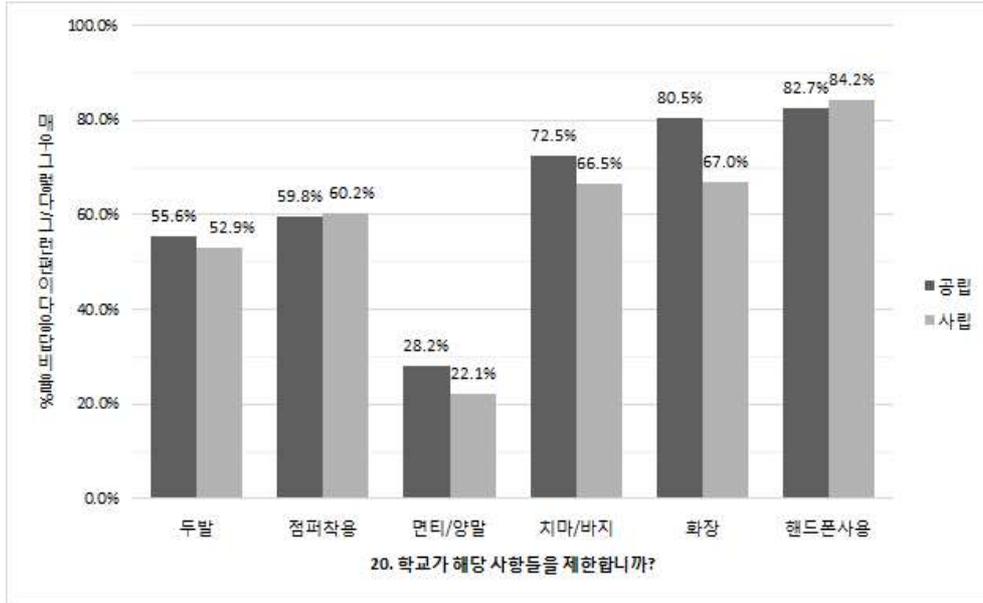


〈그림 2-20-1b〉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고등학생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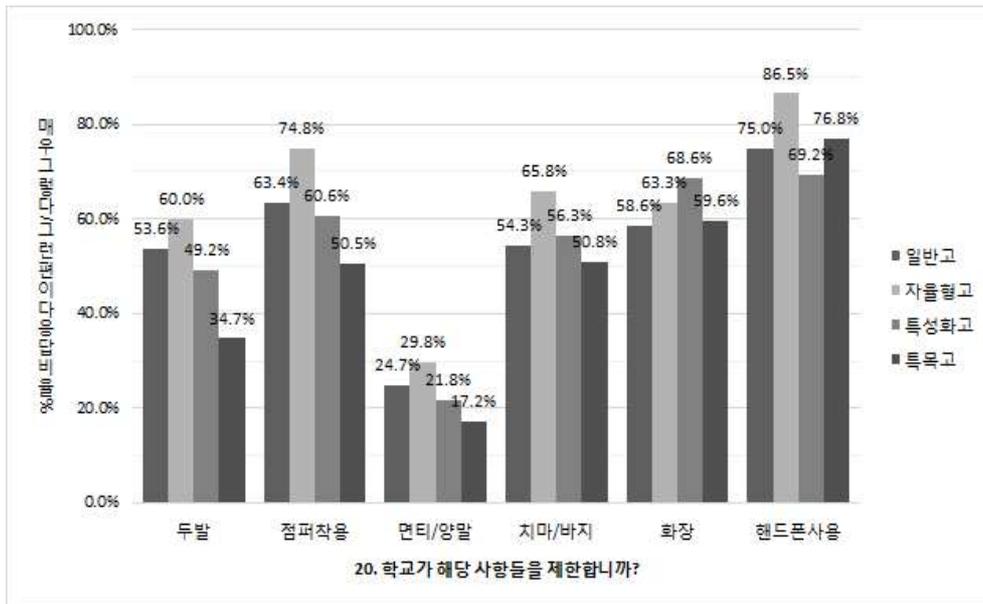
〈표 2-20-2〉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 | 20. 학교가 다음의 사항들을 제한합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① 두발의 길이나 모양 제한 $\chi^2=1.78$ | 공립중 | 726 (44.4%) | 909 (55.6%) | 1635 (100.0%) |
| | 사립중 | 461 (47.1%) | 518 (52.9%) | 979 (100.0%) |
| | Total | 1187 (45.4%) | 1427 (54.6%) | 2614 (100.0%) |
| ② 교복 외의 점퍼 착용 제한 $\chi^2=0.06$ | 공립중 | 658 (40.2%) | 977 (59.8%) | 1635 (100.0%) |
| | 사립중 | 390 (39.8%) | 591 (60.2%) | 981 (100.0%) |
| | Total | 1048 (40.1%) | 1568 (59.9%) | 2616 (100.0%) |
| ③ 면티/양말 색깔 제한 $\chi^2=11.79^*$ | 공립중 | 1174 (71.8%) | 461 (28.2%) | 1635 (100.0%) |
| | 사립중 | 764 (77.9%) | 217 (22.1%) | 981 (100.0%) |
| | Total | 1938 (74.1%) | 678 (25.9%) | 2616 (100.0%) |
| ④ 치마/바지의 길이나 폭 제한 $\chi^2=10.83^*$ | 공립중 | 449 (27.5%) | 1186 (72.5%) | 1635 (100.0%) |
| | 사립중 | 329 (33.5%) | 652 (66.5%) | 981 (100.0%) |
| | Total | 778 (29.7%) | 1838 (70.3%) | 2616 (100.0%) |
| ⑤ 화장/미제품/미용기 반입 제한 $\chi^2=60.43^{***}$ | 공립중 | 319 (19.5%) | 1316 (80.5%) | 1635 (100.0%) |
| | 사립중 | 324 (33.0%) | 657 (67.0%) | 981 (100.0%) |
| | Total | 643 (24.6%) | 1973 (75.4%) | 2616 (100.0%) |
| ⑥ 수업외 시간/기숙사 생활동안 핸드폰사용 제한 $\chi^2=1.00$ | 공립중 | 283 (17.3%) | 1352 (82.7%) | 1635 (100.0%) |
| | 사립중 | 155 (15.8%) | 826 (84.2%) | 981 (100.0%) |
| | Total | 438 (16.7%) | 2178 (83.3%) | 2616 (100.0%) |
| ① 두발의 길이나 모양 제한 $\chi^2=55.53^{***}$ | 일반고 | 955 (46.4%) | 1104 (53.6%) | 2059 (100.0%) |
| | 자율형고 | 255 (40.0%) | 383 (60.0%) | 638 (100.0%) |
| | 특성화고 | 249 (50.8%) | 241 (49.2%) | 490 (100.0%) |
| | 특목고 | 194 (65.3%) | 103 (34.7%) | 297 (100.0%) |
| | Total | 1653 (47.4%) | 1831 (52.6%) | 3484 (100.0%) |
| ② 교복 외의 점퍼 착용 제한 $\chi^2=58.30^{***}$ | 일반고 | 753 (36.6%) | 1306 (63.4%) | 2059 (100.0%) |
| | 자율형고 | 161 (25.2%) | 477 (74.8%) | 638 (100.0%) |
| | 특성화고 | 193 (39.4%) | 297 (60.6%) | 490 (100.0%) |
| | 특목고 | 147 (49.5%) | 150 (50.5%) | 297 (100.0%) |
| | Total | 1254 (36.0%) | 2230 (64.0%) | 3484 (100.0%) |
| ③ 면티/양말 색깔 제한 $\chi^2=20.10^{***}$ | 일반고 | 1550 (75.3%) | 509 (24.7%) | 2059 (100.0%) |
| | 자율형고 | 448 (70.2%) | 190 (29.8%) | 638 (100.0%) |
| | 특성화고 | 383 (78.2%) | 107 (21.8%) | 490 (100.0%) |
| | 특목고 | 246 (82.8%) | 51 (17.2%) | 297 (100.0%) |
| | Total | 2627 (75.4%) | 857 (24.6%) | 3484 (100.0%) |
| ④ 치마/바지의 길이나 폭 제한 $\chi^2=.000$ | 일반고 | 941 (45.7%) | 1118 (54.3%) | 2059 (100.0%) |
| | 자율형고 | 218 (34.2%) | 420 (65.8%) | 638 (100.0%) |
| | 특성화고 | 214 (43.7%) | 276 (56.3%) | 490 (100.0%) |
| | 특목고 | 146 (49.2%) | 151 (50.8%) | 297 (100.0%) |
| | Total | 1519 (43.6%) | 1965 (56.4%) | 3484 (100.0%) |
| ⑤ 화장/미용제품/미용기 반입제한 $\chi^2=30.51^{***}$ | 일반고 | 852 (41.4%) | 1207 (58.6%) | 2059 (100.0%) |
| | 자율형고 | 234 (36.7%) | 404 (63.3%) | 638 (100.0%) |
| | 특성화고 | 154 (31.4%) | 336 (68.6%) | 490 (100.0%) |
| | 특목고 | 120 (40.4%) | 177 (59.6%) | 297 (100.0%) |
| | Total | 1360 (39.0%) | 2124 (61.0%) | 3484 (100.0%) |
| ⑥ 수업외 시간/기숙사 생활동안 핸드폰사용 제한 $\chi^2=18.40^{***}$ | 일반고 | 514 (25.0%) | 1545 (75.0%) | 2059 (100.0%) |
| | 자율형고 | 86 (13.5%) | 552 (86.5%) | 638 (100.0%) |
| | 특성화고 | 151 (30.8%) | 339 (69.2%) | 490 (100.0%) |
| | 특목고 | 69 (23.5%) | 228 (76.8%) | 297 (100.0%) |
| | Total | 820 (23.2%) | 2664 (76.5%) | 3484 (100.0%) |



〈그림 2-20-2a〉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중학교유형)



〈그림 2-20-2b〉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고등학교유형)

〈표 2-20-3〉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 | 20. 학교가 다음의 사항들을 제한합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①두발의 길이나 모양 제한 $\chi^2=429.72^{***}$ | 비조례지역 | 1080 (33.9%) | 2105 (66.1%) | 3185 (100.0%) |
| | 조례지역 | 1760 (60.4%) | 1153 (39.6%) | 2913 (100.0%) |
| | Total | 2840 (46.6%) | 3258 (53.4%) | 6098 (100.0%) |
| ②교복 외의 접퍼 착용 제한 $\chi^2=33.65^{***}$ | 비조례지역 | 1093 (34.3%) | 2094 (65.7%) | 3187 (100.0%) |
| | 조례지역 | 1209 (41.5%) | 1704 (58.5%) | 2913 (100.0%) |
| | Total | 2302 (37.7%) | 3798 (62.3%) | 6100 (100.0%) |
| ③면티/양말 색깔 제한 $\chi^2=173.55^{***}$ | 비조례지역 | 2162 (67.8%) | 1025 (32.2%) | 3187 (100.0%) |
| | 조례지역 | 2403 (82.5%) | 510 (17.5%) | 2913 (100.0%) |
| | Total | 4565 (74.8%) | 1535 (25.2%) | 6100 (100.0%) |
| ④치마/바지의 길이나 폭 제한 $\chi^2=115.44^{***}$ | 비조례지역 | 997 (31.3%) | 2190 (68.7%) | 3187 (100.0%) |
| | 조례지역 | 1300 (44.6%) | 1613 (55.4%) | 2913 (100.0%) |
| | Total | 2297 (37.7%) | 3803 (62.3%) | 6100 (100.0%) |
| ⑤화장/미용제품 /미용기기 반입 제한 $\chi^2=65.69^{****}$ | 비조례지역 | 898 (28.2%) | 2289 (71.8%) | 3187 (100.0%) |
| | 조례지역 | 1105 (37.9%) | 1808 (62.1%) | 2913 (100.0%) |
| | Total | 2003 (32.8%) | 4097 (67.2%) | 6100 (100.0%) |
| ⑥수업외 시간/ 기숙사생활동안 핸드폰사용제한 $\chi^2=85.86^{****}$ | 비조례지역 | 511 (16.0%) | 2676 (84.0%) | 3187 (100.0%) |
| | 조례지역 | 747 (25.6%) | 2166 (74.4%) | 2913 (100.0%) |
| | Total | 1258 (20.6%) | 4842 (79.4%) | 610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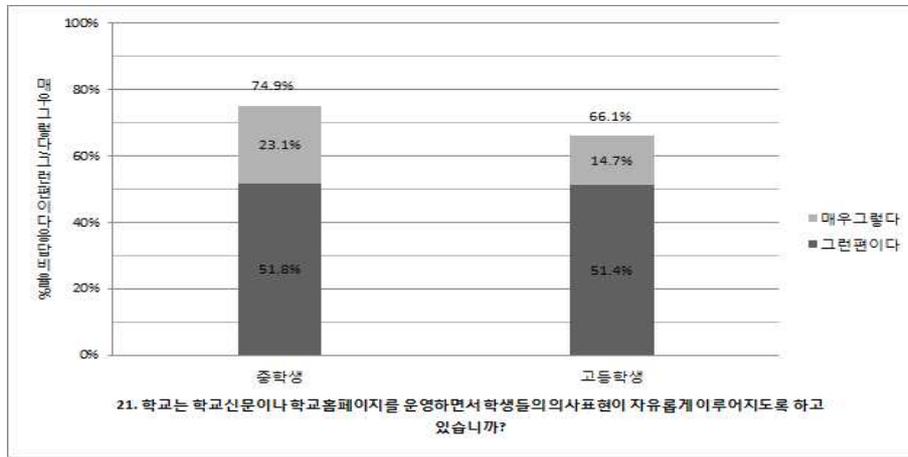
21)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도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74.9%, 고등학생은 66.1%로 나타났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정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제한이 있다고 답한 경우도 중학생은 25.1%, 고등학생은 33.9%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75.7%, 사립중학교는 73.6%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자율형고가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전문계고가 62.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70.3%, 조례지역은 69.4%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2-21-1〉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도 (학생유형별)

단위: 명(%)

| 응답자 | 21. 학교는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 | | Total |
|-------|--|--------------|--------------|---------------|
| | | No | Yes | |
| 중학생 | $\chi^2=54.41^{***}$ | 657 (25.1%) | 1959 (74.9%) | 2616 (100.0%) |
| | | 1180 (33.9%) | 2304 (66.1%) | 3484 (100.0%) |
| Total | | 1837 (30.1%) | 4263 (69.9%) | 610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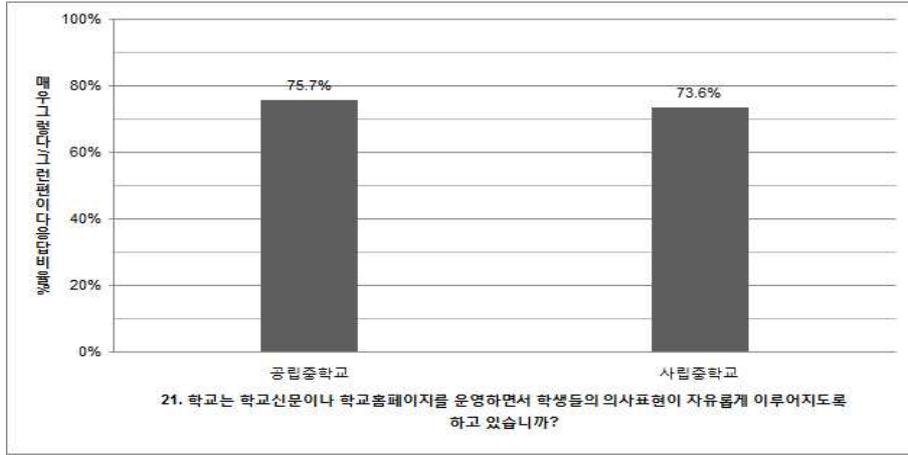


〈그림 2-21-1〉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도 (학생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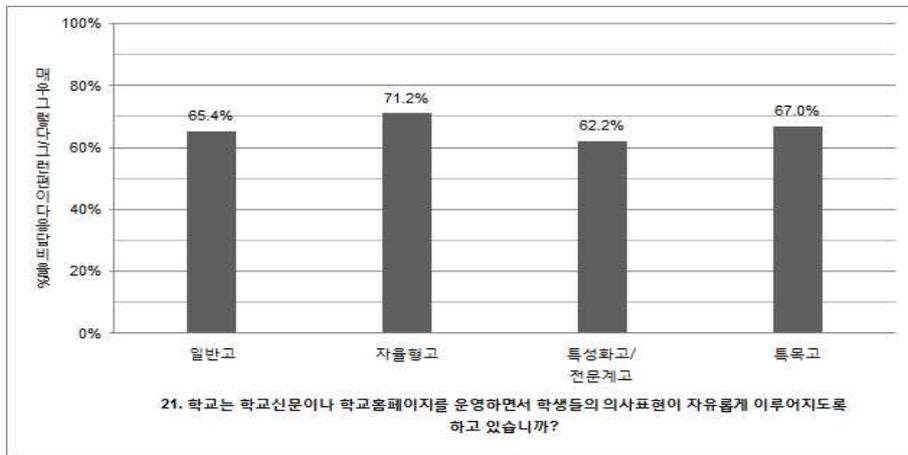
〈표 2-21-2〉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도 (중/고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학교유형 | 21. 학교는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공립중 | $\chi^2=1.38$ | 398 (24.3%) | 1237 (75.7%) | 1635 (100.0%) |
| | | 259 (26.4%) | 722 (73.6%) | 981 (100.0%) |
| Total | | 657 (25.1%) | 1959 (74.9%) | 2612 (100.0%) |
| 일반고 | $\chi^2=11.14^*$ | 713 (34.6%) | 1346 (65.4%) | 2059 (100.0%) |
| | | 184 (28.8%) | 454 (71.2%) | 638 (100.0%) |
| | | 185 (37.8%) | 305 (62.2%) | 490 (100.0%) |
| | | 98 (33.0%) | 199 (67.0%) | 297 (100.0%) |
| Total | | 1180 (33.9%) | 2304 (66.1%) | 3484 (100.0%) |



〈그림 2-21-2a〉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도 (중학교유형)



〈그림 2-21-2b〉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도 (고등학교유형)

〈표 2-21-3〉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도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chi^2=0.51$ | 21. 학교는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조례여부 | 비조례지역 | 947 (29.7%) | 2240 (70.3%) | 3187 (100.0%) |
| | 조례지역 | 890 (30.6%) | 2023 (69.4%) | 2913 (100.0%) |
| Total | | 1837 (30.1%) | 4263 (69.9%) | 610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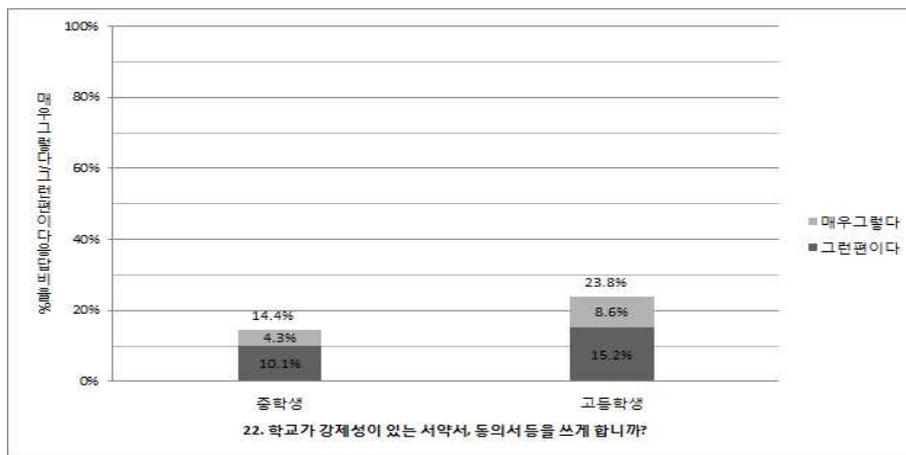
22) 서약서/동의서 강제

서약서, 동의서를 강제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4.4%, 고등학생은 23.8%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15.4%, 사립중학교는 12.7%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목고가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전문계고가 1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타 학교유형에 비해 특목고의 학생생활 통제나 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24.4%, 조례지역은 14.7%로 나타나 조례지역보다 비조례지역의 강제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22-1〉 서약서 및 동의서 강제 (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83.39^{***}$ | 22. 학교가 강제성이 있는 서약서, 동의서 등을 쓰게 합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응답자 | 중학생 | 2239 (85.6%) | 377 (14.4%) | 2616 (100.0%) |
| | 고등학생 | 2654 (76.2%) | 830 (23.8%) | 3484 (100.0%) |
| Total | | 4893 (80.2%) | 1207 (19.8%) | 610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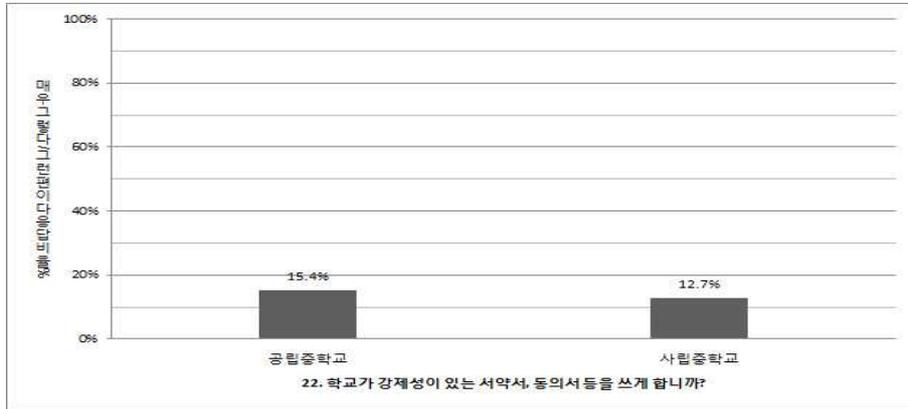


〈그림 2-22-1〉 서약서 및 동의서 강제 (학생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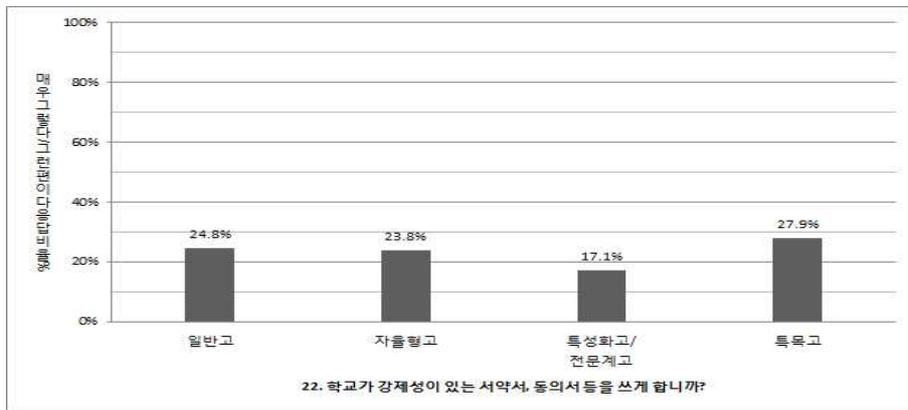
〈표 2-22-2〉 서약서 및 동의서 강제 (중/고등 학교유형)

단위: 명(%)

| | | 22. 학교가 강제성이 있는 서약서, 동의서 등을 쓰게 합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학교유형 | 공립중 | 1383 (84.6%) | 252 (15.4%) | 1635 (100.0%) |
| | 사립중 | 856 (87.3%) | 125 (12.7%) | 981 (100.0%) |
| Total | | 2239 (85.6%) | 377 (14.4%) | 2616 (100.0%) |
| 학교유형 | 일반고 | 1548 (75.2%) | 511 (24.8%) | 2059 (100.0%) |
| | 자율형고 | 486 (76.2%) | 152 (23.8%) | 638 (100.0%) |
| | 특성화고 | 406 (82.9%) | 84 (17.1%) | 490 (100.0%) |
| | 특목고 | 214 (72.1%) | 83 (27.9%) | 297 (100.0%) |
| Total | | 2654 (76.2%) | 830 (23.8%) | 3484 (100.0%) |



〈그림 2-22-2a〉 서약서 및 동의서 강제 (중학교유형)



〈그림 2-22-2b〉 서약서 및 동의서 강제 (고등학교유형)

〈표 2-22-3〉 서약서 및 동의서 강제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chi^2=89.94^{***}$ | 22. 학교가 강제성이 있는 서약서, 동의서 등을 쓰게 합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조례여부 | 비조례지역 | 2409 (75.6%) | 778 (24.4%) | 3187 (100.0%) |
| | 조례지역 | 2484 (85.3%) | 429 (14.7%) | 2913 (100.0%) |
| Total | | 4893 (80.2%) | 1207 (19.8%) | 6100 (100.0%) |

23) 탈의실 설치 여부와 자유로운 탈의실 이용

학교에 탈의실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49.1%, 고등학생은 27.0%로 나타났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학생은 27.7%, 고등학생은 47.6%가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하였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46.4%, 사립중학교는 58.3%가 없다 라고 응답하였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립중학교는 27.3%, 사립중학교는 28.7%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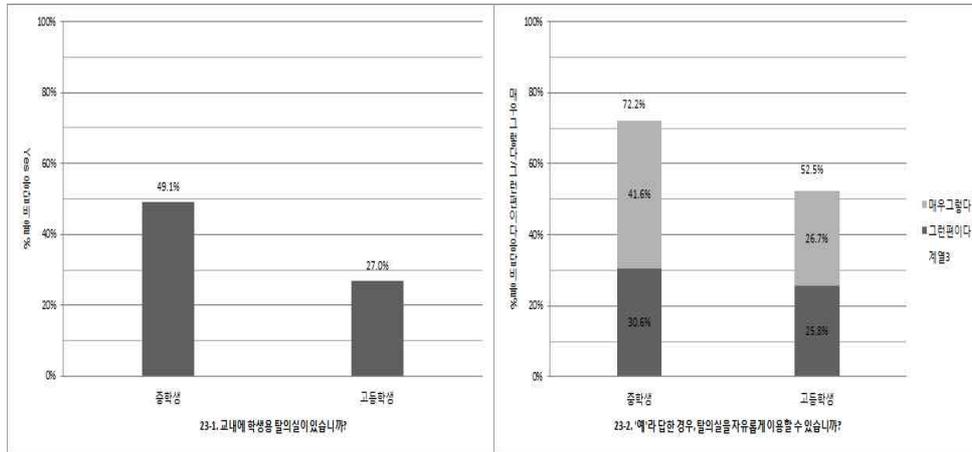
학교에 탈의실이 있다고 답한 학교유형 중 특목고가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일반고가 2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에 탈의실이 설치된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한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일반고가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2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고의 경우에는 탈의실 설치율이 가장 낮으면서, 자유로운 이용률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61.6%, 조례지역은 65.6%가 없다 라고 응답하였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38.6%, 조례지역은 34.9%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다.

〈표 2-23-1〉 탈의실의 설치 여부와 자유로운 이용(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317.94^{***}$ | 23-1. 교내에 학생용 탈의실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No | Yes | | |
| 응답자 | 중학생 | 1331 (50.9%) | 1285 (49.1%) | 2616 (100.0%) |
| | 고등학생 | 2543 (73.0%) | 939 (27.0%) | 3482 (100.0%) |
| Total | | 3874 (63.5%) | 2224 (36.5%) | 6098 (100.0%) |
| $\chi^2=108.32^{***}$ | 23-2. '예' 라 답한 경우, 탈의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 Total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응답자 | 중학생 | 383 (27.7%) | 998 (72.3%) | 1381 (100.0%) |
| | 고등학생 | 569 (47.6%) | 627 (52.4%) | 1196 (100.0%) |
| Total | | 952 (36.9%) | 1625 (63.1%) | 2577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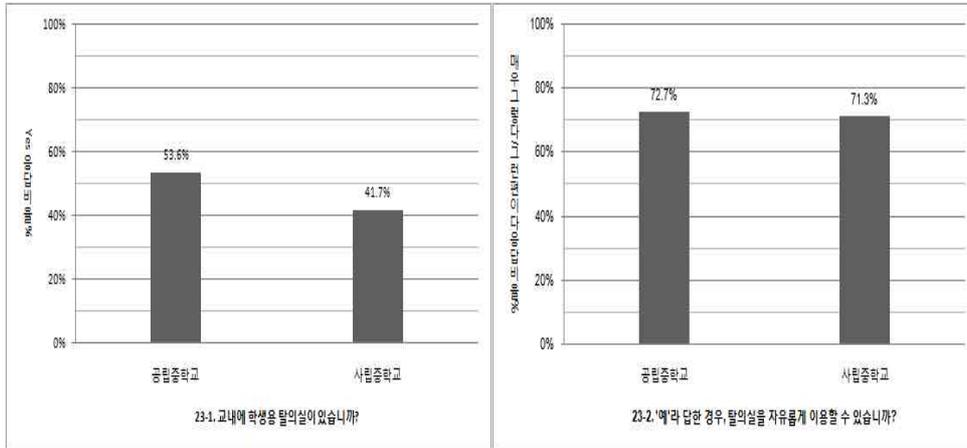


〈그림 2-23-1〉 탈의실 설치 여부와 자유로운 탈의실 이용 (학생유형별)

〈표 2-23-2a〉 탈의실의 설치 여부와 자유로운 이용 (중학생)

단위: 명(%)

| | | 23-1. 교내에 학생용 탈의실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No | Yes | |
| 학교유형 | 공립중 | 759 (46.4%) | 876 (53.6%) | 1635 (100.0%) |
| | 사립중 | 572 (58.3%) | 409 (41.7%) | 981 (100.0%) |
| Total | | 1331 (50.9%) | 1285 (49.1%) | 2616 (100.0%) |
| | | 23-2. '예' 라 답한 경우, 탈의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 Total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학교유형 | 공립중 | 255 (27.3%) | 680 (72.7%) | 935 (100.0%) |
| | 사립중 | 128 (28.7%) | 318 (71.3%) | 446 (100.0%) |
| Total | | 383 (27.7%) | 998 (72.3%) | 1381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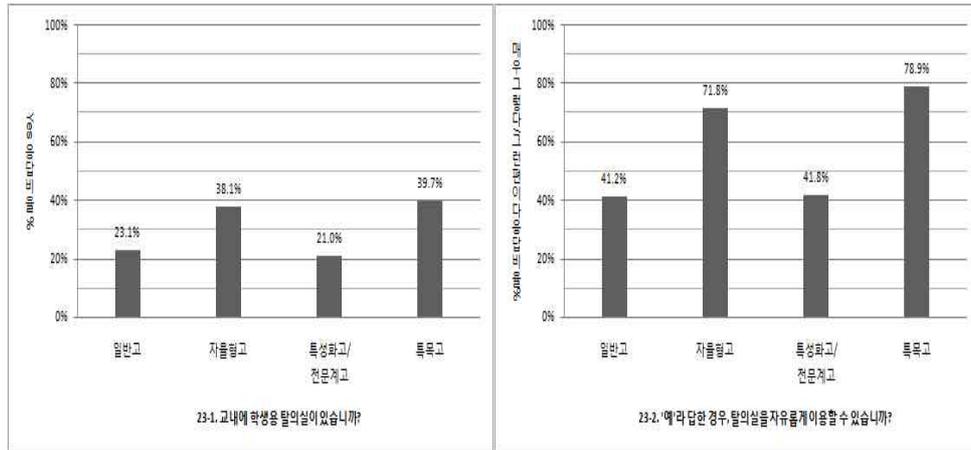


〈그림 2-23-2a〉 탈의실 설치 여부와 자유로운 탈의실 이용 (중학교유형)

〈표 2-23-2b〉 탈의실의 설치 여부와 자유로운 이용 (고등학생)

단위: 명(%)

| | | 23-1. 교내에 학생용 탈의실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No | Yes | |
| $\chi^2=93.19***$ | 학교유형 일반고 | 1583 (76.9%) | 476 (23.1%) | 2059 (100.0%) |
| | 자율형고 | 395 (61.9%) | 243 (38.1%) | 638 (100.0%) |
| | 특성화고 | 387 (79.0%) | 103 (21.0%) | 490 (100.0%) |
| | 특목고 | 179 (60.3%) | 118 (39.7%) | 297 (100.0%) |
| Total | | 2544 (73.0%) | 940 (27.0%) | 3484 (100.0%) |
| | | 23-2. '예' 라 답한 경우, 탈의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 Total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chi^2=116.85***$ | 학교유형 일반고 | 382 (58.8%) | 268 (41.2%) | 650 (100.0%) |
| | 자율형고 | 78 (28.2%) | 199 (71.8%) | 277 (100.0%) |
| | 특성화고 | 82 (58.2%) | 59 (41.8%) | 141 (100.0%) |
| | 특목고 | 27 (21.1%) | 101 (78.9%) | 128 (100.0%) |
| Total | | 569 (47.6%) | 627 (52.4%) | 1196 (100.0%) |



〈그림 2-23-2b〉 탈의실 설치 여부와 자유로운 탈의실 이용 (고등학교유형)

〈표 2-23-3〉 탈의실의 설치 여부와 자유로운 이용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chi^2=12.58^{**}$ | 23-1. 교내에 학생용 탈의실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No | Yes | | |
| 조례여부 | 비조례지역 | 1963 (61.6%) | 1223 (38.4%) | 3186 (100.0%) |
| | 조례지역 | 1911 (65.6%) | 1001 (34.4%) | 2912 (100.0%) |
| Total | | 3874 (63.5%) | 2224 (36.5%) | 6098 (100.0%) |
| $\chi^2=3.80$ | 23-2. '예' 라 답한 경우, 탈의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 Total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조례여부 | 비조례지역 | 552 (38.6%) | 878 (61.4%) | 1430 (100.0%) |
| | 조례지역 | 400 (34.9%) | 747 (65.1%) | 1147 (100.0%) |
| Total | | 952 (36.9%) | 1625 (63.1%) | 2577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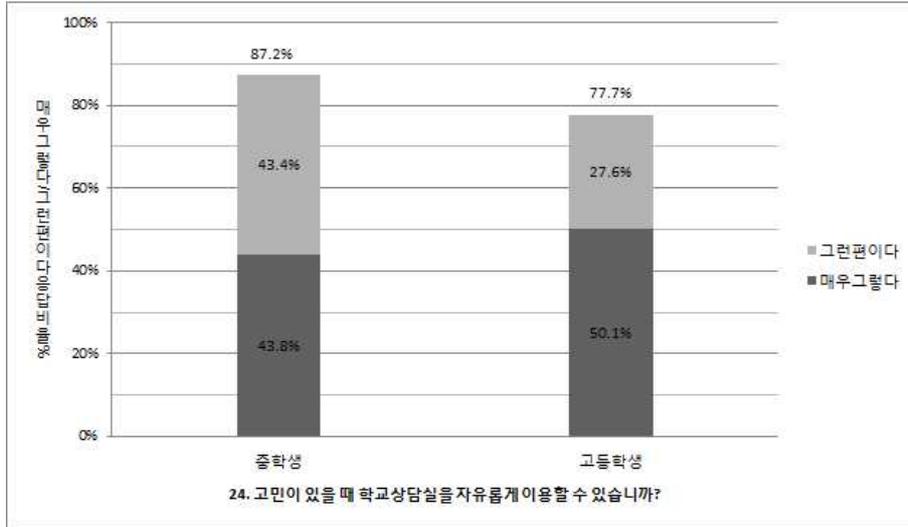
24) 자유로운 학교상담실 이용

고민이 있을 때 자유롭게 학교상담실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2.8%, 고등학생은 22.3%로 나타나 고등학생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13.3%, 사립중학교는 11.9%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성화고/전문계고가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1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15.3%, 조례지역은 21.4%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하였다.

〈표 2-24-1〉 자유로운 학교상담실 이용 (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91.18^{***}$ | 24. 고민이 있을 때 학교상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응답자 | 중학생 | 334 (12.8%) | 2282 (87.2%) | 2616 (100.0%) |
| | 고등학생 | 777 (22.3%) | 2707 (77.7%) | 3484 (100.0%) |
| Total | | 1111 (18.2%) | 4989 (81.8%) | 610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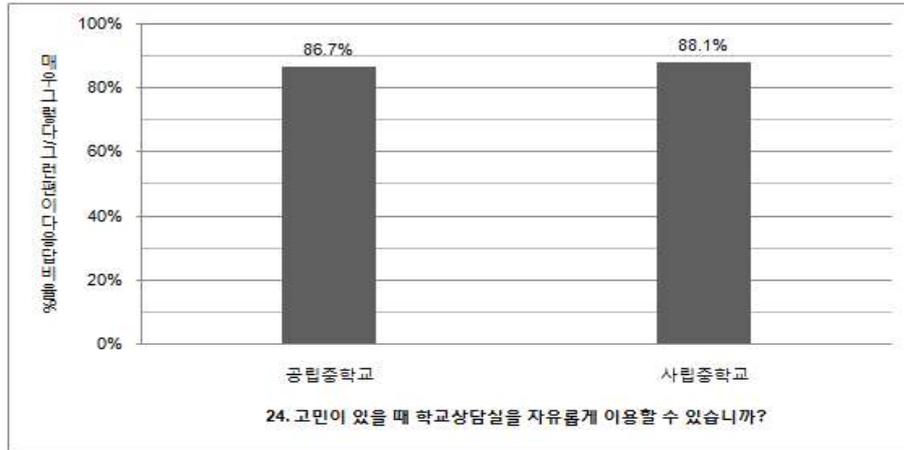


〈그림 2-24-1〉 자유로운 학교상담실 이용 (학생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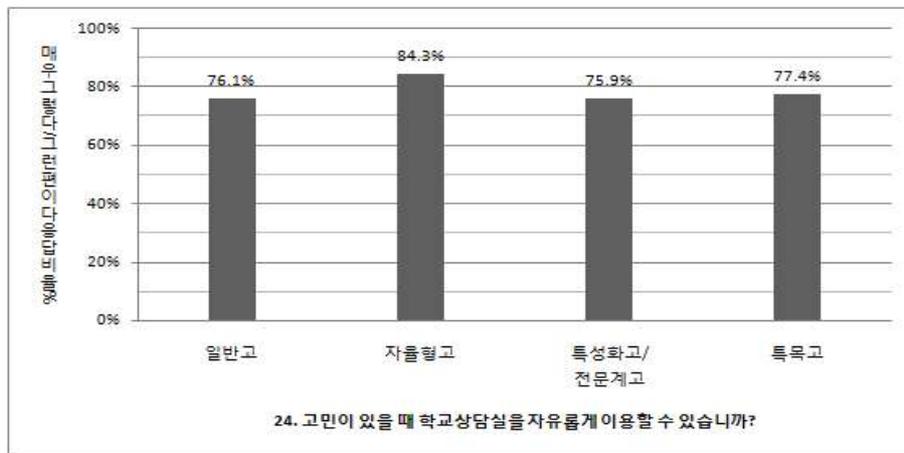
〈표 2-24-2〉 자유로운 학교상담실 이용 (중/고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 | 24. 고민이 있을 때 학교상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학교유형 | 공립중 | 217 (13.3%) | 1418 (86.7%) | 1635 (100.0%) |
| | 사립중 | 117 (11.9%) | 864 (88.1%) | 981 (100.0%) |
| Total | | 334 (12.8%) | 2282 (87.2%) | 2616 (100.0%) |
| 학교유형 | 일반고 | 492 (23.9%) | 1567 (76.1%) | 2059 (100.0%) |
| | 자율형고 | 100 (15.7%) | 538 (84.3%) | 638 (100.0%) |
| | 특성화고 | 118 (24.1%) | 372 (75.9%) | 490 (100.0%) |
| | 특목고 | 67 (22.6%) | 230 (77.4%) | 297 (100.0%) |
| Total | | 777 (22.3%) | 2707 (77.7%) | 3484 (100.0%) |



〈그림 2-24-2a〉 자유로운 학교상담실 이용 (중학교유형)



〈그림 2-24-2b〉 자유로운 학교상담실 이용 (고등학교유형)

〈표 2-24-3〉 자유로운 학교상담실 이용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chi^2=36.89^{***}$ | 24. 고민이 있을 때 학교상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조례여부 | 비조례지역 | 489 (15.3%) | 2698 (84.7%) | 3187 (100.0%) |
| | 조례지역 | 622 (21.4%) | 2291 (78.6%) | 2913 (100.0%) |
| Total | | 1111 (18.2%) | 4989 (81.1%) | 610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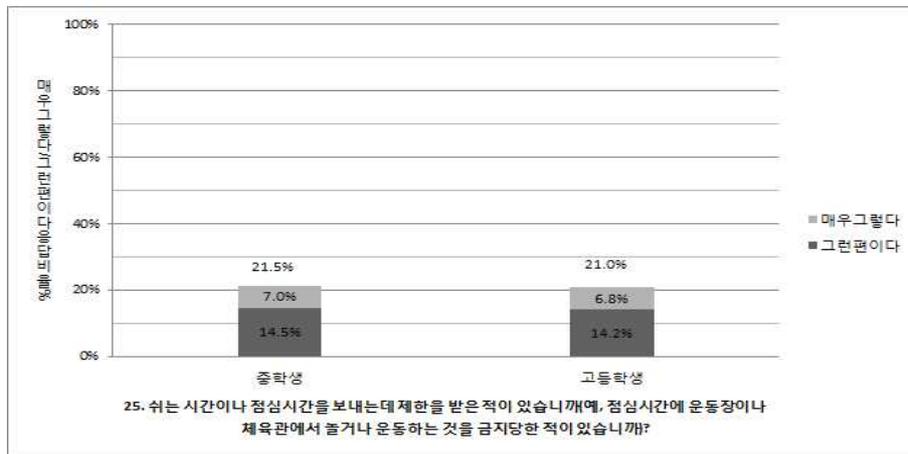
25) 휴식시간 이용 제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 사용 제한으로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1.5%, 고등학생은 21%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20.7%, 사립중학교는 22.8%로 나타났다. 가 그렇다 라고 답 하였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자율형고가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 화고/전문계고가 1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23.1%, 조례지역은 19.1%로 나타나 조례지역이 비조례지역 보다 침해율이 낮음 을 알 수 있다.

〈표 2-25-1〉 휴식시간 이용 제한 (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20$ | 25.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보내는데 제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예, 점심시간에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놀거나 운동하는 것을 금지당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Total |
| 응답자 | | | |
| 중학생 | 2054 (78.5%) | 561 (21.5%) | 2615 (100.0%) |
| 고등학생 | 2753 (79.0%) | 731 (21.0%) | 3484 (100.0%) |
| Total | 4807 (78.8%) | 1292 (21.2%) | 6099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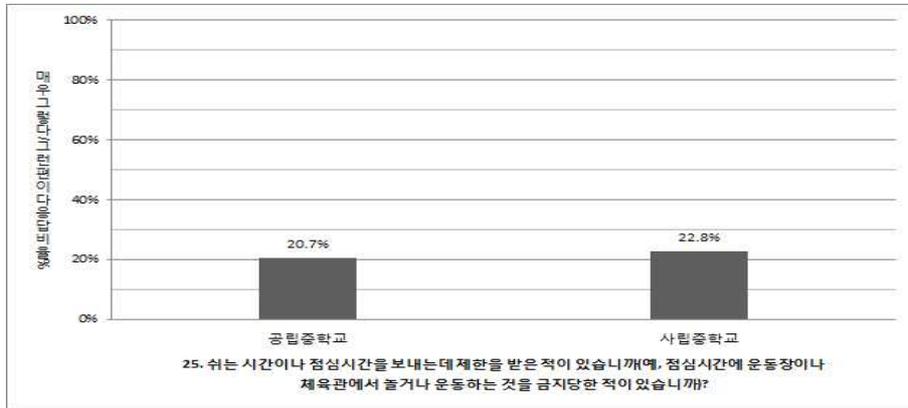


〈그림 2-25-1〉 휴식시간 이용 제한 (학생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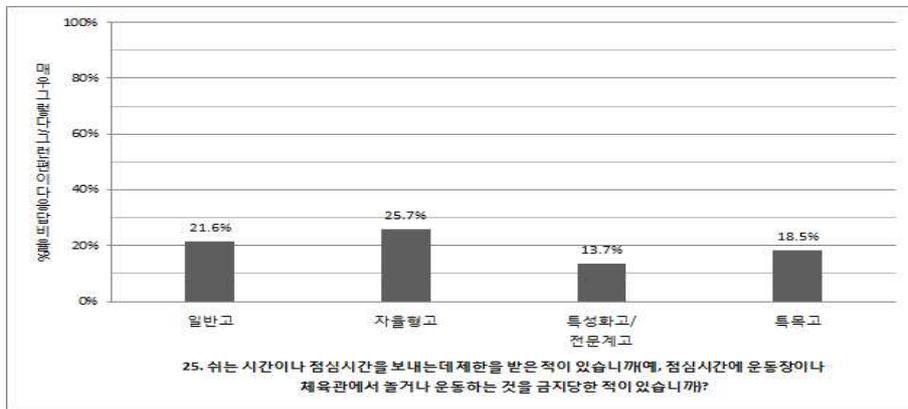
〈표 2-25-2〉 휴식시간 이용 제한 (중/고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 | 25.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보내는데 제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예, 점심시간에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놀거나 운동하는 것을 금지당한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학교유형 | 공립중 | 1297 (79.3%) | 338 (20.7%) | 1635 (100.0%) |
| | 사립중 | 757 (77.2%) | 223 (22.8%) | 980 (100.0%) |
| Total | | 2054 (78.5%) | 561 (21.5%) | 2615 (100.0%) |
| 학교유형 | 일반고 | 1614 (78.4%) | 445 (21.6%) | 2059 (100.0%) |
| | 자율형고 | 474 (74.3%) | 164 (25.7%) | 638 (100.0%) |
| | 특성화고 | 423 (86.3%) | 67 (13.7%) | 490 (100.0%) |
| | 특목고 | 242 (81.5%) | 55 (18.5%) | 297 (100.0%) |
| Total | | 2753 (79.0%) | 731 (21.0%) | 3484 (100.0%) |



〈그림 2-25-2a〉 휴식시간 이용 제한 (중학교유형)



〈그림 2-25-2b〉 휴식시간 이용 제한 (고등학교유형)

〈표 2-25-3〉 휴식시간 이용 제한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chi^2=14.89^{***}$ | 25.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보내는데 제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예, 점심시간에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놀거나 운동하는 것을 금지당한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조례여부 | 비조례지역 | 2450 (76.9%) | 736 (23.1%) | 3186 (100.0%) |
| | 조례지역 | 2357 (80.9%) | 556 (19.1%) | 2913 (100.0%) |
| Total | | 4807 (78.8%) | 1292 (21.2%) | 6099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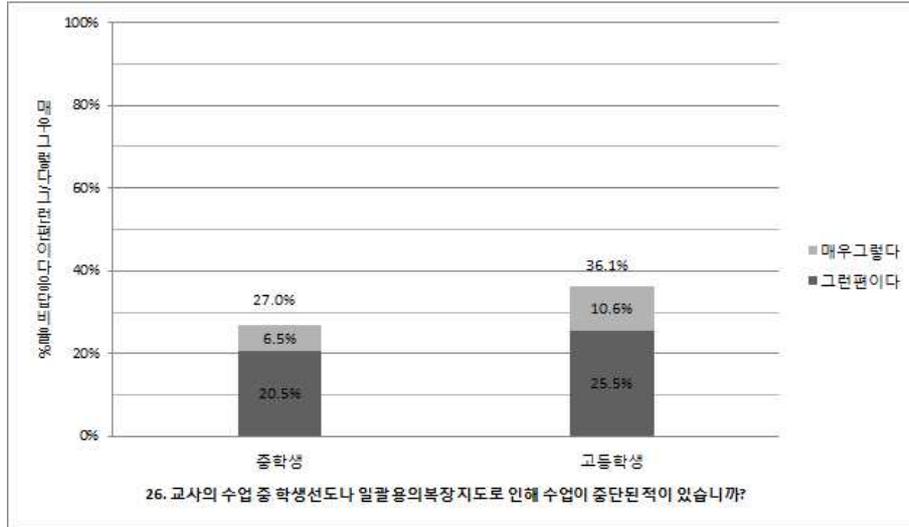
26) 교사에 의한 학습권 침해 경험

수업 중 학생선도나 일괄 용의복장 지도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6.9%, 고등학생은 36.1%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27.3%, 사립중학교는 26.2%로 나타났다. 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일반고가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27.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32.8%, 조례지역은 31.4%로 나타나 지역 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2-26-1〉 교사에 의한 학습권 침해 경험 (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57.08^{***}$ | 26. 교사의 수업 중 학생선도나 일괄 용의복장 지도로 인해 수업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응답자 | 중학생 | 1911 (73.1%) | 704 (26.9%) | 2615 (100.0%) |
| | 고등학생 | 2228 (63.9%) | 1256 (36.1%) | 3484 (100.0%) |
| Total | | 4139 (67.9%) | 1960 (32.1%) | 6099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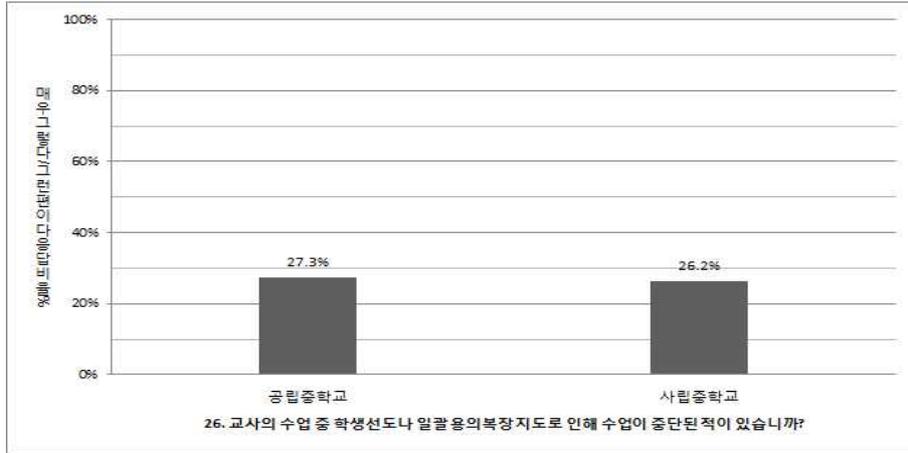


〈그림 2-26-1〉 교사에 의한 학습권 침해 경험 (학생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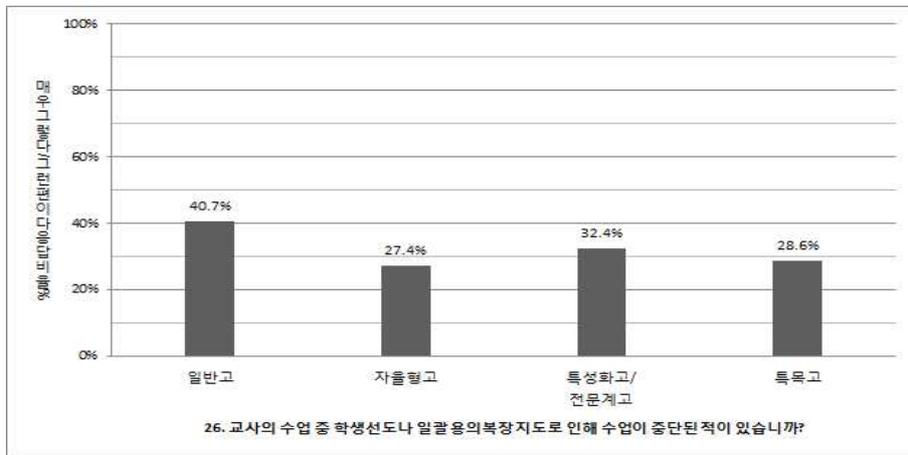
〈표 2-26-2〉 교사에 의한 학습권 침해 경험 (중/고등 학교유형별)

단위: 명(%)

| | | 26. 교사의 수업 중 학생선도나 일괄 용의복장 지도로 인해 수업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학교유형 | 공립중 | 1188 (72.7%) | 447 (27.3%) | 1635 (100.0%) |
| | 사립중 | 723 (73.8%) | 257 (26.2%) | 980 (100.0%) |
| $\chi^2=0.39$ | | | | |
| Total | | 1911 (73.1%) | 704 (26.9%) | 2615 (100.0%) |
| 학교유형 | 일반고 | 1222 (59.3%) | 837 (40.7%) | 2059 (100.0%) |
| | 자율형고 | 463 (72.6%) | 175 (27.4%) | 638 (100.0%) |
| | 특성화고 | 331 (67.6%) | 159 (32.4%) | 490 (100.0%) |
| | 특목고 | 212 (71.4%) | 85 (28.6%) | 297 (100.0%) |
| $\chi^2=49.34***$ | | | | |
| Total | | 2228 (63.9%) | 1256 (36.1%) | 3484 (100.0%) |



〈그림 2-26-2a〉 교사에 의한 학습권 침해 경험 (중학교유형)



〈그림 2-26-2b〉 교사에 의한 학습권 침해 경험 (고등학교유형)

〈표 2-26-3〉 교사에 의한 학습권 침해 경험 (조례시행여부별)

단위: 명(%)

| $\chi^2=1.22$ | 26. 교사의 수업 중 학생선도나 일괄 옹의복장 지도로 인해 수업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 | Total | |
|---------------|--|--------------|---------------|---------------|
|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 |
| 조례여부 | 비조례지역 | 2142 (67.2%) | 1044 (32.8%) | 3186 (100.0%) |
| | 조례지역 | 1997 (68.6%) | 916 (31.4%) | 2913 (100.0%) |
| Total | 4139 (67.9%) | 1960 (32.1%) | 6099 (100.0%) | |

Ⅲ

학생인권 인식조사 분석결과

| | |
|-----------------------|-----|
| 1. 학생인권 인식조사의 문항 구성 | 115 |
| 2. 학생인권침해 인식조사의 분석 결과 | 115 |

1. 학생인권 인식조사의 문항 구성

학생 인식 조사는 학생인권에 대한 전반적 인식, 학교의 학생 규제권과 관련한 쟁점들, 그리고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몇몇 주요 항목들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 및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은 총 14개 문항을 통해 조사되었고, 14개 문항에 대한 요약은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

<표 3-0> 학생인권 인식 조사의 문항 요약수준 (학생, 학부모, 교사)

| 주요 영역 | 번호 | 항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에 대한 전반적 인식 ■ 학교의 학생 규제권 ■ 학생인권 침해 관련 논쟁적인 문항 | 1 | 학생인권에 대한 전반적 인식 |
| | 2 |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성 인식 |
| | 3 | 학생인권 침해 시 대응 방법 |
| | 4 |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한 인식 |
| | 5 | 학생 두발 규제에 대한 인식 |
| | 6 | 학생 복장 규제에 대한 인식 |
| | 7 |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인식 |
| | 8 | 학생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식 |
| | 9 | 학생 개인정보 공개 및 제공에 대한 인식 |
| | 10 | 교내 학생집회에 대한 인식 |
| | 11 |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 |
| | 12 | 교내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 수강에 대한 인식 |
| | 13 |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인식 |
| | 14 | 성적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 및 학교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인식 |

2. 학생인권침해 인식조사의 분석 결과

학생 6100명(중학생 2616명, 고등학생 3484명), 학부모1839명, 그리고 교사 842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한 결과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실태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석은 빈도분석과 χ^2 통계분석을 기본으로 하였다. χ^2 통계분석의 경우, 비교 대상 간 응답 비율에서의 유사성을 검증하기

위한 집단 간 동질성 χ^2 분석이 실시하였다. 유의한 통계 결과는 비교 대상 간 응답 비율이 유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예, * $p < .05$; ** $p < .01$; *** $p < .001$). 분석은 총 14개 인식 문항 각각에 대해 이루어졌다. 학생인권 침해실태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무응답이 있는 문항에서는 전체 사례수가 제시된 사례수와 일치하지 않으니 이를 유의하기 바란다. 본문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세분화시키지 않고 이 둘을 결합한 학생 자료를 제시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인식조사 결과는 부록 5에 제시되어 있다.

1) 학생인권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준

학생 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는 ‘알고 있는 편이다’라는 약간 유보적인 응답이 각각 39.5%, 41.0%로 가장 높았고, ‘잘 알고 있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학생 22.6%, 학부모 23.7%). 이에 비해 교사는 ‘잘 알고 있다’라는 좀더 확신에 찬 응답이 4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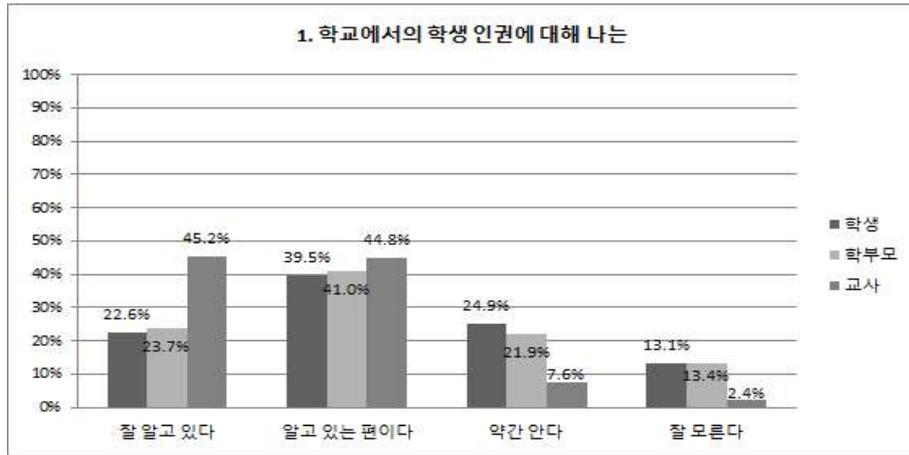
교사 집단은 ‘잘 알고 있다’와 이보다 약간 유보적인 ‘알고 있는 편이다’를 합한 응답이 87.3%로 거의 90%에 달한 반면에 ‘잘 모른다’는 2.4%에 불과해서, 학생이나 학부모에 비해 학생인권에 대해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이에 비해 학생과 학부모 집단은 ‘잘 알고 있다’와 ‘알고 있는 편이다’를 합한 응답이 각각 62.1%, 64.7%로 교사에 비해 20% 이상 낮게 나타났다.

중,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중학생은 27.6%, 고등학생은 18.8%로 거의 10% 가까이 차이가 나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잘 알고 있다’와 ‘알고 있는 편이다’를 합한 응답에서도 중학생은 68.4, 고등학생은 57.3%로 10%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표 3-1〉 학생인권 인식 수준(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 $\chi^2 = 330.85^{***}$ | 1.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에 대해 나는 | | | | Total | |
|-------------------------|-----------------------|--------------|--------------|--------------|---------------|---------------|
| | 잘 알고 있다 | 알고 있는 편이다 | 약간 안다 | 잘 모른다 | | |
| 응답자 | 학생 | 1376 (22.6%) | 2408 (39.5%) | 1519 (24.9%) | 797 (13.1%) | 6100 (100.0%) |
| | 학부모 | 436 (23.7%) | 754 (41.0%) | 403 (21.9%) | 246 (13.4%) | 1839 (100.0%) |
| | 교사 | 381 (45.2%) | 377 (44.8%) | 64 (7.6%) | 20 (2.4%) | 842 (100.0%) |
| Total | 2193 (25.0%) | 3539 (40.3%) | 1986 (22.6%) | 1063 (12.1%) | 8781 (100.0%) | |



〈그림 3-1〉 학생인권 인식수준(학생, 학부모, 교사)

2)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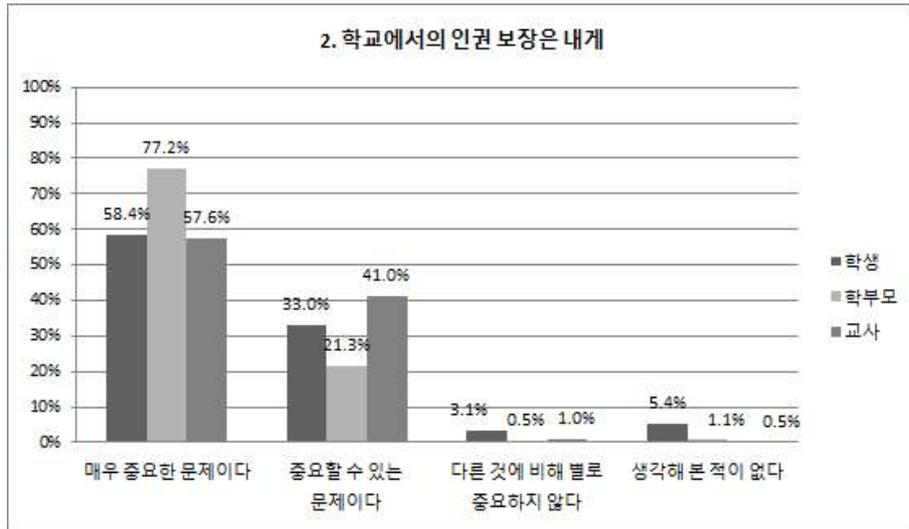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집단 모두 ‘매우 중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57.6% ~ 77.2%). 그런데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나서, 학생과 교사 집단은 ‘매우 중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8.4%와 57.6% 수준으로 유사했으나, 학부모는 20% 가까이 더 높은 비율(77.2%)로 이 사안을 ‘매우 중요’ 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중,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생은 61.9%가 학생인권 보장을 ‘매우 중요하다’ 고 응답한 데 비해서 고등학생은 55.8%만 같은 응답을 했다. 즉, 학생인권 보장을 ‘매우 중요’ 하게 간주하는 비율이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에 가서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표 3-2〉 인권 보장에 대한 중요도(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 $\chi^2=317.51^{***}$ | 2. 학교에서의 인권 보장은 내게 | | | | Total | |
|-----------------------|--------------------|---------------|---------------------|------------|------------|---------------|
| |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중요할 수 있는 문제이다 | 다른 것에 비해 별로 중요하지 않다 | 생각해 본 적 없다 | | |
| 응답자 | 학생 | 3563 (58.4%) | 2016 (33.0%) | 191 (3.1%) | 330 (5.4%) | 6100 (100.0%) |
| | 학부모 | 1419 (77.2%) | 391 (21.3%) | 9 (0.5%) | 20 (1.1%) | 1839 (100.0%) |
| | 교사 | 485 (57.6%) | 345 (41.0%) | 8 (1.0%) | 4 (0.5%) | 842 (100.0%) |
| Total | | 5467 (62.3%) | 2752 (31.3%) | 208 (2.4%) | 354 (4.0%) | 8781 (100.0%) |



〈그림 3-2〉 인권 보장에 대한 중요도(학생, 학부모, 교사)

3) 학생인권 침해 시 대응 방법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학생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 개입의지는 세부적으로 보면 학생(64.3%), 교사(65.9%) 집단에 비해 학부모 집단이 85.9%로 약 20% 이상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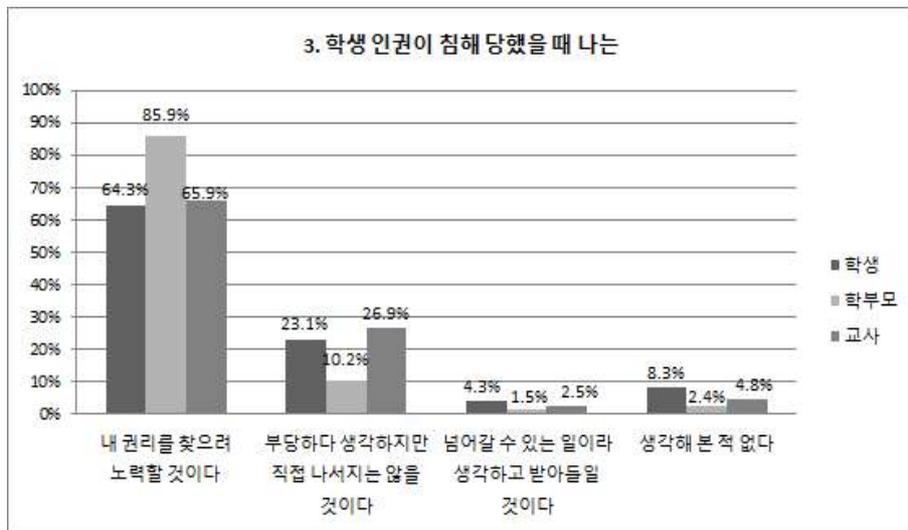
한편, 학생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 대한 수용 의지, 즉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와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에 응답한 비율의 합도 학생(27.4%)이나 교사(29.4%)에 비해 학부모 집단은 그 절반 이하(11.7%)로 낮았다.

중,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라고 답변한 비율이 중학생은 68.8%, 고등학생은 61.0%로 고등학생이 낮았다. 한편 ‘부당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는 응답은 중학생 18.4%, 고등학생 26.7%로 고등학생이 높았다.

〈표 3-3〉 인권 침해 시 반응(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 응답자 | 학부/교사 | 3.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나는 | | | | Total |
|-------|-------|----------------------|---------------------------|----------------------------|------------|---------------|
| | | 내 권리를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 부당하다 생각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 생각해 본 적 없다 | |
| 응답자 | 학생 | 3925 (64.3%) | 1410 (23.1%) | 261 (4.3%) | 504 (8.3%) | 6100 (100.0%) |
| | 학부모 | 1579 (85.9%) | 188 (10.2%) | 27 (1.5%) | 45 (2.4%) | 1839 (100.0%) |
| | 교사 | 554 (65.9%) | 226 (26.9%) | 21 (2.5%) | 40 (4.8%) | 841 (100.0%) |
| Total | | 6058 (69.0%) | 1824 (20.8%) | 309 (3.5%) | 589 (6.7%) | 8780 (100.0%) |



〈그림 3-3〉 인권 침해 시 반응(학생, 학부모, 교사)

4)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한 인식

학교의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하여 학생은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63.5%)이 높았던 데에 비해 학부모, 교사는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라는 입장이 가장 높았다(학부모 35.7%, 교사 45.0%). 즉, 다수의 학생은 이성교제에 있어서 학교의 통제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학부모나 교사는 관련 결정에 학부모나 교사 등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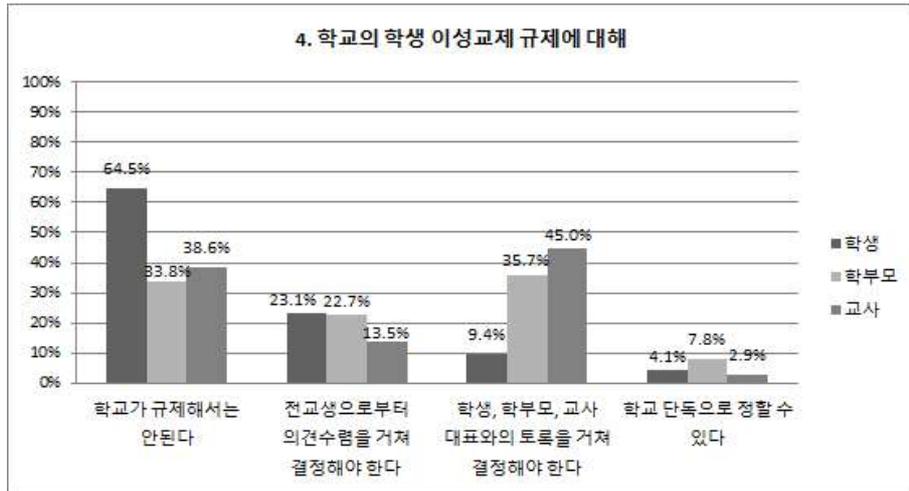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생의 경우 ‘학생·학부모·교사 간 토론을 통한 결정’을 지지한 것은 9.4%에 불과했고, 그보다는 ‘전교생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가 23.1%로 더 높았다.

중,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해 중학생, 고등학생을 막론하고 모두가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60%를 넘을 정도로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중, 고교생 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교 규제 반대’ 입장이 중학생(62.1%)보다 고등학생의 경우(64.5%)에 약간 더 높았다. 또한 ‘전교생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통한 결정’을 지지한 입장도 중학생(22.8%)보다 고등학생(23.3%)이 미세하게나마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학생 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 ‘학교에서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에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더 낮은, 즉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상반된다.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중학생(10.7%)의 경우 고등학생(8.4%)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교가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도 중학생(4.4%)이 고등학생(3.8%)보다 더 높았다.

〈표 3-4〉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 $\chi^2=1248.26^{***}$ | 4. 학교의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해 | | | | | Total |
|------------------------|-----------------------|--------------------------|-------------------------------|-----------------|------------|---------------|
| |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 | 전교생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 | |
| 응답자 | 학생 | 3871 (63.5%) | 1409 (23.1%) | 572 (9.4%) | 248 (4.1%) | 6100 (100.0%) |
| | 학부모 | 622 (33.8%) | 417 (22.7%) | 656 (35.7%) | 144 (7.8%) | 1839 (100.0%) |
| | 교사 | 325 (38.6%) | 114 (13.5%) | 379 (45.0%) | 24 (2.9%) | 842 (100.0%) |
| | Total | 4818 (54.9%) | 1940 (22.1%) | 1607 (18.3%) | 416 (4.7%) | 8781 (100.0%) |



〈그림 3-4〉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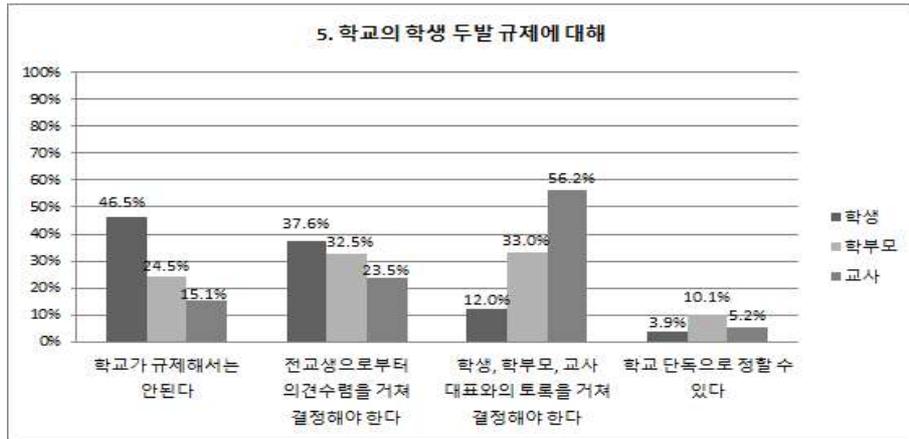
5) 학생 두발 규제에 대한 인식

학생 두발 규제에 대하여 학생은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 는 의견이 가장 높았던 반면(46.5%) 교사(56.2%)와 학부모(33.0%)는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의 토론을 거쳐 결정’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는 의견은 세 집단 모두 낮았지만, 학부모 집단이 그 중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지지((10.1%)를 보였다. 두발을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은 중학생 (44.3%)보다 고등학생의 경우(48.1%)가 약간 더 높았다.

〈표 3-5〉 학생 두발 규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 $\chi^2=1330.25^{***}$ | 5. 학교의 학생 두발 규제에 대해 | | | | Total |
|------------------------|---------------------|--------------------------|------------------------------|-----------------|---------------|
| |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 | 전교생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학생·학부모·교사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 |
| 응답자 | | | | | |
| 학생 | 2834 (46.5%) | 2294 (37.6%) | 732 (12.0%) | 240 (3.9%) | 6100 (100.0%) |
| 학부모 | 450 (24.5%) | 597 (32.5%) | 606 (33.0%) | 186 (10.1%) | 1839 (100.0%) |
| 교사 | 127 (15.1%) | 198 (23.5%) | 473 (56.2%) | 44 (5.2%) | 842 (100.0%) |
| Total | 3411 (38.8%) | 3089 (35.2%) | 1811 (20.6%) | 470 (5.4%) | 8781 (100.0%) |



〈그림 3-5〉 학생 두발 규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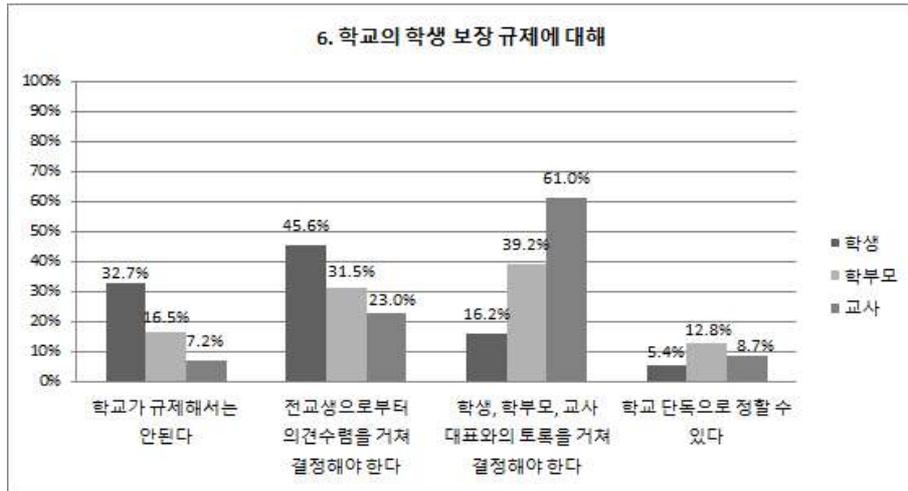
6) 학생 복장 규제에 대한 인식

학교의 학생 복장 규제에 대하여 학생은 ‘전교생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던 반면에(45.6%), 학부모(39.2%)와 교사(61.0%)는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는 입장이 가장 높았다. 특히 교사는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 는 입장이 현저히 낮았고(7.2%),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의 토론을 거친 결정’ 에 대한 지지가 현저히 높았다(61.0%).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는 의견은 세 집단 모두 낮았지만,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지지(12.8%)를 보였다. 복장을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은 중학생(30.6%)보다 고등학생(34.3%)이 약간 더 높았다.

〈표 3-6〉 학생 복장 규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 $\chi^2=1280.56^{***}$ | 6. 학교의 학생 복장 규제에 대해 | | | | Total | |
|------------------------|---------------------|--------------------------|------------------------------|-----------------|-------------|---------------|
| |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 | 전교생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학생·학부모·교사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 | |
| 응답자 | 학생 | 1996 (32.7%) | 2783 (45.6%) | 991 (16.2%) | 330 (5.4%) | 6100 (100.0%) |
| | 학부모 | 304 (16.5%) | 579 (31.5%) | 720 (39.2%) | 235 (12.8%) | 1838 (100.0%) |
| | 교사 | 61 (7.2%) | 194 (23.0%) | 514 (61.0%) | 73 (8.7%) | 842 (100.0%) |
| | Total | 2361 (26.9%) | 3556 (40.5%) | 2225 (25.3%) | 638 (7.3%) | 8780 (100.0%) |



〈그림 3-6〉 학생 복장 규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7)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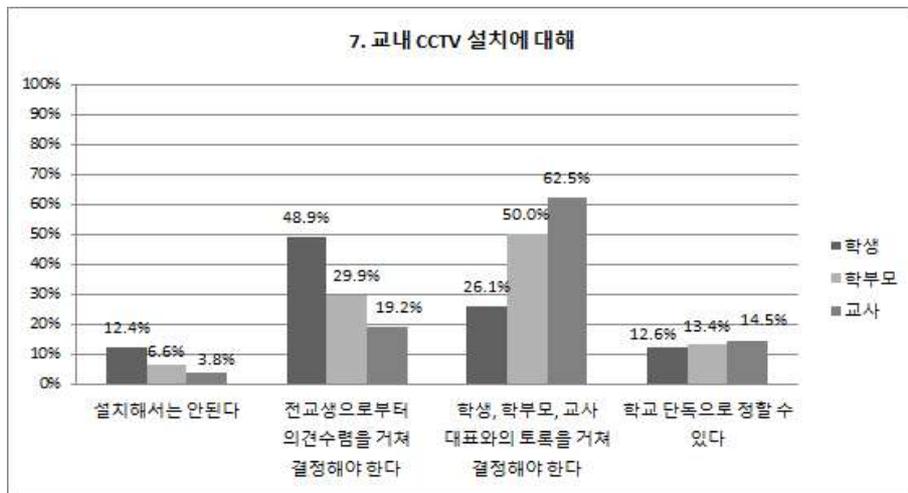
교내 CCTV 설치에 대하여 학생은 ‘전교생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라는 의견(48.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라는 의견(26.1%)이 높았다. 반면에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는 입장(학부모 50.0%, 교사 62.5%)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전교생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 (학부모 29.9%, 교사 19.2%) 순이었다. 한편, 세 집단 모두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는 입장이 ‘설치해서는 안 된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 고등학교의 경우, 교내 CCTV 설치에 대해서 ‘전교생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 하자는 입장이 중학생(44.8%)보다 고등학생(51.9%)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친 결정’ 과 ‘학교 단독 결정’ 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설치해서는 안 된다’ 는 입장은 중학생(14.2%)이 고등학생(11.1%)보다 높았다.

〈표 3-7〉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 $\chi^2=765.30^{***}$ | 7. 교내 CCTV 설치에 대해 | | | | Total | |
|-----------------------|-------------------|--------------------------|------------------------------|-----------------|--------------|---------------|
| | 설치해서는 안된다 | 전교생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학생·학부모·교사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 | |
| 응답자 | 학생 | 757 (12.4%) | 2980 (48.9%) | 1592 (26.1%) | 771 (12.6%) | 6100 (100.0%) |
| | 학부모 | 122 (6.6%) | 549 (29.9%) | 919 (50.0%) | 247 (13.4%) | 1837 (100.0%) |
| | 교사 | 32 (3.8%) | 162 (19.2%) | 526 (62.5%) | 122 (14.5%) | 842 (100.0%) |
| Total | | 911 (10.4%) | 3691 (42.0%) | 3037 (34.6%) | 1140 (13.0%) | 8779 (100.0%) |



〈그림 3-7〉 응답자별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8)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식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학생/학교 안전과 관련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서(46.4% ~ 65.0%), 안전과 관련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양상을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은 의견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서, 학부모와 교사 집단은 ‘사전 고지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이었으나(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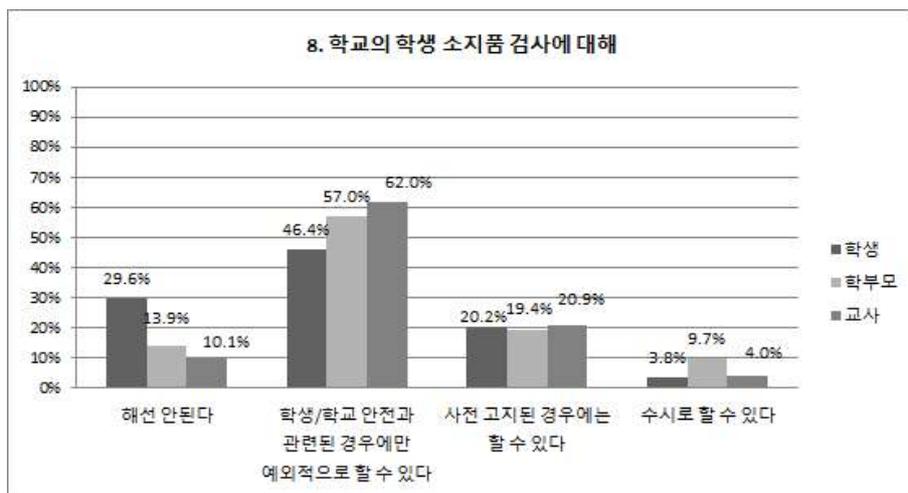
19.4%, 교사 20.9%), 학생은 ‘해서는 안 된다’에 대한 지지(29.6%)가 ‘사전 고지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20.2%)를 앞질렀다. 한편, 학교가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응답을 선택한 비율은 세 집단 모두 가장 낮았지만, 세부적으로는 학부모(9.7%)가 학생(3.8%)이나 교사(4.0%)에 비해 두 배나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중,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하자는 입장은 고등학생(47.8%)이 중학생(44.5%)보다 약간 더 높은 응답을 보였고, ‘수시로 할 수 있다’에서 중학생(4.9%)이 고등학생(2.9%)보다 약간 더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3-8〉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 $\chi^2=393.07^{***}$ | 8. 학교의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해 | | | | Total |
|-----------------------|----------------------|---------------------------------|--------------------|------------|---------------|
| | 해선 안된다 | 학생/학교 안전과 관련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 사전 고지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 수시로 할 수 있다 | |
| 응답자 | | | | | |
| 학생 | 1805 (29.6%) | 2832 (46.4%) | 1234 (20.2%) | 229 (3.8%) | 6100 (100.0%) |
| 학부모 | 255 (13.9%) | 1048 (57.0%) | 357 (19.4%) | 178 (9.7%) | 1838 (100.0%) |
| 교사 | 85 (10.1%) | 547 (62.0%) | 176 (20.9%) | 34 (4.0%) | 842 (100.0%) |
| Total | 2145 (24.4%) | 4427 (50.4%) | 1767 (20.1%) | 441 (5.0%) | 8780 (100.0%) |



〈그림 3-8〉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9) 학생 개인정보 공개 및 제공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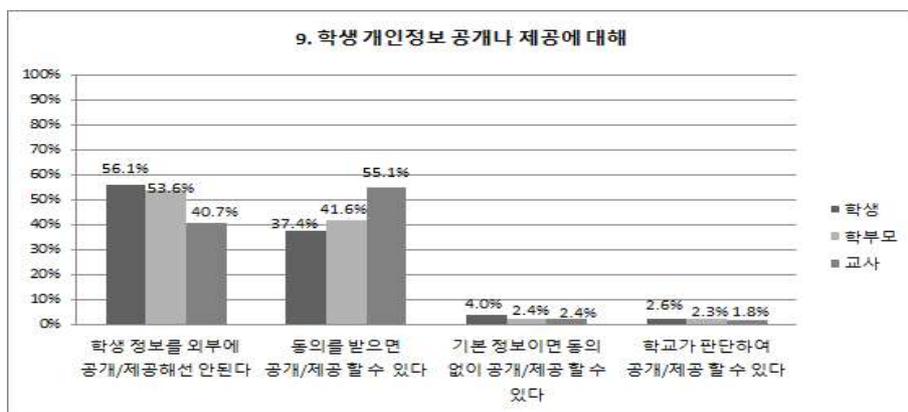
학생 개인정보 공개나 제공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는 학생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는 입장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학생 56.1%, 학부모 53.6%), ‘동의를 받으면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는 상대적으로 낮았다(학생 37.4%, 학부모 41.6%). 반면에 교사는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 50% 이상이었고(55.1%),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는 입장(40.7%)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기본적 정보이면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거나, ‘학교가 판단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1.8 ~ 4.0%).

중, 고등학교의 경우,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는 입장에서 중, 고등학생의 응답률은 비슷한 수준(1.1% 차이 정도)이었다. 다른 응답에서도 중, 고등학생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9〉 학생 개인정보 공개 및 제공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 $\chi^2=106.05^{***}$ | 9. 학생 개인정보 공개나 제공에 대해 | | | | Total | |
|-----------------------|-----------------------|---------------------|--------------------------|----------------------|------------|---------------|
| | 학생정보를 외부에 공개/제공해선 안된다 | 동의를 받으면 공개/제공할 수 있다 | 기본정보이면 동의 없이 공개/제공할 수 있다 | 학교가 판단하여 공개/제공할 수 있다 | | |
| 응답자 | 학생 | 3420 (56.1%) | 2283 (37.4%) | 241 (4.0%) | 156 (2.6%) | 6100 (100.0%) |
| | 학부모 | 986 (53.6%) | 765 (41.6%) | 45 (2.4%) | 42 (2.3%) | 1838 (100.0%) |
| | 교사 | 343 (40.7%) | 464 (55.1%) | 20 (2.4%) | 15 (1.8%) | 842 (100.0%) |
| Total | | 4749 (54.1%) | 3512 (40.0%) | 306 (3.5%) | 213 (2.4%) | 8780 (100.0%) |



〈그림 3-9〉 학생 개인정보 공개 및 제공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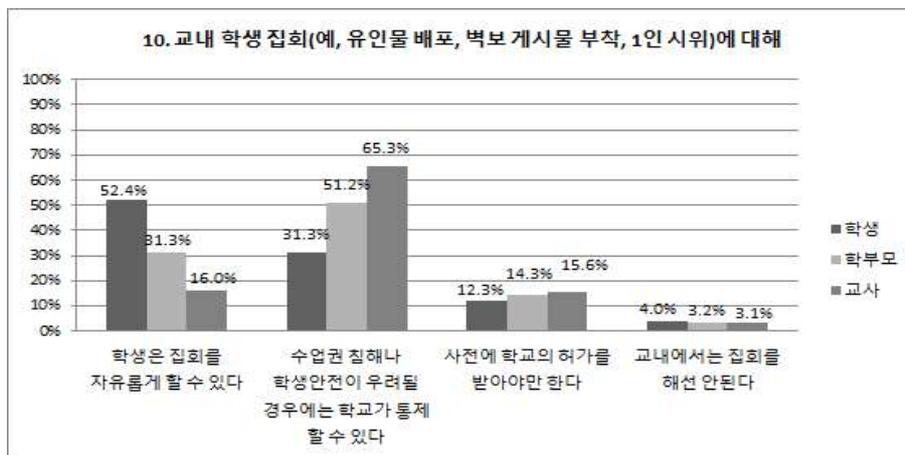
10) 교내 학생집회에 대한 인식

유인물 배포, 벽보 게시물 부착, 1인 시위 등 교내 학생 집회에 대하여 학생은 ‘학생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라는 입장(52.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반면에 학부모나 교사는 ‘수업권 침해나 학생 안전이 우려될 경우, 학교가 통제할 수 있다’ 는 입장이 가장 우세했다(학부모 51.2%, 교사 65.3%). ‘학생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는 의견은 고등학생(55.2%)이 중학생(48.7%)보다 높았다.

〈표 3-10〉 교내 학생 집회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 응답자 | 학생 | 10. 교내 학생 집회(예, 유인물 배포, 벽보 게시물 부착, 1인 시위)에 대해 | | | | Total |
|-------|----|---|------------------------------------|---------------------|------------------|--------------|
| | | 학생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수업권침해나 학생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학교가 통제할 수 있다 | 사전에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 교내에서는 집회를 해선 안된다 | |
| | | $\chi^2=636.79^{***}$ | | | | |
| 학생 | | 3197(52.4%) | 1911(31.3%) | 751 (12.3%) | 241(4.0%) | 6100(100.0%) |
| 학부모 | | 575 (31.3%) | 941 (51.2%) | 263 (14.3%) | 59 (3.2%) | 1838(100.0%) |
| 교사 | | 135 (16.0%) | 550 (65.3%) | 131 (15.6%) | 26 (3.1%) | 842 (100.0%) |
| Total | | 3907(44.5%) | 3402(38.7%) | 1145(13.0%) | 326(3.7%) | 8780(100.0%) |



〈그림 3-10〉 교내 학생집회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1)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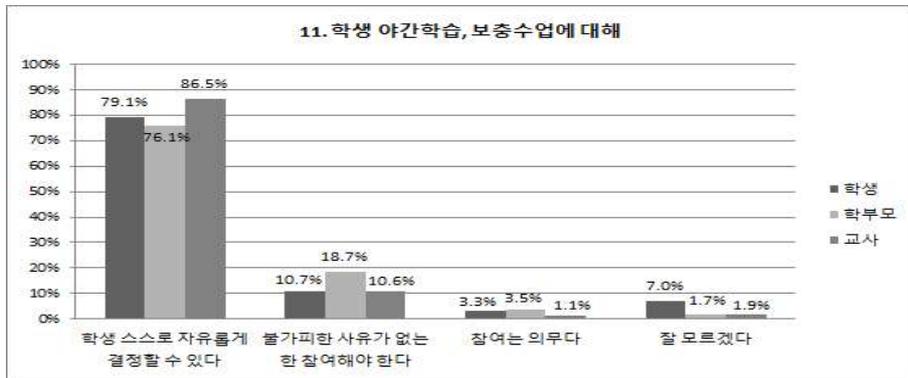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참여에 대하여 세 집단 모두 ‘학생 스스로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라는 의견(76.1% ~ 86.5%)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교사 집단이 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결정’ 을 지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기는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은 참여해야 한다’ 라는 입장에서 학부모 집단(18.7%)은 학생(10.7%)이나 교사(10.6%)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의 지지를 보였다.

중,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스스로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는 항목에 고등학생(82.4%)이 중학생(74.7%)보다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 에서는 중학생(10.9%)과 고등학생(10.5%)이 비슷한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또한 ‘참여는 학생의 의무다’ 에서는 중학생(3.8%)이 고등학생(2.9%)보다 약간 더 높았고, ‘잘 모르겠다’ 에서는 중학생(10.7%)이 고등학생(4.2%)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3-11〉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 응답자 | 학생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 11. 학생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참여에 대해 | | | Total |
|-------|----------------------|----------------------------|------------|------------|---------------|
| | |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해야 한다 | 참여는 의무다 | 잘 모르겠다 | |
| 학생 | 4825 (79.1%) | 650 (10.7%) | 200 (3.3%) | 425 (7.0%) | 6100 (100.0%) |
| 학부모 | 1398 (76.1%) | 344 (18.7%) | 64 (3.5%) | 32 (1.7%) | 1838 (100.0%) |
| 교사 | 728 (86.5%) | 89 (10.6%) | 9 (1.1%) | 16 (1.9%) | 842 (100.0%) |
| Total | 6951 (79.2%) | 1083 (12.3%) | 273 (3.1%) | 473 (5.4%) | 8780 (100.0%) |



〈그림 3-11〉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2) 교내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 수강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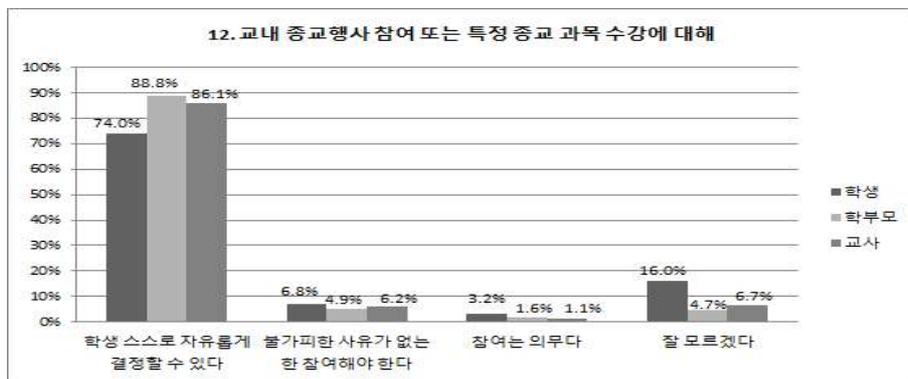
교내 종교행사 참여 또는 특정 종교 과목 수강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집단 모두 높은 비율로 ‘학생 스스로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74.0% ~ 88.8%)을 보였다. 학생(74.0%)보다 학부모(88.8%)나 교사(86.1%) 집단에서 학생의 자유로운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이 더 높았다. 한편,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16.0%)이 학부모(4.7%)나 교사(6.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생은 ‘학생 스스로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75.9%)이 중학생(71.6%)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해야 한다’는 중학생(7.0%)과 고등학생(6.6%)이 비슷한 수준의 응답을 보였으나, ‘참여는 학생의 의무다’(중학생 3.9%, 고등학생 2.7%), ‘잘 모르겠다’(중학생 17.4%, 고등학생 14.9%) 등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표 3-12〉 교내 종교행사참여 및 종교과목수강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 응답자 | 학생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 12. 교내 종교행사 참여 또는 특정 종교 과목 수강에 대해 | | | Total |
|-------|----------------------|-----------------------------------|------------|--------------|---------------|
| | |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해야 한다 | 참여는 의무다 | 잘 모르겠다 | |
| 학생 | 4517 (74.0%) | 413 (6.8%) | 196 (3.2%) | 974 (16.0%) | 6100 (100.0%) |
| 학부모 | 1632 (88.8%) | 90 (4.9%) | 30 (1.6%) | 86 (4.7%) | 1838 (100.0%) |
| 교사 | 725 (86.1%) | 52 (6.2%) | 9 (1.1%) | 56 (6.7%) | 842 (100.0%) |
| Total | 6874 (78.3%) | 555 (6.3%) | 235 (2.7%) | 1116 (12.7%) | 8780 (100.0%) |



〈그림 3-12〉 교내 종교행사참여 및 종교과목수강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3)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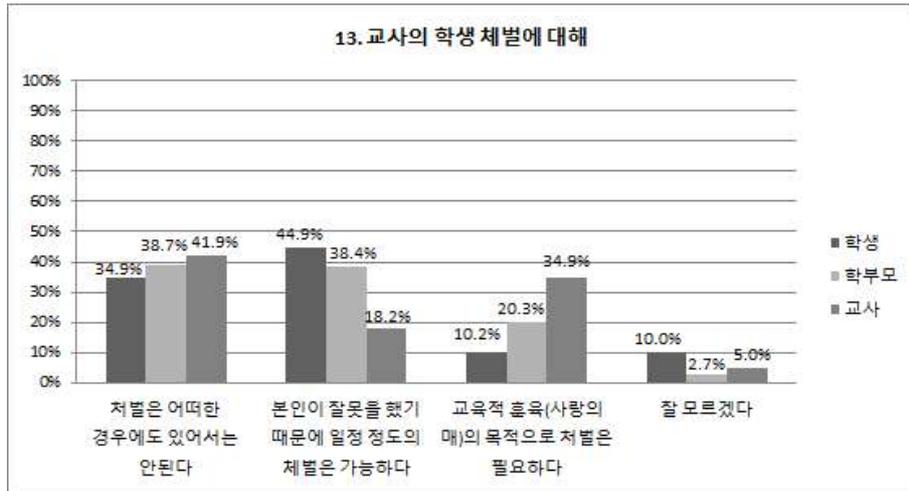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하여 학생은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 는 입장(44.9%)이 가장 높았지만,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는 입장(34.9%)도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났다. 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 는 입장(41.9%)이 가장 높았지만, ‘교육적 훈육(사랑의 매)의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 는 입장(34.9%)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부모는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 는 입장(38.7%)과 ‘잘못을 했을 때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 는 입장(38.4%)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 고등학교의 경우,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 와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적 훈육(사랑의 매)의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 등에서 대체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의 응답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 차이는 1% 이내로 미미했다. ‘잘 모르겠다’에서는 중학생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나서, 학생인권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중학생이 ‘잘 모르겠다’ 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했다.

〈표 3-13〉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 $\chi^2=608.97^{***}$ | 13.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해 | | | | Total | |
|-----------------------|-----------------------|--------------------------------|------------------------------|--------------|-------------|---------------|
| |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된다 |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 | 교육적 훈육(사랑의 매)의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 | 잘 모르겠다 | | |
| 응답자 | 학생 | 2128 (34.9%) | 2737 (44.9%) | 623 (10.2%) | 612 (10.0%) | 6100 (100.0%) |
| | 학부모 | 710 (38.7%) | 704 (38.4%) | 372 (20.3%) | 49 (2.7%) | 1835 (100.0%) |
| | 교사 | 353 (41.9%) | 153 (18.2%) | 294 (34.9%) | 42 (5.0%) | 842 (100.0%) |
| | Total | 3191 (36.4%) | 3594 (40.9%) | 1289 (14.7%) | 703 (8.0%) | 8777 (100.0%) |



〈그림 3-13-1〉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14) 성적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 및 학교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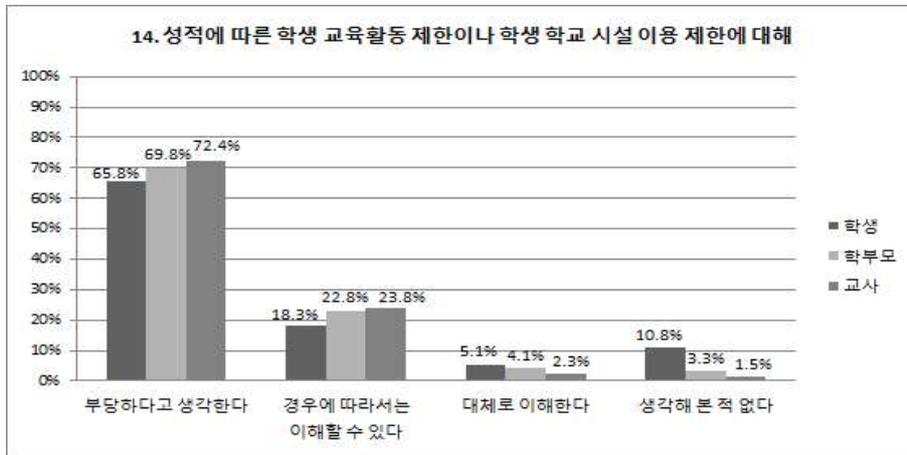
성적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 제한이나 학교시설 이용 제한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했고(65.8% ~ 72.4%),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18.3% ~ 23.8%)도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교사 집단은 성적에 따른 제한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72.4%)이 가장 높았고, ‘대체로 이해한다’(2.3%), ‘생각해 본 적 없다’(1.5%)는 응답은 가장 낮았다. 학생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했지만,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응답이 세 집단 중 상대적으로 높았다(10.8%).

중, 고등학교의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서 고등학생(67.9%)이 중학생(63.0%)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있다’는 응답은 고등학생(18.5%)이 약간 더 높았지만, 중학생(18.0%)과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이해한다’는 고등학생(4.8%)이 중학생(5.7%)보다 약간 더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성적에 따른 차별을 부당하게 인식하는 정도는 고등학생이 더 높고 중학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응답은, 이 문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학생(13.3%)이 고등학생(8.8%)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3-14〉 성적에 따른 제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단위: 명(%)

| $\chi^2=189.48^{***}$ | 14. 성적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 제한이나 학생 학교시설 이용 제한에 대해 | | | | Total | |
|-----------------------|---|-------------------|--------------|------------|-------------|---------------|
| |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있다 | 대체로 이해한다 | 생각해 본 적 없다 | | |
| 응답자 | 학생 | 4013 (65.8%) | 1116 (18.3%) | 314 (5.1%) | 657 (10.8%) | 6100 (100.0%) |
| | 학부모 | 1280 (69.8%) | 419 (22.8%) | 75 (4.1%) | 61 (3.3%) | 1835 (100.0%) |
| | 교사 | 610 (72.4%) | 200 (23.8%) | 19 (2.3%) | 13 (1.5%) | 842 (100.0%) |
| Total | | 5903 (67.3%) | 1735 (19.8%) | 408 (4.6%) | 731 (8.3%) | 8777 (100.0%) |



〈그림 3-14-1〉 성적에 따른 제한에 대한 인식(학생, 학부모, 교사)

IV

학교규칙의 기본권 침해 실태

| | |
|----------------------|-----|
| 1. 학교규칙과 학생의 법적 지위 | 135 |
| 2. 학교규칙 분석 항목의 설정 | 137 |
| 3. 학교규칙의 실태 조사 결과 | 142 |
| 4. 학교규칙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 151 |

1. 학교규칙과 학생의 법적 지위

1) 학교규칙의 의의

학교규칙(이하 ‘학칙’ 이라 함)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기재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으로 구성된다.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은 관계 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학교규칙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이 중에서 7항, 8항 및 9항이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에 해당한다.

2) 학교규칙의 규범력

학교규칙은 학교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학교의 주체들 사이의 합의를 담

은 것이어야 한다. 학교는 는 이러한 합의를 근거로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고 실천하게 할 수 있다. 학교마다 특색 있 자치 활동과 학생 지도 방법 등을 만들고 실천함으로써 자율성의 상징이 된다.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학교 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 수렴 과정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교의 각 주체들이 학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돕는다. 학교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학칙의 내용을 안내, 홍보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과 예외 없이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학칙은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할 때 자치규범으로서의 본질적인 가치가 실현된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창조해 가는 학생자치 활동의 원천이다. 학칙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호하면서, 학교 내외에서의 잘못된 행동을 제한하고 구속하는 성격을 갖는다. 교원에게 있어서 학칙은 학생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교육의 연장선에 놓여있다. 상벌 등 학생지도의 기준이 되며, 학칙 제개정 절차나 징계 절차에 참여를 통해서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혀가게 된다. 학칙은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서 역할을 한다. 학칙은 학부모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될 때 규범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된다.

3) 학생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의 보장의 원칙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의 법적 지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생들은 광범위한 학생지도권의 객체에 불과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소위 ‘특별권력관계이론’으로 학교와 학생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개별적인 법적 근거 없이도 교육의 목적 범위 내에서 임의대로 기본권의 제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에는 더 이상 특별권력관계이론을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비록 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에는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학생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법리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은 교사와 부모 사이에 놓여 있는 미성년의 존재로서 그의 기본권

의 실현은 부모의 양육권과 교사의 교육권과 필연적으로 충돌한다. 이러한 학생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충돌의 상황의 모순을 명문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규칙이다. 따라서 학교규칙이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원칙과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의 법리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아울러 학교규칙에서 기본권 보장의 독소가 될 수 있는 조항을 제거한다면 학교규칙이 학생들에게 규범으로서의 위엄을 갖고 학생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장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학교규칙 분석 항목의 설정

1) 학생의 기본권의 주요 영역과 내용

지방교육자치단체 중심의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관련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조례제정은 학생인권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운영되고 있으며, 조례 분석을 통해 학생인권의 영역과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4-1>과 같다.

<표 4-1> 조례 분석을 통한 학생인권 영역 및 내용

| 영역 | 주요 내용 |
|---------------|---|
| 차별금지 | -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
|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 - 체벌 및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언어폭력 금지 - 아동학대, 성폭력 등 폭력피해 학생보호 등 |
| 교육에 관한 권리 | - 학습권 보장, 아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관한 학생선택권 보장, 휴식권 보장 등 |
| 사생활의 자유 | - 두발, 용모 및 복장의 자유 - 고정형 명찰 부착강요 금지 -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치마와 바지 중 선택권 - CCTV 설치여부 및 장소 결정 시 학생 의견 수렴 - 개인동의 없는 소지품검사 금지,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검사금지, 합리적 이유 없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금지, 성적·징계 사실, 교육비·급식비 등 개인신상 정보 보호, 학교 밖 명찰착용 강제 금지 등 |

| 영역 | 주요 내용 |
|-----------------|---|
|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 교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사표현 제한 금지 - 서명이나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 - 교내·외 정치활동 및 집회참여 등 |
|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 - 반성문, 서약서 작성 강요 금지 -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금지 -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
| 자치 및 참여권리 | - 동아리 활동, 학급회, 학생회 활동 적극 보장 -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의견 존중 -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 장 - 학생대표와의 정기적 면담 실시 -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
| 적법한 징계절차 | -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 소명의 기회(진술권 보장), 대리인 선임권, 재심 요청 등 - 징계내용 공고 금지 - 부당한 상·벌점제 제도 개선 |
|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학생인권 침해사안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상담·구제 신청 제한 금지 및 이를 이유로 한 징계 금지 |

2) 학교규칙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의 필수적 요소

(1) 기본권 보장의 원칙이 선언되고 주요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한다.

학교규칙을 헌법과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공동체의 규범으로 존재해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교교육과정에서의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고등교육법 제18조의 4는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원칙은 마찬가지로 학교규칙에서도 뚜렷하게 선언될 필요성이 있다. 기본권 보장의 원칙의 선언은 학교규칙이 학생에게 기본권의 권리장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지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동시에 학교라는 폐쇄적일수도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기본권 제한의 유혹을 일찌감치 뿌리치게 하는 빗장의 역할을 한다.

학교규칙은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가장 먼저 단호하게 선언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의 기본권 중에서 주로 침해되기 쉽고 침해의 사례가 많은 기본권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기본권 보장원칙의 선언과 학생의 기본권의 구체적 열거를 통하여 학교가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학생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개별 기본권의 침해가 없어야 한다.

학교규칙은 학생기본권의 구체적인 실천규범으로서 개별 권리들의 올바른 행사와 제한에 어떠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요소가 없도록 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이 학생에게도 원칙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학교규칙에서 모든 기본권의 내용을 담는 것은 불가능하고 필요하지도 않다.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기본권으로 주로 문제되었던 기본권 혹은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중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경우로는 차별금지위반, 사생활 침해,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 등을 들 수 있다.

(3) 학칙위반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되는 인적 요소와 교육시설이라는 물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다수의 학생들에게 공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학교의 중심적 존재 의의는 교과교육과 같은 교육활동이지만 공동체 규범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이를 강제적으로 준수하게 하는 생활지도도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는 학교규칙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징계절차 또는 선도절차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종래 협의의 학교규칙은 학칙 위반에 대한 징계절차와 같은 의미로 쓰일 정도로 학칙위반에 대한 징계절차는 학교규칙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징계 또는 선도절차는 사법(司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공무원 징계절차에 관한 행정절차 또는 형사절차에 비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학생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학교행정 절차 중에서 가장 명확해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4)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원칙 4가지 중의 하나로 의견표명권(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을 선언하고 있다.¹⁾ 아동의 의견표명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가진다는 자주성과 독립성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서 아동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에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장된다.

이와 같은 아동의 의견권 존중 및 참여권의 보장은 자주적, 민주적 시민 양성의 교육목표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학교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현장의 현실에서 학생의 의견표명권의 구체적 실천의 어려움은 의견표명권을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권리에만 머물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의견표명권과 참여권의 보장은 그 절차적 권리 규정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이는 비단 집행주체의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학교 규칙의 제정 단계에서부터 절차를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하여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5) 규범으로서 적절한 내용과 형식,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야 한다.

학교규칙에 대한 인지도는 이 연구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85.8%로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규칙에 대해서 본 적이 있으며 학교생활규범으로서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2006년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보고서²⁾의 48.5%보다 상당히 진전된 조사결과로서 지난 10년 동안 학교현장, 교사, 학부모 단체 및 국가기관 등이 학교규칙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의 노력을 해왔던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학교규칙은 규범의 수범자이자 징계절차 등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여전히 규범으로서의 제 위치를 찾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는 여러 원인이 지적될 수 있겠으나 우선 비현실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2) 중고등학생 인권상황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6.

학교규칙, 개별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들이 규범으로서 위엄을 가지기에 너무나 조잡한 학교규칙, 금지와 처벌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오히려 실제에서는 거의 사문화된 학교규칙 등이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규칙은 위와 같은 규범으로서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학생들의 기본권에 관한 권리장전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규칙의 준수를 강제하고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서 제 모습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정 다음으로 중요한 공동체인 학교의 규칙이 국가나 사회의 다른 규범들과는 달리 단지 강제적인 규범력(power of the rules)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규범으로서의 진정한 위엄 (dignity of the rules)을 갖추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3) 분석항목 설정

위에서 실시한 학교규칙의 필수적 요소를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교규칙 분석을 위한 항목을 기본권 보장 영역, 개별 기본권의 침해여부 판단 영역, 절차적 권리의 보장 영역, 의견권 및 참여권 존중 영역, 마지막으로 규범의 형식과 용어의 영역 등 크게 5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전체 10개의 항목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하였다(<표 4-2> 참조).

〈표 4-2〉 학칙 분석 영역 및 항목

| 영역 | 번호 | 항목 | Yes | No |
|--------------------|----|--|-----|----|
| 1. 기본권 보장 | 1 | 학생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선언적·포괄적 조항이 있습니까? | | |
| | 2 | 학생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까? | | |
| 2. 개별 기본권 침해 여부 | 3 | 차별금지에 위반한 조항이 있습니까? | | |
| | 4 | 사생활 침해 금지에 위반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 | |
| | 5 |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 | |
| | 6 |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 | |
| 3. 절차적 권리의 보장 | 7 | 학칙(규정) 위반에 대한 선도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 | |
| 4.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 8 | 학생 선도(징계)과정에서 학생의 의견표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 | |
| | 9 | 학칙(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수렴 조항이 있습니까? | | |
| 5. 규범의 형식 (용어와 개념) | 10 | 규정 또는 상벌제세 세부기준 등에서 적절하지 않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단어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가? | | |

기본권 보장 영역에서는 기본권 보장의 원칙의 선언과 중요한 학생의 기본권의 열거 여부를, 개별 기본권의 침해 여부 영역에서는 차별금지·사생활침해금지·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종교의 자유 등 학생의 중요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절차적 권리의 보장 영역에서는 징계 또는 선도절차에서의 구체성 여부를, 의견권 존중과 참여권 보장 영역에서는 징계(선도)절차와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서의 의견권 존중 및 참여권의 보장 여부를, 마지막으로 규범의 형식과 용어의 영역에서는 규범의 명확성과 용어와 개념의 사용의 적절성 등을 분석항목으로 설정하였다.

3. 학교규칙의 실태 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학교규칙의 선정

중학교는 17개 광역단위에서 공립과 사립으로 각 1개의 학교를 추첨하여 34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고등학교는 17개 지역에서 각 6개의 학교유형별로 각 1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102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이로써 종합 136개 학교의 교칙을 조사·분석하였다.³⁾

2) 항목별 조사 결과 (10개 항목)

(1) 기본권 보장 영역에 대한 조사

〈표 4-3〉 기본권 보장 영역에 대한 조사

단위: 수(%)

| 문항 | 전체 (N=136) | | 중학교 (N=34) | | 고등학교 (N=102) | |
|-------------------------------------|--------------|---------------|--------------|--------------|--------------|--------------|
| | Yes | No | Yes | No | Yes | No |
| 1. 학생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선언적·포괄적 조항이 있습니까? | 30 (22.1) | 106 (77.9) | 11 (32.4) | 23 (67.6) | 19 (18.6) | 83 (81.4) |
| 2. 학생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까? | 27 (19.9) | 109 (80.1) | 8 (23.5) | 26 (76.5) | 19 (18.6) | 83 (81.4) |

3) 학칙 분석에 포함된 학교 수:

- 중학교: 17개 지역 x 2개 학교유형(공립, 사립) = 34
- 고등학교: 17개 지역 x 6개 학교유형 = 102
- 총 34+102=136개 학교들의 학교규칙을 분석함.

(2) 개별 기본권 침해 여부 영역에 대한 조사

〈표 4-4〉 개별 기본권 침해 여부 영역에 대한 조사

단위: 수(%)

| 문항 | 전체(N=136) | | 중학교(N=34) | | 고등학교(N=102) | |
|--|---------------|---------------|--------------|--------------|--------------|--------------|
| | Yes | No | Yes | No | Yes | No |
| 3. 차별금지에 위반한 조항이 있습니까? | 27 (19.9) | 109 (80.1) | 8 (23.5) | 26 (76.5) | 19 (18.6) | 83 (81.4) |
| 4. 부당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 126 (92.6) | 10 (7.4) | 31 (91.2) | 3 (8.8) | 95 (93.1) | 7 (6.9) |
| 5.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 113 (83.1) | 23 (16.9) | 32 (94.1) | 2 (5.9) | 81 (79.4) | 21 (20.6) |
| 6.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 14 (10.3) | 122 (89.7) | 5 (14.7) | 29 (85.3) | 9 (8.8) | 93 (91.2) |

(3) 절차적 권리의 보장 영역에 대한 조사

〈표 4-5〉 절차적 권리의 보장 영역에 대한 조사

단위: 수(%)

| 문항 | 전체(N=136) | | 중학교(N=34) | | 고등학교(N=102) | |
|---|---------------|------------|--------------|------------|--------------|------------|
| | Yes | No | Yes | No | Yes | No |
| 7. 학칙(규정) 위반에 대한 선도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 129 (94.9) | 7 (5.1) | 31 (91.2) | 3 (8.8) | 98 (96.1) | 4 (3.9) |

(4)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영역에 대한 조사

〈표 4-6〉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영역에 대한 조사

단위: 수(%)

| 문항 | 전체 (N=136) | | 중학교 (N=34) | | 고등학교(N=102) | |
|---|---------------|------------|--------------|-------------|--------------|------------|
| | Yes | No | Yes | No | Yes | No |
| 8. 학생 선도(징계)과정에서 학생의 의견표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 127 (93.4) | 9 (6.6) | 30 (88.2) | 4 (11.8) | 97 (95.1) | 5 (4.9) |
| 9. 학칙(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수렴 조항이 있습니까? | 130 (95.6) | 6 (4.4) | 33 (97.1) | 1 (2.9) | 97 (95.1) | 5 (4.9) |

(5) 규범의 형식(용어와 개념) 영역에 대한 조사

〈표 4-7〉 규범의 형식(용어와 개념) 영역에 대한 조사

단위: 수(%)

| 문항 | 전체 (N=136) | | 중학교 (N=34) | | 고등학교(N=102) | |
|--|---------------|--------------|--------------|------------|--------------|--------------|
| | Yes | No | Yes | No | Yes | No |
| 10. 규정 또는 상벌점제 세부기준 등에서 적절하지 않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단어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가? | 114 (83.8) | 22 (16.2) | 31 (91.2) | 3 (8.8) | 83 (81.4) | 19 (18.6) |

3) 침해 학칙 조항의 분석 기준 및 예시

〈표 4-8〉 침해 학칙 조항의 분석기준 및 예시

| 1. 기본권 보장 영역 | | |
|-------------------------------------|---|--|
| 항목 | 분석기준 | 예시 |
| 1. 학생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선언적·포괄적 조항이 있습니까? | * 학교규칙의 목적에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측면에 대한 기술여부 | * 학교규칙의 목적 조항이 없거나 학교규칙을 금지와 처벌 규정에 중점을 둔 경우가 전체 77.9%로 조사됨 |
| 2. 학생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까? | * 학생의 주요한 기본권이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 기본권의 열거없이 학생의 의무와 금지, 상벌 위주로 되어 있는 학교규칙이 전체 80.1%로 조사됨. |
| 2. 개별 기본권 침해 여부 | | |
| 항목 | 분석기준 | 예시 |
| 3. 차별금지에 위반한 조항이 있습니까? |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는지 여부 | * 차별금지에 위반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학교규칙의 비율이 아직까지도 20%로 조사됨. 예시 1) 성별에 따른 차별조항 ④ 여학생으로서의 단정한 몸가짐과 태도를 익히자 예시 2) 성적·징계 등을 이유로 한 임원자격 차별조항 (임원선발기준): ① 신입생 배치고사 결과 석차 백분율 하위 30%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를 불허한다. ② 결원 보충은 최근시험성적순(모의고사 포함)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계열석차 백분율 하위 30%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 불허),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성적은 전(前)학기 성적이 전체 교과목 중 전체 4개 이상이 4 등급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

| | | |
|-------------------------------------|---|---|
| | | <p>④ 교과 성적이 해당학년의 1학기에 성취도 ‘E’ 가 1/3을 넘지 않는 학생(총명한 학생), 해당 학년의 출석률이 98%이상이며 무단결석이 없는 학생(건강한 학생), 간부수련회 활동에 참석한 학생(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학생)인 자로 한다.</p> <p>⑤ 무단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p> <p>예시 3) 임원과 일반학생과의 차별</p> <p>① 학급 내 봉사활동은 학급반장(부반장)을 제외한 학생 전원이 학급마다 2명씩 연속 1주일 간 봉사한다.</p> <p>예시 4) 성적과 징계들을 이유로 한 포상제한 차별 및 이중처벌</p> <p>(포상제한) 제54조 각 항에 해당되는 학생이라도 학교 생활인권규정에 의거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은 포상할 수 없다.(단, 교과우수상 등 성적과 관련이 있는 상은 예외)</p> <p>(이중처벌) 학교선도위원회에서 내려진 모든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 징계 시점 이후 장학금제외(당학기 수령 시 반납), 학교를 대표하는 각종 경시대회에 참석 할 수 없으며 학생자치회 임원, 학급회장, 학급부회장이 될 수 없고, 학교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모든 직책은 징계시점 이후부터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이 박탈되며, 그 직은 재선출 하는 것으로 한다.</p> |
| <p>4. 사생활 침해 금지에 위반하는 조항이 있습니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발, 용모 및 복장의 자유 * 고정형 명찰 부착강요 금지 *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치마와 바지 중 선택권 * CCTV 설치여부 및 장소 결정 시 학생 의견 수렴 * 개인동의 없는 소지품검사 금지,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검사 금지, 합리적 이유 없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금지, 성적·징계 사실, 교육비·급식비 등 개인신상 정보 보호, 학교 밖 명찰착용 강제 금지 등의 사생활 침해 조항을 포함하는지 여부 | <p>* 사생활 침해 조항이 92.6%로 조사됨</p> <p>예시 5) 두발관련 제한</p> <p>① 염색은 검정색만 허용한다. 파마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p> <p>② 염색과 파마머리, 붙임머리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는다.</p> <p>③ 염색 무스, 젤, 스프레이 등을 해서는 안 되며, 고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p> <p>1) 남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머리를 당겼을 때 눈에 닿지 않아야 하며 구레나룻을 길러서는 안 된다. -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아야 하고 뒷머리는 목을 덮지 않아야 한다. - 가르마와 삭발머리를 해서는 안 된다. <p>2) 여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학생 두발은 옆머리가 귀 밑 10CM를 벗어나지 않는 단정한 단발머리를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보다 긴 머리(어깨선 기준 10cm 밑)를 할 때에는 반드시 단정히 묶어야 한다.(머리띠는 화려하지 않는 학생다운 것으로 해야 한다. |

| | |
|--|---|
| | <p>- 머리를 묶을 때에는 장식이 없는 고무줄로 느슨하게 묶지 않으며, 장식이 있거나 천으로 싸여진 고무줄, 머리띠 금지. 앞머리를 고무줄로 묶는 사과머리 금지. 머리를 말아 올리거나 땀거나 자갈치머리, 갈래머리 등 금지.</p> <p>예시 6) 화장 제한</p> <p>① 화장(파우더, 색조화장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색조 화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1) 물티슈 또는 클렌징티슈 등으로 닦아서 색깔이 묻어나오는 모든 색조 화장 2) 립밤, 립글로스 등을 막론하고 모든 색조 관련 미용품</p> <p>예시 7) 화장 외 미용관련 제한 (렌즈, 문신, 해나, 매니큐어 등)</p> <p>① 문신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상담교사에 의한 상담을 진행하고 벌점 5점을 부과한다. ② 교내에서 귀걸이, 피어싱은 금지된다. ③ 목걸이, 반지, 귀고리, 팔찌, 눈에 띄는 머리 핀 등은 착용을 금지한다. ④ 손톱에 유색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네일아트 등을 하지 않는다. ⑤ 써클렌즈는 허용하지 않는다. ⑥ 시력 보정의 목적이 아닌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컬러렌즈, 써클렌즈 착용을 금한다. ⑦ 반지(목주반지 포함), 팔찌(염주팔찌 포함) 등의 착용을 금지한다</p> <p>예시 8) 신발, 가방, 양말, 면티, 외투, 교복 등의 모양 및 색깔 제한 (선도기준규정)</p> <p>① 신발: 1) 원색(빨강, 주황, 노랑, 주황, 형광색 등)의 운동화는 착용 금지 2) 발에 맞지 않는 큰 신발이나 통굽인 경우 3) 발목위로 높이 올라오는 등산화 또는 군화형의 신발을 착용하는 행위 4) 유행에 민감한 형태나 색깔의 신발을 신는 경우 (마귀신발 대발이신발등)</p> <p>② 가방 1) 등에 메는 가방 이외의 것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 2) 강렬한 원색의 가방이나 쇼핑 팩을 가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색(빨강, 노랑 등)적이고 선정적인 문구가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p> <p>③ 양말 1) 빨강, 노랑 등 원색적이고 선정적인 색을 제외한 흰색, 회색, 검은색 계통의 것</p> |
|--|---|

| | |
|--|--|
| | <p>2) 시선을 집중시키는 강렬한 원색 요란한 무늬의 양말을 착용하는 경우</p> <p>3) 규정된 양말 이외의 것을 신고 다니는 경우 (숙녀용 스타킹, 토시 등)</p> <p>4) 남학생 양말은 단색 계통의 검정색, 짙은 남색, 흰색, 회색 등만 허용한다.</p> <p>④ 교복</p> <p>1) 치마(여): 치마의 길이가 무릎을 완전히 덮지 못하거나 폭을 지나치게 줄인 것.</p> <p>2) 바지(남,여): 바지의 기장이나 폭을 줄여 지나치게 몸에 붙는 것.</p> <p>⑤ 그 외 기타</p> <p>1) 겨울철 덧옷(코트, 점퍼류), 셔츠류, 양말은 원색이거나 색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피하고, 외래어나 눈에 거슬리는 무늬가 있는 것은 금한다.</p> <p>2) 가디건, 조끼 허용 : 남색, 검은색, 보라색/ 셔츠 안 반팔티, 폴라티 허용 : 흰색, 어두운 색</p> <p>3) 하절기에도 흰색 또는 얼은 회색의 내의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여학생은 검정색 허용)</p> <p>4)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는 경우</p> <p>예시 9)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을 강제하는 규정</p> <p>① 자율학습 참여는 의무이며, 부득이 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에는 사감선생님의 허락을 얻는다.</p> <p>예시 10) 학생의 소유의 물건 관련한 침해</p> <p>① 화장품 소지는 일절 금하며 적발 시 압수하여 폐기 처분된다.</p> <p>② 귀걸이,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의 착용을 금지한다. 단속에 걸리면 압수한다.</p> <p>예시11) 소지품 검사에 관한 침해</p> <p>*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상황 또는 필요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 동의하에”, 또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등 소지품 검사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p> <p>①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할 때 실시한다.</p> <p>②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소지품 및 용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예시 12) 기숙사 생활 침해</p> <p>① 기숙사 불시점검: (반입금지물품 사용상태 또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사전공지 및 동의 없이 호실을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p> |
|--|--|

| | | |
|---|---|---|
| | | <p>예시 13 흡연, 오토바이 적발 학생에 대한 침해 ② 흡연 학생에 대한 지도 규정: 주기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하여 교 내·외 흡연 학생 적발 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이동 제한) 하계, 동계 휴가 중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처벌: 오토바이(50cc이상)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④ 흡연, 담배,ライター 소지로 적발될 경우 스포츠 형으로 정리</p> <p>예시 14 고정형 명찰 패용 의무의 부과로 인한 침해 ① 교복 상의(자켓, 블라우스, 셔츠, 조끼, 가디건 모두 포함)는 왼쪽 가슴 주머니에 녹색의 학교마크와 이름(동복 회색, 하복 남색)을 모두 박아서 새긴다. ② 교복은 반드시 상하의에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새겨 넣고 조끼 및 교복상에는 지정된 곳에 본인의 이름을 해당학년에 맞는 색상으로 새긴다. ③ 직사각형꼴의 형태로 학년별로(2013년도 기준) 자주색(빨강)색, 녹색, 노랑색으로 색상을 구분한다. 명찰은 전체 부착 방식으로 한다.</p> |
| <p>5.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까?</p> | <p>교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사 표현 제한 금지, 서명이나 실문을 통한 의견수렴 ,교내·외 정치활동 및 집회 참여금지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지 여부</p> | <p>*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83.1%</p> <p>예시 15 교외 집회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 규정 ①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하여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② 정치 관련 행위,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③ 학생신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학생</p> <p>예시 16 동아리 활동 등 13학생들의 자발적 모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 ① 학교장의 허락 없이 단체나 서클을 조직, 활동하거나 가입한 자 ② 허가 없이 씨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③ 학교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의 모임을 꾀한 자 ④ 집단행동 모의를 주동한 자 ⑤ 특별 활동 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모임, 교우들간의 사적 모임을 동아리로 지칭하거나 후배를 모집하는 경우 해체를 지시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학칙에 의거 처벌한다.</p> <p>예시 17 교내·외 집회 참여를 제한하거나 학교장 허가 사항으로 두고 있는 규정 ① 학교장의 허락 없이 외부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② 학교에서 인정되지 않는 교외 집회 동아리 모임 참가 ③ 교내에서 학생들이 집회를 하고자 할 때, 담임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p> |

| | | |
|--|---|--|
| <p>6.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까?</p> | <p>반성문, 서약서 작성 강요 금지,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금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하는지 여부</p> | <p>*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가 10.3%의 비율</p> <p>예시 18) 특정종교과목 수강이나 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규정</p> <p>① 본교의 건학 이념에 따라 각종 종교행사를 통하여 인성지도를 실시한다.</p> <p>1) 아침예배시간에는 우리들의 찬양과 성경을 준비하고 조용히 방송에 귀 기울인다.</p> <p>2) 정오의 기도시간에는 타 학생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들지 않으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진다.</p> <p>3) 체플시간에는 우리들의 찬양과 성경을 준비한다.</p> <p>② 예배 시간에는 솔선해서 참여하며 성경과 찬송가를 지참한다. 주일에는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항상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인의 본분을 잘 지킨다. 단, 종교가 다를 시에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신앙인의 본분을 잘 지키도록 한다.</p> <p>예시 19) 부정행위 방관/방조/은닉에 대한 징계사유 규정</p> <p>① 고사 중 부정행위를 방조한 자, 친구의 잘못을 보고도 방관 또는 묵인하거나 동조한 학생</p> <p>② 가출한 학생의 소재를 고의로 숨기고 은닉시켜 준 학생</p> <p>③ 밤 12시 이후 자신의 홈/룸메이트가 방을 이탈하는 것을 알면서 방관하거나, 자신의 방으로 다른 방의 구성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 방관하는 경우 통금위반에 준한 벌을 받는다.</p> <p>④ 불량 서클 가입 금지 및 서클가입 요구시(목격자 포함) 즉시 신고</p> <p>예시 20) 반성문 또는 서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규정 <서식 2> 서약서 (상벌점제)</p> <p>저는 앞으로 학교생활에 더욱 충실하여 기본생활습관을 지킴은 물론, 학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하고, 이후 학생 신분에서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보호자의 확인으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p> <p>예시 21) 기타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정)</p> <p>① 국기와 조국에 대해 불손한 경우</p> <p>② (불온사상)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행위를 한 학생.</p> |
| <p>3. 절차적 권리의 보장</p> | | |
| <p>7. 학칙(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선도)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p> | <p>징계(선도)위원회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규정,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심절차 안내, 대리인 선임권 . 징계내용 공고 금지, 상·벌점제 등에 관한 내용이 타당하고 적절한지 여부</p> | <p>* 징계(선도)절차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5.1%의 비율로 조사됨.</p> |

| 4.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 | |
|--|---|--|
| 항목 | 분석기준 | 예시 |
| 8. 학생 선도(징계)과정에서 학생의 의견표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 선도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제공되는지 여부,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의견존중,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학생대표와의 정기적 면담 실시,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 징계(선도)절차에서의 의견표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거나 진술기회의 보장을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학교규칙의 비율이 6.6% |
| 9. 학칙(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수렴 조항이 있습니까? | 기적 면담 실시,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 학칙(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이를 필요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학교규칙의 비율이 4.4% |
| 5. 규범의 형식(용어와 개념) | | |
| 항목 | 분석기준 | 예시 |
| 10. 개별 규정 또는 상벌 점제 세부기준 등에서 적절하지 않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단어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가? | 기본권 침해적 요소를 포함하거나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규범으로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조잡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으로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 있는지 여부 | * 개별 규정 또는 상벌점제 세부기준 등에서 적절하지 않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단어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83.8% 예시 22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등의 용어의 사용 (징계사유) ①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②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③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신발을 착용한 경우 ④ 학생 신분엔 어울리지 않는 머리를 한 경우 ⑤ 학생으로서 단정하지 못한 외투를 입고 다니는 경우 ⑥ 휴대하지 말아야 할 용품 : 장신구와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용품 ⑦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소지품을 소지한 학생 ⑧ 언행이 불손하거나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행위 예시 23 ‘불건전한’, ‘풍기’, ‘문란’ 등의 용어의 사용 (징계사유) ① 남녀 간에 풍기문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남녀 간의 풍기문란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학생 ③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④ 교내에서 이성과 손을 잡고 다니며 풍기를 문란시키는 학생 ⑤ 불순한 이성교제 및 퇴폐 행위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행위 ⑥ 불건전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3. 기타 추상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의 사용으로 징계사유를 규정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징계기준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②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③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소지품을 소지한 학생 ④ 불법 과외수업 금지 조치에 위배된 행위를 한 학생 ⑤ 각종 촬영기기(카메라 폰 등)의 무절제한 사용으로 타인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물론 타인에게 심적, 물적 피해를 입힌 학생 ⑥ 기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⑦ 인사를 하지 않거나 불손하게 하는 경우. ⑧ (시대와 맞지 않은 조항)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체에 진정이 있는 학생 |
|--|--|---|

4. 학교규칙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1) 기본권 보장의 원칙 영역

항목 1. “학생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선언적·포괄적 조항이 있습니까?”

항목 2. 학생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까?

항목 1은 학교가 학교규칙의 제정취지 또는 목적 조항을 통하여 학생의 기본권 주체성과 기본권 보장의 원칙과 의지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조사 결과 학교규칙의 제정 취지 또는 목적 조항이 없거나 목적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기본권에 관한 원칙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것이 전체 약 77.9%의 비율을 보였다. 항목 2는 마찬가지로 학교규칙이 학생의 주요한 기본권을 열거함으로써 학생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항목이다. 이 항목2에 대해서도 항목 1과 비슷하게 학생의 권리에 대한 열거적 조항이 없는 학교규칙이 약 80.1%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상당수의 학교들이 학교규칙을 제정하면서 학생의 기본권 보장원칙에 관한 조항이나 학생의 권리의 열거조항 없이 과거 학교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여 바로 학생의 의무와 금지사항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학교규칙이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칙을 제정하는 이유가 학생의 학

교생활을 통제·관리하고 엄격한 학생지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 보호와 민주시민 양성에 더욱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각 학교는 목적 조항을 통하여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2) 개별 기본권의 침해여부 분석

(1) 차별금지의 원칙 위반

항목 3. 차별금지에 위반한 조항이 있습니까?

항목 3. 차별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서는 학교규칙이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차별금지의 원칙에 대해서는 현재의 학칙들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차별적 요소가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고 보인다(80.1%). 그러나 조사대상 학교규칙 중에서 차별금지에 위반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학교규칙의 비율이 아직까지도 19.9%로 높게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별조항이 흔히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학생에 대하여 특별한 단정함을 요구하고 있는 학칙도 있었다(예시 1).

예시 1) 여학생으로서의 단정한 몸가짐과 태도를 익히자.

차별금지위반 학교규칙으로 조사된 대부분의 예는 성적, 징계를 이유로 한 임원자격, 포상제한 및 이중처벌의 경우였다. 임원선발의 기준에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거나 결석 등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자격이 되도록 한 학교규칙의 예는 다음과 같다(예시3).

예시 2)

<임원선발기준>

① 신입생 배치고사 결과 석차 백분율 하위 30%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를 불허한다.

- ② 결원 보충은 최근시험성적순(모의고사 포함)으로 선별함을 원칙으로 하며(계열 석차 백분율 하위 30%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 불허),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성적은 전(前)학기 성적이 전체 교과목 중 전체 4개 이상이 4등급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 ④ 교과 성적이 해당학년의 1학기에 성취도"E"가 1/3을 넘지 않는 학생(충명한 학생), 해당 학년의 출석률이 98%이상이며 무단결석이 없는 학생(건강한 학생), 건부수련회 활동에 참석한 학생(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학생)인 자로 한다.
- ⑤ 무단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

차별금지위반 학칙으로 분류된 것 중에서는 학급 내 봉사활동에 임원과 일반 학생을 차별한 조항도 있었다(예시3).

예시 3) 임원과 일반학생과의 차별규정

-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은 학급반장(부반장)을 제외한 학생 전원이 학급마다 2명씩 연속 1주일 간 봉사한다.

포상을 제한하는 사유에 성적과 징계를 명확한 한계없이 규정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 일정 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모든 경시대회 참여, 임원 자격 등을 일체 박탈한 경우가 있었다(예시 4).

예시 4) 성적과 징계들을 이유로 한 포상제한 차별 및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규정 제54조 각 항에 해당되는 학생이라도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의거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은 포상할 수 없다.(단, 교과우수상 등 성적과 관련이 있는 상은 예외)

학교선도위원회에서 내려진 모든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 징계 시점 이후 장학금제외(당 학기 수령 시 반납), 학교를 대표하는 각종 경시대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학생자치회 임원, 학급회장, 학급부회장이 될 수 없고, 학교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모든 직책은 징계시점 이후부터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이 박탈되며, 그 직은 재선출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생활 침해의 금지 원칙 위반

항목 4.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항목 4.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침해 부분에서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로서 두발, 용모 및 복장의 자유, 고정형 명찰 부착강요 금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치마와 바지 중 선택권, CCTV 설치, 소지품검사 금지,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검사, 합리적 이유 없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성적·징계 사실, 교육비·급식비 등 개인신상 정보 보호, 학교 밖 명찰착용 강제 금지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 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형성과 전개를 방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국가인권위원회, 2007. 43쪽). 조사결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92.6%로서 대부분의 학교규칙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와 같은 사생활 침해조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하여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보장이 학생의 주요 기본권 중의 하나라는 인식과 실천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에도 학생에 대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의 침해가 교육적 효과의 달성이라는 목적 아래에 광범위하고도 확고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시 5) 두발관련 제한

- ① 염색은 검정색만 허용한다. 파마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 ② 염색과 파마머리, 붙임머리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는다.
- ③ 염색 무스, 젤, 스프레이 등을 해서는 안 되며, 고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남학생

- 앞머리를 당겼을 때 눈에 닿지 않아야 하며 구레나룻을 길러서는 안 된다.
-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아야 하고 뒷머리는 목을 덮지 않아야 한다.
- 가르마와 석발머리를 해서는 안 된다.

2) 여학생

- 여학생 두발은 옆머리가 귀밑 10CM를 벗어나지 않는 단정한 단발머리를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보다 긴 머리(어깨선 기준 10cm 밑)를 할 때에는 반드시 단정히 묶어야 한다.(머리띠는 화려하지 않는 학생다운 것으로 해야 한다.
- 머리를 묶을 때에는 장식이 없는 고무줄로 느슨하게 묶지 않으며, 장식이 있거나

천으로 싸여진 고무줄, 머리띠 금지. 앞머리를 고무줄로 묶는 사과머리 금지. 머리를 말아 올리거나 땡거나 자갈치머리, 갈래머리 등 금지.

예시 6) 화장 제한

- ① 화장(파우더, 색조화장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색조 화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1) 물티슈 또는 클렌징티슈 등으로 닦아서 색깔이 묻어나오는 모든 색조 화장
 - 2) 립밤, 립글로스 등을 막론하고 모든 색조 관련 미용품

예시 7) 화장 외 미용관련 제한 (렌즈, 문신, 해나, 매니큐어 등)

- ① 문신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상담교사에 의한 상담을 진행하고 벌점 5점을 부과한다.
- ② 교내에서 귀걸이, 피어싱은 금지된다.
- ③ 목걸이, 반지, 귀고리, 팔찌, 눈에 띄는 머리 핀 등은 착용을 금지한다.
- ④ 손톱에 유색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네일아트 등을 하지 않는다.
- ⑤ 써클렌즈는 허용하지 않는다.
- ⑥ 시력 보정의 목적이 아닌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컬러렌즈, 써클렌즈 착용을 금한다.
- ⑦ 반지(목주반지 포함)·팔찌(염주팔찌 포함)등의 착용을 금지한다

예시 8) 신발, 가방, 양말, 면티, 외투, 교복 등의 모양 및 색깔 제한 (선도기준규정)

- ① 신발:
 - 1) 원색(빨강, 주황, 노랑, 주황, 형광색 등)의 운동화는 착용 금지
 - 2) 발에 맞지 않는 큰 신발이나 통굽인 경우
 - 3) 발목위로 높이 올라오는 등산화 또는 군화형의 신발을 착용하는 행위
 - 4) 유행에 민감한 형태나 색깔의 신발을 신는 경우(마귀신발 대발이신발등)
- ② 가방
 - 1) 등에 메는 가방 이외의 것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
 - 2) 강렬한 원색의 가방이나 쇼핑 팩을 가방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색(빨강, 노랑 등)적이고 선정적인 문구가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 ③ 양말
 - 1) 빨강, 노랑 등 원색적이고 선정적인 색을 제외한 흰색, 회색, 검은색 계통의 것
 - 2) 시선을 집중시키는 강렬한 원색 요란한 무늬의 양말을 착용하는 경우
 - 3) 규정된 양말 이외의 것을 신고 다니는 경우 (숙녀용 스타킹, 토시 등)
 - 4) 남학생 양말은 단색 계통의 검정색, 짙은 남색, 흰색, 회색 등만 허용한다.
- ④ 교복

- 1) 치마(여): 치마의 길이가 무릎을 완전히 덮지 못하거나 폭을 지나치게 줄인 것.
- 2) 바지(남,여): 바지의 기장이나 폭을 줄여 지나치게 몸에 붙는 것.
- ⑤ 그 외 기타
 - 1) 겨울철 덧옷(코트, 점퍼류), 셔츠류, 양말은 원색이거나 색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피하고, 외래어나 눈에 거슬리는 무늬가 있는 것은 금한다.
 - 2) 가디건, 조끼 허용 : 남색, 검은색, 보라색/ 셔츠 안 반팔 티셔츠, 플라티 허용 : 흰색, 어두운 색
 - 3) 하절기에도 흰색 또는 옅은 회색의 내의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여학생은 검정색 허용)
 - 4)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는 경우

예시 9)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을 경제하는 규정

- ① 자율학습 참여는 의무이며, 부득이 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에는 사감선생님의 허락을 얻는다.

예시 10) 학생의 소유의 물건 관련한 침해

- ① 화장품 소지는 일절 금하며 적발 시 압수하여 폐기처분된다.
- ② 귀걸이,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의 착용을 금지한다. 단속에 걸리면 압수한다.

예시 11) 소지품 검사에 관한 침해

*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상황 또는 필요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 동의하에", 또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등 소지품 검사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치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

- ①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할 때 실시한다.
- ②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소지품 및 용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시 12) 기숙사 생활 침해

- ① 기숙사 불시점검: (반입금지물품 사용상태 또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사전공지 및 동의 없이 호실을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시 13) 흡연, 오토바이 적발 학생에 대한 침해

- ② 흡연 학생에 대한 지도 규정: 주기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하여 교 내·외 흡연 학생 적발 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이동 제한) 하계, 동계 휴가 중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처벌: 오토바이(50cc이상)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 ④ 흡연, 담배, 라이터 소지로 적발될 경우 스포츠 형으로 정리

예시 14) 고정형 명찰 패용 의무의 부과로 인한 침해

- ① 교복 상의(자켓, 블라우스, 셔츠, 조끼, 가디건 모두 포함)는 왼쪽 가슴 주머니에 녹색의 학교마크와 이름(동복 회색, 하복 남색)을 모두 박아서 새긴다.
- ② 교복은 반드시 상하의에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새겨 넣고 조끼 및 교복상의에는 지정된 곳에 본인의 이름을 해당학년에 맞는 색상으로 새긴다.
- ③ 직사각형꼴의 형태로 학년별로(2013년도 기준) 자주색(빨강)색, 녹색, 노랑색으로 색상을 구분한다. 명찰은 전체 부착 방식으로 한다.

(3)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침해

항목 5.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학교 안이나 밖에서의 연설, 토론 및 저작 등의 개인적 표현이나 집회나 결사 활동을 통한 집단적 의사표현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현장에서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83.1%에 해당하는 학칙이 뚜렷한 근거와 이유를 설시없이 의사의 표현을 근본적으로 막거나 학교와 다른 학생에게 중대한 피해가 입증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함으로써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측면에서는 교내집회 선동 학생 징계 교외 정치적 활동 시 사전 교사나 관리자의 허가, 사회단체나 정치관여 금지 등 집단 행동에 대한 징계의 형태로 침해유형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단체행동이나 정치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장 허락없이 외부 행사 출품, 출연 또는 참가 금지함으로써 학교 외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도 많았다. 또한 모든 게시물의 사전허가, 교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사표현 제한 금지, 서명이나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 등 교내에서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향후 단체행동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는 활동에 대하여는 사전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예시 15) 교외 집회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 규정

- ①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하여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 ② 정치 관련 행위,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③ 학생신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학생

예시 16)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의 자발적 모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

- ① 학교장의 허락 없이 단체나 서클을 조직, 활동하거나 가입한 자
- ② 허가 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 ③ 학교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의 모임을 꾀한 자
- ④ 집단행동 모의를 주동한 자
- ⑤ 특별 활동 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모임, 교우들 간의 사적 모임을 동아리로 지칭하거나 후배를 모집하는 경우 해체를 지시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학칙에 의거 처벌한다.

예시 17) 교내·외 집회 참여를 제한하거나 학교장 허가 사항으로 두고 있는 규정

- ① 학교장의 허락 없이 외부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 ② 학교에서 인정되지 않는 교외 집회 동아리 모임 참가
- ③ 교내에서 학생들이 집회를 하고자 할 때, 담임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4)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침해

항목 6.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항목 6. 사상·양심 및 종교의 침해 여부 항목에서는 반성문, 서약서 작성 강요,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등의 조항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표현의 자유와는 달리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교규칙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10.3%의 비율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앞서 실시한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 그 결과 자체로 학교규칙이 양심의 자유를 대체적으로 충분히 보장한다고 평가하는 자료로서는 부족하다고 본다. 오히려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는 내면적 기본권으로서 학교교육 과정 중 보편적인 상황에서의 침해가 쉽게 예정되어 있거나 흔하게

발생하기 보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침해가 이루어지는 기본권 본연의 속성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그러나 학교규칙에서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았지만 침해의 유형 측면에서 아래의 예시들을 살펴보면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와 비교하였을 때 그 위반의 심각성은 현저히 크다고 생각된다.

예시 18) 특정종교과목 수강이나 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규정

- ① 본교의 건학 이념에 따라 각종 종교행사를 통하여 인성지도를 실시한다.
 - 1) 아침예배시간에는 우리들의 찬양과 성경을 준비하고 조용히 방송에 귀 기울인다.
 - 2) 정오의 기도시간에는 타 학생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들지 않으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진다.
 - 3) 채플시간에는 우리들의 찬양과 성경을 준비한다.
- ② 예배 시간에는 솔선해서 참여하며 성경과 찬송가를 지참한다. 주일에는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항상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인의 본분을 잘 지킨다. 단, 종교가 다를 시에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신앙인의 본분을 잘 지키도록 한다.

예시 19) 부정행위 방관/방조/온닉에 대한 징계사유 규정

- ① 고사 중 부정행위를 방조한 자, 친구의 잘못을 보고도 방관 또는 묵인하거나 동조한 학생
- ② 가출한 학생의 소재를 고의로 숨기고 온닉시켜 준 학생
- ③ 밤 12시 이후 자신의 홈/룸메이트가 방을 이탈하는 것을 알면서 방관하거나, 자신의 방으로 다른 방의 구성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 방관하는 경우 통금위반에 준한 벌을 받는다.
- ④ 불량 서클 가입 금지 및 서클가입 요구시(목격자 포함) 즉시 신고

예시 20) 반성문 또는 서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규정

〈서식 2〉 서약서 (상벌점제)

저는 앞으로 학교생활에 더욱 충실하여 기본생활습관을 지킴은 물론, 학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하고, 이후 학생 신분에서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보호자의 확인으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예시 21) 기타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정)

- ① 국기와 조국에 대해 불손한 경우
- ② (불온사상)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행위를 한 학생.

3) 절차의 명확성과 절차적 권리 보장 부분

항목 7. 학칙(규정) 위반에 대한 선도(징계)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학칙 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선도(징계)절차는 학생들에게 징벌적 성격에 맞게 적법 절차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학칙에는 부당한 징계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표현하고 징계절차는 명확해야 하며 각 절차의 단계마다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항목 7.에서는 징계(선도)위원회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규정,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심절차 안내, 대리인 선임권 . 징계내용 공고 금지, 상·벌점제 등에 관한 내용이 타당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분석대상 학칙의 94.9%의 학칙이 절차의 명확성과 절차적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학교규칙의 규정에 비하여는 정비가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징계(선도)절차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5.1%의 비율로 조사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4) 의견권의 존중 및 참여권의 보장

항목 8. 학생 선도(징계)과정에서 학생의 의견표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항목 9. 학칙(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수렴 조항이 있습니까?

징계절차에서의 적법절차의 권리 중의 핵심은 당사자인 학생이 스스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도 학칙의 수범자로서의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거친 학칙만이 공동체의 자치규범으로서의 제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항목 8.9에서는 징계(선도)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제공되는지 여부,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의견존중,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학생대표와의 정기적 면담 실시,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학교규칙은 징계절차에서의 의견표명기회의 보장부분에서는 약 93.4%,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의 학생 의견 수렴 부분에서는 약 95.6%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명문으로 의견권 존중 및 참여권의 보장을 학교규칙의 중요한 내용으로 편입하고 형식적인 부분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의견 존중 및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에 다시 평가할 부분이 있다. 앞서 기술된 인권침해 실태조사 항목 6번 “학교는 여러분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전체 학생들로부터 의견(예, 설문)을 묻습니까?” 에서 학생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할 학생이 전체의 63.4%(그런 편이다 49.4%, 매우 그렇다 17%)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차이를 통해서 의견 표명권과 참여권이 학교현장에서 인식의 부족과 현실적 한계 속에서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인다.

5) 규범의 형식 및 용어와 개념

항목 10. 규정 또는 상벌점제 세부기준 등에서 적절하지 않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단어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가?

학교규칙이 자치규범으로서의 위엄과 엄격성을 갖추고 규범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언 그 자체로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벌점제나 징계사유에 관해서는 타당한 형식과 내용을 갖출 것이 더욱 요구된다.

항목 10에서는 학교규칙이 기본권 침해적 요소를 포함하거나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규범으로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조잡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으로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개별 규정 또는 상벌점제 세부기준 등에서 적절하지 않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단어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8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학교규칙은 아래 예시와 같이 권위적이고 그 자체로 차별과 불평등한 요소를 담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자의에 흐를 소지가 충분히 엿보이는 규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예시 22)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등의 용어의 사용 (징계사유)

- ①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 ②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 ③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신발을 착용한 경우
- ④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머리를 한 경우
- ⑤ 학생으로서 단정하지 못한 외투를 입고 다니는 경우
- ⑥ 휴대하지 말아야 할 용품 : 정신구와 학생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용품
- ⑦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소지품을 소지한 학생
- ⑧ 언행이 불손하거나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행위

예시 23) '불건전한', '풍기', '문란' 등의 용어의 사용 (징계사유)

- ① 남녀 간에 풍기문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② 남녀 간의 풍기문란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학생
 - ③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④ 교내에서 이성과 손을 잡고 다니며 풍기를 문란시키는 학생
 - ⑤ 불순한 이성교제 및 퇴폐 행위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행위
 - ⑥ 불건전 이성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3. 기타 추상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의 사용으로 징계사유를 규정
- ① 징계기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②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③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소지품을 소지한 학생
 - ④ 불법 과외수업 금지 조치에 위배된 행위를 한 학생
 - ⑤ 각종 촬영기기(카메라 폰 등)의 무절제한 사용으로 타인의 인격을 손상시킴은 물론 타인에게 심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학생
 - ⑥ 기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⑦ 인사를 하지 않거나 불손하게 하는 경우.
 - ⑧ (시대와 맞지 않은 조항)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체에 진정이 있는 학생

V

결론 및 제언

- | | |
|--------------------------------|-----|
| 1.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및 논의와 제언 | 165 |
| 2. 학생인권 인식조사 결과의 요약 및 논의와 제언 | 182 |
| 3. 학칙분석 결과에 기초한 결론 및 제언 | 199 |

1.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및 논의와 제언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보다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학교 체계가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생 권리 교육의 제공, 정기적 대의원 회의의 개최, 학생 생활 규칙이나 규정의 제·개정 시 혹은 학생관련 안건의 결정 시 전체 학생들로부터의 의견 수렴, 자유로운 학생회 활동의 허용 등의 문항들에서 그렇다 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성적 등의 이유로 학급/학생회 활동을 제한받은 경험을 보고한 학생의 비율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에서보다 더 적었다.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급/학생회 임원의 출마나 활동의 제한을 경험 혹은 목격한 학생 비율은 고등학생 중에서도 특히 일반고 학생이 30.0%로 가장 높았고 특목고 학생은 14.5%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이 26.4%, 조례지역이 20.7%로 비조례지역에서 조례지역에서보다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급/학생회 임원의 출마나 활동의 제한을 경험 혹은 목격한 학생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고등학생 응답 간 특히 큰 차이를 보인 학생 인권 보장 관련 항목은 ‘학생 권리 교육’ 으로, 중학생은 71.3%가 학생 권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반면 고등학생은 54.4%만이 학생 권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학생 권리 관련 교육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 비해 상당히 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 외에도 조사는 중학생들의 78.5%가 학생관련 안건 결정 시, 그리고 70.6%가 학칙 제·개정 시 학교가 학생의 의견을 물었다에 그렇다 라고 응답함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각각 69.1%, 60.9%가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 라고 응답한 고등학생의 결과와 비교되었다.

한편 학교규칙의 열람이나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교내 전용공간의 구비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응답 비율이 다르지 않았다. 전체 학생 응답자들 중 85%

정도가 학생의 학교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학칙(예, 학교생활규정, 징계규정)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75% 정도가 교내에 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이는 또한 중·고등학생 100명 중 15명 정도가 자신의 생활을 규정짓는 학칙을 본 경험이 없다는 점과 국내 상당수의 중·고등학교에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결과이기도 하여 우리나라 중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칙의 홍보와 교육 및 학생 자치 활동을 위한 교내 전용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칙은 학생들에게 접근 가능해야 하며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 학칙은 원칙적으로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알리미(<http://schoolinfo.go.kr>)에 탑재되어 있어야 하며 학교는 이러한 학칙의 열람 장소를 학생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학칙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학칙이 이들 위치에 탑재되어 있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용어로 기술된 경우를 일부 발견하였다. 특히 학칙은 상당히 어려운 법적 용어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학교가 학칙을 이들 위치에 탑재하고 개정 시에는 이를 신속히 upload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조항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인권위나 지역교육청은 학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교가 이 규정을 어기는 경우 벌금이나 벌칙(예, 학생 인권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벌칙으로 하는)을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에 더해 학칙을 기술할 때,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기술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의 학생인권 관련 책자는 이러한 측면에서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들 책자는 공통적으로 다양한 학생 인권 영역을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그리고 다양한 예를 포함시켜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성차별”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 성차별이 무엇인지 먼저 소개하고 성차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학생 인권과 관련한 기본 원칙이 무엇이고 이들 원칙이 일부 학교 상황에서 제한받을 수 있음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권리에 관한 책자는 학생이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인권을 위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학칙이나 학생권리의 기술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갈등 상황에서 인권에 대한 기

본적 추론과 인권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아래의 문구는 미국 워싱턴 주의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생인권 안내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앞서 지적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워싱턴 주의 공립학교의 학생인권에 대한 안내 책자 중 일부>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믿는 바는 무엇인지 표현하곤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패션이나 머리스타일, 액세서리 착용에 있어서 당신은 학교로부터 당신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지는 못할 수 있다. 법원은 학교가 교내에서 학생들의 복장이나 머리스타일을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즉 학교는 치마나 셔츠의 길이를 규제하거나 성적인 문구나 나쁜 말(욕, 비어, 속어)이 적혀 있는 옷을 못 입게 하거나 폭력조직과 관련된 복장을 금지시킬 수 있다. 법원은 오히려 여러분이 옷을 통해 정치적 혹은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려 할 때나 학교 규칙이 너무 모호해 여러분들이 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의 편에 서 여러분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것이다. 어떤 복장에 관한 규정이나 규칙도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특정 복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People sometimes express who they are and what they believe through their own personal style. But you do not have complete freedom in choosing the outfits, hairstyles or accessories you wear to school. Courts have typically allowed schools to regulate students’ dress and hairstyle. Schools might regulate the length of skirts and shirts, or prohibit clothes with sexual or obscene messages, or “gang-related apparel.” A court is more likely to protect your freedom of expression if your clothes make a political or religious statement, or if the school’s rules are so vague that you could not be expected to understand what they mean. No dress code may prohibit students from wearing clothing in observance of their religion.”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Washington Foundation, 2007)

학생회 주관 대의원회의의 정기적 개최 여부에 대해 중학생은 84.9%, 고등학생은 80.7%가 학교에서 대의원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중·고등학생 포함 전체 학생 응답자들 중 17.5%는 학교에서 대의원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의원 회의는 학생들이 학생 대표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 정책에 참여하는 중요한 채널이자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야 하는 학교는 따라서 이러한 학생회 주관의 대의원회의의 활동과 참여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 이에 정기적인 대의원회의의 개최를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과 체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생 인권 보장과 관련한 항목들 중 조례시행 지역 대 조례비시행 지역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학칙 열람 경험의 유무와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교내

전용공간의 구비, 성적 등의 이유로 인한 학급/학생회 활동의 제한에서였다. 조사를 통해 이들 항목들에서 학생 인권 친화적 경험을 보고한 학생들의 비율이 조례지역에서 비조례지역에서보다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항목들은 조례 시행 교육청들이 인권 침해 사례 분석이나 홍보, 지침,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하려 노력하던 영역들 중 일부라 할 수 있다. 한 예로 조례 시행 교육청 중 하나인 경기도 교육청은 조례를 통해 매년 학생인권과 관련한 설문을 경기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면 단순한 연례행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설문에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과 관심을 키울 수 있다.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은 이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도모될 수 있다.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의 제작과 유포, 학생인권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교육책자의 제작 및 유포, 인권 관련 상담 및 교육청 내 학교 주체들(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인권 교육 및 상담을 통해 학교에서의 학생인권을 옹호하고 존중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 실태조사」(서울교육청, 2015)의 교사와의 심층 면접은 교사에게 있어 획일적인 교육청 인권 교육 이외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연수받는 기회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록 일부 학생인권 조례 시행 지역에서는 교사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 31조 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인권 교육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교사들이 이들 중 자신이 부족하거나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의 강연을 듣도록 하는 제도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생인권 관련 전문가들은 학생 자치의 “형식적” 인정이 아닌 “실질적” 인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간 마련, 정기적 학생회 개최라는 기본적인 분위기 마련은 필수이며 더 나아가 학생들의 의결 사항에 대한 적극적 반영과 반영이 어려운 경우 반영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 제공이 이루어지는 학교 분위기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2) 차별 금지

차별을 받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차별유형별로 그렇다 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중, 고등학생 모두에서 학년/나이에 의한 차별, 학교성적으로 인한 차별, 성별로 인한 차별, 외모/생김새로 인한 차별 순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이들 차별 영역들에 대해 중학생의 각각 23.9%, 19.9%, 10.5%, 9.4%가, 고등학생의 각각 45.1%, 36.7%, 14.7%, 10.9%가 그렇다라는 응답을 내놓았다. 수치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학년/나이, 학교성적,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의 유무에서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더 높은 그렇다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특히 학년/나이에 의한 차별과 학교성적으로 인한 차별에서 고등학생과 중학생 간 응답 비율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한편 외모/생김새로 인한 차별 경험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응답 간 유의한 차이 없이 약 10% 수준에서 그렇다 라는 응답이 나왔다.

이외에도 중학생은 장애 4.3%, 성적지향 4.2%, 가정환경 3.5%, 종교 2.7%, 타국적/다문화 2.4%의 순으로, 고등학생은 성적지향 6.3%, 종교 5.7%, 장애 4.9%, 가정환경 4.7%, 타국적/다문화 3.1%의 순으로 해당 영역에 대한 차별 경험을 보고하였다. 두 학생 집단 모두에서 타국적/다문화로 인한 차별 경험이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낮게 보고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고등학생의 성적지향이나 종교로 인한 차별 경험의 비율은 중학생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이들 영역에서의 차별 경험을 보고한 학생의 비율이 한 자리 숫자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긴 했지만 성적지향, 종교, 장애, 가정환경(예, 저소득층가정, 이혼가정, 한부모가정),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는 행태는 학교 현장에서 근절되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특히나 학교는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현재 조사된 수준의 차별 경험이 보고되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욱이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저소득층 혹은 이혼이나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되는 학생, 국적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학생이 전체 학생 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현재 보고된 수준의 차별 경험은 이러한 위치에 놓인 학생들의 상당 수 혹은 대부분이 학교 내에서 부당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사, 학교 관리자, 학생을 포함한 여러 학교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개인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멘토-멘티 제도, 다양성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 제공, 옹호집단(avocate group)으로서의 활동 기회 제공 및 봉사체험을 통한 타문화 집단에 대한 이해 높이기 활동들은 학교 주체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개방성(open-mindedness)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유형별 학생의 차별 경험에 대한 분석에서 학교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 혹은 목격했는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사립중학교 학생(24.2%)이 공립중학교 학생(17.2%)보다 높았다. 한편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에서는 이와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는데, 공립중학교 학생(13.3%)이 사립중학교 학생(5.8%)보다 더 높은 비율의 그렇다 라는 응답을 하였다. 고등학생에서는 학교성적으로 인한 차별 경험을 보고한 학생 비율이 일반고 학생들에서 가장 높았다(40.1%). 반면 학년/나이로 인한 차별 경험은 특목고 학생들에서 가장 높게 보고되었다(59.9%).

3)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로부터의 직·간접 체벌, 언어폭력, 성희롱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교가 다양한 폭력위험(학생 간 따돌림/괴롭힘, SNS 상의 따돌림/괴롭힘,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학생들의 지각을 통해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직접체벌을 받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중학생은 29.5%, 고등학생은 27.1%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26.5%, 사립중학교는 34.5%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자율형고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1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32.4%, 조례지역은 23.5%가 그렇다 라고 답하여 비조례지역 보다 조례지역에서 직접체벌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간접체벌을 받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중학생은 35.1%, 고등학생은 36.3%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33.1%, 사립중학교는 38.5%로 나타났다. 직접체별과 같이 사립중학교에서 간접체별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자율형고가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1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40.6%, 조례지역은 30.5%로 직접체별과 마찬가지로 조례지역에서의 간접체별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교사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중학생은 30.2%, 고등학생은 37.8%로 나타났다. 교사로부터 언어폭력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예라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공립중학교 학생과 사립중학교 학생, 그리고 네 고등학교 유형 내 학생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35.1%, 조례지역은 33.9%가 그렇다 라고 답하여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체별이나 언어폭력과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서울시교육청(2015)이 서울시 전체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유사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 결과, 20~30%의 중·고등학생들이 지난 한 해 학교에서 체별을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의 비율도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생인권 조례 지역에 있는 서울시 소재 학교의 학생들의 체별 및 언어폭력 수준은 본 연구의 조례지역 학생들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한편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중학생은 6.2%, 고등학생은 9.5%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는 공립중학교는 5.1%, 사립중학교는 8.2%로, 직접체별 및 간접체별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사 언어폭력에서도 사립중학교에서 공립중학교보다 더 높은 학생 비율이 보고되었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일반고가 1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8.1%, 조례지역은 8.0%로 나타나 이들 지역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6.3%, 고등학생은 33.5%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의 고등학생들이 학교가 학교폭력으로부터의 학생 보호 역할에 더 미흡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의 결과들로 볼 때 아직도 35%~36%에 이르는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간접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경험 혹은 목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비록 이에는 조금 못 미치나 28%에 이르는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직접체벌을 경험 혹은 목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체벌이나 언어폭력의 발생이 드문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본 연구의 인식 조사 영역에서 학생 체벌에 대한 교사의 입장이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된다(41.9%)는 입장과 교육적 훈육(사랑의 때)의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34.9%)는 입장으로 양분되었음은 고려할 때 체벌은 교육현장에서 일정 기간 계속적으로 관찰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체벌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학생지도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상벌점제의 “공정한” 그리고 “적절한” 운영은 이러한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교사의 학생 성희롱의 문제는 신속한 대책을 요하는 영역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중등학교 현장에서 교사 성희롱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학생의 비율이 8%에 이룸을 확인하였다. 물론 목격도 응답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실제 발생 빈도는 이보다 다소 낮을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이 학생에게 줄 정신적 타격을 고려할 때 강력한 징계, 처벌 조항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 교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감찰하고 학생들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도 요구된다. 학생인권과 관련한 사안을 상담해주고 문제 해결을 지원해주는 기존의 외부 자원들(예, 인권옹호관, 학생인권신고센터)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단 신고나 조사 과정에서 학생에게 갈 수 있는 불이익이나 보복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략(예, 실명으로 신고, 학교 내부자가 아닌 외부자에 의한 조사 및 중재)도 함께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폭력으로부터 학생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는 먼저 학생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고 교사 교육은 물론 다른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은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급의 따돌림 발생률을 과소 추정하기 쉽다. 따라서 먼저 교사는 눈에 띄는 따돌림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지 말고 수시로 학급에 따돌림이 발생하는지 살피는 태도가 필요하다. 따돌림의 피해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서들과 교사의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도 유용하다 하겠다.

따돌림 피해자들을 위한 개입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담임 교사, 전문 상담 교사, 그리고 상담 전문가 간의 연계를 통한 개입이 추천되고 있다. 이 체계에서 담임교사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면담을 실시하며, 피해학생의 요구를 파악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반면, 전문 상담 교사와 상담전문가는 피해학생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피해로 발생한 불안 및 우울 같은 정서적 문제에 대한 심리 상담을 시행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개인 혹은 집단 상담은 주로 피해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발견하여 자기 가치감을 높이고, 따돌림 현상과 관련한 자신과 타인의 행동 양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또래 관계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사회 기술을 습득하여 대인 관계 및 학교 적응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래 친구를 짝지어 피해 학생을 치유하는 방법도 제안되고 있는데,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솔리언 또래상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솔리언 또래상담은 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또래친구를 지지·지원하고 이들의 문제해결을 돕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과 돕는 청소년 모두가 성장하는 계기를 갖게끔 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는 학생에게 유용한 자원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결시켜 주며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요구된다.

4) 상·별점제도 운영

학교에서의 상·별점제는 학생 체벌의 대안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제도이다. 공정하고 적절하게 운영되었을 때 체벌과 같은 부적절한 방법의 동원 없이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학생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상·별점제의 운영 여부 및 공정한 운영의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 판단되어 조사 문항에 포함시켰다.

학교에서 상·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본 연구에 참가한 중학생들의 67.0%, 고등학생들의 69.9%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운영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중학생은 33.0%, 고등학생은 30.1%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69.2%, 사립중학교는 63.3%가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공립중학교가 30.8%, 사립중학교가 3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목고가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고가 68.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84.7%, 조례지역은 51.1%가 운영하고 있다. 제도 운영에 있어 비조례지역과 조례지역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상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제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의 비율은 23.6%, 고등학생의 비율은 30.2%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학생의 25.1%, 사립중학교 학생의 21.1%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했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일반고가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24.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에서 상벌점제 운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74.4%, 조례지역은 69.6%가 그렇다 라고 답하여 비조례지역이 조례지역 보다 조금 높게 상벌점 제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상 본 연구의 학칙 분석 결과는 상벌점제도 운영에 있어 상당한 개선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칙 분석을 통해 적지 않은 학교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용어로 기술된 상점이나 벌점 규칙(조항)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수의 벌점 조항을 포함시킨 반면 상점에 있어서는 이에 못 미치는 수를 포함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더해 상점에 해당하는 행동과 벌점에 해당하는 행동 간 그 경중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발견되어 공정한 상벌점제의 운영을 위한 교육과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상벌점제는 공정하고 적절히 운영될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행동 수정 혹은 행동 조형 체계(강화와 처벌 체계: token economy system)의 기본 원칙은 부정적 절차(처벌 절차)보다는 긍정적 절차(강

화 절차)를 먼저 소개하고 그 체계 안의 사람들에게 가능한 많은 긍정적 경험의 획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좋은 행동 수정 혹은 조형 절차는 무엇을 “하지 말라”와 같은 죽은 규칙(dead rule)을 적용하기 보다는 부적절한 행동의 대안적 행동을 제공하여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상벌점제나 이에 해당하는 학칙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5) 사생활의 자유 보장 - 개인정보 보호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2.9%, 고등학생은 21.2%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성화고/전문계고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13.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23.2%, 조례지역은 11.5%로 나타나 조례지역이 비조례지역보다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의 발생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인식 조사에서 학생들은 학교의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해 학생/학교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데에 가장 높게 동의하였다(46.4%의 학생들이 동의하였음). 이러한 응답 패턴은 교사와 학부모에게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더해 1/5에 이르는 학생들은 사전 고지된 경우에는 “학교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이는 학교가 학생들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경우 이에 대한 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공하거나 ‘사전 공지’라는 적어도 최소한의 안내 절차라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의 이러한 태도와 입장을 이해하여 일방적으로 학교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논의나 의견 수렴을 통한 그리고 정당한 이유 제공을 통한 학생들의 협조를 이끌어가는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시험 성적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2.7%, 고등학생은 18.1%로 나타났다. 한편, 특정 고등학교나 대학교 입학 사실을 공개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30.7%, 고등학생은 47.7%로 나타났다. 중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중학교는 26.7%, 사립중학

교는 37.3%로 나타나 사립중학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성화고가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목고가 3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43.2%, 조례지역은 37.3%로 나타나 조례지역이 비조례지역보다 공개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의 학생 개인정보 공개 및 제공에 대해 주로 “외부에 공개/제공해선 안된다” (56.1%)와 “동의를 받으면 개인정보를 공개/제공할 수 있다” (37.4%)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교의 ‘일방적인’ 학생 성적 공개는 학생들에게 매우 큰 사생활 침해 경험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이 느낄 좌절감도 클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학교는 동의 없는 학생 성적 공개를 극도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만약 학생 성적 공개가 필요한 상황이 제기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학생 소지품 검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 성적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 및 이해를 끌어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교의 학생 신상이나 개인정보(예, 가정환경조사서, 종교, 급식수혜자, 질병이나 감염 여부, 생활보호 대상자)의 공개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1.9%, 고등학생은 11.2%로 대체로 응답학생들 중 11% 정도에서 개인정보의 공개 경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나왔다. 공개된 정보의 유형에 대한 조사는 이 연구에서 함께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취약한 개인정보의 공개와 유출은 개인적 고통의 유발은 물론 학교내 집단 따돌림의 원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인식 조사 부분에서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의 과반수(56.1%)가 학생정보를 외부에 공개/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학교/교사의 학생의 신상 및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학생 반발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학교나 교사 측에서의 이 사안에 대한 각성과 경계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하겠다. 학생 신상 정보의 저장과 관리, 취급에 대한 교사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학생 정보의 취급과 관리, 활용에 대한 교사 매뉴얼 제작 및 활용도 교사의 학생 정보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6) 개성실현 및 사생활의 자유

앞서 서론에서도 소개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학생인권 관련한 침해한 논쟁이 일고 있는 영역이 바로 학생 개성 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과 관련한 영역이다. 이 영역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발, 외투, 면티/양말의 색깔, 치마/바지의 폭과 길이, 화장 및 미용기기 반입, 그리고 핸드폰 사용의 여섯 영역들 중 본 연구에 참가한 중·고등학생들은 핸드폰 사용에서 학교의 규제를 가장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의 79.4%, 중학생의 83.3%, 그리고 고등학생의 76.5%가 학교가 학생의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핸드폰 사용, 화장/미용제품/이용기기 반입, 치마/바지 길이나 폭에서 학교 규제를 경험하는 비율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에서보다 더 높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면티/양말 색깔(이 영역에서 25%의 학생들이 학교가 이와 관련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함)을 제외한 다른 다섯 영역에서 50%가 넘는 학생들이 해당 영역에서 학교의 규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학생들의 개성실현 및 사생활 자유 제한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조례지역이 비조례지역 보다 제한율이 낮게 나타났다. 두발길이나 모양을 제한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66.1%, 조례지역은 39.6%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교복 외의 점퍼 착용 제한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65.7%, 조례지역은 58.5%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면티/양말 색깔 제한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32.2%, 조례지역은 17.5%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치마/바지의 길이나 폭 제한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68.7%, 조례지역은 55.4%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화장/미용제품 및 미용기기의 반입 제한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71.8%, 조례지역은 62.1%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수업 외 시간(혹은 기숙사 생활 동안의) 핸드폰 사용 제한에 대해 비조례지역은 84.0%, 조례지역은 74.4%가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이 중에서 조례지역 대 비조례지역 간 학생 응답률에서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던 항목은 두발의 길이나 모양의 제한에서였다.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학교의 92.6%가 그리고

고등학교의 91.0%가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비교적으로, 본 조사에 참가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절반 정도만이 학교가 자신들의 두발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물론 본 연구가 2005년도 연구처럼 학교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두 결과로부터 학교의 학생 개성실현의 권리에 대한 인정 분위기가 지난 10년에 걸쳐 확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자아낸다. 특히 두발 규제가 학교의 학생 규제의 가장 침예한 부분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측은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들이 기울인 선제적 노력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하지만 이전의 노력이 주로 top-down 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이나 정책 추진은 bottom-up 식의 접근이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이전의 방식이 상부 기관이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기획·고안하고 이를 학교나 학교 주체들이 따라가야 하는 방식이었다면 향후에는 일선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직접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더 나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이에 대한 요구를 창출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향의 요구나 의견이 상부로 전달되는 채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인권위나 교육청이 하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거나 website를 운영하여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는 것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정신장애의 진단편람체계(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for Mental Disorder)의 개정판을 만들 때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는 수정 내용을 사람들에게 공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수백 수천의 의견과 논점이 전달되었고 이는 개정 작업에 중요한 정보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유사한 체계의 상시적 운영이나 학생 인권 관련한 쟁점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의견을 듣는 장치의 마련이 촉구된다.

7) 표현, 사상, 양심의 자유

본 연구에서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74.9%, 고등학생은 66.1%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학교 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 학습권의 보장, 복지 및 건강의 권리

수업 중 학생선도나 일괄 용의복장 지도로 인한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6.9%, 고등학생은 36.1%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일반고가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27.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32.8%, 조례지역은 31.4%로 나타나 지역 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사용 제한으로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1.5%, 고등학생은 21%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자율형고가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고/전문계고가 13.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조례지역은 23.1%, 조례지역은 19.1%로 나타나 조례지역이 비조례지역 보다 침해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 탈의실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중학생은 49.1%, 고등학생은 27.0%로 나타났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학생은 27.7%, 고등학생은 47.6%가 그렇지 않다 라고 답하였다.

고민이 있을 때 자유롭게 학교상담실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12.8%, 고등학생은 22.3%로 나타나 고등학생에서 학교상담실의 접근가능성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유형 중에는 특성화고가 24.1%로 학교상담실의 접근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형고가 15.7%로 상담실의 접근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비조례지역은 15.3%, 조례지역은 21.4%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하였다.

학습권의 보장, 학생의 복지와 건강에 대한 권리는 OECD 국가의 하나로서 우리 교육환경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방향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쉬는 시

간 사용의 제한, 점심시간 사용의 제한으로 휴식권이 침해되는 경우, 수업 중 학생선도나 일괄 용의복장의 지도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 학교 내 탈의실 부족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경험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정한 학생인권의 보장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적 자극과 지원을 충분히 받으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있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 시스템은 이러한 학생 안전과 복지보다는 학업적 성취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을 그리고 그로 인해 학생 인권의 일부가 희생되고 있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인권은 규제나 차별을 넘어 학생 복지, 건강, 안전, 학습권의 충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태조사 결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과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학교 내 인권문화의 확산, 학생인권침해 예방과 보장을 위한 (가칭) ‘학생인권 기본법’ 제정 등 적극적인 입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 체벌 및 언어폭력 금지, 학생자치 및 참여보장, 사생활의 자유 보장, 휴식권 보장 등과 관련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이 미제정 지역보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생활교육 및 지도의 인권적 가이드라인 제시함으로써 학교 내 효과적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조치로 판단된다.

둘째, 차별금지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 교사, 보호자 대상의 효과적인 학생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의 기본권 보장(표현, 양심, 사생활 자유 등)을 위한 학생 및 교사, 보호자 대상의 맞춤형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고, 학생인권교육을 통해 다양한 침해사례에 대한 확인과 현장 적용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멘토-멘티 제도, 다양성에 대한 교육 및 체험 기회 제공, 옹호집단(avocate group) 활동기회 제공 및 봉사체험을 통한 타문화 집단에 대한 이해 높이기 활동 등을 통해 교사, 관리자, 학생을 포함한 여러 학교 주체들의 개방성(open-mindedness)을 높이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

교 내 차별 행위의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사의 학생체벌과 언어폭력 예방과 금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8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교사의 지도과정에서의 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자유보장을 위한 명확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직접체벌은 28.2%, 간접체벌은 35.8%, 언어폭력은 34.5%의 학생이 이를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조치의 일환으로 동 조항에 직접적인 체벌은 물론 간접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가하는 어떠한 지도행위 금지,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욕설, 혐오 및 비하발언, 성차별적 발언 등을 금지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체벌에 대한 인식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학생인권 인식조사에서는 학생 44.9%는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 라고 답하였으며, 교사 34.9%는 ‘교육적 훈육(사랑의 매)의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 라고 답하여 체벌 허용 인식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실질적인 학생의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회 대표와 교사, 학교관리자와의 협의회의 정기적 개최, 학생자치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지원, 전용공간 확보 등 물리적 환경요인이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규칙의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인 참여 기회 보장을 넘어 실질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학교규칙이 학교 내 학생인권 실현의 근거규범으로, 민주사회의 가치와 이념을 확인하는 실천방법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규칙에 대한 적극적인 학생을 포함한 교육공동체 대상의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의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은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공동체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학습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실태조사 결과 고등학교 현장이 중학교 현장에 비해 다양한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생인권 보장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교에 비

해 보다 엄격한 학생관리 및 통제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등학교 학교 관련 주체들에게 현재의 인권보장 실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자각(awareness)은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학생 인권이 나아갈 방향의 제시와 국내외 우수 학교 운영 사례나 정책의 소개도 개선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학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벌점제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학생은 23.6%, 고등학생은 30.2%가 상벌점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학교 상벌점제 운영 관련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2)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기준의 삭제나 수정, 3)상벌점제의 선명한 운영을 위한 노력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학칙 분석을 통해 적지 않은 학교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벌점 세부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수 또한 지나치게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단순하고 명료한 벌점 세부 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상점을 위한 기준을 다수 포함시켜 학생들의 적절한 행동에의 동기를 높이고 벌을 상쇄하는 기준도 일부 포함시켜 상벌점제의 운영이 학생 징계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학생 행동의 전환과 학생 성장에 있음을 알려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상점과 벌점에 해당하는 행동의 강도에 있어서도 불공정성의 소지를 제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2. 학생인권 인식조사 결과의 요약 및 논의와 제언

학생인권 관련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조사 결과를 영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중요도, 인권침해 시 반응

(1) 학생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과 낮은 인식 수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학생인권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50%

~70%대였고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라는 응답이 60%~80%대였지만, 학생 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는 응답은 20%~40%대로 절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볼 때, 학생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것에 비해서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학생인권보장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집단 모두 ‘매우 중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57.6%에서 77.2%까지 가장 높아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학생인권보장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학생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라는 항목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학생 64.3%, 교사 65.9%, 학부모의 85.9%가 ‘적극적’ 대응을 선택했다. 이에 비해 학생 인권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알고 있는 편이다’ 라는 다소 유보적인 응답이 각각 39.5%, 41.0%로 다수를 차지했고, ‘잘 알고 있다’ 는 확신에 찬 응답은 학생 22.6%, 학부모 23.7%로 더 낮았다. 교사는 ‘잘 알고 있다’ 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역시 과반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관련 집단은 학생인권문제를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학생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이 무엇인지, 학생인권의 영역이 어디인지, 학생인권이 침해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학생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교사에 비해 더욱 낮았다. 학부모의 경우처럼 관심도가 높고 개입 의지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인식수준이 낮다면 부적절한 개입 가능성이 커진다.

(2) 학생인권에 대한 교사, 학부모-학생의 인식 차이

교사는 학생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라는 응답이 45.2%로,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교사는 학생인권에 대해 ‘잘 모른다’ 는 응답은 2.4%에 불과해서 매우 낮았고, ‘잘 알고 있다’ 와 ‘알고 있는 편이다’ 를 합한 응답이 87.3%로 거의 90%에 달했다. 학생과 학부모 집단은 ‘잘 알고 있다’ 와 ‘알고 있는 편이다’ 를 합한 응답이 학생 62.1%, 학부모 64.7%로, 교사 집단보다 25% 이상

낮았다. 이는 교사 집단이 현실적으로 학생인권의 적용 범위와 그 의미를 일상 속에서 접하고 적용시키거나 조절해야 할 상황이 더욱 빈번했던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가 관련 문제를 접할 기회가 높은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라면, 학생이나 학부모도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인지도를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교사 집단 위주로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판단이나 적용이 이루어져온 데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생인권 문제를 일상 속에서 접하고 적용시키거나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수준은 높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장차 학생이나 학부모도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관련한 판단이나 적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감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인식수준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2) 학생인권보장의 중요성, 인권침해 시 반응과 학부모 집단의 특성

(1)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관심

학생과 교사 집단이 학생인권보장을 ‘매우 중요’ 하게 본 비율이 학생 58.4%, 교사 57.6%였던 것에 비해서 학부모는 20% 정도 높은 비율인 77.2%가 학생인권을 ‘매우 중요’ 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학부모 집단이 자녀인 학생인권보장에 대해 특히 중요하게 간주했다.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의 대응에서도 학생 64.3%, 교사 65.9%가 ‘학생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학부모의 85.9%가 같은 응답을 했다. 즉, 학부모가 학생이나 교사보다 약 20% 이상 높은 비율로 적극적 대응을 선택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와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에 응답한 비율의 합도 학생 27.4%나 교사 29.4%에 비해 학부모 집단은 그 절반 이하인 11.7%로 낮았다.

이처럼 학부모 집단이 학생인권 보장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학생인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은, 학부모 집단의 특성 및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고학력 저출산 추세에 따라 한두 명 정도로 적은 수의 자녀를 가진 고학력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 전반에 인권의식도 높아지면서, 학교에서 내 자녀의 인권이 보장되느냐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나 기대치도 동시에 높아진 상황이 이러한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오늘날 학생인권 보장에 관련한 각종 현안을 풀어가는 데에 있어서 학부모 의견이나 입장이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되는 부분이다.

(2) 실제적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는 상반되게, 학부모는 학생의 이성교제 규제, 두발 규제, 복장 규제, 소지품 검사 등에 대해서는 ‘학교가 단독으로 정하’거나, ‘수시로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학생, 교사, 학부모 세 집단 중 가장 높았다. 물론 이성교제 규제, 두발 규제, 복장 규제에 대하여 학부모의 다수 의견은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소지품 검사는 ‘학생/학교 안전과 관련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이었다. 하지만 ‘학교가 단독으로 정하’거나, ‘수시로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학부모의 경우가 교사나 학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학부모는 자녀인 학생의 인권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고 학생인권의 침해에 대한 적극적 개입 의지도 높았지만, 이성교제 규제, 두발규제, 복장규제는 ‘학교가 단독으로 정할’ 수 있고 소지품 검사는 학교가 ‘수시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학생이나 교사보다 훨씬 많았다. 주목할 점은, 학부모가 학교의 일방적 통제 권한을 더 높게 인정하는 이러한 현상은 이성교제 규제, 두발 규제, 복장 규제, 소지품 검사 등에서만 나타나고, CCTV 설치, 개인정보제공, 교내 학생집회 제한,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 종교행사 및 수업 참여, 학생 체벌, 성적에 따른 제한 등의 항목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학부모는 학생 이성교제를 규제하고, 두발을 규제하고, 복장을 규제하고,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권침해로 간주하지 않고 학교의 권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학생이나 교사보다 높았다.

이러한 상황은 학부모 집단이 학생인권 문제에 의지나 열의는 높은 반면에 구체적인 이해나 인식이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이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들에 대한 적용으로까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학생인권에 대한 중, 고등학생 간 입장 차이

(1)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중, 고등학생 간 인식 차이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잘 알고 있다’ 는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구체적으로, 학생 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고 답변한 고등학생은 18.8%로, 중학생 27.6%보다 10% 가까이 낮았다.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도에 서도 마찬가지로, 학생인권이 ‘매우 중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고등학생은 55.8%였던 데에 비해서 중학생 61.9%였다. 같은 맥락에서,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대처에서도 고등학생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비율이 중학생보다 낮았다. 즉,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라고 답변한 중학생이 68.8%였던 데에 비해서 고등학생은 61.0%였다.

이처럼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보장을 ‘매우 중요’ 하게 간주하는 비율이 고등학교에 가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선 실제로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학생은 71.3%가 학생권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반면 고등학생은 54.4%만이 학생권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학생인권 관련 교육이 고등학교에 가서는 실제로 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은 ‘잘 알고 있’ 는 비율이 낮아지고, 학생 인권이 ‘매우 중요하다’ 고 보는 비율도 낮아지고, 학생 인권 침해 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는 응답률도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의 상대적 결핍이 고등학생의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중요성 판단, 대응 의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원인일 수 있다.

둘째로, 고등학생들의 주요한 관심이 학업과 학업적 성취로 제한되고,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역시 학업위주로 진행되어 학생인권 문제가 간과되고 배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학생은 학생 관련 안전 결정 시 78.5%가, 학칙 제·개정 시 70.6%가 ‘학교가 학생의 의견을 물었다’ 고 응답한 데 반해, 고등학생은 각각 69.1%, 60.9%만이 같은 응답을 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학생 관련 안전 결정이나 학칙 제·개정 시에 학생이 배제되는 원인은 아마도 고등학생에게 최우선 과제로 요구되는 것이 학업과 대학 진학이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의 실태 조사에서도 성적 등의 이유로 학급/학생회 활동을 제한받은 경험을 보고한 학생의 비율도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았다. 학업 성취가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최우선 목표가 될 때 학생인권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셋째로,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스스로 학생인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고 응답하게 된 배경으로, 십대의 발달과정 상 나타나는 비판적 특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십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사회나 자신에 대한 비판의식이 커짐과 동시에 학생인권의 인식수준에 대한 기대치 역시 높아졌기 때문에, 역으로 현재 인식수준에 대한 자기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실제적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중, 고등학생 간 인식 차이

앞서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중요도, 학생 인권 침해 시의 대처 등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낮거나 소극적인 대응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구체적인 사항들, 즉 학생 이성교제 규제, 학교의 두발규제, 학교의 복장 규제 등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로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학생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라는 의견도 고등학생이 더 높았고, 교내 종교행사참여 및 종교과목수강에 대하여 ‘학생 스스로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는 의견도 고등학생이 더 높았다. 다시 말해서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중요도, 학생 인권 침해 시의 대처 등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고등학생이 더 인권의식이 낮았고 대응의지도 덜 적극적으로 나타난 데에 반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에 관해서는 고등학생이 더 명백하게 학생인권 옹호적 태도를 취한 것이다.

고등학생은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고 자기평가하고, 학생인권 자체를 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학생 인권 침해 시에 적극적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덜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권침해 상황들에 대해서는 중학생들보다 더 정확하게 그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학생 권리를 보장받는 최선인지를 직관적으로 간파하고 있다. 이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오면서 학생인권에 관련한 비판의식이나 판단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다만, 이러한 높아진 비판의식이나 판단력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고등학생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지고 교내에서의 인권문제에서도 더 배제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고등학생들은 높아진 비판력을 바탕으로 인권의식을 길러갈 기회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4) 체벌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

(1)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관용적 태도

체벌에 대하여 교사나 학부모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 는 입장이 교사 41.9%, 학부모 38.7%로 가장 높았지만, 오히려 학생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 는 입장이 44.9%로 가장 높았다. 2011년 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에 고통을 주는 방법’에 의한 처벌이 금지되고,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등에서는 교육감 권한으로 간접체벌을 포함하는 모든 체벌이 금지되었다. 체벌금지의 혜택을 입은 세대인 중, 고등학생들이 오히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 는 입장이 가장 높았던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먼저 조사 대상자인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2011년 시행된 체벌금지 조치의 효과로 직접 체벌을 거의 체험하지 못한 세대여서, 체벌의 부정적 효과를 간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체벌은 금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학생들은 직접적인 통제효과를 가지는 ‘체벌’에 대하여 그릇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더욱이 체벌을 대체하는 통솔 수단의 부재로 교실환경이 무질서해진다면, 학생들

은 이에 대한 반발로 체벌을 효과적인 통제 수단으로 오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이 부재한 정책은 늘 불완전하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체벌은 단기간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도출하는 통제수단이다. 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이에 대한 기대나 의존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직접 체벌을 금지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하고 학생인권조례에서도 모든 체벌을 금하겠다는 의도가 명료하게 제시되었다면, 그 당위성이나 근거, 필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른 교육적 통제 방법들이 체벌보다는 즉각적 효과가 덜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욱 효과적이고 교육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이해와 합의 없이 체벌을 금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적다는 것을 이번 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2) 체벌에 관한 상반되는 견해들의 대립

체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 ,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 ‘교육적 훈육(사랑의 때)의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 등의 상반된 입장들이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구체적으로, 학생은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 는 입장이 44.9%로 가장 높았지만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 는 입장도 3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 는 입장으로 41.9% 가장 높았지만 ‘교육적 훈육(사랑의 때)의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 는 입장도 3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학부모는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 는 입장이 38.7%였으나 ‘잘못을 했을 때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 는 입장도 38.4%로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높게 나타났다. 체벌에 관하여는 상반되는 견해들이 대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혼란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2011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 제8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

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의 모호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 즉 직접체벌은 금지하고 있지만 간접체벌은 금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는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이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간접체벌’도 금하고 있지만, 한편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체벌을 일부 인정하는 이중적인 교육현실 속에서, 학교와 학교 안팎의 체벌관련 인식이 이중적인 현상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때 체벌에 대한 모순된 의견의 대립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생인권조례 간의 불일치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책과 규정에서부터 체벌에 관련한 일관된 방향이 수립되어야만, 이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역시 체벌에 대한 일관된 입장, 일관된 가치관 정립이 가능할 것이다.

5) 세부사항에서 학생 대 학부모, 교사의 입장 차이

(1) 이성교제, 두발, 복장,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학생 입장과 학부모, 교사 입장

학교의 학생 이성교제 규제, 두발 규제에 대하여 학생은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이 각각 63.5%, 46.5%로 가장 높았던 데에 반해 학부모, 교사는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라는 입장이 각각 학부모 35.7%와 33.0%, 교사 45.0%와 5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학교의 학생 복장 규제, 교내 CCTV 설치에 대하여도 학생은 ‘전교생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라는 입장이 각각 45.6%, 48.9%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는 입장이 각각 학부모 39.2%와 50.0%, 교사 61.0%와 62.5%로 가장 높았다. 정리하면, 학생 인권에 대한 학생 대 교사, 학부모 간 상당한 입장차가 존재하며, 학생은 이성교제, 두발, 복장, 교내 CCTV 설치 등에 관련해서 학교의 규제를 받지 않거나 또는 학생들 스스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기를 원했으나, 교사나 부모는 학부모나 교사들 자신이 결정에 개입하거나 학교가 통제할 수 있기를 원했다.

두발, 복장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규정이 학교에서 유지되어온 것은 학생의 비행 가능성 감소의 효과를 갖는다는 논리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권재원, 2005)에 따르면 복장규정 등은 비행 가능성 감소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전국 학생 인권·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이 두발·복장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체벌 등의 경험한 비율은 57.3%에 이른다(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2년 서울 학생 인권조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두발규제 경험은 72.5%였다. 본 연구에서도 학교가 두발의 길이나 모양 제한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53.4%가 그렇다고 답했고, 다양한 복장규제도 50%를 넘어섰다.

이성교제 규제, 두발 등에 대하여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 라는 학생 입장,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 실제로는 일방적 규제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현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그리고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 지침 등에 다시금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2) 이성교제, 두발, 복장,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학생의 판단

학생들이 이성교제 규제나 두발 규제 등은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이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서 복장 규제, 교내 CCTV 설치 등에 대해서는 ‘전 교생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다수가 선택했다는 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관되게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안 된다’ 와 ‘의견 수렴을 통한 결정’ 을 적절히 조절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학생들은 이성교제, 두발 등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자율권을, 복장, 교내 CCTV 등에 대해서는 학생 자치에 의한 합의된 의사결정을 원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무제한의 자유나 일방적인 통제가 아닌, 권리와 책임의 긴장 안에서 적정선을 찾아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일 사안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학부모나 교사 집단에 비교해서 이러한 학생들의 태도, 즉 항목별 응답 차이가 갖는 의미를 깊게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6)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 종교행사 및 종교과목 참여, 성적에 따른 제한, 소지품 검사 등에 대한 인식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다수 의견에서 일치를 보인 것은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 참여’, ‘종교행사 및 종교과목 참여’, ‘성적에 따른 제한’, ‘학생 소지품 검사’ 등에 대한 인식에서였다. 구체적으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참여에 대하여 세 집단 모두 ‘학생 스스로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교사가 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결정’ 을 지지했다. 교내 종교행사 참여 또는 특정 종교 과목 수강에 대해서도 학생, 학부모, 교사 집단 모두 높은 비율로 ‘학생 스스로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는 입장을 보였다. 학생보다 학부모나 교사 집단에서 학생의 자유로운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이 더 높았다. 성적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 제한이나 학교시설 이용 제한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는 의견이 가장 우세했다. 특히 교사 집단은 성적에 따른 그러한 제한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는 응답이 세 집단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 한편,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학생/학교 안전과 관련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즉, 세 집단 모두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는 입장을 지지하기보다는, 안전과 관련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생인권 관련 몇몇 항목, 즉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 종교행사 및 종교과목 참여, 성적에 따른 제한, 소지품 검사 등에 대한 인식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다수 의견에서 일치를 보인 것은 의미가 크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핵심적인 세 집단이 모두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 교내 종교행사 참여 또는 특정 종교 과목 수강에 대해서는 학생 스스로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았고, 성적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 제한이나 학교시설 이용 제한은 부당하다고 보았으며, 학생 소지품 검사는 ‘학생/학교 안전과 관련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고 보았다.

현재의 학생인권 상황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인식 차원에서 합의하고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의 주요 당사자들이 인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인권 실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7) 학생 개인정보 제공 문제와 교사의 현실

학생 개인정보 공개나 제공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는 학생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는 입장이 학생 56.1%, 학부모 53.6%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교사는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 55.1%였다.

개인정보 공개 및 제공은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민감한 문제이다. 본 조사 결과, 학생 및 학부모의 다수는 개인정보 공개나 제공 자체를 반대했다. 가정환경 조사서라는 이름으로 학생의 생활수준이나 부모 이혼여부, 소득수준과 부모 직업 등을 낱낱이 조사하고 이를 임의로 활용하던 이전 세대의 개인정보 남용 상황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확고한 거부 입장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본 실태 조사에서도 학생들의 11.5%는 학교가 가정환경조사서, 종교, 성적체성, 급식수혜자, 질병이나 감염여부, 생활보호대상자여부 등 학생의 개인 정보를 ‘공개한다’ 고 응답했다. 이런 학생 개인정보에 대한 조사 자체가 갖는 문제도 적지 않지만, 나아가서 이렇게 조사된 자료의 활용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우려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생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과 이로 인한 차별이나 따돌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게 된다.

한편 교사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게 ‘동의를 받으면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는 입장이 우세했다. 이는 교사들이 외부기관 요청 등으로 학생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상황에 종종 직면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사 개인이 정보수집 요청에 대하여 사생활 침해 여부,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교사는 학생 개인정보를 관습적으로 조사하거나 제공하게 되고, 학생이나 학부모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우려가 크다.

8) 교내 학생 집회에 대한 인식 차이

집회의 자유 등에 관련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간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나타났다. 유인물 배포, 벽보 게시물 부착, 1인 시위 등 교내 학생 집회에 대하여 학생은 52%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는 입장이었던 것에 반해서, 같은 입장인 학부모는 31%, 교사는 16% 수준에 불과했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고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밝히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3조는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 현실은 이와 다르다. 특수목적고 학교가 학생의 집회참여를 막아서 해당학교 재학생들이 해당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학교가 촛불 집회 막아’ , 2016. 12. 2, 한겨레신문), 본 연구에서도 학칙을 통해 학생의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학교가 113곳으로 나타나는 등 학생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2013년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서명 운동, 집회 등 학생들 모임이나 의견 표시를 못하게 하거나 무시한 경우’ 는 11%였다.

그러한 제한은 근본적으로 ‘학생은 교내 학생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라는 입장 차이, 즉 이번 인식조사 연구에서 나타난 학생 대 학부모의 인식 차이 21%, 학생 대 교사의 인식 차이 36%와 관련된다. 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관련 문제는 교내외 갈등요소이자 학생인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인권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에 대하여 논의하고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학생인권교육이 필요하다. 현재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학생인권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나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에 비해, 학생 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현저하게 낮다. 낮은 인식수준 상태에서 갖는 적극적인 관심은 관심 주체를 자칫 오류로 이끌 수 있다. 특히 교사에 비해 학생이나 학부모 집단은 인식수준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생, 학부모 집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이 무엇인지, 실제 교육현장에서 다루는 학생인권의 영역이 어디인지, 학생인권이 침해당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상위법이나 협약 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부모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학생인권교육이 필요하다. 학부모는 학생이나 교사에 비해 자녀인 학생의 인권보장을 특히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했고 학생인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높았던 반면에 이성교제 규제, 두발규제, 복장규제, 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학교가 단독으로 정하’거나, 학교가 ‘수시로 하는’ 것에 대해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학부모가 생각하는 학생인권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영역에 그쳐서, 구체적인 인권침해 상황들로부터는 괴리되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학부모 집단이 인권침해적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았던 세대인 데에서 기인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된 인권침해적 사고방식들을 교정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막상 구체적 인권관련 판단에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학생인권 침해에 적극 개입할 단호한 개입 의지를 보여주는, 학생인권문제의 한 축이다.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에 대한 학생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학부모에 대한 학생인권 교육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스승을 존중하고 따르라는 유교적 교육을 받아온 학부모의 기존 가치관과 상충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의 근본정신이 국제적 협의에 의해 발전해왔다는 사실, 어떠한 당위적인 판단도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인권의

근본정신보다 앞설 수 없음을 적시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등학생에 대한 학생인권 교육 기회의 확충, 학생회 활동의 활성화 등으로 학생인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등학생은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중요도, 학생 인권 침해시의 대처 등에서 중학생보다 더 낮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서도 이성교제나 두발, 복장의 규제에 대해서는 중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반대하며, 학생으로서 집회의 자유, 교내의 종교 자유에 대한 의지는 더 높았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학생인권에 대한 더 높은 자각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입시위주, 학업성취 위주 여건 속에서 인권관련 영역의 비중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인권인식 수준이 낮아져서 침해상황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고등학교에서 학생인권 분야를 교과목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기회를 확장하고, 학생인권 관련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교내 학생회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대안으로 입시위주 교육이 가로막고 있는 고등학교에서의 학생인권의 발전 통로를 열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넷째, 차별에 대한 일관된 합의점의 도출, 이렇게 합의된 사안에 대한 교육, 그리고 차별의 즉각적 효과를 대신하는 교육적 접근법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계도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 결과, 학부모나 교사는 차별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데에 반해 학생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차별은 가능하다’는 입장이 가장 우세했다. 학생들이 말하는 차별이 직접차별이든 간접차별이든 간에, 학생인권을 위하여 구현해가고 있는 차별금지 조치의 당위성이 학생들에 의해 일부라도 부정되고 있는 현실은 당혹스럽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반인권적인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더라도, 새 방식의 근거가 되는 가치관이나 정신이 공유되지 않는 한 그 정책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차별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아닌 다른 교육적 방법을 모색해야만 하는 학생인권차원의 당위성, 그리고 교육학 차원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납득과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차별 금지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 내에서, 학부모들 내에서, 그리고 교사 집단 내에서도 차별에 대

한 상반된 견해들이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생인권조례 간의 불일치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차별에 관한 모순되고 불일치하는 견해들 속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 차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합의, 일관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 일관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차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인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망하게끔 하는 공청회를 조직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이성교제, 두발, 복장의 규제나 교내 CCTV 설치 등에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토론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현 시점에서 각각의 사안들은 일괄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며, 개별 사안들에 대한 최적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서로 납득해야 하고, 항목별 규제가 학생인권 차원에서나 학생, 학부모, 교사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를 보면 학생은 이성교제, 두발 규제를 복장 규제나 교내 CCTV 설치 등과는 다른 차원에서 판단하고 있다. 즉, 학생들은 이성교제, 두발 등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율권을, 복장, 교내 CCTV 등에 대해서는 학생 자치에 의한 합의된 의사결정을 원한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연구되어야 하며, 토론회 등 대화의 장을 통해 공유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인권의 정신을 구현하면서도 현실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여 각 집단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해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다수 의견에서 일치점을 보인 항목들, 즉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 종교행사 및 종교과목 참여, 성적에 따른 제한, 소지품 검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항목을 담고 있는 학칙의 개정, 홍보, 계도를 통해 규제들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학생, 학부모, 교사는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 종교행사 및 종교과목 참여, 성적에 따른 제한, 소지품 검사 등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을 고려한 나름의 일치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학교 규칙 실태 조사에서 보듯이, 관련 항목들에서 아직도 학생인권에 반하여 차별과

강제를 반영하고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는 반인권적인 학칙 세부 항목들이 적지 않다. 한 예로, 본 연구의 학교규칙 실태 조사를 보면 학칙 내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10.3%에 달했다. 임원 선발기준에 성적조항을 두는 등 ‘차별금지에 위반한 조항’이 학칙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19.9%로 나타났다.

우선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학생인권의 주요 당사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인식 차원에서 합의하고 있는 수준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학칙을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학칙조항들을 개선하고 또 관련 사안을 교육 현장에 홍보함으로써, 그 학칙에 근거한 현장에서의 규제 또한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개선작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에 높은 관심을 보인 학부모에 대한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학생,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개인정보 공개 및 제공 문제는 각각이 기대하고 우려하는 바를 고려해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학생들의 11.5%는 학교가 학생의 신상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 학생, 학부모가 궁극적으로 우려하는 바는 학생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과 이로 인한 차별이나 따돌림, 사생활 침해 등일 것이다. 한편 교사 집단에서 ‘동의를 받으면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데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필요성들이 그 배경에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이고 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먼저 학생인권보장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없는 영역에 대한 확실한 구분, 즉 인권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이에 근거해서만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조사 절차 역시 학생인권보장에 근거하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안내되어야 한다. 학생 개인은 정보 제공이나 조사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하는 학생 신상정보의 활용 목적이나 기간, 폐기절차 등에 대해서도 명료하게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교사, 학부모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학생의 50% 이상이 집회의 자유를 지지한 데 비해서 교사는 16%만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집회와 시위에 의해 민주화를 한걸음씩 이루어온 우리 사회에는, 집회라는 시민의 의사표현 방식에 대한 존중과 함께 집회, 특히 학생 집회에 대한 탄압과 감시, 규제의 역사도 뿌리 깊다. 집회가 민주사회에서 인정받는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인정받게 된 시간은 길지 않고, 불온세력, 불순분자 등의 용어에 연결되어 억압받아 온 기억들은 깊게 남아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기성세대인 교사, 학부모의 자각이다. 교사나 학부모 집단은 집회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바탕으로 둔 무의식적 기억을 자각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 질서에 근거한 정당한 자기표현으로서의 집회를 학생 권리로 인정하고, 그 정당성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하여 유인물 배포, 벽보 게시물 부착, 1인 시위 등의 학생 집회를 제한하고 징계하는 내용을 담은 학칙 세부 항목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학교규칙 실태 조사에서도 학칙 내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83.1%에 달했다. ‘학교장의 허락 없이 단체나 서클을 조직, 활동하거나 가입한 자’, ‘정치 관련 행위,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학칙들을 개정하지 않고는 학생 집회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없다.

이러한 개정은 그 과정 자체가 학생 집회참여를 불법적인 것으로 오판하는 학부모나 교사들의 인식개선 효과를 가질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개정에 대한 홍보를 통해 학생 집회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시각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회 활동을 장려하고, 학생회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현시켜 나아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막연한 불안에 뿌리를 둔 제한과 금지를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도적 개선과 교육이다. 학생 집회의 자유에 관해서는 학칙 개정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인식 개선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첫걸음일 것이다.

3. 학칙분석 결과에 기초한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변화하는 학교 및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학생인권보장 항목의 추가

필요성,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의 학생 의견존중 및 참여권 보장 실태 파악의 중요성, 학생 인권 관련 학교규칙(학칙) 분석 연구의 부족, 학교 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 간 학교 규제 권한 허용에 있어서의 인식 차이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러한 측면을 전달하는 연구를 설계, 진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중등학교의 인권 관점에서의 학칙 구성과 학생인권 관련 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결과를 통해 학생의 인권 증진 관련 정책권고의 기초자료로 그리고 각급 학교 진정사건 조사·구제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학생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1) 학교규칙의 문제점

이 연구에서 136개 학교의 학교규칙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칙의 제정 목적이 단순히 학생의 학교생활만을 통제·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학칙은 전체 136개 학교 중 30여 곳 뿐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학교가 학칙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총론 규정도 갖고 있지 않다.

둘째,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고 있는 학칙은 전체 136개 학교 중 27곳에 불과하다. 학칙에서 학생의 권리를 열거하는 것은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교육기본법의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이념을 달성하고, 학생 스스로가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인권의 온전한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하는 기본전제이자, 그 자체가 인권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셋째,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되는 조항을 갖고 있는 학칙이 27곳에 이른다. 여전히 성적이나 징계 사실 등을 이유로 임원자격 등의 자치활동이나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학교가 존재한다.

넷째, 학칙을 통해 학생의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곳이 113곳,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갖고 있는 곳이 126곳에 이른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마땅히 누려야 할 시민적 권리와 자유가 기본권 침해적 규정으로 제한되고 있다. 특히 집회나 결사의 자유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사나 학교장의 허가사항으로 두는 규칙이 현저히 많았다.

다섯째, 학칙의 상·벌점제 운영과 관련한 세부기준에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단어나 개념 사용, 과도한 기준을 갖고 있는 곳이 114곳에 이른다. 학생생활지도는 일관성 있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의 사용이나 용어 자체로 권위적이며 기본권 침해적 개념을 포함하는 세부기준은 교사나 학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당한 징계나 선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학칙의 상·벌점제 규정의 내용과 그 운영에 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부당함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상벌점제 관련하여서는 상점항목 수에 비해 벌점 항목이 2~5배 정도 과도하게 구성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세부기준은 학생을 포함한 학교구성원들에게 잘못된 인권 의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2) 학교규칙의 개선 방향과 정책적 제언

아동과 학생은 기본권의 주체임이 명확하고 성인보다 사회적, 국가적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동은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모의 친권에 종속된 자, 아직 미성숙의 사람으로서의 미성년자, 스스로 주체적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아동에 대한 권리의 침해는 비단 도덕이나 쉽게 바뀌지 않은 과거의 관습에 의해서만 행해졌던 것이 아니라 현행 성문의 법과 규정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었다. 특히 학생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학교규칙을 통하여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때로는 끔찍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는 것이 과거의 학교현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솔직한 고백일 것이다.

이제 학교규칙이 학생의 기본권 침해의 구습을 벗고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기본권이 담긴 권리장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규칙이 가지는 제1의 목적이 기본권 보장이라는 점이 선언되어야 하고 현재의 학교규칙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규칙의 개선방향과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권 보장의 원칙의 선언

학교규칙에 기본권 보장원칙의 선언과 학생의 기본권의 구체적 열거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가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로써 학생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학교규칙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징계라는 좁은 의미의 규정에 머물지 않고 학생의 인격권을 발현하고 민주적 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목적에 더욱 부합하게 될 것이다.

(2) 개별 침해 조항의 개정

조사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그동안 학교에서 기본권 침해가 주로 문제되는 경우로는 차별금지위반, 사생활 침해,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침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침해되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침해의 경우 이미 학생들의 상당한 저항이 있어왔다. 물론 학생들의 요구와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교육권과 충돌되는 지점이 극명히 드러날 것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와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고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각 학교에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규칙은 위와 같은 규범으로서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학생들의 기본권에 관한 권리장전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규칙의 준수를 강제하고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서 제 모습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학교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

학교규칙이 학교 내 학생인권 실현의 근거규범으로, 민주사회의 가치와 이념을 확인하는 실천방법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를 현재보다 활발히 운영하여 자치법에 대한 자체적인 재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침해 요소나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위한 교육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적극적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규칙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문화의 변화의 속도와 함께 급격하게 변화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또한 상위법의 변화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례의 변화에 맞추어 제때 개정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용이 적절하여야 할 것이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교규칙이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꾸준하게 개정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모범 학교규칙의 마련

학교규칙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각 학교마다 학교규칙의 질적 차이가 현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교적 최근에 개정을 한 것처럼 보이는 상당히 개선된 형태의 학칙이 있는 반면 학생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권위주의 시대에 사용되었던 학교규칙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학교규칙도 아주 많았다. 일선 학교의 현실과 교사들의 고충을 미루어 짐작하여 보건대 학교규칙의 제, 개정을 위한 노력이나 학교규칙의 전체적 개선을 위한 작업들을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번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교육관련 기관에서는 ‘모범 학교규칙’을 제정하여 각 학교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종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학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학교규칙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일선 학교에서 이를 반영하여 바로 제, 개정 절차에 들어가는 것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모범 학교규칙을 제정하여 일선 학교에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 개정 절차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과 행정보조를 하여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학교규칙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학교규칙 제, 개정을 전담할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물론 향후 모범 학교규칙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업절차를 통하여 제정된 학교규칙이야말로 기본권 친화적인 학교규칙,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이를 실천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자치법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게 될 것이다.



부 록

| | |
|-------------------|-----|
| 1. 중·고등학생용 설문 조사지 | 207 |
| 2. 학부모용 설문 조사지 | 212 |
| 3. 교사용 설문 조사지 | 216 |
| 4.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 220 |
| 5. 학생인권 인식조사 결과 | 226 |

1. 중·고등학생용 설문 조사지

※ 본인 및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중학생용)

| | |
|---|--|
| 1 | 나는 ①남자다() ②여자다() |
| 2 | 나는 ①중학생() ②고등학생() |
| 3 | 나는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
| 4 | 우리 학교가 있는 곳은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대전() ⑤인천() ⑥광주()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경남() ⑪경북() ⑫전북() ⑬전남() ⑭충북() ⑮충남() ⑯제주() ⑰세종() |
| 5 | 우리 학교는 ①남학교() ②여학교() ③남녀공학() |
| 6 | 중학생> 우리 학교는 ①공립() ②사립() |

※ 본인 및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고등학생용)

| | |
|---|--|
| 1 | 나는 ①남자다() ②여자다() |
| 2 | 나는 ①중학생() ②고등학생() |
| 3 | 나는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
| 4 | 우리 학교가 있는 곳은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대전() ⑤인천() ⑥광주()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경남() ⑪경북() ⑫전북() ⑬전남() ⑭충북() ⑮충남() ⑯제주() ⑰세종() |
| 5 | 우리 학교는 ①남학교() ②여학교() ③남녀공학() |
| 6 | 고등학생> 우리 학교는 ①공립인문고() ②사립인문고() ③자율형공립고() ④자율형사립고() ⑤특성화고/전문계고() ⑥특목고() |

<중, 고등학생 공통>

※ 당신의 학교생활에 대해 묻습니다.

| | 문항 | 매우 그렇 다 | 그런 편이 다 | 거 그 렇 지 않 다 | 전 혀 그 렇 지 않 다 |
|---|--|---------------|---------------|----------------------------|---------------------------------|
| 1 |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을 정하고 있는 학교규칙(예, 학교생활규정, 징계규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 Y | | | N |
| 2 | 학교에서 학생에게 보장된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Y | | | N |
| 3 | 학생 자치활동을 기획하고 회의할 수 있는 전용공간(예, 학생자치회의실)이 교내에 있습니까? | Y | | | N |

| | 문항 | 매우 그렇 다 | 그런 편이 다 | 거의 그렇 지않 다 | 전혀 그렇 지않 다 |
|-----------------------------------|---|---------------|---------------|---------------------|---------------------|
| 4 |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 | | | |
| 5 | 학교는 정기적으로 학생회 주관 대의원 회의를 개최합니까? | | | | |
| 6 | 학교는 여러분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전체 학생들로부터 의견(예, 설문)을 묻습니까? | | | | |
| 7 |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및 교사들은 학생관련 안전(예, 현장학습, 체험활동)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예, 설문)을 묻습니까? | | | | |
| 8 |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급/학생회 임원 출마를 못하거나 학급/학생회 활동에 제한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이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9 | 교사나 학교로부터 아래의 이유로 차별을 받았거나 차별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 ① 학교성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 | | |
| | ② 외모/생김새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 | | |
| | ③ 가정환경(예, 저소득층가정, 이혼가정, 한부모가정)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 | | |
| | ④ 학년/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예, 고학년에 식사나 독서실 이용에 대한 우선권을 제공하는 경우) | | | | |
| | ⑤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 | | |
| | ⑥ 다른 나라에서 왔거나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 | | |
| | ⑦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 | | |
| | ⑧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 | | |
| ⑨ 성적 지향(동성애, 양성애 성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 | | | | |
| 10 | 학교는 학생 간의 따돌림/괴롭힘, SNS 상의 따돌림/괴롭힘,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을 잘 보호하고 있습니까? | | | | |
| 11 | 직접체벌: 신체의 일부분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고통을 줌으로써 벌하는 것 (예, 회초리, 손찌검, 발로 걷어차임) | | | | |
| | 간접체벌: 직접적 접촉은 없으나 여러 유형의 행동제약을 통해 벌하는 것 (예, 팔을 들고 있기, 꿇어앉아 있기, 오래 세워두기, 토끼땀, 팔굽혀펴기, 운동장 뛰게 하기, 장시간 머리박기, 걸레 입에 물기, 비누로 입 행구기). 교사로부터 직접체벌을 받았거나 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직접체벌을 시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12 | 교사로부터 간접체벌을 받았거나 교사가 간접체벌을 시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13 | 교사로부터 욕설이나 비하의 말을 들었거나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14 | 교사로부터 성희롱(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성희롱)을 당하였거나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15 | 학교에서 상벌점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Y/ N '예' 라 답한 경우, 상벌점제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Y | | | N |
| 16 | 학교가 학생의 개인 정보(예, 가정환경조사서, 종교, 급식수혜자, 질병이나 감염여부, 생활보호대상자)를 공개합니까? | | | | |
| 17 |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을 검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 | |
| 18 | 학교가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학급, 학교계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까? | | | | |
| 19 | 학교가 학생들의 특정 고등학교 혹은 특정 대학교 입학할 현수막, 대자보,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까? | | | | |

| | 문항 | 매우 그렇 다 | 그런 편이 다 | 거의 없 다 | 전 혀 없 다 |
|----|---|---------------|---------------|--------------|------------------|
| 20 | 학교가 다음의 사항들을 제한합니까? | | | | |
| | ①두발의 길이나 모양을 제한합니까? | | | | |
| | ②교복 외의 점퍼 착용을 제한합니까? | | | | |
| | ③면티나 양말 색깔을 제한합니까? | | | | |
| | ④치마나 바지의 길이나 폭을 제한합니까? | | | | |
| | ⑤화장을 제한하거나 미용제품 및 미용기기의 반입을 제한합니까? | | | | |
| | ⑥수업 외 시간 동안(혹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 기숙사 생활 동안) 핸드폰 사 용을 제한합니까? | | | | |
| 21 | 학교는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 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 | | | |
| 22 | 학교가 강제성이 있는 서약서, 동의서 등을 쓰게 합니까? | | | | |
| 23 | 교내에 학생용 탈의실이 있습니까? Y/ N | Y | | | N |
| | ‘예’ 라 답한 경우, 탈의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 | | |
| 24 | 고민이 있을 때 학교상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 | | |
| 25 |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보내는데 제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예, 점심시간에 운동 장이나 체육관에서 놀거나 운동하는 것을 금지당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26 | 교사의 수업 중 학생선도나 일괄 용의복장 지도로 인해 수업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 | | | |

※ 다음 중 여러분의 생각이나 믿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1.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에 대해 나는

- ① 잘 알고 있다.
- ② 알고 있는 편이다.
- ③ 약간 안다.
- ④ 잘 모른다.

2. 학교에서 내 인권을 보장받는 것은 내게 있어

- 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② 중요할 수 있는 문제이다.
- ③ 다른 것에 비해 별로 중요치 않다.
- ④ 생각해 본 적 없다.

3. 학생으로서의 내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나는

- ① 내 권리를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 ② 부당하다 생각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 ③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 ④ 생각해 본 적 없다.

4. 학교의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된다.
- ② 전교생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③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④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5. 학교의 학생 두발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된다.
- ② 전교생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③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④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6. 학교의 학생 복장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된다.
- ② 전교생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③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④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7. 교내 CCTV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설치해서는 안된다.
- ② 전교생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③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④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8. 학교의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해선 안된다.
- ② 학생/학교 안전과 관련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 ③ 사전 고지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 ④ 수시로 할 수 있다.

9. 학생 개인정보 공개나 제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학교는 학생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 ② 동의를 받으면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③ 기본적 정보이면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④ 학교가 판단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0. 교내 학생 집회(예, 유인물 배포, 벽보 게시물 부착, 1인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학생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② 수업권 침해나 학생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학교가 통제할 수 있다.
- ③ 사전에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 ④ 교내에서는 집회를 해선 안된다.

11.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학생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 ②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해야 한다.
- ③ 참여는 의무다.
- ④ 잘 모르겠다.

12. 교내 종교행사 참여 또는 특정 종교 과목 수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학생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 ②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해야 한다.
- ③ 참여는 의무다.
- ④ 잘 모르겠다.

13.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된다.
- ②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
- ③ 교육적 훈육(사랑의 매)의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
- ④ 잘 모르겠다.

14. 성적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 제한이나 학생 학교시설 이용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②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있다.
- ③ 대체로 이해한다.
- ④ 생각해 본 적 없다.

◎ 모두 끝났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 학부모용 설문 조사지

※ 귀하의 자녀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 | |
|---|---|
| 1 | 응답자 성별 ①남자() ②여자() |
| 2 | 응답자 연령 만()세 |
| 3 | 응답자의 자녀는 ①중학생() ②고등학생() |
| 4 | 응답자의 자녀 학년은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
| 5 | 응답자 자녀의 학교가 위치한 지역: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대전() ⑤인천() ⑥광주()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경남() ⑪경북() ⑫전북() ⑬전남() ⑭충북() ⑮충남() ⑯제주() ⑰세종() |
| 6 | 자녀의 학교는 ①남학교() ②여학교() ③남녀공학() |
| 7 | 자녀가 중학생인 경우: 자녀의 학교 유형은 ①공립() ②사립()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자녀의 학교 유형은 ①공립인문고() ②사립인문고() ③자율형공립고() ④자율형사립고() ⑤특성화고/전문계고() ⑥특목고() |

※ 다음은 학생의 학교생활에서의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중 여러분의 생각이나 믿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1.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에 대해 나는

- ① 잘 알고 있다.
- ② 알고 있는 편이다.
- ③ 약간 안다.
- ④ 잘 모른다.

2. 내 자녀의 학교에서의 인권 보장은 내게

- 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② 중요할 수 있는 문제이다.
- ③ 다른 것에 비해 별로 중요치 않다.
- ④ 생각해 본 적 없다.

3. 내 자녀의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나는
- ① 내 자녀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 ② 부당하다 생각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 ③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 ④ 생각해 본 적 없다.
4. 학교의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된다.
 - ② 전교생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③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④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5. 학교의 학생 두발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된다.
 - ② 전교생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③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④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6. 학교의 학생 복장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된다.
 - ② 전교생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③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④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7. 교내 CCTV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설치해서는 안된다.
 - ② 전교생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③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④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8. 학교의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해선 안된다.
 - ② 학생/학교 안전과 관련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 ③ 사전 고지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 ④ 수시로 할 수 있다.

9. 학생 개인정보 공개나 제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학교는 학생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 ② 동의를 받으면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③ 기본적 정보이면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④ 학교가 판단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0. 교내 학생 집회(예, 유인물 배포, 벽보 게시물 부착, 1인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학생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② 수업권 침해나 학생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학교가 통제할 수 있다.
- ③ 사전에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 ④ 교내에서는 집회를 해선 안된다.

11. 학생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학생 스스로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 ②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은 참여해야 한다.
- ③ 참여는 학생의 의무다.
- ④ 잘 모르겠다.

12. 교내 종교행사 참여 또는 특정 종교 과목 수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학생 스스로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 ②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은 참여해야 한다.
- ③ 참여는 학생의 의무다.
- ④ 잘 모르겠다.

13.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된다.
- ②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
- ③ 교육적 훈육(사랑의 매)의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
- ④ 잘 모르겠다.



14. 성적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 제한이나 학생 학교시설 이용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②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있다.
- ③ 대체로 이해한다.
- ④ 생각해 본 적 없다.

◎ 모두 끝났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3. 교사용 설문 조사지

※ 귀하 및 귀하가 근무하는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 | |
|---|--|
| 1 | 응답자 성별 ①남자() ②여자() |
| 2 | 응답자 연령 만()세 |
| 3 | 응답자 교사경력 ()년 |
| 4 | 응답자 근무처 ①중학교() ②고등학교() |
| 5 | 응답자의 직위 ①교사() ②학교 행정자() |
| 6 | 응답자의 근무 학교가 위치한 지역: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대전() ⑤인천() ⑥광주()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경남() ⑪경북() ⑫전북() ⑬전남() ⑭충북() ⑮충남() ⑯제주() ⑰세종() |
| 7 | 응답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①남학교() ②여학교() ③남녀공학() |
| 8 | 만약 응답자가 근무하는 학교가 중학교라면 학교 유형은 ①공립() ②사립() 만약 응답자가 근무하는 학교가 고등학교라면 학교 유형은 ①공립인문고() ②사립인문고() ③자율형공립고() ④자율형사립고() ⑤특성화고/전문계고() ⑥특목고() |

※ 다음은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의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중 여러분의 생각이나 믿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번호에 √표해 주십시오.

1.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에 대해 교사로서 나는

- ① 잘 알고 있다.
- ② 알고 있는 편이다.
- ③ 약간 안다.
- ④ 잘 모른다.

2.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사인 내게 있어

- 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② 중요할 수 있는 문제이다.
- ③ 다른 것에 비해 별로 중요치 않다.
- ④ 생각해 본 적 없다.

3.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나는

- ① 학생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 ② 부당하다 생각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 ③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 ④ 생각해 본 적 없다.

4. 학교의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된다.
- ② 전교생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③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④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5. 학교의 학생 두발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된다.
- ② 전교생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③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④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6. 학교의 학생 복장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된다.
- ② 전교생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③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④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7. 교내 CCTV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설치해서는 안된다.
- ② 전교생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③ 학생·학부모·교사 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④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8. 학교의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해선 안된다.
- ② 학생/학교 안전과 관련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 ③ 사전 고지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 ④ 수시로 할 수 있다.

9. 학생 개인정보 공개나 제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학교는 학생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 ② 동의를 받으면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③ 기본적 정보이면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④ 학교가 판단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0. 교내 학생 집회(예, 유인물 배포, 벽보 게시물 부착, 1인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학생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② 수업권 침해나 학생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학교가 통제할 수 있다.
- ③ 사전에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 ④ 교내에서는 집회를 해선 안된다.

11. 학생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학생 스스로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 ②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은 참여해야 한다.
- ③ 참여는 학생의 의무다.
- ④ 잘 모르겠다.

12. 교내 종교행사 참여 또는 특정 종교 과목 수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학생 스스로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 ②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은 참여해야 한다.
- ③ 참여는 학생의 의무다.
- ④ 잘 모르겠다.

13.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된다.
- ②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
- ③ 교육적 훈육(사랑의 매)의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
- ④ 잘 모르겠다.



14. 성적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 제한이나 학생 학교시설 이용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②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있다.
- ③ 대체로 이해한다.
- ④ 생각해 본 적 없다.

◎ 모두 끝났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1) 학생권리보장 관련

〈표 6-1-1〉 학교생활에서의 학생권리 보장 관련 문항들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 = 1.74$ | 1.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을 정하고 있는 학교규칙 (예, 학교생활규정, 징계규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 | | Total | |
|-------------------------|---|--------------|-------------|---------------|---------------|
| | No | Yes | | | |
| 응답자 | 381 (14.6%) | 2231 (85.4%) | | 2612 (100.0%) | |
| 중학생 | | | | | |
| 고등학생 | 551 (15.8%) | 2933 (84.2%) | | 3484 (100.0%) | |
| Total | 932 (15.3%) | 5164 (84.7%) | | 6096 (100.0%) | |
| $\chi^2 = 181.04^{***}$ | 2. 학교에서 학생에게 보장된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 Total | |
| | No | Yes | | | |
| 응답자 | 749 (28.7%) | 1863 (71.3%) | | 2612 (100.0%) | |
| 중학생 | | | | | |
| 고등학생 | 1589 (45.6%) | 1895 (54.4%) | | 3484 (100.0%) | |
| Total | 2338 (38.4%) | 3758 (61.6%) | | 6096 (100.0%) | |
| $\chi^2 = .48$ | 3. 학생 자치활동을 기획하고 회의할 수 있는 전용공간(예, 학생자치회실)이 교내에 있습니까? | | | Total | |
| | No | Yes | | | |
| 응답자 | 671 (25.7%) | 1941 (74.3%) | | 2612 (100.0%) | |
| 중학생 | | | | | |
| 고등학생 | 868 (24.9%) | 2616 (75.1%) | | 3484 (100.0%) | |
| Total | 1539 (25.2%) | 4557 (74.8%) | | 6096 (100.0%) | |
| $\chi^2 = 85.72^{***}$ | 4.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 | | | Total |
| | 전혀그렇지않다 | 거의그렇지않다 | 그런편이다 | 매우그렇다 | |
| 응답자 | 85 (3.3%) | 289 (11.1%) | 1471(56.3%) | 770 (29.4%) | 2615 (100.0%) |
| 중학생 | | | | | |
| 고등학생 | 143 (4.1%) | 507 (14.6%) | 2152(61.8%) | 682 (19.6%) | 3484 (100.0%) |
| Total | 228 (3.7%) | 796 (13.1%) | 3623(59.4%) | 1452(23.8%) | 6099 (100.0%) |
| $\chi^2 = 20.15^{***}$ | 5. 학교는 정기적으로 학생회 주관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니까? | | | | Total |
| | 전혀그렇지않다 | 거의그렇지않다 | 그런편이다 | 매우그렇다 | |
| 응답자 | 76 (2.9%) | 319 (12.2%) | 1299(49.7%) | 922 (35.2%) | 2616 (100.0%) |
| 중학생 | | | | | |
| 고등학생 | 157 (4.5%) | 515 (14.8%) | 1809(51.9%) | 1003(28.8%) | 3484 (100.0%) |
| Total | 233 (3.8%) | 834 (13.7%) | 3108(51.0%) | 1925(31.6%) | 6100 (100.0%) |
| $\chi^2 = 121.26^{***}$ | 6. 학교는 여러분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전체 학생들로부터 의견(예, 설문)을 묻습니까? | | | | Total |
| | 전혀그렇지않다 | 거의그렇지않다 | 그런편이다 | 매우그렇다 | |
| 응답자 | 234 (8.9%) | 534 (20.4%) | 1188(45.4%) | 660 (25.2%) | 2616 (100.0%) |
| 중학생 | | | | | |
| 고등학생 | 514(14.8%) | 848 (24.3%) | 1578(45.3%) | 544 (15.6%) | 3484 (100.0%) |
| Total | 748(12.3%) | 1382(22.7%) | 2766(45.3%) | 1204(19.7%) | 6100 (100.0%) |
| $\chi^2 = 67.60^{***}$ | 7.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및 교사들은 학생관련 안건(예, 현장학습, 체험활동)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예, 설문)을 묻습니까? | | | | Total |
| | 전혀그렇지않다 | 거의그렇지않다 | 그런편이다 | 매우그렇다 | |
| 응답자 | 170 (6.5%) | 391 (14.9%) | 1223(46.8%) | 831 (31.8%) | 2616 (100.0%) |
| 중학생 | | | | | |
| 고등학생 | 396(11.4%) | 680 (19.5%) | 1732(49.7%) | 676 (19.4%) | 3484 (100.0%) |
| Total | 566 (9.3%) | 1071(17.6%) | 2955(48.4%) | 1507(24.7%) | 6099 (100.0%) |
| $\chi^2 = 158.11^{***}$ | 8.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급/학생회 임원 출마를 못하거나 학급/학생회 활동에 제한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이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 | Total |
| | 전혀그렇지않다 | 거의그렇지않다 | 그런편이다 | 매우그렇다 | |
| 응답자 | 1429(54.6%) | 678 (25.9%) | 327 (12.5%) | 182 (7.0%) | 2616 (100.0%) |
| 중학생 | | | | | |
| 고등학생 | 1343(38.5%) | 1207(34.6%) | 637 (18.3%) | 297 (8.5%) | 3484 (100.0%) |
| Total | 2772(45.4%) | 1885(30.9%) | 964 (15.8%) | 479 (7.9%) | 6100 (100.0%) |

2) 차별 경험 관련

〈표 6-1-2〉 차별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학생유형별)

단위: 명(%)

| | | 9. 아래의 이유로 차별을 받았거나 차별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 | Total |
|--|-------|--|-------------|-------------|------------|--------------|
| | | 전혀그렇지않다 | 거의그렇지않다 | 그런편이다 | 매우그렇다 | |
| ①학교성적 $\chi^2=323.78***$ | 중학생 | 1222(46.7%) | 873(33.4%) | 397(15.2%) | 122(4.7%) | 2614(100.0%) |
| | 고등학생 | 923(26.5%) | 1281(36.8%) | 958(27.5%) | 322(9.2%) | 3484(100.0%) |
| | Total | 2145(35.2%) | 2154(35.3%) | 1355(22.2%) | 444(7.3%) | 6098(100.0%) |
| ②외모/생김새 $\chi^2=83.68***$ | 중학생 | 1574(60.2%) | 795(30.4%) | 190(7.3%) | 56(2.1%) | 2615(100.0%) |
| | 고등학생 | 1691(48.5%) | 1412(40.5%) | 297(8.5%) | 84(2.4%) | 3484(100.0%) |
| | Total | 3265(53.5%) | 2207(36.2%) | 487(8.0%) | 140(2.3%) | 6099(100.0%) |
| ③가정환경 (저소득층가정,이혼가정, 한부모가정) $\chi^2=82.92***$ | 중학생 | 1909(73.0%) | 615(23.5%) | 64(2.4%) | 27(1.0%) | 2615(100.0%) |
| | 고등학생 | 2157(61.9%) | 1163(33.4%) | 119(3.4%) | 45(1.3%) | 3484(100.0%) |
| | Total | 4066(66.7%) | 1778(29.2%) | 183(3.0%) | 72(1.2%) | 6099(100.0%) |
| ④학년/나이 $\chi^2=398.21***$ | 중학생 | 1335(51.1%) | 654(25.0%) | 428(16.4%) | 198(7.6%) | 2615(100.0%) |
| | 고등학생 | 1004(28.8%) | 908(26.1%) | 901(25.9%) | 671(19.3%) | 3484(100.0%) |
| | Total | 2339(38.4%) | 1562(25.6%) | 1329(21.8%) | 869(14.2%) | 6099(100.0%) |
| ⑤성별 $\chi^2=42.58***$ | 중학생 | 1656(63.3%) | 684(26.2%) | 190(7.3%) | 85(3.3%) | 2615(100.0%) |
| | 고등학생 | 1938(55.6%) | 1035(29.7%) | 370(10.6%) | 141(4.0%) | 3484(100.0%) |
| | Total | 3594(58.9%) | 1719(28.2%) | 560(9.2%) | 226(3.7%) | 6099(100.0%) |
| ⑥다른나라/ 다문화가정 $\chi^2=37.63***$ | 중학생 | 2036(77.9%) | 517(19.8%) | 47(1.8%) | 15(0.6%) | 2615(100.0%) |
| | 고등학생 | 2472(71.0%) | 903(25.9%) | 76(2.2%) | 33(0.9%) | 3484(100.0%) |
| | Total | 3353(73.9%) | 1044(23.3%) | 84(2.0%) | 31(0.8%) | 6099(100.0%) |
| ⑦장애 $\chi^2=21.67$ | 중학생 | 1898(72.6%) | 605(23.1%) | 92(3.5%) | 20(0.8%) | 2615(100.0%) |
| | 고등학생 | 2346(67.3%) | 968(27.8%) | 127(3.6%) | 43(1.2%) | 3484(100.0%) |
| | Total | 4244(69.6%) | 1573(25.8%) | 219(3.6%) | 63(1.0%) | 6099(100.0%) |
| ⑧종교 $\chi^2=99.44***$ | 중학생 | 2071(79.2%) | 474(18.1%) | 51(2.0%) | 19(0.7%) | 2615(100.0%) |
| | 고등학생 | 2374(68.1%) | 910(26.1%) | 134(3.8%) | 66(1.9%) | 3484(100.0%) |
| | Total | 4445(72.9%) | 1384(22.7%) | 185(3.0%) | 85(1.4%) | 6099(100.0%) |
| ⑨성적 지향 (동성애, 양성애성향) $\chi^2=50.99***$ | 중학생 | 1967(75.2%) | 537(20.5%) | 79(3.0%) | 32(1.2%) | 2615(100.0%) |
| | 고등학생 | 2330(66.9%) | 935(26.8%) | 151(4.3%) | 68(2.0%) | 3484(100.0%) |
| | Total | 4297(70.5%) | 1472(24.1%) | 230(3.8%) | 100(1.6%) | 6099(100.0%) |

3) 체벌, 언어폭력, 성희롱 및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경험 관련(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관련)

〈표 6-1-3〉 체벌, 언어폭력, 성희롱 및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89.06^{***}$ | 10. 학교는 학생 간의 따돌림/괴롭힘, SNS 상의 따돌림/괴롭힘,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을 잘 보호하고 있습니까? | | | | Total |
|----------------------|--|-------------|-------------|-------------|--------------|
| | 전혀그렇지않다 | 거의그렇지않다 | 그런편이다 | 매우그렇다 | |
| 응답자 중학생 | 225 (8.6%) | 463 (17.7%) | 1323(50.6%) | 605 (23.1%) | 2616(100.0%) |
| 고등학생 | 357(10.2%) | 787 (23.2%) | 1814(52.1%) | 503 (14.4%) | 3484(100.0%) |
| Total | 582 (9.5%) | 1273(20.9%) | 3137(51.4%) | 1108(18.2%) | 6100(100.0%) |
| $\chi^2=4.95$ | 11. 교사로부터 직접체벌을 받았거나 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직접체벌을 시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 | Total |
| | 전혀그렇지않다 | 거의그렇지않다 | 그런편이다 | 매우그렇다 | |
| 응답자 중학생 | 1009(38.6%) | 834 (31.9%) | 504 (19.3%) | 268(10.2%) | 2615(100.0%) |
| 고등학생 | 1363(39.1%) | 1176(33.8%) | 627 (18.0%) | 318 (9.1%) | 3484(100.0%) |
| Total | 2372(38.9%) | 2010(33.0%) | 1131(18.5%) | 586 (9.6%) | 6099(100.0%) |
| $\chi^2=2.24$ | 12. 교사로부터 간접체벌을 받았거나 교사가 간접체벌을 시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 | Total |
| | 전혀그렇지않다 | 거의그렇지않다 | 그런편이다 | 매우그렇다 | |
| 응답자 중학생 | 935 (35.8%) | 761 (29.1%) | 593 (22.7%) | 325 (12.4%) | 2614(100.0%) |
| 고등학생 | 1184(34.0%) | 1036(29.7%) | 825 (23.7%) | 439 (12.6%) | 3484(100.0%) |
| Total | 2119(34.7%) | 1797(29.5%) | 1418(23.3%) | 764 (12.5%) | 6098(100.0%) |
| $\chi^2=68.81^{***}$ | 13. 교사로부터 욕설이나 비하의 말을 들었거나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 | Total |
| | 전혀그렇지않다 | 거의그렇지않다 | 그런편이다 | 매우그렇다 | |
| 응답자 중학생 | 921 (35.2%) | 906 (34.6%) | 583 (22.3%) | 206 (7.9%) | 2616(100.0%) |
| 고등학생 | 909 (26.1%) | 1258(36.1%) | 943 (27.1%) | 374(10.7%) | 3484(100.0%) |
| Total | 1830(30.0%) | 2164(35.5%) | 1526(25.0%) | 580 (9.5%) | 6100(100.0%) |
| $\chi^2=80.13^{***}$ | 14. 교사로부터 성희롱(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성희롱)을 당하였거나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 | | Total |
| | 전혀그렇지않다 | 거의그렇지않다 | 그런편이다 | 매우그렇다 | |
| 응답자 중학생 | 1887(72.1%) | 566 (21.6%) | 126 (4.8%) | 37 (1.4%) | 2616(100.0%) |
| 고등학생 | 2134(61.3%) | 1020(29.3%) | 247 (7.1%) | 83 (2.4%) | 3484(100.0%) |
| Total | 4021(65.9%) | 1586(26.0%) | 373 (6.1%) | 120(2.0%) | 6100(100.0%) |

4) 적법한 상·벌점제 운영 관련

〈표 6-1-4〉 적법한 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6.03^*$ | 15-1. 학교에서 상벌점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 | Total | |
|----------------------|--|--------------|-------------|--------------|--------------|
| | 아니다 | 그렇다 | | | |
| 응답자 중학생 | 864 (33.0%) | 1752 (67.0%) | | 2616(100.0%) | |
| 고등학생 | 1048 (30.1%) | 2436 (69.9%) | | 3484(100.0%) | |
| Total | 1912 (31.3%) | 4188 (68.7%) | | 6100(100.0%) | |
| $\chi^2=75.28^{***}$ | 15-2. '예' 라 답한 경우, 상벌점제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 | | Total |
| | 전혀그렇지않다 | 거의그렇지않다 | 그런편이다 | 매우그렇다 | |
| 응답자 중학생 | 157(8.5%) | 280(15.2%) | 899(48.6%) | 512(27.7%) | 1848(100.0%) |
| 고등학생 | 278(10.9%) | 492(19.3%) | 1345(52.7%) | 438(17.2%) | 2553(100.0%) |
| Total | 435(9.9%) | 772(17.5%) | 2244(51.0%) | 950(21.6%) | 4401(100.0%) |

5) 강제소지품 검사, 개인신상정보 보호 관련 (사생활의 자유 침해 관련)

〈표 6-1-5〉 강제소지품 검사, 개인신상정보 보호 관련 학생 응답 분석 (학생유형별)

단위: 명(%)

| $\chi^2=8.57^*$ | 16. 학교가 학생의 개인 정보(예, 가정환경조사서, 종교, 성적체성, 급식수혜자, 질병이나 감염여부, 생활보호대상자)를 공개합니까? | | | | Total |
|-----------------------|--|-------------|-------------|------------|--------------|
| | 전혀그렇지않다 | 거의그렇지않다 | 그런편이다 | 매우그렇다 | |
| 응답자 중학생 | 1462(55.9%) | 844(32.3%) | 224(8.6%) | 86 (3.3%) | 2616(100.0%) |
| 고등학생 | 1865(53.5%) | 1229(35.3%) | 302(8.7%) | 88 (2.5%) | 3484(100.0%) |
| Total | 3327(54.5%) | 2073(34.0%) | 526(8.6%) | 174(2.9%) | 6100(100.0%) |
| $\chi^2=100.34^{***}$ | 17.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소지품을 검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 | Total |
| | 전혀그렇지않다 | 거의그렇지않다 | 그런편이다 | 매우그렇다 | |
| 응답자 중학생 | 1582(60.5%) | 697(26.6%) | 219(8.4%) | 118(4.5%) | 2616(100.0%) |
| 고등학생 | 1713(49.2%) | 1032(29.6%) | 449(12.9%) | 290(8.3%) | 3484(100.0%) |
| Total | 3295(54.0%) | 1729(28.3%) | 668(11.0%) | 408(6.7%) | 6100(100.0%) |
| $\chi^2=63.56^{***}$ | 18. 학교가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학급,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까? | | | | Total |
| | 전혀그렇지않다 | 거의그렇지않다 | 그런편이다 | 매우그렇다 | |
| 응답자 중학생 | 1745(66.7%) | 538(20.6%) | 235 (9.0%) | 98 (3.7%) | 2616(100.0%) |
| 고등학생 | 1987(57.0%) | 866(24.9%) | 421(12.1%) | 210(6.0%) | 3484(100.0%) |
| Total | 3732(61.2%) | 1404(23.0%) | 656(10.8%) | 308(5.0%) | 6100(100.0%) |
| $\chi^2=225.02^{***}$ | 19. 학교가 학생들의 특정 고등학교 혹은 특정 대학교 입학율 현수막, 대자보,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까? | | | | Total |
| | 전혀그렇지않다 | 거의그렇지않다 | 그런편이다 | 매우그렇다 | |
| 응답자 중학생 | 1033(39.5%) | 780(29.8%) | 596(22.8%) | 206 (7.9%) | 2615(100.0%) |
| 고등학생 | 874(25.1%) | 949(27.2%) | 1098(31.5%) | 563(16.2%) | 3484(100.0%) |
| Total | 1907(31.3%) | 1729(28.3%) | 1694(27.8%) | 769(12.6%) | 6099(100.0%) |

6) 개성실현 및 사생활의 자유 제한 관련

〈표 6-1-6〉 개성실현 및 사생활의 자유 제한 관련 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응답자별)
단위: 명(%)

| | | 20. 학교가 다음의 사항들을 제한합니까? | | | | Total |
|--|-------|-------------------------|-------------|-------------|--------------|--------------|
| | | 전혀그렇지않다 | 거의그렇지않다 | 그런 편이다 | 매우그렇다 | |
| ① 두발의 길이나 모양 제한 $\chi^2=21.34^{***}$ | 중학생 | 646 (24.7%) | 541 (20.7%) | 719 (27.5%) | 708 (27.1%) | 2614(100.0%) |
| | 고등학생 | 789 (22.6%) | 864 (24.8%) | 1005(28.8%) | 826 (23.7%) | 3484(100.0%) |
| | Total | 1435(23.5%) | 1405(23.0%) | 1724(28.3%) | 1534(25.2%) | 6098(100.0%) |
| ② 교복 외의 점퍼 착용 제한 $\chi^2=28.55^{***}$ | 중학생 | 410 (15.7%) | 638 (24.4%) | 913 (34.9%) | 655 (25.0%) | 2616(100.0%) |
| | 고등학생 | 532 (15.3%) | 722 (20.7%) | 1154(33.1%) | 1076 (30.9%) | 3484(100.0%) |
| | Total | 942 (15.4%) | 1360(22.3%) | 2067(33.9%) | 1731(28.4%) | 6100(100.0%) |
| ③ 면티/양말 색깔 제한 $\chi^2=14.24^{**}$ | 중학생 | 1386(53.0%) | 552 (21.1%) | 406 (15.5%) | 272 (10.4%) | 2616(100.0%) |
| | 고등학생 | 1768(50.7%) | 859 (24.7%) | 472 (13.5%) | 385 (11.1%) | 3484(100.0%) |
| | Total | 3154(51.7%) | 1411(23.1%) | 878 (14.4%) | 657 (10.8%) | 6100(100.0%) |
| ④ 치마/바지의 길이나 폭 제한 $\chi^2=134.67^{***}$ | 중학생 | 388 (14.8%) | 390 (14.9%) | 897 (34.3%) | 941 (36.0%) | 2616(100.0%) |
| | 고등학생 | 724 (20.8%) | 795 (22.8%) | 1066(30.6%) | 899 (25.8%) | 3484(100.0%) |
| | Total | 1112(18.2%) | 1185(19.4%) | 1963(32.2%) | 1840(30.2%) | 6100(100.0%) |
| ⑤ 화장/미용제품 및 미용기기의 반입 제한 $\chi^2=153.79^{***}$ | 중학생 | 370 (14.1%) | 273 (10.4%) | 864 (33.0%) | 1109(42.4%) | 2616(100.0%) |
| | 고등학생 | 703 (20.2%) | 657 (18.9%) | 1016(29.2%) | 1108(31.8%) | 3484(100.0%) |
| | Total | 1073(17.6%) | 930 (15.2%) | 1880(30.8%) | 2217(36.3%) | 6100(100.0%) |
| ⑥ 수업외 시간 혹은 기숙사 생활 동안의 핸드폰사용제한 $\chi^2=87.64^{***}$ | 중학생 | 294 (11.2%) | 144 (5.5%) | 388 (14.8%) | 1790 (68.4%) | 2616(100.0%) |
| | 고등학생 | 476 (13.7%) | 344 (9.9%) | 665 (19.1%) | 1999 (57.4%) | 3484(100.0%) |
| | Total | 770 (12.6%) | 488 (8.0%) | 1053(17.3%) | 3789 (62.1%) | 6100(100.0%) |

7) 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관련

〈표 6-1-7〉 서약서/동의서 강제(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경험에 대한 학생 응답 분석 (응답자별)
단위: 명(%)

| $\chi^2=96.93^{***}$ | | 21. 학교는 학교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까? | | | | Total |
|-----------------------|------|---|-------------|-------------|-------------|--------------|
| | | 전혀그렇지않다 | 거의그렇지않다 | 그런편이다 | 매우그렇다 | |
| 응답자 | 중학생 | 150 (5.7%) | 506 (19.3%) | 1354(51.8%) | 605 (23.1%) | 2615(100.0%) |
| | 고등학생 | 288 (8.3%) | 892 (25.6%) | 1792(51.4%) | 512 (14.7%) | 3484(100.0%) |
| Total | | 438 (7.2%) | 1398(22.9%) | 3146(51.6%) | 1117(18.3%) | 6099(100.0%) |
| $\chi^2=161.71^{***}$ | | 22. 학교가 강제성이 있는 서약서, 동의서 등을 쓰게 합니까? | | | | Total |
| | | 전혀그렇지않다 | 거의그렇지않다 | 그런 편이다 | 매우그렇다 | |
| 응답자 | 중학생 | 1412(54.0%) | 827 (31.6%) | 264 (10.1%) | 113 (4.3%) | 2616(100.0%) |
| | 고등학생 | 1350(38.7%) | 1304(37.4%) | 530 (15.2%) | 300 (8.6%) | 3484(100.0%) |
| Total | | 2762(45.3%) | 2131(34.9%) | 794 (13.0%) | 413 (6.8%) | 6100(100.0%) |

8) 휴식권 침해, 교육에 대한 선택권, 학생의 학습권 관련

〈표 6-1-8〉 휴식권 침해, 학생의 학습권 관련 학생 응답 분석 (응답자별)

단위: 명(%)

| $\chi^2=317.94^{***}$ | 23-1. 교내에 학생용 탈의실이 있습니까? | | | Total | |
|-----------------------|---|--------------|-------------|--------------|--------------|
| | No | Yes | | | |
| 응답자 중학생 | 1331 (50.9%) | 1285 (49.1%) | | 2616(100.0%) | |
| 고등학생 | 2543 (73.0%) | 939 (27.0%) | | 3482(100.0%) | |
| Total | 3874 (63.5%) | 2224 (36.5%) | | 6098(100.0%) | |
| $\chi^2=126.47^{***}$ | 23-2. '예' 라 답한 경우, 탈의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 | | Total |
| | 전혀그렇지않다 | 거의그렇지않다 | 그런편이다 | 매우그렇다 | |
| 응답자 중학생 | 196(14.2%) | 187(13.5%) | 423(30.6%) | 575(41.6%) | 1381(100.0%) |
| 고등학생 | 355(29.7%) | 214(17.9%) | 308(25.8%) | 319(26.7%) | 1196(100.0%) |
| Total | 551(21.4%) | 401(15.6%) | 731(28.4%) | 894(34.7%) | 2577(100.0%) |
| $\chi^2=196.70^{***}$ | 24. 고민이 있을 때 학교상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 | | | Total |
| | 전혀그렇지않다 | 거의그렇지않다 | 그런편이다 | 매우그렇다 | |
| 응답자 중학생 | 80 (3.1%) | 254 (9.7%) | 1146(43.8%) | 1136(43.4%) | 2616(100.0%) |
| 고등학생 | 217(6.2%) | 560(16.1%) | 1744(50.1%) | 963(27.6%) | 3484(100.0%) |
| Total | 297(4.9%) | 814(13.3%) | 2890(47.4%) | 2099(34.4%) | 6100(100.0%) |
| $\chi^2=17.42^{**}$ | 25.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보내는데 제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예, 점심시간에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놀거나 운동하는 것을 금지당한 적이 있습니까)? | | | | Total |
| | 전혀그렇지않다 | 거의그렇지않다 | 그런편이다 | 매우그렇다 | |
| 응답자 중학생 | 1184(45.3%) | 870 (33.3%) | 378(14.5%) | 183(7.0%) | 2615(100.0%) |
| 고등학생 | 1421(40.8%) | 1332(38.2%) | 495(14.2%) | 236(6.8%) | 3484(100.0%) |
| Total | 2605(42.7%) | 2202(36.1%) | 873(14.3%) | 419(6.9%) | 6099(100.0%) |
| $\chi^2=72.05^{***}$ | 26. 교사의 수업 중 학생선도나 일괄 용의복장 지도로 인해 수업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 | | | Total |
| | 전혀그렇지않다 | 거의그렇지않다 | 그런편이다 | 매우그렇다 | |
| 응답자 중학생 | 954 (36.5%) | 957 (36.6%) | 535 (20.5%) | 169 (6.5%) | 2615(100.0%) |
| 고등학생 | 1009(29.0%) | 1219(35.0%) | 888 (25.5%) | 368(10.6%) | 3484(100.0%) |
| Total | 1963(32.2%) | 2176(35.7%) | 1423(23.3%) | 537 (8.8%) | 6099(100.0%) |

5. 학생인권 인식조사 결과

〈표 6-2-1〉 학생인권에 대한 전반적 인식 (응답자별 분석)

단위: 명(%)

| $\chi^2=433.51^{***}$ | 1.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에 대해 나는 | | | | Total | |
|-----------------------|-----------------------|-------------|-------------|-------------|-------------|--------------|
| | 잘 알고 있다 | 알고 있는 편이다 | 약간 안다 | 잘 모른다 | | |
| 응답자 | 중학생 | 722(27.6%) | 1067(40.8%) | 553(21.1%) | 274(10.5%) | 2616(100.0%) |
| | 고등학생 | 654(18.8%) | 1341(38.5%) | 966(27.7%) | 523(15.0%) | 3484(100.0%) |
| | 학부모 | 436(23.7%) | 754(41.0%) | 403(21.9%) | 246(13.4%) | 1839(100.0%) |
| | 교사 | 381(45.2%) | 377(44.8%) | 64 (7.6%) | 20 (2.4%) | 842 (100.0%) |
| Total | | 2193(25.0%) | 3539(40.3%) | 1986(22.6%) | 1063(12.1%) | 8781(100.0%) |

〈표 6-2-2〉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성 인식 (응답자별 분석)

단위: 명(%)

| $\chi^2=341.45^{***}$ | 2. 학교에서의 인권 보장은 내게 | | | | Total | |
|-----------------------|--------------------|---------------|---------------------|------------|-----------|--------------|
| |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중요할 수 있는 문제이다 | 다른 것에 비해 별로 중요하지 않다 | 생각해 본 적 없다 | | |
| 응답자 | 중학생 | 1619(61.9%) | 789 (30.2%) | 79 (3.0%) | 129(4.9%) | 2616(100.0%) |
| | 고등학생 | 1944(55.8%) | 1227(35.2%) | 112(3.2%) | 201(5.8%) | 3484(100.0%) |
| | 학부모 | 1419(77.2%) | 391 (21.3%) | 9 (0.5%) | 20 (1.1%) | 1839(100.0%) |
| | 교사 | 485 (57.6%) | 345 (41.0%) | 8 (1.0%) | 4 (0.5%) | 842 (100.0%) |
| Total | | 5467(62.3%) | 2752(31.3%) | 208(2.4%) | 354(4.0%) | 8781(100.0%) |

〈표 6-2-3〉 학생인권 침해 시 대응 방법에 대한 전반적 인식 (응답자별 분석)

단위: 명(%)

| | | 3.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나는 | | | | Total |
|-----|-------|----------------------|---------------------------|----------------------------|------------|--------------|
| | | 내 권리를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 부당하다 생각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 생각해 본 적 없다 | |
| 응답자 | 중학생 | 1800(68.8%) | 481(18.4%) | 113(4.3%) | 222(8.5%) | 2616(100.0%) |
| | 고등학생 | 2125(61.0%) | 929(26.7%) | 148(4.2%) | 282(8.1%) | 3484(100.0%) |
| | 학부모 | 1579(85.9%) | 188(10.2%) | 27 (1.5%) | 45 (2.4%) | 1839(100.0%) |
| | 교사 | 554 (65.9%) | 226(26.9%) | 21 (2.5%) | 40 (4.8%) | 841 (100.0%) |
| | Total | 6058(69.0%) | 1824(20.8%) | 309(3.5%) | 589(6.7%) | 8780(100.0%) |

〈표 6-2-4〉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단위: 명(%)

| | | 4. 학교의 학생 이성교제 규제에 대해 | | | | Total |
|-------|-------------|-----------------------|---------------------------|------------------------------|-----------------|--------------|
| | |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된다 | 전교생 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학생·학부모·교사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 |
| 응답자 | 중학생 | 1625(62.1%) | 597(22.8%) | 279(10.7%) | 115(4.4%) | 2616(100.0%) |
| | 고등학생 | 2246(64.5%) | 812(23.3%) | 293(8.4%) | 133(3.8%) | 3484(100.0%) |
| | 학부모 | 622 (33.8%) | 417(22.7%) | 656(35.7%) | 144(7.8%) | 1839(100.0%) |
| | 교사 | 325 (38.6%) | 114(13.5%) | 379(45.0%) | 24 (2.9%) | 842 (100.0%) |
| Total | 4818(54.9%) | 1940(22.1%) | 1607(18.3%) | 416(4.7%) | 8781(100.0%) | |

〈표 6-2-5〉 학생 두발 규제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단위: 명(%)

| $\chi^2=1352.23^{***}$ | 5. 학교의 학생 두발 규제에 대해 | | | | | Total |
|------------------------|---------------------|---------------------------|-------------------------------|-----------------|------------|--------------|
| |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된다 | 전교생 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학생·학부모· 교사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 | |
| 응답자 | 중학생 | 1158(44.3%) | 965(36.9%) | 381(14.6%) | 112(4.3%) | 2616(100.0%) |
| | 고등학생 | 1676(48.1%) | 4329(38.1%) | 351(10.1%) | 128(3.7%) | 3484(100.0%) |
| | 학부모 | 450(24.5%) | 597(32.5%) | 606(33.0%) | 186(10.1%) | 1839(100.0%) |
| | 교사 | 127(15.1%) | 198(23.5%) | 473(56.2%) | 44 (5.2%) | 842(100.0%) |
| Total | | 3411(38.8%) | 3089(35.2%) | 1811(20.6%) | 470(5.4%) | 8781(100.0%) |

〈표 6-2-6〉 학생 복장 규제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단위: 명(%)

| $\chi^2=1299.05^{***}$ | 6. 학교의 학생 복장 규제에 대해 | | | | | Total |
|------------------------|---------------------|---------------------------|-------------------------------|-----------------|------------|--------------|
| | 학교가 규제해서는 안된다 | 전교생 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학생·학부모· 교사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 | |
| 응답자 | 중학생 | 800(30.6%) | 1181(45.1%) | 470(18.0%) | 165(6.3%) | 2616(100.0%) |
| | 고등학생 | 1196(34.3%) | 1602(46.0%) | 521(15.0%) | 165(4.7%) | 3484(100.0%) |
| | 학부모 | 304(16.5%) | 579(31.5%) | 720(39.2%) | 235(12.8%) | 1838(100.0%) |
| | 교사 | 61 (7.2%) | 194(23.0%) | 514(61.0%) | 73 (8.7%) | 842(100.0%) |
| Total | | 2361(26.9%) | 3556(40.5%) | 2225(25.3%) | 638(7.3%) | 8780(100.0%) |

〈표 6-2-7〉 교내 CCTV 설치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단위: 명(%)

| | | 7. 교내 CCTV 설치에 대해 | | | | Total |
|-------|------|-------------------|--------------------------|------------------------------|-----------------|--------------|
| | | 설치해서는 안된다 | 전교생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학생·학부모·교사대표와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 학교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 |
| 응답자 | 중학생 | 372(14.2%) | 1173(44.8%) | 713(27.3%) | 358(13.7%) | 2616(100.0%) |
| | 고등학생 | 385(11.1%) | 1807(51.9%) | 879(25.2%) | 413(11.9%) | 3484(100.0%) |
| | 학부모 | 122(6.6%) | 549(29.9%) | 919(50.0%) | 247(13.4%) | 1837(100.0%) |
| | 교사 | 32 (3.8%) | 162(19.2%) | 526(62.5%) | 122(14.5%) | 842(100.0%) |
| Total | | 911(10.4%) | 3691(42.0%) | 3037(34.6%) | 1140(13.0%) | 8779(100.0%) |

〈표 6-2-8〉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단위: 명(%)

| | | 8. 학교의 학생 소지품 검사에 대해 | | | | Total |
|-------|------|----------------------|--------------------------------|--------------------|------------|--------------|
| | | 해선 안된다 | 학생/학교 안전과관련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 사전 고지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 수시로 할 수 있다 | |
| 응답자 | 중학생 | 782(29.9%) | 1165(44.5%) | 540(20.6%) | 129(4.9%) | 2616(100.0%) |
| | 고등학생 | 1023(29.4%) | 1667(47.8%) | 694(19.9%) | 100(2.9%) | 3484(100.0%) |
| | 학부모 | 255(13.9%) | 1048(57.0%) | 357(19.4%) | 178(9.7%) | 1838(100.0%) |
| | 교사 | 85 (10.1%) | 547(62.0%) | 176(20.9%) | 34 (4.0%) | 842(100.0%) |
| Total | | 2145(24.4%) | 4427(50.4%) | 1767(20.1%) | 441(5.0%) | 8780(100.0%) |

〈표 6-2-9〉 학생 개인정보 공개 및 제공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단위: 명(%)

| | | 9. 학생 개인정보 공개나 제공에 대해 | | | | Total |
|-----|-------|------------------------|---------------------|--------------------------|----------------------|--------------|
| | | 학생정보를 외부에 공개/제공 해선 안된다 | 동의를 받으면 공개/제공할 수 있다 | 기본정보이면 동의 없이 공개/제공할 수 있다 | 학교가 판단하여 공개/제공할 수 있다 | |
| 응답자 | 중학생 | 1482(56.7%) | 952(36.4%) | 116(4.4%) | 66(2.5%) | 2616(100.0%) |
| | 고등학생 | 1938(55.6%) | 1331(38.2%) | 125(3.6%) | 90(2.6%) | 3484(100.0%) |
| | 학부모 | 986(53.6%) | 765(41.6%) | 45 (2.4%) | 42(2.3%) | 1838(100.0%) |
| | 교사 | 343(40.7%) | 464(55.1%) | 20 (2.4%) | 15(1.8%) | 842(100.0%) |
| | Total | 4749(54.1%) | 3512(40.0%) | 306(3.5%) | 213(2.4%) | 8780(100.0%) |

〈표 6-2-10〉 교내 학생 집회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단위: 명(%)

| | | 10. 교내 학생 집회(예, 유인물 배포, 벽보 게시물 부착, 1인 시위)에 대해 | | | | Total |
|-----|-------|---|------------------------------------|---------------------|------------------|--------------|
| | | 학생은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수업권침해나 학생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학교가 통제할 수 있다 | 사전에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 교내에서는 집회를 해선 안된다 | |
| 응답자 | 중학생 | 1273(48.7%) | 857(32.8%) | 362(13.8%) | 124(4.7%) | 2616(100.0%) |
| | 고등학생 | 1924(55.2%) | 1054(30.3%) | 389(11.2%) | 117(3.4%) | 3484(100.0%) |
| | 학부모 | 575(31.3%) | 941(51.2%) | 263(14.3%) | 59(3.2%) | 1838(100.0%) |
| | 교사 | 135(16.0%) | 550(65.3%) | 131(15.6%) | 26(3.1%) | 842(100.0%) |
| | Total | 3907(44.5%) | 3402(38.7%) | 1145(13.0%) | 326(3.7%) | 8780(100.0%) |

〈표 6-2-11〉 애간학습 및 보충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단위: 명(%)

| | | 11. 학생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참여에 대해 | | | | Total |
|-------|------|----------------------------|-----------------------|-----------|------------|--------------|
| | | 학생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해야 한다 | 참여는 의무다 | 잘 모르겠다 | |
| 응답자 | 중학생 | 1954(74.7%) | 284(10.9%) | 99(3.8%) | 279(10.7%) | 2616(100.0%) |
| | 고등학생 | 2871(82.4%) | 366(10.5%) | 101(2.9%) | 146(4.2%) | 3484(100.0%) |
| | 학부모 | 1398(76.1%) | 344(18.7%) | 64(3.5%) | 32(1.7%) | 1838(100.0%) |
| | 교사 | 728(86.5%) | 89 (10.6%) | 9 (1.1%) | 16(1.9%) | 842(100.0%) |
| Total | | 6951(79.2%) | 1083(12.3%) | 273(3.1%) | 473(5.4%) | 8780(100.0%) |

〈표 6-2-12〉 교내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 수강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단위: 명(%)

| | | 12. 교내 종교행사 참여 또는 특정 종교 과목 수강에 대해 | | | | Total |
|-------|------|-----------------------------------|-----------------------|-----------|-------------|--------------|
| | | 학생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해야 한다 | 참여는 의무다 | 잘 모르겠다 | |
| 응답자 | 중학생 | 1874(71.6%) | 184(7.0%) | 103(3.9%) | 455(17.4%) | 2616(100.0%) |
| | 고등학생 | 2643(75.9%) | 229(6.6%) | 93(2.7%) | 519(14.9%) | 3484(100.0%) |
| | 학부모 | 1632(88.8%) | 90(4.9%) | 30(1.6%) | 86 (4.7%) | 1838(100.0%) |
| | 교사 | 725(86.1%) | 52(6.2%) | 9 (1.1%) | 56 (6.7%) | 842(100.0%) |
| Total | | 6874(78.3%) | 555(6.3%) | 235(2.7%) | 1116(12.7%) | 8780(100.0%) |

〈표 6-2-13〉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단위: 명(%)

| | | 13. 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해 | | | | Total |
|-------|------|-----------------------|-------------------------------|-------------------------------|------------|--------------|
| | |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된다 |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 | 교육적 훈육 (사랑의 매)의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 | 잘 모르겠다 | |
| 응답자 | 중학생 | 904(34.6%) | 1165(44.5%) | 260(9.9%) | 287(11.0%) | 2616(100.0%) |
| | 고등학생 | 1224(35.1%) | 1572(45.1%) | 363(10.4%) | 325(9.3%) | 3484(100.0%) |
| | 학부모 | 710(38.7%) | 704(38.4%) | 372(20.3%) | 49(2.7%) | 1835(100.0%) |
| | 교사 | 353(41.9%) | 153(18.2%) | 294(34.9%) | 42(5.0%) | 842(100.0%) |
| Total | | 3191(36.4%) | 3594(40.9%) | 1289(14.7%) | 703(8.0%) | 8777(100.0%) |

〈표 6-2-14〉 성적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 및 학교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인식 (응답자별 분석)

단위: 명(%)

| | | 14. 성적에 따른 학생 교육활동 제한이나 학생 학교시설 이용 제한에 대해 | | | | Total |
|-------|------|---|-------------------|-----------|------------|--------------|
| | |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있다 | 대체로 이해한다 | 생각해 본 적 없다 | |
| 응답자 | 중학생 | 1649(63.0%) | 470(18.0%) | 148(5.7%) | 349(13.3%) | 2616(100.0%) |
| | 고등학생 | 2364(67.9%) | 646(18.5%) | 166(4.8%) | 308(8.8%) | 3484(100.0%) |
| | 학부모 | 1280(69.8%) | 419(22.8%) | 75(4.1%) | 61(3.3%) | 1835(100.0%) |
| | 교사 | 610(72.4%) | 200(23.8%) | 19(2.3%) | 13(1.5%) | 842(100.0%) |
| Total | | 5903(67.3%) | 1735(19.8%) | 408(4.6%) | 731(8.3%) | 8777(100.0%) |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 인쇄일 | 2016년 12월
| 발행일 | 2016년 12월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조사국 아동청소년인권팀 02)2125-9641
| F A X | 02)2125-0929
| 제 작 |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代)

ISBN: 978-89-6114-522-0 93370 비매품